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백서



발 간 사



500만 농업인의 벽찬 기대와 희망속에 새 천년 선진농업·농촌을 선도해 갈 통합농협중앙회가 200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통합농협중앙회의 출범은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진정한 자조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절대다수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온 협동조합개혁이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조직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개 중앙회의 통합과 운영상의 제도 개선은 협동조합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무릅쓰고 새출발을 하게 된 통합농협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선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날 때만이 개혁은 완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농·축·인삼협중앙회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한다면, 우리가 그 숭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한 개혁은 그 빛이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밝힌대로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하여 유통

·경제사업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중앙회는 유사·중복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선조합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되돌려 주자는 협동조합개혁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9일 발표한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추진과제」는 협동조합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외형적인 큰 틀은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협동조합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 틀에 살을 붙여가는 질적인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일수 있습니다만, 이를 중도에 그만둔다면 협동조합은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에 뒤쳐져 조직자체의 생존마저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통없이 미래없다”는 각오로 제2단계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속에 조합원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이 없는 조합은 이미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이한 조직문화 속에서 각기 성장해온 3개 중앙회 출신 직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협동조합개혁 백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 온 협동조합 개혁과정을 서울대학교 농업정책연구회가 사실에 기초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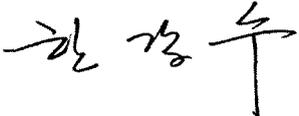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50년 농정사의 한 획을 그은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영구 보전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농정개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백서는 협동조합개혁이 중앙회통합과 통합농협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우리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협동조합 임직원은 물론 농업인,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서발간을 계기로 통합농협 출범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야 국회의원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어려운 농정을 맡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개혁을 불굴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님, 방대한 중앙회 통합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정세욱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민·시민단체 관계자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2월 31일

농림부장관 

일 러 두 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 통합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과정을 정리한 백서는 2권의 별도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자는 본문 8장과 개혁일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책자(자료집)는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이후 각계의 찬·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서신, 홍보물 및 언론보도 등을 여과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편집자 대표

서울대학교 농업정책연구회

이 재 덕

장 경 호

목 차

제1장. 백서발간의 목적과 내용	1
제1절. 백서발간의 목적 및 의의	3
1. 백서발간의 목적 / 3	
2. 백서발간의 의의 / 5	
제2절. 백서의 내용 및 구성	6
1. 백서의 내용 / 6	
2. 백서의 구성 / 8	
제2장. 국민의 정부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 진행과정	13
제1절. 협동조합의 탄생 및 변천과정	15
1. 종합농협의 발족 / 15	
2. 70-80년대 농협조직의 변화 / 19	
3. 축협의 분리 / 24	
제2절. 농협민주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	25
1. 농협민주화운동의 발생 / 25	
2. 농협민주화운동의 성장 / 28	
3. 농협민주화운동의 의의 / 32	

제3절. 협동조합법 개정과 직선제의 도입 34

1. 88년 법개정의 배경 및 경과 / 34
2. 88년 법개정의 주요 내용 / 48
3. 88년 법개정의 의의 / 41

제4절.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 개혁 44

1. 94년 협동조합 개혁의 배경 / 44
2.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 개혁 / 48
3. 94년 협동조합법 개정 / 53
4. 94년 협동조합 개혁의 의의 / 60

제5절.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와 과제 62

1.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 / 62
2.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남겨진 과제 / 67

제3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논의과정 79

제1절.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배경 81

1.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 81
2.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여론 / 85
3.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협동조합개혁 / 92

제2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개혁방안 건의 99

1.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99
2.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 및 쟁점사항 / 104
3.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 / 109

제3절.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 118

1.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 118
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개혁안 협의 / 123
3.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 / 126

제4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입법 확정과정 129

제1절.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131

1.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 131
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 137
3. 협동조합개혁 관련 공청회·간담회 등 의견수렴과정 / 146
4.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 154

제2절.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170

1.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 170
2.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 179
3. 입법예고(안)과 주요 단체의 입장비교 / 187

제3절.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확정 및 국회제출	192
1. 법안확정 및 국회제출 과정 / 192	
2. 정부가 확정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내용 / 198	
3. 정부법안과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 / 210	
제4절.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과 각계의 입장 및 활동	225
1. 농협측의 입장과 활동 / 225	
2. 축협측의 입장과 활동 / 236	
3.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의 입장과 활동 / 247	
4.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국민연대)의 입장과 활동 / 259	
제5장. 국회의 협동조합 개혁입법 처리과정	265
제1절. 개혁입법의 의결과정	267
1. 개혁입법의 의결경과 / 267	
2.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272	
3.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 275	
4.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 / 286	
5.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 도출 / 295	
제2절.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활동	298
1. 정부의 주요활동 / 298	

- 2. 농협측의 주요활동 / 301
- 3. 축협측의 주요활동 / 303
- 4. 협개연의 입장과 활동 / 309
- 5. 국민연대의 입장과 활동 / 315
- 6. 개혁입법 반대주장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 / 317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323

- 1. 정부제출법안과 국회의결법안의 비교 / 323
- 2. 농업협동조합법과 각계 입장의 비교 / 329
- 3.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 344

제6장.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합헌결정과정 355

제1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판결 주요경과 357

- 1. 축협의 헌법소원 제기 / 357
- 2. 헌법소원의 진행과정 / 359
- 3.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까지의 주요경과 / 364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주장 366

- 1. 축협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요지(1999.9.22) / 366
- 2.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요지(1999.11.18) / 370
- 3. 축협의 심판청구 보충의견서 요지(2000.1.29) / 376
- 4.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요지(2000.3.24) / 384

- 5. 축협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요지(2000.3.23) / 395
- 6. 가처분신청에 대한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요지(2000.4.12) / 398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결정 402

- 1. 합헌판결 주요내용 / 402
- 2. 합헌판결의 의미 / 405

제7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과정 409

제1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의 주요경과 411

- 1. 통합중앙회 설립 주요경과 / 411
- 2.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의 갈등 / 418

제2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구 운영 430

- 1. 설립위원회 / 430
- 2. 설립기획단 / 445
- 3. 설립사무국 및 실무작업단 / 455

제3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 추진과정 460

- 1.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460

2.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등 제정 / 463
3. 창립총회 개최 주요경과 / 468
4. 조직·사업장·인사·보수 정비방안 마련 / 469
5. 자산실사 / 472
6. 전산통합 / 475

제4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478

1. 주요경과 / 478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483
3.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 / 484
4. 대의원 및 기타 임원 선출 / 485

제5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범 490

1. 설립위원회의 권고(안) 제시 / 490
2.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권고(안) / 491
3. 통합중앙회 인사·보수제도 정비방안 권고(안) / 501
4.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권고(안) / 502
5. 통합중앙회 인수작업 / 506
6. 통합중앙회 창립기념식 개최 / 517

제8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의 성과와 전망 523

제1절. 협동조합개혁의 기대효과 525

1. 중앙회의 구조개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525

- 2. 회원조합의 실질적 육성과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 527
- 3. 품목별 전문조합의 활성화 / 528
- 4. 조합원의 권한과 참여 확대 / 529

제2절.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531

- 1.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 / 531
- 2. 통합 협동조합의 과제 / 532

부 록

- 1.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주요일지 / 539
- 2.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 / 584
- 3.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57호) / 649
- 4.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60호) / 670
-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 675
-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 702
- 7. 대의원회및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 719
- 8.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48호) / 733
- 9.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 762
- 10.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49호) / 780
- 11.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50호) / 809

【 표 목 차 】

- <표 2-1> 농협·농은 통합에 관한 의장 공한의 별지 대강 / 17
- <표 2-2> 이동조합의 합병 추이 / 20
- <표 2-3> 농협민주화선언문 / 30
- <표 2-4> 1988년 협동조합법 개정 경과 / 38
- <표 2-5> 신경제 5개년계획의 협동조합 개편방안 / 44
- <표 2-6> 농업금융 관련조직 개편방안 요약도 / 45
- <표 2-7> 한농연·전농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농어민적 개편방안 / 47
- <표 2-8>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 48
- <표 2-9> 농발위 중간보고서(1994.5.24)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 50
- <표 2-10>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 51
- <표 2-11>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 52
- <표 2-12>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의 주요내용 / 55
- <표 2-13>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보고서 주요내용 / 58
- <표 2-14> 제1안 : 별도 중앙회 체제유지, 독립사업부제 / 68
- <표 2-15> 제2안 : 중앙회 통합, 신경분리 / 69
- <표 2-16> 제3안 :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 70
- <표 3-1> 농가인구 및 협동조합(농축협) 임직원수 변동 추이 / 86
- <표 3-2> 농축협 사업규모 변동 추이 / 88
- <표 3-3> 농축협 신용사업 수지 변동추이 / 89
- <표 3-4> 부실조합 현황(1997년말 기준) / 91

- <표 3-5>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1.22) / 93
- <표 3-6>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공청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2.13) / 95
- <표 3-7>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협동조합 개편방안(1998.2.12) / 98
- <표 3-8>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 100
- <표 3-9>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실무작업단 명단 / 101
- <표 3-10>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주요 활동경과 / 102
- <표 3-11>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 / 106
- <표 3-12> 제1안에 따른 조직체제 / 110
- <표 3-13> 제2안에 따른 조직체제 / 112
- <표 3-14> 제3안에 따른 조직체제 / 113
- <표 3-15> 4개 협동조합중앙회 공동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119
- <표 3-16> 농림부 협동조합개혁기획단 명단 / 120
- <표 3-17>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주요활동 경과 / 121
- <표 3-18> 임협·삼협의 수정안에 따른 중앙회 조직체제 / 124
- <표 3-19>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1998.9.30) / 125
- <표 4-1>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운영경과 / 138
- <표 4-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명단 / 139
- <표 4-3>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구성 / 139
- <표 4-4>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 현황 / 146
- <표 4-5> 공청회 의견발표자 명단 / 147
- <표 4-6>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3.8)에서
입법예고(4.19)까지 간담회 개최 현황 / 153
- <표 4-7>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3.8)에서
입법예고(4.19)까지 각계 입장 발표 현황 / 161

- <표 4-8>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의식 / 165
- <표 4-9> 협동조합 개혁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 / 166
- <표 4-10> 전반적인 개혁내용에 대한 찬반 / 167
- <표 4-11> 통합관련 축협의 행동에 대한 견해 / 167
- <표 4-12> 축협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 168
- <표 4-13>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대한 찬반 / 169
- <표 4-14> 일선 조합 광역화에 대한 찬반 / 169
- <표 4-15> 조합장 경영책임 강화에 대한 찬반 / 170
- <표 4-16> 통합중앙회 조직체계 / 173
- <표 4-17> 개혁방안(1999.3.8)과 입법예고(안)의 차이점 비교표 / 178
- <표 4-18> 입법예고(1999.4.19)에서 국회제출(1999.6.14)까지의
토론회·간담회 현황 / 185
- <표 4-19> 입법예고(안)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 187
- <표 4-20> 입법예고(1999.4.19) 이후 국회제출까지 정부의 주요 추진경과 / 193
- <표 4-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194
- <표 4-22>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조직체계 / 201
- <표 4-23> 입법예고(안)(1999.4.19)과 정부법안(1999.6.8)의 비교표 / 207
- <표 4-24> 정부법안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 219
- <표 4-25>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농협측의 주요활동경과 / 235
- <표 4-26> 축협중앙회가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계(1999.3.31) / 237
- <표 4-27>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축협측의 주요활동경과 / 245
- <표 4-28> 협개연이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향 / 251
- <표 4-29>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협개연의 주요활동경과 / 257
- <표 4-30> 국민연대가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 / 260
- <표 4-31>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국민연대의 주요활동경과 / 264
- <표 5-1> 국회의 개혁입법 의결경과 / 270

- <표 5-2>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주요활동 / 299
- <표 5-3>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농협측의 주요활동 / 302
- <표 5-4>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축협측의 주요활동 /307
- <표 5-5>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협개연의 주요활동 / 313
- <표 5-6>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국민연대의 주요활동 / 316
- <표 5-7> 정부제출법안과 국회의결법안의 비교 / 326
- <표 5-8> 농업협동조합법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 337
- <표 5-9> 제정 농협법과 종전 농·축협법과의 비교 / 350
- <표 6-1>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까지의 주요경과 / 365
- <표 7-1> 통합중앙회 설립 주요경과 / 415
- <표 7-2> 통합중앙회 설립과정 갈등의 주요경과 / 426
- <표 7-3>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 /431
- <표 7-4> 설립위원회 주요 운영경과 / 443
- <표 7-5>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구성 / 445
- <표 7-6> 설립기획단 주요 운영경과 / 453
- <표 7-7>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 조직 / 456
- <표 7-8>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인원 및 협동조합별 배분 / 457
- <표 7-9>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조직 / 458
- <표 7-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주요 경과 / 461
- <표 7-11> 통합중앙회 정관 등 제정의 주요 경과 / 465
- <표 7-12> 통합중앙회 조합별 대의원회 구성내역 / 466
- <표 7-13> 통합중앙회 이사회 구성내역 / 467
- <표 7-14> 통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주요경과 / 481
- <표 7-15>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483
- <표 7-16> 통합중앙회 이사 선출 결과(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외) / 488

- <표 7-17> 중앙회장 직속조직 권고(안) / 493
- <표 7-18> 조합감사위원회 조직 권고(안) / 494
- <표 7-19>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 494
- <표 7-20>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권고안 / 495
- <표 7-21> 신용대표이사 소관 조직 권고안 / 496
- <표 7-22> 통합중앙회 시·도 조직 권고안 / 497
- <표 7-23> 통합중앙회 조직 권고안 /498
- <표 7-24> 통합중앙회 규정체계 일원화 방향 / 503
- <표 7-25>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구성 / 507
- <표 7-26> 인수단 조직구성 / 508
- <표 7-27> 인수단 종사직원 현황 / 509
- <표 7-28> 인수위원회 운영경과 / 509
- <표 7-29> 제규정 통합 현황 / 511
- <표 7-30> 농협인의 다짐 / 513
- <표 7-31> 통합중앙회 전산통합 추진일정 /515
- <표 7-32> 창립기념식 치사 /518

제 1 장

백서발간의 목적과 내용

- 제1절. 백서발간의 목적 및 의의
- 제2절. 백서의 내용 및 구성

여 백

제1장. 백서발간의 목적과 내용

제1절. 백서발간의 목적 및 의의

1. 백서발간의 목적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수많은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9년 8월 13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2000년 7월 1일에는 그 개혁입법에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했다. 이번에 시행된 협동조합 개혁입법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협동조합 개혁으로 새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농업에 대단히 큰 의미를 던져 주었다.

UR협상 이후의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난 1997년 이후의 IMF관리체제 그리고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농업은 사상유래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을 회생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농정개혁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협동조합 개혁은 농정개혁의 가장 주요한 과제중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개혁요구와 위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상호작용해 왔던 것이다. 즉, 대다수의 농민단체가 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며, 국민의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하에서도 협동조합 개혁은 주요한 농정개혁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협동조합 개혁은 과거 정부의 개혁조치와 비교하여 협동조합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거 정부의 개혁조치는 이해당사자의 기득권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 체제의 구조적 개혁 보다는 제도와 운영상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기득권을 뛰어 넘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협동조합의 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개로 분산되어 있던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대한 중앙회를 슬림화하며, 중앙회의 권한과 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여 회원조합을 활성화시키는 등 협동조합의 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제도를 쇠신하여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에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경영의 전문성·책임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완전한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의 진입장벽을 철폐하였으며,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기회와 권한을 확대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획기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협동조합 체제의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거세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강했던 축협은 과거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68개의 농민·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농업계를 대표하는 대다수의 농민단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를 과감히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지지와 지원을 보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농민·시민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단체는 축산부문의 상대적 피해의식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부문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였으며, 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 농업경제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부문이 만들어졌고, 축산경제사업부문에는 축협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

이 당연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경제 부문의 회계·인사·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자산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하는 등 축산부문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은 과거의 협동조합 개혁에 비해 협동조합 체제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보다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농정개혁 가운데 뚜렷하게 역사적 성과를 남긴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본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백서발간의 의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왔던 협동조합 개혁은 1999년 8월 13일 개혁입법의 국회 의결과 2000년 7월 1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은 개혁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개혁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인 개혁의 효과로 연결되도록 운영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입법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협동조합 개혁에 힘을 모아준 농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새천년 우리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통합 농협중앙회가 개혁의 정신을 간직하여 진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고 또다시 거센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취지와 전과정을 냉철하게 재음미하여 협

동조합의 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백서를 발간하는 의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백서 발간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50년 농정사의 한 획을 그은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영구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농정개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지침서로서 자리매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모든 농업주체에게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정신을 되새기도록 함으로써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은 앞으로 협동조합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혁으로 중앙회 및 일선 조합에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선의 농축협 조합원들이 받게 될 실익이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를 정리함으로써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늠해 본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혁이 개혁입법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우리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농업주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백서는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역사로서 기록될 것이다.

제2절. 백서의 내용 및 구성

1. 백서의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은 협동조합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포함하여 과거 정부의 개혁과는 달리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는 과거 협동조합의 탄생에서부터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1961년 종합농협

체제의 출범, 1970년대 이동조합의 합병과 2단계 계통조직으로의 전환, 1981년 축협중앙회의 분리 등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구조의 변화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번 협동조합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개혁요구와 위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백서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어떻게 분출되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민의 정부 이전에 추진되었던 위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의 과정을 함께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협동조합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그동안의 협동조합 개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협동조합 개혁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농협과 축협 등 이해당사자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이 매우 활발하게 개진되었으며, 특히 협개연과 국민연대로 대표되는 농민단체의 의견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백가쟁명과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백서는 협동조합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최종결정과정까지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으며,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과 주장이 또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되었던 이번 개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동조합 개혁논의를 집대성하여 앞으로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망라함으로써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개혁의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협의(1998-1999),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1999.3.8), 정부의 (가

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1999.4.19),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확정(1999.6.8) 및 국회제출(1999.6.14), 국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의결(1999.8.13),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공포(1999.9.7) 등의 과정을 거쳐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2000.7.1)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야 했다. 본 백서는 이같은 개혁입법과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의 전과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 보았다. 이는 각 단계별로 주요한 쟁점 사항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과 입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농협과 축협, 협개연과 국민연대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백서의 구성

본 백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우선 1961년 종합농협체제 발족으로부터 1970년대 이동조합의 합병 및 2단계 계통조직으로 전환과 1981년 축협중앙회의 분리 등 협동조합체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출범점이 되었던 1970년대 농협민주화운동과 그 성과인 1988년의 농협법 개정 및 조합장 직선제의 도입과정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직전의 문민정부하에 추진되었던 1994년의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활동과 협동조합 개혁을 수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진행되었던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협동조합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협동조합 개혁의 논의과정을 정리하였다. 1999년 3월 8일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민의 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협동조합 개혁의 논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조합 개혁입법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의 개혁방안으로 나타났는가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 당시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국민의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였던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년)의 논의과정 및 건의사항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입장을 존중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공동개혁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결국 공동개혁안 마련이 결렬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셋째, 제4장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확정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제3장과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1999.3.8)함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는 개혁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각계의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1999년)을 구성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3월 8일에 발표했던 개혁방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1999.4.19), 이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농민단체와 일선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시한번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하고(1999.6.8) 국회에 제출하였다(1999.6.14). 제4장에서는 이같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축협, 그리고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협개연과 국민연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도 함께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확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담고 있다.

넷째, 제5장에서는 국회의 협동조합 개혁입법 처리과정을 정리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참여한 의견대립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청회(1999.7.13)를 개최하고 대체토론(1999.8.6)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

정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축산부문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법안을 수정하였으며(1999.8.12), 이 수정된 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1999.8.13). 제5장에서는 이같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축협, 그리고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협개연과 국민연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종전의 농·축협법과 무엇이 다른지,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담고 있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개혁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을 정리하였다. 정부가 개혁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축협 등이 정부법안의 위헌여부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국회가 개혁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축협 등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안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통과한 개혁법안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6장에서는 이같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개혁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등을 정리하여 개혁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론까지의 주장을 담고 있다.

여섯째, 제7장에서는 통합농협중앙회의 출범과정을 정리하였다. 정부는 일부의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따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통합 농협중앙회 설립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1999.9.7), 그 산하에 설립기획단을 두었으며, 이와 별도로 설립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들 기구에 의해 통합 농협중앙회의 설립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개혁법안의 하위법령을 만들고, 통합 농협중앙회의 정관 및 임원선거부속서 등 통합 농협중앙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나갔다. 그리고 통합 농협중앙회의 직제와 인사 및 보수 그리고 사업장 정비방안 등을 결정하였으며, 자산실사와 전산통합도 시행하였다. 한편, 통합 농협중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2000.4.17), 임원선출을 위한 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통합 농협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2000.5.2), 중앙회 이사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 그리고 비상임감사를 선출하였다. 이같은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법안의 시행과 더불어 통합 농협중앙회가 출범하였다(2000.7.1). 제7장에서는 이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곱째, 제8장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협동조합 개혁이 2000년 7월 1일 개혁법안의 시행과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기서는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여 백

제 2 장

국민의 정부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 진행과정

- 제1절. 협동조합의 탄생 및 변천과정
- 제2절. 농협민주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
- 제3절. 협동조합법 개정과 직선제의 도입
- 제4절.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 개혁
- 제5절.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와 과제

여 백

제2장. 국민의 정부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 진행과정

제1절. 협동조합의 탄생 및 변천과정

1. 종합농협의 발족

1) 종합농협 발족의 배경

현행 종합농협체제는 1961년 7월 2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670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 15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종합농협체제 이전에는 경제사업(구매·판매사업)을 위주로 하는 구(舊)농협과 신용사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구(舊)농협은 1957년 제정된 농협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구(舊)농협의 조직체계는 이동조합—시·군·구농협—농협중앙회의 3단계로 조직되었으며, 농협의 종류는 일반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동조합은 신용사업 가운데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종합농협이었으나, 기타 원예·축산·특수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및 시·군·구농협은 경제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농업은행은 1957년 농업은행법 제정 및 1958년 법개정에 따라 1958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당시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으로 이원화되었던 가장 이유는 구(舊)농협의 금융기법 미숙과 공신력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은 구(舊)농협에서, 신용사업은 농업은행에서 분담하여 다같이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양 기구의 존속에 필요불가결의 요건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면에서는 원활한 협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농업은행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구(舊)농협에 대해 경영여건 부족이나 수용태세 미비등을 이유로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1961년 3월 기준으로 농업은행의 대출 가운데 구(舊)농협에 대출된 것은 7.1%에 불과하였다. 경제사업 위주의 구(舊)농협은 조직기반이 취약하였던데다가 정치적인 영향력하에 놓여 있어 진정한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용사업의 제한으로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활동이 부진하여 경영면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국,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은 은행과 협동조합이라는 운영상의 특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업신용제도의 확립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 농촌경제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으며,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의 이원화체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2) 통합위원회 구성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1960년 4.19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6월 농림시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구(舊)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의 개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61년 1월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농업은행을 개편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금고'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부가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당시 농업은행과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문제는 1961년 5.16이후에 급속히 진전되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1961년 5월 31일 발표한 기본경제정책에서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이어 1961년 6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을 의결하고, 6월 16일에는 의장명의로 농림부장관에게

<표 2-1>과 같이 통합처리를 지시하는 공한을 보냈다.

<표 2-1> 농협·농은 통합에 관한 의장 공한의 별지 대강

<농협 및 농은 통합처리 대강>

1. 방 침

-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은 통합한다.
- 나. 본 기구 통합시의 자산과 부채는 통합된 신기구가 인수한다.
- 다. 본 기구 통합시의 임원 및 직원은 농협·농은 통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리하며 해임 또는 신규 발령토록 한다.

2. 요 령

- 가. 농협·농은 통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농협·농은 통합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본 위원회는 본 대강방침에 입각하여 신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입안하고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나. 신기구 개설 특별법 입법상의 고려할 사항
 - ① 목적은 농촌경제를 향상, 발전케하여 신용부문과 일반사업부문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강구한다.
 - ② 본 기구의 신용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되 농어촌육성발전이외는 대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 ③ 본 기구의 기금은 출자금, 사업의 이익금, 적립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 다. 통합기간
농협 및 농은 통합기일은 7월말까지로 한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농협·농은 통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편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동 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구(舊)농협·농업은행·한국은행·학계 등에서 위촉된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작성하여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7월 29일 기존의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을 폐기하고 전문 176조 부칙 17조로 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을 법률 제670호로 공포하였다.

3) 종합농협의 발족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1년 8월 4일에 초대 농협중앙회장과 2인의 감사, 5인의 운영위원이 임명되었다. 8월 7일에는 농협중앙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회장 2인, 이사 5인을 임명하고 농협중앙회 정관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한편, 직제와 간부직원의 임명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회에 총무부, 계리부, 관리부, 지도부, 조사부, 감사부, 구매부, 판매부, 금융부, 영업부의 10개 부와 문서과를 비롯한 20개 과를 두는 외에 8개소의 도지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140개소의 군조합, 383개소의 군조합지소, 101개소의 특수조합, 21,042개소의 이동조합에 대한 조직을 완료하여 8월 15일에 발족하였다.

종합농협은 이동조합—시·군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계통조직을 갖추었으며, 별도의 특수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었다.

이동조합은 1960년 말 기준으로 18,906개 었으나, 종합농협이 발족된 이후 1961년 말에는 21,042개로, 1962년 말에는 21,518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수도 1962년 말에는 전체 농가의 90% 이상에 달하는 222만7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동조합의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농촌경제의 구심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1963년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수는 105명, 평균 사업규모는 35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1964년부터 이동조합 합병 4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1968

년 말에는 이동조합의 수가 16,089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139명으로 증가하였고, 평균 사업규모도 27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이동조합의 대규모 합병을 통해 70개의 면단위 조합이 새로 탄생하였다.

구(舊)농협 시기에 특수조합은 주로 양봉조합이나 양잠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예조합·축산조합과 별도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종합농협이 발족하면서 구(舊)농협 시기의 특수조합·원예조합·축산조합을 특수조합이라는 지위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구(舊)농협 시기의 특수조합은 업무구역의 제한이 없었으나,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은 시·군이 업무구역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종합농협 발족 이후 모든 특수조합은 업무관할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조합의 정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舊)농협 시기에는 원예조합이 80개, 축산조합이 152개, 특수조합이 27개 등 모두 259개였으나, 종합농협 발족 이후 특수조합은 119개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일정 경영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을 해산하여 특수조합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구(舊)농협 시기에 시·군·구조합은 시·군 및 특별시의 구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168개가 있었으나, 종합농협 발족 이후 서울특별시, 군 및 군에 인접된 시를 포함한 군단위로 업무구역을 정비하면서 139개의 시·군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이동조합의 사업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이 시·군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군조합의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구매사업의 경우 1962년 94억 1,700만원에서 1968년에는 229억 8,3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판매사업의 경우 1962년 21억 4,900만원에서 1968년에는 387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 70-80년대 농협조직의 변화

1) 이동조합의 읍면단위 합병

이동조합 합병 4개년 추진계획(1964-1967)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조합은 사업량의

확보나 자기자본의 조성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동조합은 영세성과 부실운영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통·통신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군조합은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영세소농 조합원과 밀착되지 못하고 괴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모든 이동조합을 1,500개의 읍면단위 조합으로 합병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읍면단위 합병의 목적은 단위조합이 하나의 경영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1969년에 7,525개이던 단위조합이 1973년에는 1,549개로 줄어 들었고, 평균조합원 수도 298호에서 1,331호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이동조합의 합병 추이

연도별	조합수(개)	농가호수(천호)	조합원수	
			전체(천호)/가입률(%)	조합당(호)
1969	7,525	2,546	2,440 / 88.0	298
1970	5,859	2,483	2,224 / 90.0	393
1971	4,512	2,482	2,211 / 89.1	489
1972	1,567	2,452	2,183 / 89.0	1,393
1973	1,549	2,450	2,062 / 84.1	1,331

한편 농협중앙회는 면단위 조합의 합병에 따라 시·군조합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면단위 조합에 점차적으로 이관하였다. 합병이 완료된 면단위 조합 가운데 중점 지원 조합을 선정하여 상호금융과 생활물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료·농사자금·공제·정책구매·정책판매 등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였다. 1973년부터는 중점 지원조합 육성계획을 더욱 확대하여 기초경영자립조합 육성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까지 모든 면단위 조합에 비료·농사자금·공제·정

책구매·정책판매 등의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시·군조합 소유의 공동이용시설도 점차적으로 면단위 조합으로 양도하도록 하였다

2) 농협 계통조직의 2단계화

이동조합이 면단위 조합으로 합병되면서 이동조합-시·군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부분의 이동조합이 면단위 조합으로 합병되고, 면단위 조합과 시·군조합의 기능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975년 6월 13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농협의 조직·제도 및 사업활동을 파악하고 협동조합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평가교수단을 구성하였다. 8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은 '한국농협 운영평가보고서(1976.5.20)'를 통해 1980년대 초반에는 시·군조합을 면단위 조합의 연합회로 통합개편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도지부를 축소하는 등의 농협조직의 단계적 개편을 주장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별도로 평가교수단을 구성하여 농협운영제도 개선에 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평가교수단은 '농협제도 개선 연구보고서(1977.11.15)'를 통해 농협의 계통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여야 하며, 이같은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직 3단계, 사업 2단계"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농협 계통조직의 개편문제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사업추진면에서 그때까지 시·군조합에 남아 있던 대농민 지원업무를 면단위 조합으로 이관하였고, 1979년에는 당시 시·군조합의 단위 조합 감사요원을 도지부 소속 전문감사단으로 개편함으로써 농협은 사실상 "조직 3단계, 사업 2단계"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농협 계통조직의 문제는 1980년대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농림수산부의 농협체질개선 시행지침을 토대로 농협계통조직을 2단계 체제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공포됨으로써 (1980.12.30 법률 제3300호) 1981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같은 농협법 개정에 따라 시·군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농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 농협의 계통조직은 단위조합-중앙회의 2단계라는 법률적·제도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도지부와 시·군조합은 각각 도지회와 시·군지부로 개편되었다. 한편 시·군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라 시·군조합장 제도가 폐지되었고, 시·군조합장과 특수조합장으로 구성되었던 농협중앙회의 대의원회가 단위조합장과 특수조합장 중에서 선출된 총대로 구성되는 총대회로 대체되었다. 이같은 2단계 개편에 대해 형식적으로 2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위조합-시·군지부-도지회-중앙회로 이어지는 4단계 조직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농협 계통조직체계의 개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농협 계통조직의 2단계화에 따라 농협 각 계통조직의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이 뒤따랐다. 단위조합이 농협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종합기획·지도교육·조사연구사업 중심의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며, 시·군지부는 농업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시·군조합이 수행해 왔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사기능을 도지회가 담당함에 따라 단위조합과 중앙회를 연결하는 중간 기구로서의 도지회의 기능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시·군조합의 농기계서비스센터, 농산물 판매시설 등 각종 사업시설이 모두 단위조합에 이관되었으며, 농촌지역에 설치되었던 시·군조합 지소를 단위조합으로 이관하여 단위조합의 기능과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신용사업 중심의 체제로 전환된 시·군지부는 농업자금의 조달기능과 함께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자금중계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추진상 시·군단위에서의 사업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3) 중앙회장 및 조합장 임명제도의 변화

현행 종합농협체제를 발족시킨 1961년 농협법에 의하면 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 되었으며, 단위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중앙회장의 임명제는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었다. 이는 현행 종합농협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군사정부가 종합농협 발족을 주도하고 구(舊)농협과 농업은행의 임직원이 보조 세력으로 참여한 현행 종합농협은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아래로부터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운동에 의해 설립된 선진국의 협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뒤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중앙회장 임명제는 1988년 농협법 개정 때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조합장의 선출방식을 이사회의 호선으로 규정한 것도 조합원에 의한 직선제에 비해서는 민주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나마 농협법상의 호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조합장 선임제도는 1962년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임명제로 운영되어 왔다.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에 농협중앙회장의 임명권은 부분적으로 도지부장 또는 시·군조합장에게 위임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권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하여 법률 제3301호로 공포된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단위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게 되었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제도는 폐지되었다. 임시조치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981년 조합장 임면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이 총대를 선출하고, 총대들이 9명의 조합장 추천위원을 선출하며, 이 추천위원들이 연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장 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면 중앙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다득표자를 조합장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그 뒤 1984년 3월에는 조합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장 선임제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장과 총대 전원이 모여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최고득표자를 주후보자로 선출하고 조합장 출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주후보자를 선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3. 축협의 분리

1958년 구(舊)농협이 발족하면서 축산계 조합은 축산협동조합으로 분류되었으며, 1960년 기준으로 전국에 154개의 축산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축산협동조합은 1961년 현행 종합농협체제가 발족하면서 원예조합, 양잠조합, 양봉조합 등과 함께 특수조합으로 분류되었으며, 일정 경영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이 해산 또는 합병되면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들 축산계 특수조합은 축산물의 소비증가 및 축산물시장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축협중앙회 설립을 시도하였으며, 그 전단계로 축산진흥회를 설립하였다. 특히 1978년 5월의 제1차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고 축산물의 가격파동을 겪으면서 축협중앙회 설립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다.

그 가운데 1980년 국가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늘어나는 축산물의 생산, 공급, 유통, 소비물량을 감당할 축산업의 생산자단체로는 축협중앙회, 일반 경종농업의 생산자단체로는 농협중앙회, 그리고 수산업의 생산자단체로서는 수협중앙회로 각각 분리하여 전문협동조합체제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축협을 농협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1980년 12월 30일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1년 1월 1일자로 축협중앙회가 발족하였다.

축산계 특수조합과 축산진흥회의 개편으로 발족한 축협중앙회는 그동안 농협이 담당해 왔던 축산지원업무를 이관받았다. 즉, 축산물공판장 본장과 3개의 배합사료공장, 안성의 한독목장, 고창의 양돈장, 기타 축산관계 자산과 조직, 사무소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지원·사료공급·가축시장관리 등의 업무가 축협중앙회로 이관되었다.

종합농협과 마찬가지로 축협중앙회도 제5공화국 군사정권에 의해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농협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또한 축협법은 농협법을 모태로 하여 부분적인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협법의 근간을 유지하였고, 축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임명제도 역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임명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

었다. 이 역시 축협중앙회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축산부문의 전문조합을 기초로 전국단위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시 전업축산농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농가가 경종과 축산을 겸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부업축산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축협중앙회의 지원업무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농협과 축협에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제2절. 농협민주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

1. 농협민주화운동의 발생

1) 농협민주화운동의 태동

농협민주화운동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2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 국가톨릭농민회(가농) 제3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연간 사업목표를 “농협의 민주화”로 결의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가농은 197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걸쳐 농협문제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가농 회원 및 소수의 농촌지도자들에게는 농협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토론회 보고서에 의하면 농협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가농은 농협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이같은 교육활동을 통해 농협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 사업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인 시정요구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976년 전남·전북·충남·강원·경북지역에 걸쳐 농협출자강요(7건), 비료불량품 배급(1건), 추곡수매 강요(2건), 복권강요(1건), 영농자재강매(1건), 공제대출 부정(2건), 연초등급 인상(2건) 등에 대해 가농 회원

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농협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가농은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단협정관', '농협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농협과 조합원'이라는 교육자료를 보급하여 농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가농은 농협민주화운동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1977년 2월에는 300여명의 농민활동가를 대상으로 농협민주화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8개도 46개군 75개 단위조합의 조합원 78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조사연구를 토대로 가농은 8월 16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농협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협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농협육성 방안 및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길 등을 모색했다. 당시 세미나에서 가농은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민주적 원칙으로 농협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가농 회원들은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이 신문, 잡지,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농협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1)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철폐하여 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 (2) 농협은 부당한 출자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
- (3) 비료가격을 인하하고 비료의 자유 판매제를 실시하라
- (4) 농협은 비료 부정도입으로 인한 농민피해 40억원을 변상하라
- (5) 함평 고구마 피해농가의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라
- (6) 농협은 대정부 의존적인 존립에서 벗어나 농민에게 돌아오라

이를 계기로 농협민주화운동이 더욱 확산되었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제출자 거부, 비료 조별판매 거부, 농약 등 영농자재 강매 거부, 공제가입 강요 거부 등이 주요한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 조합장 직선제 등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총대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농협민주화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핵심적인 요구가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 및 조합장 직선제'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집약되어 잘 나타난 것이 1980년 4월 11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주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였다.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재야민주인사 등을 비롯한 4,000여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 △소작농문제 해결 △비생산적 토지의 농민환원 △저곡가정책과 농산물수입정책 철폐 등과 아울러 '농협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철폐'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2) 함평 고구마 사건

1970년대 농협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함평 고구마 사건'이다. 함평군은 전남에서 해남, 무안군과 함께 고구마 주산지로서 매년 약 20,000여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당시 고구마값이 30%나 오르게 되었고 농민들은 고구마 재배면적을 늘려 1976년에는 예년보다 많은 약 25,000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75년에 비해 5,000톤 가량이 과잉생산된 양이었다. 따라서 과잉생산된 고구마의 판로가 문제였는데, 당시 농협에서는 이미 76년산 고구마를 전량 수매한다고 선전하고 농민들에게 확약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출하시기인 11월이 되자 예년처럼 현지로 직접 사러 오는 상인들과 시장에 고구마를 팔지 않았고, 상인들은 삼한제분, 진로소주 등의 회사들이 외국에서 이미 주정원료를 수입해 왔으며, 농민들에게 팔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농협의 수매약속을 믿은 농민들은 이같은 상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농협에서 나누어준 포대에 고구마를 담아 운송하기 편리한 도로변에 야적시켜 두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산발적으로 일부 소량만을 수매해 갔을 뿐 전량수매를 위한 어떤 대책도 없이 단지 오늘, 내일 실어간다고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1년 동안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고구마는 길거리에서 썩어가기 시작했고 농민들의 초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협의 수매약속을 믿었던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산발적으로 피해보상요

구를 벌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농민들은 가농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76년 11월 17일 함평읍내에서 '함평고구마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농민들은 농협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협은 피해농가를 찾아다니며 회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가농은 1977년 4월에 각계각층에 피해보상을 호소하였으며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고구마 피해보상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확산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며칠 뒤 농수산부에서 피해조사단이 파견되었고, 조사 결과 피해액은 대책위원회의 조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수산부 역시 피해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였다. 이후 함평 고구마 사건은 정부와 대책위원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었고, 결국 사건 발생 2년째인 1978년 4월 피해농가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고, 단식 8일만에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보상액은 함평군내 모든 피해농가에 보상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농의 일부 회원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감사원은 1978년 5월 일부 단위농협이 주정회사나 중간상인들과 결탁하여 76년과 77년 2년 동안 고구마 수매를 위장 또는 조작하여 농협자금 80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막을 내린 '함평 고구마 사건'은 당시 농협의 파행적인 사업행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농민 조합원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성공을 거둔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농협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큰 계기가 되어 농협민주화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농협민주화운동의 성장

1) 조합장 직선제의 대두

70년대부터 시작된 농협민주화운동은 초창기에는 농민조합원의 영농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농협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조합원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농협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은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민주화운동은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 및 조합장 직선제'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집약되어 잘 나타난 것이 1980년 4월 '민주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였으며, 1980년대 농협민주화운동의 최우선과제로서 '조합장 직선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특히, 가농의 경우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조합운영의 민주적 기능회복과 조합장 직선제 실현'을 주요 활동목표로 정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총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총대 바로뽑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조합운영에 비판적인 농민세력이 적극적으로 총대후보로 나서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총대들을 위해 농협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입출고료의 미지출, 수매과정의 부정,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 경직성 경비 절감 등과 같은 조합사업의 합리성과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병행되었다.

2) 조합장 직선제 100만인 서명운동

1980년대부터 농협민주화운동의 핵심요구는 '조합장 직선제'로 집중되었다. 조합장 직선제 요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83년에 실시된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었다.

가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협민주화운동세력은 당시의 협동조합이 반농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농민조합원의 대표를 조합원이 선출하지 못하고 정부가 임명하도록 만드는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민주화의 출발은 조합장 직선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가농은 1983년 조합장 직선제를 위해 서명운동을 주요사업 계획으로 확정하고, 7월 27일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8월 1일부

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가농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100만인 서명운동은 당시 정부기관과 농축협 등에서 서명운동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나, 천주교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100만인 서명운동이 예상외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조합장 선출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83년 12월 21일에는 가농 대표단 8명과 여야 각 정당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각 정당대표들은 농협민주화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조합장 선출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당시 총대회가 선출한 9인 추천위원회에서 조합장 후보 2인을 선출하여 그 중 1인을 중앙회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총대회가 조합장 후보 1인을 선출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조합장 직선제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협동조합이 농민의 강력한 의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가농은 이같은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조합장 직선제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아 '농협민주화선언(<표 2-3> 참조)'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사회적인 민주화 운동의 고양시기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민주화운동도 크게 확대되면서 협동조합민주화를 위한 조합장 직선제의 실현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표 2-3〉 농협민주화선언문

〈 농 협 민 주 화 선 언 〉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60년대 임시조치법 몇줄로 관제화한 농협은 반농민적 행위를 무수히 저질러 왔다. 강제출자, 비료조별판매, 선이자, 각종공제, 유명무실한 임원 구성, 외국농축산물 판매, 소비조장 등...

이와 같은 일은 농민을 알보고 농민 위에 군림하려는 농협의 비민주적 체질과 제도적 으로는 임시조치법으로 관제화한 소산이라고 단정한다. 그동안 우리는 시정을 요구하는 싸움을 즐기치게 해 왔다. 강제출자를 시정했고, 임원의 제구실과 임시조치법 철폐를 요구했다. 피땀흘려 생산한 고구마가 농협의 사기극으로 길바닥에서 썩어갈 때 8일이나 단식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 싸웠다.

이는 오직 농협민주화가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민주화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우리의 충정에서였다.

그런데 그동안 농협의 실상은 무엇이었던가? 사업의 공개는 고사하고, 정관이 무슨 큰 기밀문서나 되는 듯이 조합원에게 공개하기를 꺼렸고, 강제출자는 당연한 것처럼 농민들을 억박질렀다. 농민들은 무지하다는 그 한마디로 임시조치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농산물 값은 어찌되던 창고에는 외국 농산물로 가득 채웠다. 조합장에까지 월급을 주며 전문경영인이랍시고 상무, 전무를 두고 흥청거리는 이면에 농민조합원은 빗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다. 농협은 실업자 구제소가 아니다. 집권당에 편승한 자들이 농협을 지배하여 정실인사에 이용당했던 악몽을 농민은 똑똑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농협민주화가 곧 농민의 살 길임을 절감하고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농협은 회유, 협박을 넘어 용공시켰고 민족사의 큰 비극인 보도연맹 운운하면서 방해에 혈안이 되어 최일선에 나섰다.

우리는 농협민주화의 길이 농민만의 요구가 아니라 민중의 엄숙한 요구임을 100만인 서명운동 과정에서 새롭게 절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언한다.

-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합장 직선제를 통한 농협민주화가 이루어질때 까지 굳건하게 나아간다.
- 농협민주화를 거부하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일 수 없으며 임시조치법에 따라 임명된 조합장을 조합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 각도별 범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에서 농협민주화를 위한 조합원대회를 열어 농민의 요구를 결집한다.
- 농협민주화를 원하는 모든 농민단체와 긴밀한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1983. 11. 16

한국가톨릭농민회

3)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1987년 6.10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을 맞아 농협민주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각 정당이 모두 농협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1988년에는 국회내에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농협법 등을 심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을 맞아 그동안 농협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왔던 농민세력은 조합장 직선제를 비롯하여 농협민주화의 과제가 법률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1988년 '전국농민단체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는 가농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협회 등 11개 주요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고 '농협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는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만의 단일안이 발표되었고, 학계 2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인, 농협중앙회 1인, 정당대표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는 농민단체 단일안을 발표한 가농의 대표는 "농협은 이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조직으로 바뀌어져 농촌사회 민주화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제까지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와 단결을 가로막아온 군사독재에 의한 농협지배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조합장을 뽑아야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활동도 전개되었다.

3. 농협민주화운동의 의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운영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현행 종합농협체제가 발족하고, 1981년 또 다른 군사

정부에 의해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이 정부와 농협중앙회장에 의해 임명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었다.

종합농협체제 발족 이후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가 수차례 걸쳐 바뀌고, 중앙회장 및 단위조합장 임명방식이 몇차례 바뀌었으나 거의 대부분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협동조합 임직원이 보조세력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체제와 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고 협동조합은 정부를 대신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기능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업화·도시화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농업과 농촌분야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비판의식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자생적인 활동과 요구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농협은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농협의 각종 사업이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에 직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정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농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부터 초래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농협출자 강요, 비료불량품 배급, 추곡수매 강요, 영농자재 강매, 공제대출 부정 등과 같이 농민들이 자신의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농협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협이 그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농협 임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자신의 권익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농협에서 시행하는 몇가지 특정사업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농협이 전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따라서 농민들은 조합원인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곧 농업·농촌·농민의 권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조합장 직선제'로 집중되었으며, 그 이후에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협동조합 개혁논의와 1999년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에 이르기까지 매 시기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 개혁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협민주화운동은 정부와 협동조합 임직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위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편과정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에 의해 협동조합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농협민주화운동은 농민조합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 기본원칙과 운영원리에 충실한 협동조합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제3절. 협동조합법 개정과 직선제의 도입

1. 88년 법개정의 배경 및 경과

1) 법개정의 배경

1987년 6.10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었으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농협민주화를 위한 조합장 직선제의 요구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결합하면서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으로서 조합장 직선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시 여야 각 정당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농협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88년 제13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조합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협동조합법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농협민주화운동을 추진해 왔던 가농 등의 11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1988년 '전국농민단체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는 농민조합원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조합장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농민단체의 단일안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농축협 등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법의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보여 주었다. 농협의 경우 1987년 9월에 조합원과 단위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988년 5·6월에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에 총대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추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축협과 수협도 자체적인 내부 입장의 정리하여 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협과 축협·수협 등이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법 개정문제가 조합장 직선제 등 협동조합민주화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제13대 국회에 설치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져 협동조합법 개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법개정은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국회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2) 법개정의 경과

1988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제13대 국회가 탄생하였다. 당시 여당과 야3당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농협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원 초기부터 협동조합법의 개정문제를 주요 관심사안으로 취급하였다.

당초 정부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 협동조합법 개정문제를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될 경우 법률개정 심의도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협동조합법 개정문제가 조합장 직선제 등과 같은 민주화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13대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제13대 국회는 당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출되는 민주화의 요구와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맞아 과거의 비민주적 제도·법률 등을 민주적 제도·법률로 바꾼다는 취지하에 여야 합의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한시적인 특별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때 협동조합법 역시 비민주적 법률로서 민주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다.

법률개폐특별위원회는 여당인 민정당 12명, 야당인 평민당 7명, 민주당 6명, 공화당 3명, 무소속 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정비해야 할 대상법률과 분야가 광범위하여 특위는 정치·경제·사회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협동조합법은 경제분야의 심의를 맡은 제2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이때 여당은 기존의 정부안을 토대로 하여 여당의원 28인의 발의로 여당안을 1988년 8월 18일 국회에 접수하였다. 또한 야3당은 야당의원 166명의 발의로 야3당 단일안을 만들어 1988년 8월 16일 국회에 접수하였다.

국회에 접수된 여당안과 야3당안은 1988년 10월 4일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특위에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였다. 제2소위원회는 경제관계분야의 법률정비를 담당한 소위원회로서 민정당 2명, 평민당 1명, 민주당 1명, 공화당 1명 등 총5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초 국회에 접수된 여당안과 야3당안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농협 등이 조합장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승인제 폐지, 회원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 사업범위 확대 등을 강력히 건의함에 따라 협동조합법 개정문제는 △조합장 선거제도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승인제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 △중앙회 및 조합의 사업범위 등 4가지 사항으로 확대되어 심의되었다. 물론 이 4가지 사항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였다.

제2소위원회는 1988년 11월 17일 1차 회의를 가진 이후 1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당초 국회에 제출된 여당안 및 야3당안과는 별도로 소위원회 자체안을 성안하여 1988년 12월 10일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법률개폐특별위원회 역시 격렬한 논란을 벌인 끝에 1988년 12월 10일 소위원회안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후 1988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는 법률개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다시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공포후 3개월이 지난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인 1989년 2월 14일에는 농림수산부가 단위농업협동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예)(농림수산부 고시 제89-16)과 특수농업협동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예)(농림수산부 고시 제89-17)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이때 통과된 협동조합법 가운데 농협법상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과 출자좌수 제한 등 조합장 입후보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1989년 3월 4일 야3당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다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1989년 3월 7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채택되었고, 동년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년 3월 29일 공포되었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4〉 1988년 협동조합법 개정 경과

일 시	주요 경과 내용
1988. 8. 16	○야3당 의원 166인 발의로 협동조합 개정 야당안 국회 제출
8. 18	○민정당 의원 28인의 발의로 협동조합법 개정 여당안 국회 제출
10. 4	○협동조합법 개정안 법률개폐특별위원회 상정 ○특위에서는 제2소위원회에 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위임
11. 17	○제2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이후 13차에 걸쳐 회의에서 심의하여 여당안 및 야3당안과는 별도의 소위원회안을 성안
12. 10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안 상정 ○특위는 소위원회안을 수정하여 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12. 17	○국회 본회의는 특위안을 수정하여 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12. 31	○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공포
1989. 3. 4	○야3당이 의원발의로 농협법 개정(안) 발의
3. 7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농협법 개정(안) 수정안 발의·의결
3. 9	○국회 본회의는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농협법 개정 의결
3. 29	○농협법 개정 법률 공포
4. 1	○농협법을 포함한 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시행

2. 88년 법개정의 주요 내용

1) 직선제의 도입

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선거제도의 문제였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첫째, 직선제와 간선제의 논란 둘째, 잔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셋째, 조합장 입후보자

의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명제를 선거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조합장 선거방법을 직선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간선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 직선제로 하자는 주장은 직선제가 간선제에 비해 보다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간선제로 하자는 주장은 농협이 경영체임을 고려하여 간선제가 직선제에 비해 합리적이며 능률적이라는 점을 각각 주요 논거로 내세웠다.

결국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직선제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단위조합장의 경우 농협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직선제(특수조합은 직선제와 간선제중 선택 가능)로 하였고 축협과 수협은 간선제로 개정하였다.

둘째, 잔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당시 재직중이던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임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여당안과 야3당안에 의하면 개정 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원 선거는 현직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는 대로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현직 임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12월 12일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1989년중에 중앙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수정동의안으로 발의되었다. 당시 농림수산부와 농수축협 등은 이같은 수정동의안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동년 12월 17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위조합 임원의 선출시한은 1990년 3월말까지로 하고, 중앙회 임원의 선출시한은 1990년 4월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개정되었다.

셋째,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에 의하면 조합장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납입출자좌수에 대하여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서 납입출자좌수를 200좌로 정하였다.

그런데 1989년 3월 4일 야3당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조합장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즉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출자보유 제한은 완전히 폐지하여 조합원이면 출자보유좌수나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농협 등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결국 1989년 3월 7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이 발의·채택되었고, 동년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은 2년 이상으로, 출자보유제한은 당해 조합의 선거일 공고일 기준 당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한 자로 완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직선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협동조합 중앙회장을 임명하였으나, 이같은 임명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바뀌었으며, 1990년 4월까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협동조합 중앙회장이 모두 회원조합장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단위조합의 조합장도 일부 특수조합장을 제외하고 1990년 3월까지 모두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2) 기타 주요내용

88년에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직선제 도입이외에도 △사업 계획·수지예산의 승인제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 △정관변경 인가제도 △중앙회 및 조합의 사업범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첫째,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가 폐지되었다. 종전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계획·수지예산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였다. 다만,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용자받아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아울러 회원조합의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대한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제도도 사후보고제도로 바뀌었다.

둘째, 회원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이 폐지되었다. 종전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그 중 일부를 시도지사나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대해 시도지사 등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라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은 중앙회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농림수산부와 협동조합중앙회로 일원화되었다.

셋째, 정관변경 인가제도가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회원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위임 가능)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넷째, 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협동조합이 농지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협동조합은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없이 농지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조합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조합원 가입자격을 완화하여 가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구당 1인에 한하여 누구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관련기업에 대한 외부출자가 허용되었으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의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중앙회의 지급보증·어음할인 취급제한도 완화되었다.

3. 88년 법개정의 의의

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현행 종합농협체제가 출범한 이후 1962년 '농협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임명제의 테두리속에 갇혀 있었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또한

단위조합장은 시장·군수의 승인(농림수산부장관의 위임)을 얻어 시·군조합장이 임명하다가, 1981년부터는 중앙회장이 임명해 왔다.

중앙회는 단위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회원조합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단위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명제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민주적 운영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1961년 제정된 농협법의 호선제 선출규정과 무관하게 임시조치법의 이름으로 27년동안 중앙회장 및 단위조합장은 위로부터 임명되어 왔다. 이로 인해 중앙회장 및 단위조합장의 대표성이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중앙회가 개입·간섭할 수 있게 되는 등 비민주성을 보여 왔다.

농협민주화운동은 협동조합의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1987년 6.10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부합하여 마침내 직선제도의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은 직선제의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표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

첫째, 법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대표성이 형식적으로는 갖추어 졌다. 회원조합장의 직접 선거에 의해 중앙회장이 선출되고,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조합장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대표성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농민 조합원 출신이 중앙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어야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대표성도 완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 개정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주장에 의하면 법개정 이후에도 중앙회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조

합의 임직원 출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대표성이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완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중앙회장의 입후보자격을 조합장 혹은 순수 농민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조합장의 입후보자격에서 조합원 자격 보유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어쨌든 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은 대표성의 형식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임명제와 비교할 때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협동조합 개혁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 구비되기 시작했다. 직선제의 도입으로 과거 정부·중앙회에 의해 하향적 방식으로 운영되던 협동조합의 비민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조합원과 단위조합의 의사가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선제의 도입만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여전히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여지가 남아 있으며, 회원조합 보다는 중앙회 중심의 하향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 보다는 임직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회원조합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률·제도·관행속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협동조합 개혁과 최근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맥락으로 이어오고 있다.

어쨌든 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과거의 임명제하에서는 도저히 시행될 수 없었던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법개정은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대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4절.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 개혁

1. 94년 협동조합 개혁의 배경

1)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농업금융 관련조직 개편 논의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제기획원은 1993년 9월에 신경제 5개년계획(93~97)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금융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표 2-5>와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개편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2-5> 신경제 5개년계획의 협동조합 개편방안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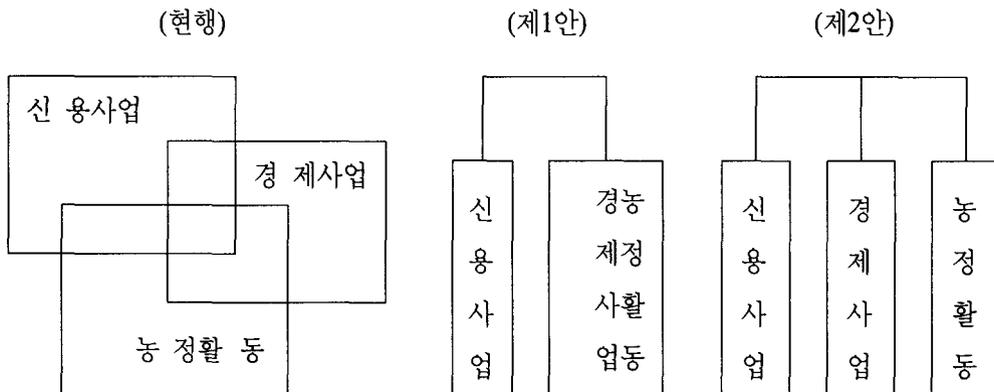
우선 신용사업을 기타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94~95년)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신용사업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과 기능을 조정·보강(96~97년)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96~97년에 신용사업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과 기능을 조정·보강한다”는 의미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신경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당시 농림수산부를 제외한 비농업분야 경제부처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에도 비농업분야 경제부처와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등에서는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개편과 관련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을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3년 3월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농업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금융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금융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농정방향과 금융여건에 적합한 자금조달 및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농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목적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농업금융 관련조직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체제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전문화하고 중앙회장이 각 사업을 통괄하는 방안(제1안), 둘째, 농수축협인 신용사업부서를 통합하여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경제사업부서를 농정활동을 다루는 부서로 분리하고 농정활동을 다루는 부서에 기타 여러 농민단체들을 흡수하여 농업은행, 경제사업부서, 협동조합중앙연합회의 3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하였다. (<표 2-6> 참조)

<표 2-6> 농업금융 관련조직 개편방안 요약도



제1안은 당시의 농·수·축협중앙회를 각각 그대로 존치시키되 각 중앙회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화하고 각 중앙회장이 통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 반영되었는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사업부제'라는 방식으로 전문화하는 내용이 법개정에서 추가되었다.

제2안은 신용사업은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은행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농·수·축협중앙회의 농정활동을 통합하여 이를 전담하는 협동조합 중앙연합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경제사업과 농정활동의 기능을 어떤 조직체계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 협동조합의 농어민적 개편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신경제 5개년 계획, 비농업분야 경제부처의 입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은 금융시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농업금융을 효율화하는 방향에서 위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편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70-80년대 농협민주화운동을 계승하여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 운동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개혁하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은 1988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운영면에서도 중앙회의 권한과 기능이 비대하여 단위조합 보다는 중앙회 위주의 사업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 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지도사업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조합원을 위한 경제·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농연·전농이 공동으로 제기한 '농·수·축협의 제문제와 농어민적 개편방안(1993)'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협동조합 개혁방안(1994)'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5월 25일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공동으로 '농·수·축협의 제문제와 농어민적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한농연·전농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농어민적 개편방안

〈협동조합의 농어민적 개편방안〉

-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특수은행 형태로 신설한 농수축산중앙금고로 이관한다
- 농·수·축협중앙회는 농수축산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며, 통합중앙회 산하에 농협연합회, 축산낙농연합회, 수협연합회를 구성하여 품목별 경제사업을 수행한다
- 기존의 도지부 및 군지부는 해체하고 품목별·산지별·경제권역별 연합회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결성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상호 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다

1988년 농협민주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되어 조합장 직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농민단체 공동으로 제시한 이후, 주요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개혁방안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조합장 직선제와 같은 단일사안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조직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있는 일로서 농협민주화운동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던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이 또 한번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농민조합원을 회원으로 하여 농촌사회에서 활동력과 영향력이 가장 큰 주요 농민단체가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업계 내외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개혁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12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협동조합 관련 단체, 단위농협 노조 등 29개 단체회원과 75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여 1994년 4월 8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1994년 5월 12일 '협동조합 개혁입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마

런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 협동조합 개혁방안 >	
○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농·수·축협중앙회)를 해체하고
○	각각의 농협전국연합회, 축협전국연합회, 수협전국연합회와 업종별 전국연합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농림수산협동조합금고(은행)로 통합하고, 농수축산 분야의 특수은행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	기존의 협동조합중앙회와는 별도로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기존 중앙회의 농정활동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	기존 도지회 및 시·군지부는 폐지하고, 업종별·권역별 각급 연합회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중앙회장의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한다
○	단위조합의 합병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치적 중립조항을 삭제하여 농정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	기존 농·수·축협법은 폐지하고 단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 개혁

1) 농발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 경과

1993년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의식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1994년 2월 1일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13개 주요 농민단체는 약 20,000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WTO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UR협상의 실패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UR협상의 결과 최대의 피해부문인 농업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WTO국회비준을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정부는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대내외적 주변여건이 변화된 가운데 농정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아울러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2월 1일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였다.

농발위는 과거의 농정을 반성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장기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생산현장의 농어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농정방안을 제시하는데 운영목표를 두었다. 이같은 목적과 운영방침에 따라 정부는 농·수·축협중앙회장과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 30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10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였다.

농발위는 광범위한 농정분야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농어업경쟁력강화 소위원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 소위원회' '농어민후생복지 소위원회' 등의 3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야별로 소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농어업경쟁력강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농발위가 설치되기 전인 93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 등으로 농정개혁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어 왔으며, 농발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이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입장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농·수·축협중앙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농발위의 개혁논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게다가 농발위 구성 한달여가 지난 1994년 3월 농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당시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되면서,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장을 다시 선출하였고, 신임 원철희 농협중앙

회장이 3월말부터 농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논의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농발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이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조직통합' 문제였다. 농민단체 대표 등은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조직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농·수·축협중앙회는 현행 체제하에서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여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1994년 5월 24일 농발위는 대통령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협동조합 개혁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조직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 시한에 쫓겨 농민단체 대표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단계적 접근방안을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현행 농·수·축협중앙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 독립사업부제로 실시하여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분리·독립하는 것이었다.

<표 2-9> 농발위 중간보고서(1994.5.24)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농발위 중간보고서(1994.5.24)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단계적으로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시작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
 - 1단계 :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준비
 - 2단계 :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및 별도 협동조합은행(금고) 설립 준비
 - 3단계 : 별도의 협동조합은행(금고)으로 독립
- 통합될 협동조합은행(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경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수·축협법 개정시에 별도의 협동조합은행(금고) 설립근거를 법제화하며, 이때 설립시기와 설립준비기간 중에 취할 조치를 명시
- 협동조합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도록 비법인 형태의 '생산자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

농발위는 1994년 7월 최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때도 협동조합 개

혁방안의 문제로 14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중간보고서의 내용대로 결정되었다. 농발위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협동조합 개혁 부분의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조직통합문제와 관련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신경분리 및 중앙회 통합 관련 내용>

-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킴
 - 협동조합은행(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여 농림수산부가 주감독기관이 되며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지원 장치 마련
- 신용사업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협동조합은행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시기와 설립준비기간 중에 취할 조치들을 법에 명시
- 협동조합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협력할 수 있도록 비법인 형태의 '생산자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2) 농발위 최종보고서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여기서는 1994년 7월에 발표된 농발위 최종보고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농민단체와 학계(전문가계층) 그리고 협동조합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최종보고서를 확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던 분야는 협동조합의 개혁에 관한 것이며, 농발위 최종보고서는 당시에 진행된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중간 결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2-11〉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농발위 최종보고서(1994.7)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

- ①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② 중앙회 중심의 조합체제를 단위조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의 운영체제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④ 품목별 전문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경영의 효율화>

○ 협동조합의 민주화

- 단위조합과 중앙회(연합회)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 조합장과 중앙회장(연합회장)의 피선거권도 조합원으로 한정
- 조합장과 중앙회장(연합회장)의 임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1가구 1인 이상의 복수조합원제도 허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부실조합원은 과감히 정비

○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화

- 기능의 전문화 :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대표·관리기능은 조합원에게
- 조합장의 대표권은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전무이사 임면권, 조직통할권으로 한정하고 조합의 경영권은 전문경영인으로 임명된 전무이사(상임이사)에게 부여
- 중앙회장(연합회장)은 대표기능, 연구·조사·교육, 지도·감독, 농정활동 및 국제협력의 기능을 갖고 전문경영인(이사)은 책임부서의 관리권과 경영권을 수행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권 중심으로 단위조합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신용·경제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추진
-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중앙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폐지
- 정부 대행 정책사업과 조합원 보호 측면에 대한 중앙정부 감독권 인정
- 각 협동조합법에서 정치적 중립조합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운동을 활성화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의 육성>

- 협동조합은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 중심체제로 전환
 - 협동조합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전문조합의 설립을 자유화
 - 전문조합의 경우 업무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조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의 최소요건을 법에 명문화
 - 신설되는 전문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의 겸업을 배제
- 전문조합과 지역조합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 전문조합과 지역조합은 각각 권역별 연합회를 구성하여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중앙회간의 협동과 공동사업 추진
 - 권역별 연합회가 확립되면 기존의 시도지회, 시·군지부는 권역별 연합회로 전환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
 - 협동조합은행(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함
 - 협동조합은행(금고)은 농림수산부가 주감독기관이 되며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신용사업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
 - 협동조합은행(금고)의 설립근거를 마련
 - 설립시기와 설립준비기간 중에 취할 조치들을 법에 명시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간의 협의·협력기구로 비법인형태 '생산자협동조합협의회' 구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간의 협력 강화

3. 94년 협동조합법 개정

1) 협동조합법 개정 경과

1994년 2월 1일 농발위가 설치되고 협동조합 개혁이 주요한 농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농·수·축협법 등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1994년 3월부터 '협동조합개혁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협동조합개혁작업반은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 농·수·축·임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이 작업반을 통해 정부와 협동조합측은 농발위와 별도로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측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일부 조정되어 수용되었다. 특히,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조직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평가·검증을 거친후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1994년 5월 24일 농발위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동년 6월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부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포함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1995년부터 신용사업의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별도 은행으로 독립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1994년 6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총5회에 걸쳐 지역공청회 및 서울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개편방안을 보완해 나갔다. 이 사이에 농발위는 7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부는 당정협의를와 농·수·축·임협중앙회장 간담회(1994.9.17) 등을 거쳐 법개정안을 보완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조직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현행 농·수·축·임협중앙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하여 별도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1994년 11월 11일 농·수·축·임협법 등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994년 12월 22일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1995년 6월 22일 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 협동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1994년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강력히 분출되어 나왔으며, 대통령 직속의 농발위에서도 협동조합 개혁이 시종일관 주요 쟁점사항으로 의견대립이 팽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농정방향의 전환을 꾀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개편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다. 1994년에 개정된 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의 주요내용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조합> · 조합설립허용	· 지역조합은 등록제	· 지역조합· 전문조합 인가제 -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복수조합원제도	· 1가구 1조합원	· 1가구 2조합원
· 조합의 이사 정수	· 6-10인	· 7-15인
· 조합장 선출방식	· 직선제	· 직선제와 간선제 중 조합이자로 결정하되, 그 사항을 정관에 명시 - 정관변경은 조합원 2/3이상 투표, 투표자의 2/3이상 찬성으로 명문화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 전문경영인제도		· 제도는 명문화하되, 조합이 자율로 결정, 정관에 명시
·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	· 조합장이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	· 전문경영인제도 도입할 경우 전문경영인 (상임이사)에게 경영권, 직원 임명제청권 부여 - 조합장의 업무총괄권, 직원 임명권 인정
· 조합합병		· 중앙회의 합병지원근거 신설
· 전문조합 설립	· 1구역 2조합 불인정	· 1구역 2조합 허용(인가제) -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신설전문조합의 신용사업 불인정
· 전문조합연합회	· 연합회 설립 불인정	· 품목별·업종별 연합회 설립 허용 -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에 한해 연합회 설립
<중앙회> · 중앙회장 자격	· 자격제한 없음	· 조합원으로 제한
· 전문경영인제도 - 대표권, 경영권	· 중앙회장이 대표권과 경영권 행사	· 전문경영인(부회장)에게 경영권과 직원 임명제청권 부여 - 중앙회장은 대표권, 업무총괄권, 직원임면권 인정
· 이사회 구성	·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 단,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 중앙회의 조합지도	· 지도권, 규정권, 지시권, 감사권	· 지도권과 감사권만 인정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 회계방식의 독립사업부제로 실시 ※ 독립사업부제 실시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 설치·운영
· 중앙회 조직통합	·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별도 중앙회 체제	· 농·수·축·임협중앙회의별도 중앙회 체제 - 비법인 형태의 상설기구로서 4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협동조합발전기획단 및 농정발전기획단의 후속조치

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협동조합법의 부칙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설립 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며, 기획단의 구성과 설치기간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획단 설

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5년 6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1995년 8월부터 설치되어 1997년 6월까지 운영되었다.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이상의 설치목적에 따라 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용·경제사업의 자회사화 추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1997년 6월 30일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동 보고서를 관련기관 및 각 협동조합중앙회에 송부하고 그 업무를 종료하였는데, 당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3>와 같다.

<표 2-13>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보고서 주요내용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보고서 주요내용>	
<회원조합의 경영효율화 방안>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조합합병 적극 추진	- 경영진단결과 부실·경영약체조합의 경영정상화방안 제시 또는 합병유도 - 합병조합은 자금·예산지원 우대, 불이행조합은 지원 축소 등 차등 조치
○ 조합경영기반의 확충	- 준조합원 가입 확대, 가입금 상향조정과 추가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 - 복수조합원제 활성화, 조합원자격 조기이양으로 부녀자·후계자 참여유도
○ 조합 내부 경영혁신	- 직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사무자동화,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조직·인력·관리비 감축 - 중앙회의 투자심사 및 경영컨설팅 강화로 비효율적 고정투자 방지 - 조합운영협의회에 중앙회의 실질적 참여로 합리적인 종합조정기능 발휘 - 회원조합 지소 및 사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정착

- 현행 상임이사제(전문경영인제도)의 확대 및 제도 정비
-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감사제' 도입으로 내부통제 및 건전경영 유도

<중앙회의 경영체제 개편방안>

- 기본방향 : 경제·신용사업의 자회사화 및 지도사업의 효율화 추진
 - 경제사업분야를 자회사화해서 의사결정과 조직관리의 신속성을 제고
 - 신용사업도 궁극적으로 회사체제로 전환, 발생이익을 당해부분에 재투자
 - 지도사업부문은 경영내실화와 수익사업화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
 - ※ 조합경영여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일시적 개편보다 단계별 추진
- 협동조합중앙회의 개편방안
 - 장기적으로 경제사업부문·신용사업부문의 자회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조합의 서로 다른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자회사화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 부담 관련 법령의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
 - 자회사화 추진방안

	제1안	제2안	제3안
1단계	독립사업부제 유지·보완	경제사업 자회사화	경제·신용사업 전문경영인(CEO)체제
2단계	경제·신용사업 자회사화	신용사업 자회사화	경제·신용사업 자회사화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이 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업무를 종료한 후 '신용·경제사업의 자회사화 추진방안'은 농림부내에 설치된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수용하였다. 농정발전기획단은 1997년 1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용·경제사업의 점진적인 자회사화 추진"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94년 농발위 최종보고서와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협동조합발전기

획단과 농정발전기획단의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신용·경제사업을 점진적으로 자회
사방식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4. 94년 협동조합 개혁의 의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부 차원의 협동조합 개편논의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협동조합 개혁요구 등으로 촉발되었던 1994년의 협
동조합 개혁은 농발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농업계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집중을 받았다. 결국, 1994년 12월
22일 농·수·축·임협법 등 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일단락된 1994년 협동조합 개혁
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 추진되었던 협동조합 개혁역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농업계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961년 종합농협체제의 출범을 비롯하여
1970년대 이동조합의 면단위 조합 합병, 1980년 축협의 분리 및 농협 계통조직의 2단
계화 등과 같은 협동조합의 개편과정은 언제나 정부가 주도하였고 협동조합의 임직원
이 보조세력으로 참여하여 위로부터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농협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되고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1988년의 협
동조합법 개정에서부터 정부와 협동조합 임직원이 아닌 농민단체와 농민조합원의 자
생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도 중요하게 고
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의 협동조합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와 협
동조합측, 농민단체와 농민조합원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논의
하고 개혁과정을 함께 이끌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은 처음으로 정부와 협동조합측, 농민단체와 농민조
합원, 학계 및 전문가계층이 농발위라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에서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도 농발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같은 점은 농협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더욱 한단계 성장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동조합 임직원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편논의와 농민단체·농민조합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상호 보완 혹은 대립의 과정을 거쳐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입법과정에서 어느 쪽의 의견과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가의 문제와 상관없이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농업계 전체의 참여속에서 각계각층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진행된 점은 그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요한 특징이다.

둘째,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는 협동조합의 전면적인 개혁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1961년 종합농협체제의 출범과 1980년 축협의 분리 이후에 처음으로 농·수·축·임협의 조직통합 문제가 이때 논의되었다. 다만 종합농협체제의 출범과 축협의 분리가 각각 군사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농업계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치열한 토론을 겪으면서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때로는 심각한 대립의 양상을 띄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9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이 농협민주화를 위한 조합장 직선제라는 단일 사안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개혁논의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에 비해 1994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경영효율성 강화 등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위로부터의 개혁논의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사업·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협동조합의 개혁논의가 어떤 부분적인 문제점에 국한하여 진행되지 않고 언제나 전반적인 문제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양상을 낳았다.

셋째,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는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으로 이어지는 출

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에 가장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는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로 이어졌다. 즉 우선적으로 농·수·축·협중앙회 체제하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는 문민정부하에서 협동조합발전기획단과 농정발전기획단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자회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 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당시에 주요한 쟁점사항이었던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단위 연합회 허용문제와 중앙회의 계통조직을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은 주관적인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농업계 전반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개혁문제가 논의되고 진행되었다는 점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위로부터의 개혁논의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주요한 골격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은 분명히 그 이전의 협동조합 개혁역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절.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와 과제

1.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

국민의 정부 이전에 진행되었던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판단기준은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주관적인

시각을 반영하지 않고, 협동조합 개혁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얻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1994년 농발위에서 정부와 협동조합측, 농민단체와 농민조합원, 학계 및 전문가계층 사이에 합의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이야말로 이 같은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판단기준일 것이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확대 둘째,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일선조합의 기능과 역할 확대 넷째,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운영으로의 전환 등이다.

1)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확대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의 역사속에서 운영의 민주화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1970-80년대 농협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7년 이후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가 실현된 것은 협동조합 민주화의 역사적인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1988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앙회장을 회원조합장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중앙회장이 임명하던 조합장을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까지 직선제에 의한 조합장 선출이 완료하였고, 1990년 4월에는 중앙회장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또한 1994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조합원이 아닌 누구라도 중앙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었으나 중앙회장의 피선거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대표성을 확립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적어도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농민조합원 보다는 협동조합의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표성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한편 많은 농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가로막아 왔던 '1가구 1인 조합원 제도'가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1가구 2인 조합원을 허용하는 복수조합원제도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협동조합의 폐쇄성

이 완화되고 문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1가구당 2인으로 조합원 수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복수조합원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특히 농촌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는데 많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복수조합원제도의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와 함께 무자격 조합원 혹은 부실 조합원에 대해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조합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또한 중앙회 및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 이사의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회 이사의 2/3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의사결정에 회원조합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복수조합원제도와 더불어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화 3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계통조직의 연합회체제로의 전환문제는 1994년 협동조합 개혁논의 당시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문제와 미묘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제도화되지 않았다.

2)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성 제고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동시에 경영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금융시장의 자유화, 유통시장의 개방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문제가 증대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 및 조합에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은 대표권, 업무총괄권, 직원 임면권 등을 가지되, 독립사업 부제로 운영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담당 부회장이 경영권과 직원 임면제정권을 갖도록 하는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제도 시행

여부를 조합자율로 결정하여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이 종전과 같이 대표권과 경영권을 모두 행사하며,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 직원 임면권을 갖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경영권과 직원 임면제청권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업과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전문경영인에게 분산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과 대표권·경영권의 분리에 대해 대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즉,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주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성에 대한 평가기준,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일선조합의 활성화 및 자율성 확대

농발위는 일선조합을 활성화하여 중앙회 중심의 체제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단위조합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이미 1988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단위조합의 정관변경이 종전의 승인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4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도 정관변경 뿐만 아니라 단위조합의 설립도 종전의 승인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법개정으로 일정기준의 요건만 충족하면 단위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가제로 변경되었다. 다만, 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수, 출자규모 등의 설립기준은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다.

또한 1994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대해 지도권, 규정권, 지시권, 감사권 등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폭 완화하여 단지 지도권과 감사권만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기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단위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 선출방식이나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단위조합이 자율적

으로 결정하여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협동조합이 중앙회 중심에서 단위조합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종전에 비해 단위조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위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는 중앙회 중심의 협동조합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여전히 협동조합의 사업이 중앙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단위조합의 사업과 경합하거나 단위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단위조합 중심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계통조직을 연합회체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의 사업 가운데 일부를 단위조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종전까지 지역조합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가로막아 왔던 조합의 업무구역제한(1구역 1조합)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구역제한규정 때문에 조합설립이 자유롭지 못했던 전문조합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조합의 연합회 설립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설되는 전문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사업에 치중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문조합연합회의 경우 전국단위 연합회는 허용하지 않고 권역별 혹은 전국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전국단위 전문조합연합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조합 활성화의 기본방침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한편 단위조합의 자율성 확대와 아울러 중앙회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부의 농정을 대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되어 농민조합원 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비록 1988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사전승인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법 가운데 정치적 중립조합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농정할

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정부의 감독기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서 이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4)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개편

1994년 협동조합 개혁논의에서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신용사업 위주의 '돈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으로서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집중해야 할 협동조합이 안전한 수익성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목적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사업규모, 조직부서, 업무인력 등 모든 면에서 신용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농발위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을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이 부칙에 포함되었다. 즉, 우선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하였다. 그 이후에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최종보고서(97.6.), 농정발전기획단의 최종보고서(97.12) 등에서는 신용·경제사업의 자회사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2. 국민의 정부 이전 협동조합 개혁의 남겨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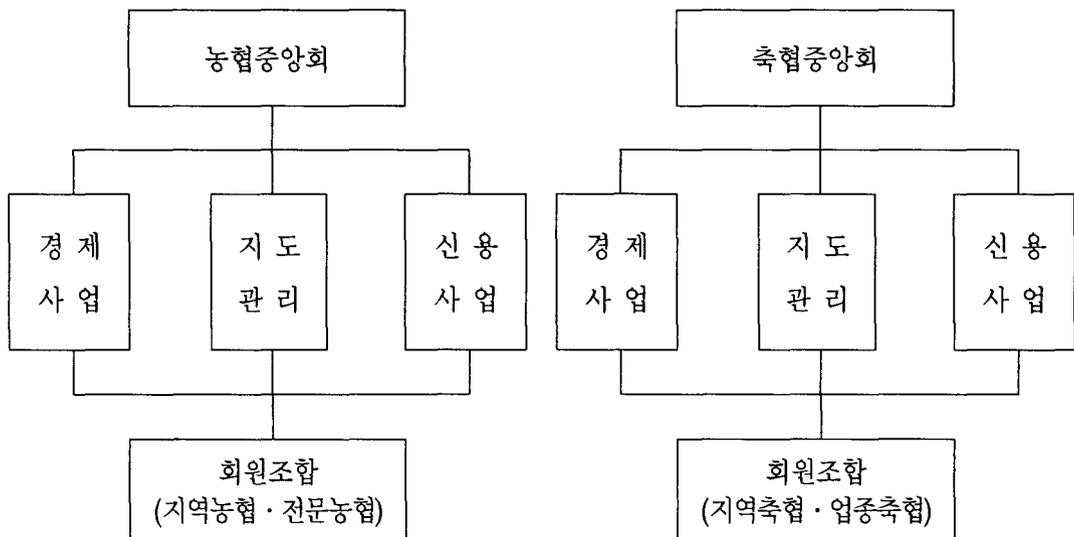
국민의 정부 이전에 추진되었던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처리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과정을 정리하기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별로 각각의 주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중앙회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 접근방법

중앙회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는 1994년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며, 그 이후에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개진되었고, 상호간 의견차이와 입장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세가지의 주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는 편의상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임협중앙회 및 삼협중앙회가 포함되는 것은 각각의 주장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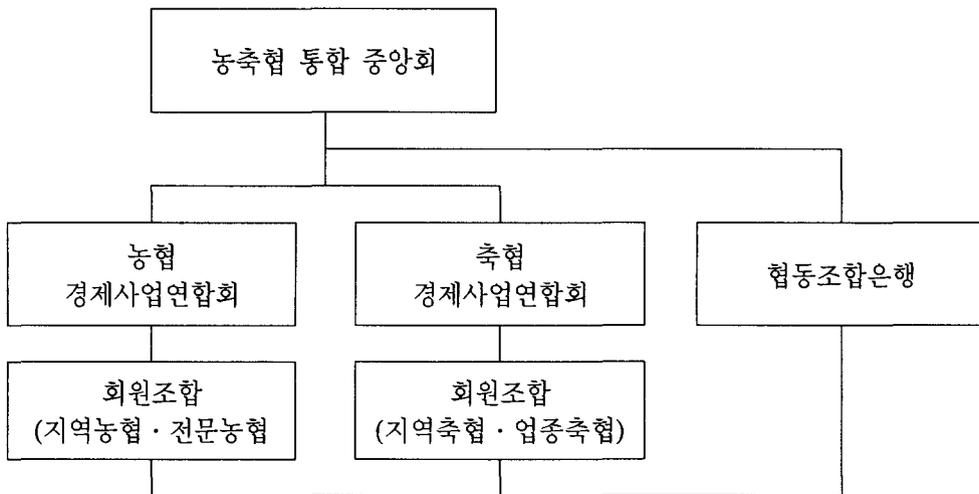
제1안(<표 2-14> 참조)은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별도로 유지하고, 각 중앙회 별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 반영된 내용이다.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각각 농협법과 축협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별도 법인이며, 각각 지역농협과 전문농협, 지역축협과 업종축협이 회원조합으로 가입해 있다.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 초기에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입장을 개진하였다.

<표 2-14> 제1안 : 별도 중앙회 체제유지, 독립사업부제



제2안(<표 2-15> 참조)은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기능을 분리하여 협동조합은행으로 통합하고, 각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정활동·조사연구·지도사업 등 비사업적 기능을 분리하여 통합중앙회로 통합하고,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기능만을 수행하는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통합중앙회와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 협동조합은행은 별도의 법인이며, 회원조합은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와 협동조합은행에 출자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안은 1993년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으로 제시한 개편방안이며, 1994년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했다. 이 안은 1994년 협동조합 개혁논의 과정에서 제1안과 대립하여 격렬한 논란이 전개된 바 있으며,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 초기에 학계 및 전문가계층의 일부에서 이 입장을 개진하였다.

<표 2-15> 제2안 : 중앙회 통합, 신경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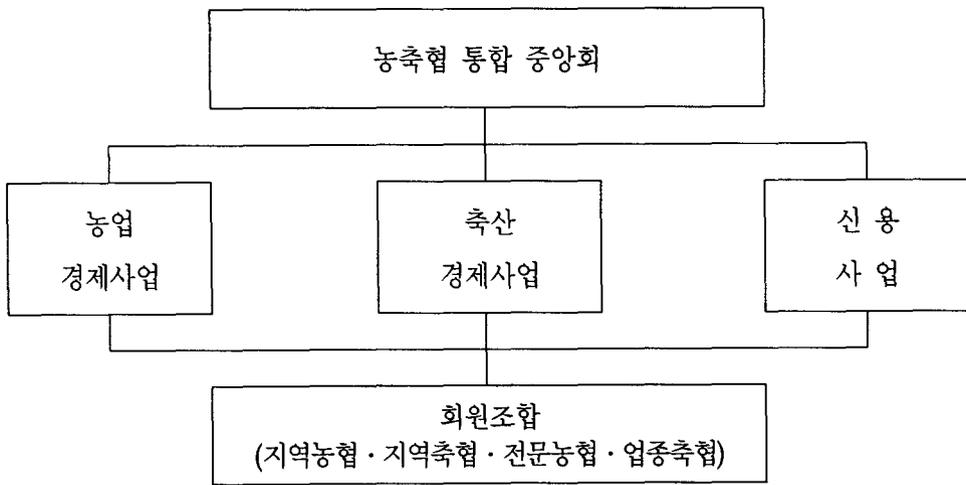


제3안(표 <2-16> 참조)은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내부에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통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기능은 각각의 독립된 경제사업기능으로 유지되도

록 하였다. 여기서 통합중앙회는 단일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이며, 지역농협·전문농협·지역축협·업종축협이 모두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안은 1997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의 명칭변경)가 농정개혁 14대 과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과제로 제시한 방안이며,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 초기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계층의 일부가 이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체제와 관련하여 이 안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 2-16〉 제3안 :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제2안과 제3안은 중앙회 통합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완전한 분리, 즉 협동조합은행으로의 분리문제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통합 중앙회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제2안은 별도 법인으로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기능을 분리하여 협동조합은행으로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같은 전제조건

하에서는 각 협동조합중앙회가 기존의 경제사업기능을 수행하는 각자 별도 법인형태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동조합은행과 경제사업연합회가 수행할 수 없는 농정활동, 조사연구, 지도감독 등과 같은 비사업적 기능은 별도 법인인 통합중앙회를 신설하여 하나로 통합하자는 입장이다.

제3안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은행의 설립과 같은 완전한 신경분리는 농업·농촌의 자금조달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독립사업부제의 강화에 기초하여 중앙회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각각의 신용사업기능은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각각의 경제사업기능은 별도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함으로써 통합의 시너지효과와 전문성을 높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통합중앙회는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계효과와 창출로 비사업적 기능의 질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2) 중앙회 통합 문제

제2안에 따르면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을 통합하여 비출자특수법인 중앙회를 설립하고 현행 각 중앙회는 기존의 경제사업기능을 승계하는 각각의 별도법인 연합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안은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중앙회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제사업기능과 비사업적 기능을 별도법인이 아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주요한 검토사항이 있다. 첫째, 각각의 사업기능·비사업기능을 독립된 전문조직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별도법인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사업부제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제2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별도법인의 방식이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제3안의 주장자들은 기능별 전문성의 강화가 반드시 별도법인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업기능과 비사

업적 기능을 각각의 독립된 전문조직체가 담당한다고 할 때, 독립된 전문조직체의 의미가 반드시 별도법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통합중앙회하의 독립사업부제 방식도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각 기능별 전문성의 여부는 별도법인이나 독립사업부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 및 대외적인 경쟁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제3안에 의하면 전문성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노력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서 별도법인 혹은 독립사업부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2안은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별도법인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둘째,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제3안은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할 경우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간에 과다 중복된 사업·기능·시설·인력의 조정을 통해 기존의 방만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제2안은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할 경우 오히려 중앙회가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강력한 구조조정은 중앙회를 통합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3안의 주장자들은 제2안과 같이 각 기능별로 별도법인화 할 경우 과다중복된 사업·기능·시설·인력의 구조조정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일부 조직의 확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3)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

제2안은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조합과 연합회가 출자주가 된 1차산업부문의 특수은행 지위를 갖는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여 경제사업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안은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

합하여 통합중앙회내에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안과 제3안 모두 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주요한 검토사항이 있다. 첫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있다. 제2안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야 경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제3안은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별도법인 혹은 독립사업부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 보다는 협동조합 임직원의 의식개혁과 경제사업 시스템의 내부개혁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사업 강화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신용사업의 완전분리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다. 제2안은 금융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은행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의 바탕에는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될수록 농업의 외부에서 신용사업의 완전분리를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상황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제3안은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은행으로 완전히 분리할 경우 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금융기능(농업자금 조달기능 + 지도·경제사업 지원기능)이 축소되어 농민조합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통합중앙회내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 농업금융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제2안은 1차산업의 특수은행으로서 협동조합은행이 현행 농업금융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3안의 주장자들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차산업의 특수은행이라는 성격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서 특수은행의 법적 장치와 현실적인 존립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특히 IMF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특수은행(예 :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등)의 존립기반마저 와해시켜 일반시중은행으로 변모했다는 현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특수은행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농업 외부의 압력에 의해 오래가지 않아서 일반은행화할 것이며 농업금융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융기능과는 뚜렷히 구별되는 협동조합 농업금융기능의 특수성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전문성과 책임경영의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통합중앙회내의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4)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의 전환 문제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하자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중앙회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으며,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않았다. 비록 중앙회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에 가려져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 역시 협동조합 민주화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제2안의 내용속에서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통합 중앙회는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합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가 고려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논의 초기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기존의 중앙회체제를 연합회체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그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에 따르면 △도단위 지역본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지역본부를 도연합회로 개편하며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회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선출직 지역본부장(도연합회장)에게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사회에 품목별 연합회 대표를 포함하는 등 중앙회 이사회를 지역대표성과 품목대표성을 갖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

역별·품목별·여성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방안은 협동조합이 아래로부터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조직체제를 급격하게 연합회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1단계로 도단위 지역본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당연직 중앙회 이사 자격을 부여하며, 2단계로 도연합회로 전환하는 점진적 방안이 학계 및 전문가계층의 일부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5)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문제

단위조합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서 전문경영인제도(상임이사제)가 도입되었으며, 그 시행여부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었다. 전문경영인제를 시행하는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대표권·업무총괄권·직원임면권을 갖고,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경영권과 직원임면제청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전문경영인제를 시행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대표권과 경영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계층의 일부와 협동조합 임직원 가운데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모든 조합이 조합장의 대표권과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의 경영권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곧바로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표권과 경영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은 농민조합원 출신 조합장의 경영능력을 낮게 보거나 혹은 전문경영인의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조합원 출신의 조합장, 직원 출신의 전·상무, 영입가능한 외부경영인의 인력풀(pool)의 현실태를 볼 때 조합경영능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합장이 전상무나 전문경영인보다 경영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합장, 전·상무, 외부영입인사 가운데 경영권을 누구에

게 부여할 것인지는 조합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경영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조합장이, 전·상무가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전·상무가, 외부영입인사가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영입인사가 경영에 따른 책임을 각각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정부의 감독기능 문제

1994년 농발위에서는 정부의 감독기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에 국한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원칙에 따라 정부의 감독기능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제한하여 △협동조합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탈행위에 대한 감독에 한정하고 △정부의 감사는 정책사업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그 기본정신과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현실을 근거로 정부의 감독기능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같은 입장은 ICA원칙이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선진국의 협동조합 운동 역사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과 ICA원칙의 배경에는 조합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감시·감독기능이 초창기부터 시행되고 정착되어 왔던 상황이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아직까지 농민조합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감시·감독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위로부터의 감독기능이 급격히 제한될 경우 협동조합이 더욱 더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감시·감독기능이 일정한 수준으로 성숙되고 정착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상황에 맞추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 개혁의 주도세력 문제

협동조합의 개혁과정과 개혁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1961년 종합농협체제의 출범과 1980년 축협의 분리가 당시 군사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협동조합의 태생적 한계와 그동안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정부 농정의 대행자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협동조합 개혁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 개혁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으며, 오히려 이같은 입장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다. 협동조합의 자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민조합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현실적으로 기존 협동조합의 기득권 장벽을 뛰어 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협동조합 개혁의 '개혁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역할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이 기존 협동조합 임직원의 기득권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경우 정부와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개혁방안 가운데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되었다.

여 백

제 3 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논의과정

- 제1절.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배경
- 제2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개혁방안 건의
- 제3절.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

여 백

제3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논의과정

제1절.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배경

1.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에는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중앙회장 자격의 조합원으로 제한,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허용, 1구역 1조합 원칙의 폐지, 복수조합원제도의 시행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의 요소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비대한 중앙회를 개혁하기 위한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통합, 도지역본부 및 군지부의 권역별 연합회로의 전환, 전국단위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정치적 중립조항의 삭제 등과 같은 과제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협동조합도 1997년말부터 IMF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1) 경영여건의 변화

1990년대 중반이후 금융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IMF관리체제 이후에 더욱 급격히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행되었다.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는 기존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금리인하 및 예대마진의 감소로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회원조합의 합병을 통해 신용사업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신용사업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은 회원조합의 합병을 유도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경영기반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신용사업의 위기상황을 맞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사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사업의 적자폭을 신용사업에서 보충해 주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경제사업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경제사업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찾자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의 다각화 및 효율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중앙회간의 신용사업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경쟁력 약화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결국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오던 농산물수입개방이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이후에 더욱 확대되었고, 여기에 1990년대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의 소비자유통에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대형백화점과 대규모 할인점이 농산물의 소비자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유통시장에서 이탈·퇴출되어 나간 것에 비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유통형태는 시장에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거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게는 유리한 시장상황을 창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자본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유통시장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상대적 우위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규모 자본과의 경쟁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축·임·삼협 등의 농산물유통사업을 규모화하고, 농·축·임산물의 품목간 통합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중앙회 차원의 농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농정활동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서울시 팔당상수원보호지구 환경농업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농산물 판매장 개설 등과 같이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사업이 증대하고 있었으며,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지역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등에서도 협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협동조합이 중앙회 중

심의 하향식 조직체계로 되어 있어 지역농정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정에서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상향식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편, 협동조합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영역에 대한 자본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대규모 자본이 각종 유통사업과 생산계열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해 왔던 각종 법률·제도 등을 축소·폐지하고자 하는 외부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곧 국내에서 그동안 협동조합이 누려왔던 각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력 강화 노력은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협동조합의 유지·존속을 위한 경영주의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영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농협의 내부여건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분리되면서 경제사업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특히, 소비자유통에서 신물류체계의 구축, 판매망의 확대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또한 신용사업도 금융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투자신탁업무, 리스업무, 증권업무, 선물거래업무, 종합금융업무 등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중앙회의 노력은 중앙회 차원의 수익확대에 그치게 되었을 뿐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실제 농민조합원의 수취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을 상대로 한 가격조정능력을 농협이 발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이같은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협의 가격안정사업은 사업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민조합원의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는 점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활성화가 비교적 가시적인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은 더욱 악화되었다. 회원조합의 경영악화는 적자조합을 양산하였는데, 적자조합의 적자원인 가운데 대부분이 경제사업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조합합병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1997년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농협은 자체적으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단위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는 조합의 규모화·광역화를 통해 조합의 경영기반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대응방안이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신용사업 의존도가 큰 조합일수록 부실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조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신용사업의 규모를 키워 조합의 유지·존속에 비중을 두는 경영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사업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회의 지도사업과 회원조합의 지도사업을 개혁하려는 차원에서 지도사업비가 매년 증액되고 지도사업은 확대되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농민조합원의 영농계획수립이나 농산물생산 및 판매 등과 같은 경제적 실익 차원의 지도사업 보다는 각종 행사 후원 및 지원비 등의 지출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3) 축협의 내부여건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확대로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도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적었던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축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신용점포를 확대한다는 내부 사업구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축협중앙회가 운영·집행하고 있던 축산발전기금은 2000년에 SBS제도가 끝나

면 재원조달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97년말까지 조성된 축산발전기금 약 3조8천억원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약 2조6천억원이 축산물수입이익금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1997년만 하더라도 전체 축산발전기금 조성액 약 3천2백억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천6백억원이 축산물수입이익금으로 조성되었다. 그런데 2001년에 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축산발전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원이었던 쇠고기수입이익금이 사라지게 되며, 그 결과 축산발전기금의 존속여부 조차도 불투명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운용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축협중앙회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익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자체사업과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료공장, 축산물판매장, 청양유가공공장, 김제육가공공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역시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중앙회 차원의 수익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 증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축협중앙회가 경제·신용사업 측면에서 모두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축협과 전문축협 역시 경영부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97년말 기준으로 193개의 회원축협 가운데 32.6%에 해당하는 63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역축협은 146개 조합 가운데 20.5%인 30개 조합이, 전문축협은 47개 가운데 70.2%인 33개 조합이 자본을 잠식한 상태로서 회원축협의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2.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여론

1)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여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중의 하나가 협동조합

의 사업과 운영에 있어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소외되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임직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은 협동조합이 탄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내용이었다.

구매사업, 판매사업, 가공사업 등 각종 경제사업에서 농민들의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경제사업 실행이 곤란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을 신용사업의 고객으로 보게 되는 등 협동조합과 농민조합원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상호불신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면서 농가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수는 증가하여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협동조합'이 되지 못하고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1985년 852만명이었던 농가인구가 1998년에는 447만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7.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농축협)의 임직원은 1985년의 4만7,700명에서 1998년에는 8만8,400명으로 두배에 가까운 185.3%가 증가했다. 특히 축협의 경우, 1985년의 5,176명에서 1998년에는 2만521명으로 네배에 가까운 396.5%가 증가했다(<표 3-1> 참조). 이에 따라 협동조합(농축협) 임직원 1인당 농가인구수는 1985년의 178.6명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50.6명으로 1/3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3-1> 농가인구 및 협동조합(농축협) 임직원수 변동 추이

구 분	1985년(A)	1995년	1998년(B)	증감률(B/A, %)
농가인구(천명)	8,521천명	4,851천명	4,468천명	△ 47.5%
농협축 임직원수(명)	47,751	90,342	88,408	185.1
- 농협 임직원수	42,575	70,400	67,887	159.5
- 축협 임직원수	5,176	19,942	20,521	396.5

이처럼 농축협 임직원수가 많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불만은 여전히 높았다. 기존 협동조합측에서는 임직원수의 증가가 협동조합의 사업량의 증가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해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임직원수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기능중복과 방만한 조직관리에 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었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의 경우, 업적이 월등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상여금 300%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특별상여금도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난 5년간 2,500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데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20여종이나 되는 등 과도한 임금지급으로 농민조합원의 배당금이 축소되고 나아가 조합부실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았다.

그리고 조합에서 구매한 농기자재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조합이 조합수지를 염려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구매사업 시행시 해당 지역 및 관련기업과의 결탁으로 시중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에 계통출하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을 일부 지역의 농협이 중간에서 가로채어 시장출하농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는가 하면, 농축산물 개방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은 뒤로 한 채 협동조합이 아직도 자체의 수지개선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신용사업 위주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여론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중의 하나는 신용사업 위주의 사업방식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1997년도 전체사업량 41조512억원 가운데 신용사업의 사업량이 34조8,442억원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과 비교할 때, 신용사업은 3.65배 증가한 반면 경제사업은 2.19배 증가하는데 그쳐 갈수록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축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경제사업은 1991년도 1조5,081억원에서 1997년도 2조7,288억원으로 1.7배 늘어난 반면, 신용사업은 6,921억원에서 2조3,680억원으로 3.4배나 늘어나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표 3-2> 참조).

<표 3-2> 농축협 사업규모 변동 추이

구 분		1991년(억원)	1993년(억원)	1995년(억원)	1997년(억원)
농협 중앙회	소계(증가율)	123,800(100)	178,851(144)	270,805(219)	410,512(332)
	신용사업(증가율)	95,434(100)	138,243(145)	208,931(219)	348,442(365)
	경제사업(증가율)	27,776(100)	39,783(143)	60,846(219)	60,858(219)
	지도사업(증가율)	590(100)	825(140)	1,028(174)	1,212(205)
축협 중앙회	소계(증가율)	22,119(100)	32,118(145)	42,987(194)	51,181(231)
	신용사업(증가율)	6,921(100)	13,083(189)	18,685(270)	23,680(342)
	경제사업(증가율)	15,081(100)	18,853(119)	24,118(153)	27,288(173)
	지도사업(증가율)	117(100)	182(156)	184(157)	213(182)

또한 금융개방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익감소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온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금융자유화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과 선진적인 운영기법으로 신용사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대마진의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IMF체제에 따른 예대마진의 단기적인 확대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1998년 농협과 축협의 신용사업은 1997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1997년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이 1,220억원이었는데 반해 1998년도에는 절반 이상 하락한 555억원에 머물렀으며, 축협중앙회의 경우 199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억원 적자였지만, 1998년에는 819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농축협 신용사업 수지 변동추이

구 분	1997년	1998년
농협중앙회(억원)	1,200	555
축협중앙회(억원)	△8	△ 819

IMF체제 초기에 나타났던 여수신 금리의 상승은 경제회복과 외자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예대마진은 3%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조건에서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신용사업 중심의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신용사업의 적자가 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대도시에 점포를 과다하게 설치하여 협동조합간 경쟁이 격화되고, 과도한 지급보증과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대규모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중시함으로써 협동조합 본래목적인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 일선 농민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의 하나였다. 반면에 경제사업이나 비신용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적자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다시 경제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농협 경제사업의 경우 계통출하비율이 과수·시설원예는 60%, 채소류는 20%로 계통출하비율이 전체 농산물의 34%를 점하고 있으나, 가격결정 기능과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축협중앙회의 경우 소비지 판매에서 차지하는 국산쇠고기 판매량 비율이 3.9%에 불과하며, 축협계통 도축시설의 점유율도 전체 소도축량의 15.5%에 불과하여 한우의 가격결정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갖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는 협동조합이 농가수취가격 제고라는 본래의 계통출하 기능은 도외시한 채, 물량성장 위주의 경제사업을 수행해 왔던 결과로 풀이 된다. 결국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

한 조합원의 실익향상은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고, 경제사업 적자발생시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국내외 대자본이 각종 유통사업, 생산계열화 사업에 진출하여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서 산지유통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가격조정능력과 출하조절기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물론 농가수취가격 및 소득 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대안과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왔다.

3) 회원조합의 부실경영 심화

협동조합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한 비판여론은 협동조합이 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회원조합의 경영부실이 심각해 졌다는 점이다. 회원조합의 경영부실 문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IMF체제 이후 그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회원조합의 부실문제가 자칫 농민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회원조합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 회원조합의 능력부족과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사업과 운영이 중앙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활성화가 많은 제한을 받게 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부실조합의 개념을 조합사업수행중 사고, 고정투자과다, 경영부실 등으로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잠식하고 있는 조합으로 정의할 경우, 1997년말 기준으로 농축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부실조합의 수는 농협이 25개로 전체 1,332개 조합의 1.8%가 부실조합이며, 축협은 63개로 전체 193개 조합의 32.6%가 부실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축협의 부실조합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업종축협의 경우 전체 47개의 조합 가운데 70.2%인 33개 조합이 부실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4〉 부실조합 현황(1997년말 기준)

구 분	조합수(A)	부실조합수(B)	부실비율(B/A)
회원농협	1,332개	25개	1.8 %
- 지역농협	1,286개	25개	1.9 %
- 전문농협	46개	-	-
회원축협	193개	63개	32.6 %
- 지역축협	146개	30개	20.5 %
- 업종축협	47개	33개	70.2 %

그러나 이 부실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조합 가운데서도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상적으로 계상하게 되면 상당수의 조합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었다. 19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1997년말 기준 자기자본 잠식조합이 축협은 전체 193개 조합중 81.9%인 158개의 조합이 부실조합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농협은 전체의 48.6%인 647개 조합이 부실조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회원조합의 유통경제사업은 신용사업에 비해 비중이 낮고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조합은 조합당 경제사업이 133억원이고 신용사업(예수금)이 394억원으로 3배나 많으며, 축협 조합은 조합당 경제사업이 255억원, 신용사업(예수금)이 548억원 규모(1998년 기준)로 역시 신용사업이 경제사업보다 두배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협동조합들은 그동안 조합운영을 주로 신용사업 이익금에 의존했으나, 금융권 경쟁이 치열해져 신용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호금융 예대마진이 그동안 4~5%P 수준이었으나 1%P만 낮아져도 대부분의 조합이 적자상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축협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전체의 1/3이상 조합이 지속적인 자본잠식으로 파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구나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까지 농촌지역에서 농축협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등장함에 따라 그동안 직간접적

으로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무너져 일선 조합의 신용사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개방과 국내 은행간 경쟁심화 등으로 신용사업의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는 실정에서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조합운영이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일선조합이 활발한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전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 중앙회의 조직과 임직원의 자리 유지를 위해 각 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반대해 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과거에 김치사업 참여 등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사업에 진출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축협중앙회도 회원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돈육가공, 유가공 등)에 뒤늦게 진출하여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등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중앙회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돈육, 계육, 유가공공장(18개소)의 적자가 1995년 28억원에서 1997년에는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경합하는 사업구조의 해소는 물론 조합으로의 사업이관을 통한 일선조합의 육성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3.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협동조합개혁

1) 국민의회의 · 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IMF관리체제하에서 당면한 농정의 대처방안과 21세기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1월 22일 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IMF하에서의 농정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새정치국민회의 농어민특별위원회와 자유민주연합 농어민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장원석(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농정개혁의 방향을 제시

하였는데, 그 가운데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이 내용은 국민의 정부에서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5>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1.22)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1.22)>

<농림수산 협동조합 개혁 원칙>

-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개혁
 - 협동조합의 개혁은 이해관계를 떠난 전면적 개혁
 - 유일한 이해관계는 조합원의 이해
 - 개혁의 화두는 '조합원'이고 민간, 지방, 개방임
 - 획일적 조합형태 탈피, 현실변화에 탄력적인 적용가능한 다양성 확보
- 조합원 중심(농가주체), 지역중심
 - 조합원의 참여와 책임이 가능한 구조, 사업으로 전환
 - 상향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 지역에 뿌리박은 협동조합
- 효율성을 확보하는 경제단체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 사업과 운동의 결합체로서 경영의 효율성 확보가 수반
 - 공무원 신분과 다를 바 없는 직원,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책사업 대행은 자립적 경제단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맞지 않음
 - 신용·경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급
- 협동조합간 경쟁 극복
 - 지역내 중복된 이중조합간 동일사업 경쟁 지양
 -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조합, 특성화된 사업으로 차별화
 -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서의 통폐합 추진

○ 민간, 지방기능과의 조화

- 농정추진체계의 민간화, 지방화에 대응한 조직 및 사업개편
- 지역산업과 경제의 주체로서의 역할

<농림수산 협동조합 개혁 방향>

○ 중앙단위 역할(농림수산협동조합중앙회 / 각종 전국연합회)

- 권역·품목연합회 및 단위조합(지역·전문) 지원
- 전국 단위 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 전국적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 상호금융, 공제, 일반금융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 지방단위 역할(각종 권역별 연합회 / 단위조합)

- 지역 농림어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집행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 투융자사업 수립, 집행
- 상호금융, 공제사업의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 지역 생산물에 대한 공동 시장대응
- 내실있는 지도사업 수행

○ 개편방향

- 농협·수협·축협·임협·인삼협 중앙회의 통합
- 통합시 경영평가에 따른 고용조정
- 지역조합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의한 통합
- 지역조합의 효율적 통폐합 정리, 고용조정 병행
- 중앙회 신용사업의 독립운영체계 강화
- 권역별 연합회 구성(도지역본부, 군지부 폐쇄)

2)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공청회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된 가운데, 당시 농업부문은 IMF체

제하에서 영농자재의 가격폭등과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과거 농정의 실패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농정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의 농민단체와 농업계 각 부분이 참여하여 '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농업개혁위원회는 당시에 분출되고 있던 농정개혁의 요구를 모아서 1998년 2월 13일 한농연회관에서 '21C 농업개혁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곧 출범하게 될 국민의 정부가 시행해야 할 농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준규 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 집행위원은 농정추진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개혁에 관련된 내용은 <표 3-6>과 같다. 여기서 제시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농협민주화운동(1970-80년대)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1994년) 등으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 3-6>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공청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2.13)

<p><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공청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1998.2.13)></p> <p><협동조합에 대한 평가와 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임협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 *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p>○ 하향식 접근의 한계 : 하부로부터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p>

-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 한계
 - 신용사업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 IMF위기로 기반 붕괴 가능성
 - 향후 몇 년이 경제사업 중심의 자생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기회
- 지역의 자립·자율성 증대
 - 지자체에 대응하여 지역단위 역할 증대
 - 지역농업의 재구성과 지역농정 수립·시행 강화
- 조합원 의식의 발전
 - 20년간 농협민주화운동의 결과 조합원이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
 - 참여와 책임의 협동조합운동 정신 확산
- 금융,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지자체 전면 실시 등의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면적 개혁 미비

<협동조합 개혁 원칙>

- 조합원 중심(농가주체), 지역중심
 - 조합원의 참여와 책임이 가능한 구조, 사업으로 전환
 - 상향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 지역에 뿌리박은 협동조합
- 효율성을 확보하는 경제단체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 사업과 운동이 결합체로서 경영의 효율성 확보가 수반
 - 신용·경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급
- 협동조합간 경쟁 극복
 - 지역내 중복된 이중조합간 동일사업 경쟁 지양
 -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조합, 특성화된 사업으로 차별화
 -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서의 통폐합 추진

<협동조합의 역할>

○ 중앙단위 역할 (농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각종 전국연합회)

- 권역·품목연합회 및 단위조합(지역·전문) 지원
- 전국 단위 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 전국적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 상호금융, 공제, 일반금융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 지방단위 역할 (각종 권역별 연합회 / 단위조합)

- 지역 농림어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집행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 투융자사업 수립, 집행
- 상호금융, 공제사업의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 지역 생산물에 대한 공동 시장대응
- 내실있는 지도사업 수행

<협동조합 개편방향>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인삼협 중앙회 통합

- 통합시 경영평가에 따른 고용조정
- 지역조합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의한 통합
- 지역조합의 효율적 통폐합 정리, 고용조정 병행

○ 중앙회 신용사업 독립운영체계 강화

○ 권역별 연합회 구성(도지역본부, 군지부 폐쇄)

3) 100대 국정과제와 협동조합개혁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그 탄생을 알렸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하기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부가 국정 각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98년 2월 12일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내용은 <표 3-7>과 같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협동조합 개혁이 제시된 것은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였다.

<표 3-7>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협동조합 개편방안(1998.2.1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협동조합 개편방안(1998.2.12)>

<협동조합 개편>

-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재편 검토
 - 회원조합은 지역간, 조합간(농축임협), 품목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 지역 및 품목별 연합회 기능 강화
 - 중앙회는 교육, 농정, 감독 등 기능 담당
 - '협동조합개혁단'을 설치하여 1998년 10월까지 협동조합기능 및 조직개편(안) 마련

제2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개혁방안 건의

1.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목적 및 구성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민의 정부가 정식 출범하였고, 김성훈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림부는 농산물유통개혁과 협동조합개혁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농정개혁을 시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농정개혁의 추진방식도 사전에 정부, 농민(단체), 소비자, 학계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토론을 거쳐 개혁과제와 개혁방안을 협의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998년 3월부터 농정개혁위원회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1998년 4월 13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협동조합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협동조합은 물론 농민단체, 소비자, 학계 및 전문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목적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협동조합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동조합 개혁에 관련된 제반 논의사항을 검토하여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설치된 농림부장관의 한시적인 자문기구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농림부, 농민단체, 협동조합, 학계 및 전문가계층 등을 대표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안덕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여 공동위원장을 맡았다(<표 3-8> 참조).

〈표 3-8〉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성명	기간
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안덕수	'98. 4. 13 - 6. 30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박창정	'98. 7.1 - 7. 31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민영	'98. 4. 13 - 7. 31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권광식	"
"	건국대학교	교수	김정주	"
"	상지대학교	초빙교수	서중일	"
"	충남대학교	교수	박진도	"
"	경북대학교	교수	이호철	"
"	농협중앙회	기획상무	백남훈	"
"	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류광상	"
"	임협중앙회	관리상무	최동혁	"
"	삼협중앙회	상무	노종규	'98. 5. 15 - 7. 31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조봉희	'98. 4. 13 - 7. 31
"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위원장	이호원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송자	"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홍동선	"
"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윤승혁	"
"	순천축협	조합장	황금영	"
"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동근	'98. 4. 13 - 6. 30
"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정호	'98. 7.1 - 7. 31
"	농림부	축산정책국장	이관용	'98. 4. 13 - 6. 30
"	농림부	축산정책국장	김옥경	'98. 7.1 - 7. 31
"	산림청	임업정책국장	박정식	'98. 4. 13 - 7. 31

또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산하에 실무작업단을 두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보조 하도록 하였는데, 실무작업단은 농림부, 농민단체, 협동조합,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 되었다(<표 3-9> 참조).

<표 3-9>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실무작업단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성명	기간
단장	농림부	이사관	백현기	'98. 4. 13 - 6. 30
반장	농림부	농업금융과장	허윤진	'98. 4. 13 - 7. 31
"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정재돈	"
반원	농림부	사무관	이명진	"
"	농림부	사무관	김남훈	"
"	산림청	사무관	이명수	"
"	농협중앙회	차장	최홍식	"
"	축협중앙회	차장	오규락	"
"	임협중앙회	차장	전갑진	"
"	삼협중앙회	과장	안병기	'98. 5. 15 - 7. 3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선	'98. 4. 13 - 7. 31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 부장	장경호	"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장종익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실장	김성숙	'98. 5. 15 - 7. 31

이상과 같이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가장 주요한 농정개혁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정부, 농민단체, 협동조합, 학계 및 전문가계층 등 관련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논의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최초의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협동조합 개혁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

었지만,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으며, 1995년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정부와 협동조합만이 참여하는 기구였다. 이에 비해 1998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정부와 협동조합외에 농민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계층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개혁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공식기구였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운영 및 활동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1998년 4월 13일에 구성되어 동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주요 활동경과는 <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10>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주요 활동경과

일 시	장 소	주요 활동 사항
1999. 4. 13	농림부 대회의실	○ 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 협동조합개혁 방향 토의
4. 28	~	○ 제2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과제 보고 및 과제 선정
6. 9	~	○ 제3차 회의 - 협동조합 구조조정방안 논의
6. 16	~	○ 제4차 회의 - 협동조합 경영관리, 지도·감독체제
6. 27	~	○ 제5차 회의 - 개혁방안 전체 과제 논의
7. 2	농업공무원교육원	○ 제6차 회의 - 개혁방안 전체 과제 논의
7. 23	농림부 대회의실	○ 제7차 회의 - 개혁방안 마무리를 위한 전체회의
7. 31	농림부 대회의실	○ 협동조합 개혁방안 건의 - 농정·유통·협동조합개혁위원회 합동회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협동조합의 구조조정방안 △협동조합의 경영관리체제 개선방안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체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98년 7월 31일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현판식 직후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의 개혁방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농업인·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사업운영의 전문화·효율화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기능 재정비 등 세 가지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제2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협동조합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문제 △협동조합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경영관리체제 문제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체제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분야 가운데 협동조합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문제를, 제4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경영관리체제 문제와 지도·감독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를 포함하여 △이사회 기능 활성화, △임원선출방식 개선, △지도·감독체제 개선 등과 같이 의견의 대립이 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차이점만 확인하고 차기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리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회의시간을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 △회원조합의 이사정수 확대문제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 변경절차 완화문제 △중앙회장 출마자격 문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지도·감독체제 개선문제 등에서는 복수의 의견을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협동
건의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 1998년 7월 31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농정개
혁위원회·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등 3개 개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협동조합 개혁방
안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을 끝으로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2.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 및 쟁점사항

1) 논의과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3차 회의부터 진행되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구조조정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으
로는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기
능 강화, 협동조합간 협력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문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서 중앙회의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문제가 핵심사항이었다.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문제는 회원조합의 합병,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 부실조합의 정비,
대도시 조합의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품목별·업종별 전문조
합연합회의 기능 강화 방안과 협동조합간 협력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제3차 회의에서는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
자는 방안(제1안)과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완전 분리하여 협동조합은
행으로 통합하고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며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합 중앙회로 통합하자는 방
안(제2안) 등 회의자료에 제시되었던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그 차이점만 확인하고, 각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에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두 가지 방안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경우에도 차기 회의에서 위 두 가지 방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간 협력체제 강화문제도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회원조합의 합병 추진방식,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 전국단위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여부 등과 같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영관리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방안,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방안, 임원선출제도의 개선방안, 여성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체제 문제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가운데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중앙회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방안, 지도·감독체제의 개선방안 등은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조합의 전문경영인제(상임이사제) 확대방안, 회원조합 임원의 경영책임 강화, 회원조합 이사 정수의 확대,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절차 완화, 중앙회장 출마자격 변경 등과 같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회의에서 논의가 유보되었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거나, 혹은 일부 위원들의 양해를 얻는 방식으로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 가운데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이 이 부분을 논의하는데 할애되었다. 제3차 회의자료에서 제시되었던 두 가지 방안과는 별도로 제5차 회의에서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내부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제3안)이 제시됨에 따라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정립되었다.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각각의 방안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으로써 결국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세 가지 방안 모두를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회 조직체제에 3개 방안을 복수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협동조합간 협

력체제 강화방안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중앙회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방안 △지도·감독체제의 개선방안 등도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에 관한 세 가지 방안에 따라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회원조합 이사 정수의 확대방안,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절차 완화방안, 중앙회장 출마자격 제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복수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 주요 쟁점사항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그 논의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해소된 부분은 단일안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은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표 3-11>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표 3-11>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	
○ 제1안 : 독립사업부제 강화(전문경영인체제) 방안	
- 현행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별도법인체제 및 종합경영체제 유지	
-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독립·전문경영체제, 부회장 권한 강화	
○ 제2안 : 기능별 분리·통합 방안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통합	
- 현행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 지도·농정기능을 담당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 설립	
○ 제3안 : 중앙회 통합·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	
- 현행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1개의 법인체로 통합	
- 신용·경제·지도사업은 독립사업부제 운영, 부회장 권한 강화	

제1안은 농·축·임·삼협 등 주로 협동조합측 대표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안이었으며, 제2안은 학계 대표 가운데 일부가 주장했던 방안이었다. 제3안은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 일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당초 제1안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나중에는 제3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둘째, 협동조합간 협력체계의 문제는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과 연계되었다.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이 세 가지의 복수의견으로 제시됨에 따라 협동조합간 협력체계의 문제도 세 가지의 복수의견이 건의사항에 포함되었다. 위 제1안을 반영할 경우, 농·축·임·삼협간에 회장의외도 부회장·집행간부 등 실무책임자간의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도단위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 제2안을 채택할 경우,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가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이 수반되었으며, 위 제3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 중앙회가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이었다.

셋째,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도 역시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두가지 방안으로 복수의견이 건의사항에 포함되었다. 위 제1안과 제3안을 수용할 경우 전문경영인(부회장)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전문경영인(부회장)에 대한 중간업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며, 위 제2안을 채택할 경우 협동조합은행과 각 경제사업연합회, 농축임삼협중앙회는 각 기관별로 전문경영인(은행장, 부회장, 전무이사)체제를 도입하는 안이었다. 한편, 제1안과 제3안의 경우에도 중앙회장과 경제·신용·지도사업 부회장을 모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 출신 이사장이 관리기능과 대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제2안의 경우에도 각 경제사업연합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하고, 조합원 출신 이사장이 관리기능과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소수의견으로 포함되었다.

넷째, 협동조합 지도감독체제 개선방안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제2안을 수용할 경우 비사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중앙회가 협동조합은행, 각 경제사업연합회,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제1안과 제3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현행 감사기구를 강화하자는 방안과 별도의 감사기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협동조합측 대표들은 현행 감사기

구를 강화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학계 대표 일부는 위 제2안에 따른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 중앙회에 의한 감사기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차선택으로서 별도의 감사기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각각의 입장을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협동조합의 계통조직 체계를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농민단체 대표들과 학계 대표 일부는 중앙회 중심의 하향식 계통조직체계를 조합원과 회원조합 중심의 상향식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단위 지역본부를 도연합회로 전환하고 도연합회장에게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하며, 시군지부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연합회로의 전환이 일시에 어려울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도단위 지역본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하며, 2단계로 연합회로 전환하는 점진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며, 다만 도단위 지역본부장의 선출직 전환 및 중앙회 당연직 이사자격 부여문제는 건의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섯째,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회원농협 합병과 관련하여 조합의 자율판단에 맡겨두자는 의견과 합병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합병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조합 정리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조합의 경영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국단위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일곱째,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은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부의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회

원조합의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강화하며, 경영평가의 의무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단일 안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여덟째, 이상의 쟁점외에도 회원조합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원선출 제도변경에 대해서도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그 가운데 회원조합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수의 상한선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제1안)과 정수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6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제2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복수의견을 건의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의원회에서 2/3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하는 방안(제1안)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방안(제2안)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으로 복수의견을 건의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회장의 출마자격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제1안)과 조합장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제2안)에 대해서도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3.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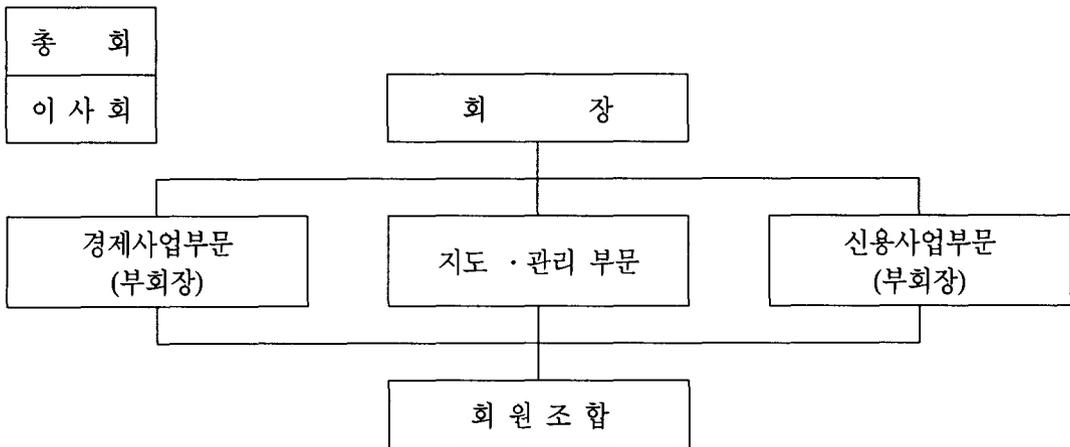
1)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의 세가지 방안

(1) 제1안 : 독립사업부제 강화(전문경영인체제) 방안

제1안에 따른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장은 총괄대표권, 지도·관리부문 업무, 농정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부회장 중심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부회장 2인은 경제·신용사업의 소관업무에 대해 각각 대표권·경영권을 부여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법률행위와 소관사업에 대한 인사

권·예산권을 행사한다.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도 경제·신용 직군별로 시행한다. 셋째, 부회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방법을 변경한다. 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대의원회) 승인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회장 선출은 이사회 선출, 총회(대의원회) 승인으로 선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넷째, 부회장에 대해 임기중 외부기관이 업무평가를 시행한다.

〈표 3-12〉 제1안에 따른 조직체계



제1안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종합경영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지도·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지도·경제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기여로 지자체 등 공공예금 유치에 유리하게 된다. 둘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용이 축소되고 충격과 혼란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사업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넷째, 회장의 단독경영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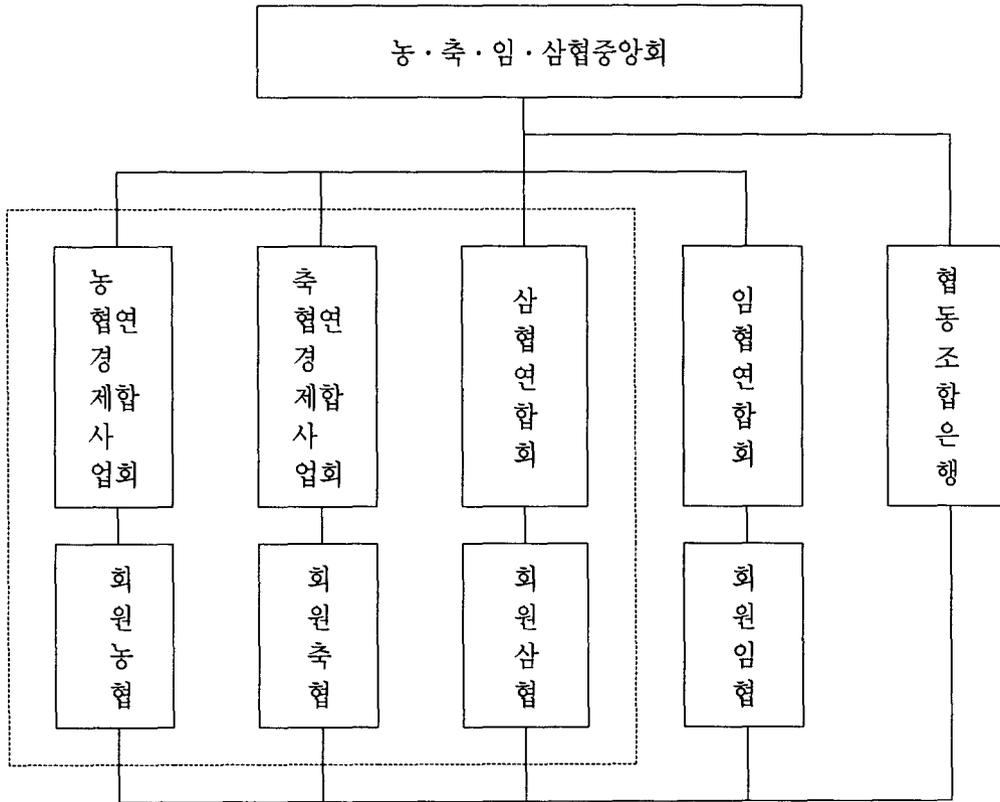
반면에 제1안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종합경영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남게 된다. 조직비대화, 하향적 구조, 경영의 비효율성(전문성 미흡)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남기게 되며, 또한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에 소홀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우려된다. 둘째, 신용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

다. 수익의 재투자가 미흡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지도·경제사업이 신용사업에 의존하는 행태가 지속된다. 이로 인해 경제사업 자립기반을 세우는 것이 지연되고, 회원조합이 계속해서 중앙회에 의존하게 된다. 넷째, 각 독립사업부간의 협조와 조정능력의 저하로 인한 종합경영체제의 사업역량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2) 제2안 : 기능별 분리·통합방안

제2안에 따른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임·삼협중앙회는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출자 특수법인이다. 농정활동, 협동조합간 협동 및 조정, 교육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회원의 대표로 구성, 회장은 소속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한다. 둘째, 각 연합회(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임협연합회, 삼협연합회)는 기존 농·축·임·삼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 농산물유통과 자재공급 등 경제사업을 담당한다. 농·축·삼협의 경제사업연합회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조합장(2/3 이상)과 전문경영인, 외부전문가이사(1/3)로 구성한다. 연합회장은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여 대표권을 보유하고 경영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전문경영인이 책임경영한다. 셋째, 협동조합은행은 회원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이다. 은행(제1금융)업무, 상호금융연합업무, 공제사업연합업무, 정책자금 공급 등 금융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담당한다. 이사회는 조합과 연합회의 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의장은 조합 및 연합회 대표중에서 선임하고, 경영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선임한 은행장이 책임경영을 한다.

〈표 3-13〉 제2안에 따른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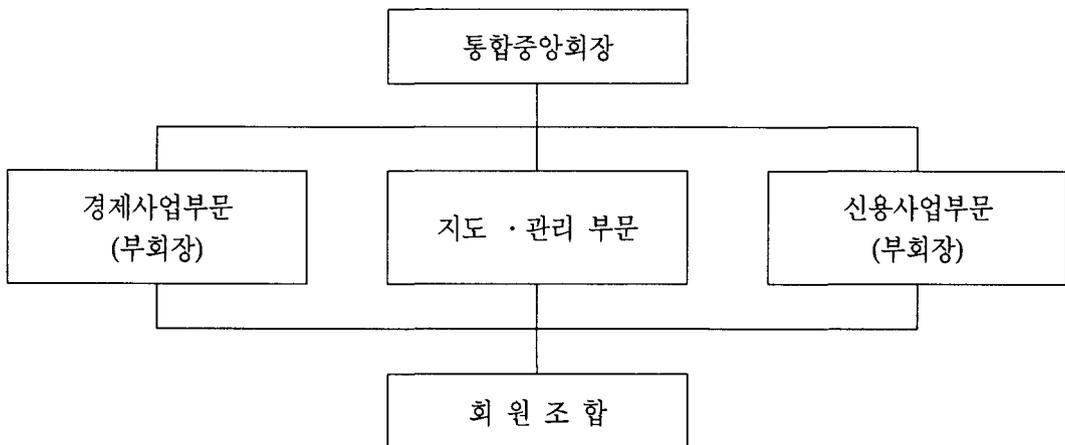
이와 같은 제2안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경제사업 전담조직체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구매·판매·가공사업의 전문화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조합과의 결속력 강화로 주요품목의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둘째, 신용사업의 전문화로 협동조합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지도금융의 조기구축과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선 조합의 신용사업간 경쟁과 중복체제의 정비가 가능하다. 셋째, 단일 중앙회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반영이 용이하며 농업인 권익대변 창구가 일원화된다. 넷째, 중앙회를 통한 지도·감사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사연구·교육훈련기능의 집중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제2안의 단점으로서는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과 협동조합은행으로 통합하는 데에 따른 조직내부의 마찰이 우려되며, 새로운 조직의 신설에 따른 대외부담이

우려된다. 둘째, 종합경영기능 약화에 따른 지도·경제사업 및 농촌부문에 자금의 적기공급 제약이 우려된다. 셋째, 중앙회 및 연합회 운영비 조달을 위한 회원조합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은행이 비협동조합적인 일반은행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농·축·임·삼협중앙회가 ‘옥상옥’이 되면서 오히려 비용 및 인력중복의 위험성이 크다. 여섯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종합경영에서 오는 시너지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

(3) 제3안: 현행 각 중앙회를 1개 법인으로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
 제3안에 따른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임·인삼업으로 구분된 농촌의 각 산업별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을 1개의 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한다. 둘째,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경제·신용사업을 각 사업별로 통합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한다. 셋째,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각 회원인 각각의 지역조합, 전문조합이 통합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넷째, 4개 협동조합의 전문성 및 특성은 통합중앙회의 내부조직에서 그 효율적 방안을 제도화한다. 다섯째, 회장의 권한과 기능, 부회장의 권한과 기능, 부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안의 관련사항을 준용한다.

〈표 3-14〉 제3안에 따른 조직체계



이에 따른 제3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4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여 슬림화하고 기존 중앙회 사업을 일선 조합에 이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최소의 조직 및 인력으로 회원조합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 수 있다. 둘째, 신경분리에 따른 문제점, 즉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축소의 우려와 농촌자금조달기능의 약화, 협동조합은행의 일반은행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통합중앙회장이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조합원 권익보호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농정활동이 용이해 진다. 넷째, 농축임산물의 통합유통을 실현함으로써 소비지에서 농축임산물의 공동판매가 훨씬 용이하게 된다. 다섯째, 종합경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책임경영에 따른 사업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에 제3안의 단점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따라 조직 슬림화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로 비능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둘째, 4개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이질적 구성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내부에 갈등이 우려된다. 셋째, 각 산업별 자금분배의 불합리성이 초래될 경우 특정부분에 자금이 편중지원될 우려가 있다.

2) 협동조합 개혁방안 건의내용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농업인·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사업운영의 전문화, 효율화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 기능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협동조합의 구조조정 △협동조합의 경영관리체제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체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협동조합의 구조조정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앙회 조직체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사업부제 강화(전문경영인체제) 방안 △기능별 분리·통합방안 △현행 중앙회를 1개 법인체로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 등 3개 안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조합의 규모화·광역화 추진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 △조합원 과소조합의 기능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1개 시·군에 1개 조합을 원칙으로 지역농협의 합병을 강력추진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지점화하며, 업종축협의 광역화를 추진하며, 지역임협은 산림여건에 따라 구분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농·축·임협법에 이종조합간 자율합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합병추진을 위한 경영평가제 실시와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복수조합원제 활성화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허용 등을 통해 조합의 경영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조합의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합병권고, 인가취소, 해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했다.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원인의 책임소재 규명, 임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임기중 외부전문가로부터 중간경영평가 실시, 정책사업 및 중앙회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고정투자의 조정 및 심의기능 강화, 농림부에 협동조합 총괄부서 설치 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한편, 대도시조합 등 조합원 과소조합의 기능 재정립을 건의하면서 대도시조합의 권역별 합병추진, 도시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협력방안 강구, 대도시조합의 유통사업 전문화 유도,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정리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신설 전문조합의 자금조달방안 강구(중앙회의 자금지원, 수신업무 허용)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활성화 진전에 따라 전국연합회 설립 허용 등과 같은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기능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협동조합간 협력체제와 관련하여 중앙회 조직체제가 제1안일 경우, 회장의 부회장, 집행간부 등 실무책임자간의 협의회 활성화, 도단위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유통부문의 공동출자 등), 유통자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중앙회 조직체제가 제2안일 경우와 제3안일 경우에는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중앙회가 조정기능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도록 건의

했다.

(2) 협동조합의 경영관리체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경영관리체제 개혁방안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이사회 기능 활성화 △임원선출제도 개선 △여성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우선,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제 실시를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강화하며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영평가가 나쁠 경우 연임 및 중앙회 임원 진출 금지를 검토하도록 했고, 경영책임자(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책임을 징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중앙회 조직체제가 제1안 혹은 제3안일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는데, 부회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독립적인 대표권과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부회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장 추천·이사회 선출·총회(대의원회) 승인 등의 선임방식을 도입하며, 부회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중 외부기관의 중간업무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건의했다. 만약 중앙회 조직체제가 제2안일 경우 각 기관별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는데, 각 경제사업연합회는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제, 협동조합은행은 은행장제도, 농축임삼협중앙회는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원외이사제를 도입하거나 이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사정수의 확대, 품목대표 및 여성에 대한 이사 할당제 등을 통해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이사정수의 상한선을 확대하거나 또는 폐지하도록 건의했다. 중앙회의 이사회 기능 활성화는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하되 관리이사회 및 집행이사회로 이원화하는 방안, 현행 이사회에 집행간부를 포함시키는 방안, 도단위 지역본부장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여 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회원조합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장 선출방식(직선, 간선, 호선)에 대해 조합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조합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고, 조합장의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도입하는 등 조합장 선거운동방법도 개선하도록 건의했다.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방안과 조합장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하지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편,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수조합원제에 의한 여성조합원 가입을 확대하고 가입실적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한 복수조합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여성조합원의 임원 및 대의원 참여 확대 등 조합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건의했다.

(3)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체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지도·감독체제와 관련하여 △현행체제를 유지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2개안을 건의했다.

우선, 현행체제를 유지보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조합의 외부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제 및 감사회(조합원,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며, △2년에 1회 이상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중앙회의 경영평가를 제도화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며, △중앙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1안으로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종전 농·수·축·임·삼협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 각 중앙회의 사업운용(신용사업 제외)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을 부여하고, 종전 중앙회 지도검사인력 및 시설·자산을 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건의하였다. 제2안으로는 농림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이는 일본의 농협중앙회와 같이 각 협동조합의 연합조직을 설치하고, 이 연합조직이 농정협력·영농지도·교육훈련 기능외에 제1안과 같은 지도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중앙회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조합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제 및 감사회 등을 도입하고, 중앙회에 의한 지도감사와 자체감사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제3절.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

1.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1) 목적 및 구성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결국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세 가지 방안을 복수의견으로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협동조합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농·축·임·삼협 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공동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1998년 7월 2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앙회 및 지역조합 조직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중앙회 통합문제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9월말까지 공동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4개 협동조합중앙회에 요청했다. 또한 김성훈 장관은 “만약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전달하였다.

이에 1998년 7월 31일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들의 결정에 따라 동년 8월 5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4개 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각 4명씩 참여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표 3-15> 참조).

<표 3-15> 4개 협동조합중앙회 공동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농 협	부회장 기획상무 관리상무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	이 내 수 백 남 훈 손 은 남 이 봉 주	공동위원장(수석)
축 협	부회장 기획상무 경제상무 부안축협 조합장	이 범 섭 허 삼 응 류 광 상 장 동 일	공동위원장
임 협	부회장 관리상무 지도상무 신안임협 조합장	안 상 국 최 동 혁 정 철 인 조 희 영	
삼 협	부회장 상무 본부장 영동삼협 조합장	송 인 수 노 종 규 이 표 주 육 순 무	

한편,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협동조합개혁기획단'이 농림부 내에 설치되었다. 기획단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 및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이를 위해 기획단은 농림부 5명, 농협 3명, 축협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3-16> 참조).

〈표 3-16〉 농림부 협동조합개혁기획단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단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박 창 정
간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 정 호
총괄반	농림부	농업금융과장	허 윤 진
"	농림부	서 기 관	박 형 규
"	농림부	사 무 관	이 명 진
"	농협중앙회	차 장	최 홍 식
"	축협중앙회	차 장	오 규 락
신용경제반	농협중앙회	과 장	허 형 도
"	축협중앙회	과 장	김 우 상
법제반	농협중앙회	대 리	정 연 진
"	축협중앙회	대 리	곽 홍 규

2) 운영 및 활동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 8월 5일 발족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협의하였고,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로서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개혁방안 검토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주요활동 경과

일 시	장소	주요 활동 사항
1998. 8. 5	농협유통	○제1차 회의 - 위원회 발족, 운영방안 협의·확정
8. 14	농협유통	○제2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8. 25	농협유통	○제3차 회의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협의·확정
9. 3	농협유통	○제4차 회의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협의·확정
9. 10	농협유통	○제5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17	농협유통	○제6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24	농협유통	○제7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28	농협유통	○제8차 회의 - 그동안의 논의 정리 및 중간보고 내용 협의
9. 30	전국은행연합회	○4개 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 회의 - 공동개혁방안 협의결과 중간보고
10. 15	농협유통	○제9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위원회 지속운영 협의
11. 19	농협유통	○제10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12. 17	농협유통	○제11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1999. 2. 23	농협유통	○제12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공동개혁안 마련결렬을 공식 선언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9월말까지 공동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일정이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중앙회의 조직체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중앙회의 조직체제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조직체제 개혁방안에 관한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 차이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중앙회 조직체제 개혁방안(제1안, 제2안, 제3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서로 다른 방안을 선호하거나 혹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1998년 9월 28일의 제8차 회의 때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중앙회 조직체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 논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 기타 부분의 공동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거의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기타 부분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정·보완하여 수용할 것은 수정·보완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9월 28일 제8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타 부분의 공동개혁안에 대한 중간합의가 도출되었다.

1998년 9월 30일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하여 보고한 중간보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기타 부분의 공동개혁안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만 가하고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의 조직체제 공동개혁안에 대해서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각자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시한으로 정했던 9월말까지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결국 공동개혁안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여 그후에도 공동개혁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가장 쟁점이 되었던 중앙회 조직체제에 관한 공동개혁안은 그후에도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기존의 각자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 제12차 회의까지 약 5개월간 중앙회의 조직체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중앙회 조직체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1999년 2월 23일 공동개혁안의 마련이 결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이르렀다.

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개혁안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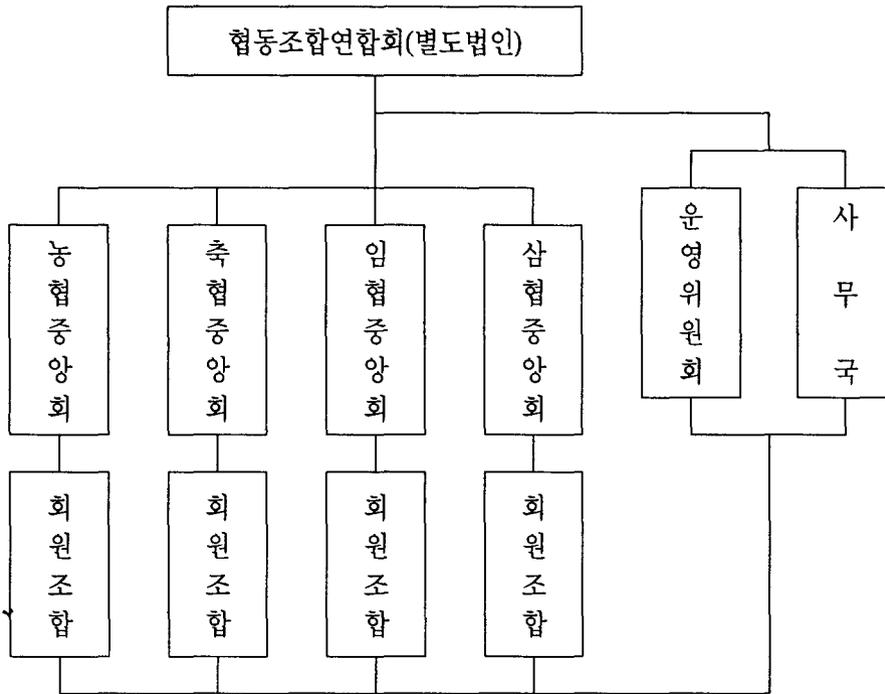
1)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1998년 8월 5일부터 공동개혁안 마련의 결렬을 공식 선언하였던 1999년 2월 2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중앙회 조직체제에 관한 부분이었으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적인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당시 농협은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중앙회 조직체제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던 세 가지의 복수의견 가운데 제3안을 자신의 입장으로 주장하였다(<표 3-14> 참조). 축협은 제1안을 자신의 입장으로 주장하였다(<표 3-12> 참조).

한편, 임협과 삼협은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복수의견과 다른 수정안을 자신의 입장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현행 농·축·임·삼협중앙회 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법인으로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3-18> 참조). 임협과 삼협의 수정안은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제2안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각 중앙회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별도법인으로 협동조합연합회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전혀 달랐다.

〈표 3-18〉 임협·삼협의 수정안에 따른 중앙회 조직체계



2) 기타 공동개혁안 협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중앙회 조직체제 이외에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비록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최종적으로 공동개혁안 마련에 실패하였지만, 1998년 9월 30일 4개 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 회의에 중간보고된 내용을 보면 중앙회 조직체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 사항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9월 30일 4개 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 회의결과 중간합의된 것에 의하면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방안의 65개 개혁과제 가운데 64.6%인 42개 과제는 원안대로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13개 과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8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중앙회 조직체제 개혁방안과

이종조합간 합병근거 마련 등의 2개 과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표 3-19> 참조).

<표 3-19>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1998.9.30)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과제 (1998.7.31)	과제수	개혁과제 수용여부 현황			
		원안 수용	수정 수용	수용 안함	미합의 또는 논의 제외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구조조정	33	23	4	4	2
- 중앙회 조직체제	1				1
- 회원조합 구조조정	27	20	4	2	1
- 품목별 전문조합연합회 기능강화	2			2	
- 협동조합간 협력체제(제1안 전제)	3	3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23	14	6	3	
- 책임경영체제 확립	9	6	2	1	
- 이사회 기능 활성화	5	1	2	2	
- 임원선출제도 개선	5	4	1		
- 여성조합원 참여 확대	4	3	1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지도감독체제	9	5	3	1	
- 현행체제 유지보완	9	5	3	1	
계	65	42	13	8	2

3.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

당초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 8월 5일에 구성되어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동년 7월 31일 건의했던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대의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해 농협의 입장(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제3안(<표 3-14> 참조))과 축협의 입장(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제1안(<표 3-12> 참조)) 그리고 임협·삼협의 입장 수정안(<표 3-18> 참조)이 대립하면서 9월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1999년 2월 23일 제1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약 7개월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도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1999년 2월 23일 공동개혁안의 마련이 결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1998년 7월 31일 건의했던 65개의 개혁과제 가운데 최대의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 조직체제 1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모든 공동개혁안의 마련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은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농업계 전체가 요구하는 주요 농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농업계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했던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한 상태였다. 더욱이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협동조합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여 1998년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만약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 마련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여 백

제 4 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입법 확정과정

- 제1절.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 제2절.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 제3절.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확정 및 국회제출
- 제4절.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과 각계의 입장 및 활동

여 백

제4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입법 확정과정

제1절.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1.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1) 개혁방안 발표의 배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개혁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정개혁 과제의 하나였다. 때문에 정부는 1998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회 조직체제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협동조합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과제를 토대로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여 1998년 9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당시 정부는 만약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그러나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당초의 시한인 9월말까지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말까지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초에 '올해는 협동조합개혁의 해'라고 선포하면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더욱이 농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계층, 언론 등에서는 이미 1998년 7월 31일에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개혁방안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도 제기하였다. 한편에서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다른 한편의 농업계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은 이제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농업계 안팎의 지속적인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한 기존의 의견대립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1999년 2월 23일 공동개혁안 마련이 결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협동조합개혁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게다가 1999년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농협과 축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농민단체와 농민조합원 그리고 농업계 안팎에서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 보다는 조합과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조합 보다는 중앙회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영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경영부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당시 원철회 농협중앙회장이 사퇴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 실패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는 농업계 안팎의 주장이 급격히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협동조합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와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농림부 내부의 협동조합개혁기획단 등이 건의하고 검토했던 내용을 토대로 1999년 3월 8일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2) 개혁방안의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크게 △회원조합(일선조합) 개혁방안과 △중앙회 개혁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조합(일선조합) 개혁방안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생산자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일선조합 중심의 육성정책을 대폭 보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것을 회원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농산물유통 등 경제사업을 대폭 확대·보강하고, 신용사업은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유통개혁 관련예산을 농·축협이 일선조합에 집중 지원하여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개혁 관련예산(5,477억원)과 농안기금(7,922억원), 축발기금(1,309억원)의 유통자금을 일선조합에 집중 지원하고, 회원조합이 하고 있는 기존의 상호금융과 지도·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협동조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조합장선거제도를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농협법 제45조, 축협법 제41조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각 조합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6~14명)에서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인사 2~3명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장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조합장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장이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그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 제도를 병행하되,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일선조합에 대한 중앙회와 농림부의 지도·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한 자체 감사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의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2년에 1회 이상)하고, 농림부도 일선조합에 대한 표본감사를 정례화하도록 했다. 만약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통폐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경제사업 실적이 계속 부진한 일선조합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무를 중지시키거나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임감

사만 두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즉,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예 : 예수금 1,000억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 규모 200억원)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다섯째,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수당중심의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유급휴가, 지도수당, 복리후생비등 20여종의 수당을 정비하여 급여체계를 단순화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적정 경제사업 단위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읍면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 1,203개소를 1군 1조합의 원칙에 따라 300개소 이내로 통합하되 최단기내에 완료하기로 했으며, 도·농 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 조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일선조합을 시·군단위로 통합하는 경우 기존의 중앙회 시·군지부를 지점화하고 금융사업 이외의 기능은 통합조합에 이양하도록 했다. 그리고 축협의 일선조합은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상황에 따라 광역화하여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현재 202개소에서 100개소 이내로 통합하되 최단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임협 일선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와 공동실사를 거쳐 부실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 또는 농협에 흡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계속 존치·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일선조합의 통합촉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 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고, 통합조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합병촉진 근거 신설, 농협은 원칙적으로 1군 1조합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정, 경영부실 조합 및 조합원 과소조합 등에 대한 합병권고 불이행시 합병명령제 도입, 합병촉진을 위해 부실채권상각·시설재배치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조합당 5억원)은 중앙회의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자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시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 중앙회 개혁방안

정부는 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협동조합경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개편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를 유통·지도사업 중심으로 육성보강해 나가고, 신용사업은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효율화·전문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축협·임협·인삼협등 4개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4개 협동조합중앙회 가운데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에 통폐합하도록 하며,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은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하여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시킨 후 2001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임협은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으로 재편하며, 일선 인삼협은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인삼협의 역사성·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통합중앙회에 인삼협 조합원의 대표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슬림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공동출자·공동경영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공동출자회사의 경영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중앙회는 공동사업체의 경영지도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셋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만 갖고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업무를 담당하며,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여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Outsourcing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각 사업별 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 및 신용사업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업무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하는 등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행간부 및 일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계약제·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지도사업 등 비신용사업부문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용사업의 경우 농·축협이 특수성이 반영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제정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넷째,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여 선출하는 현행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중에서 투표 2~3일전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과 적자점포 등의 정리에 따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서울·대전·대구·광주등 지역본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와 기능이 중복되는 신용사업본부 4개소(105명)를 연내에 폐쇄토록 하며, 농협중앙회 직영의 가공제품 서울물류센터와 농특산가공품 전시판매장은 (주)농협유통에 통합하기로 하고,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일선 회원조합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원조합수가 적어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149명)는 연내에 폐쇄하여 건물 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 신규점포 설치를 억제하고 적자 부실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이와 아울러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선 회원조합의 점포도 연내에 정리하기로 했다.

여섯째,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하고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업무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업무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농림부는 포괄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기로 했고,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1)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 농민단체, 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학계 및 전문가계층 등 농업계 각 부문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정부대표 6명, 협동조합중앙회 대표 6명, 회원조합장 대표 6명, 농민단체 대표 4명, 학계 및 전문가 대표 6명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동태 농림부차관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및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김웅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간사를 맡았다 (<표 4-1> 참조).

이미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1998~1999)를 통해 협동조합측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던 것이다.

〈표 4-1〉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공동위원장	농림부	차관	김 동 태	*농협대표는 이내 수 회장대행에서 정대근 회장으로 교체
"	농협중앙회	회장(대행)	이 내 수	
"	농협중앙회	회장	정 대 근	
"	축협중앙회	회장	박 순 용	
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안 종 운	
위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유 지 창	
"	농림부	축산국장	소 만 호	
"	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	남 상 덕	
"	농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손 은 남	
"	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허 삼 응	
"	임협중앙회	관리상무	최 동 혁	
"	인삼협중앙회	상무	노 종 규	
"	방송통신대학	교수	권 광 식	
"	경북대학교	교수	김 상 기	
"	건국대학교	교수	김 영 철	
"	서울대학교	농생대학장	김 호 탁	
"	순천향대학교	교수	서 기 원	
"	단국대학교	교수	장 원 석	
"	창녕임협	조합장	박 삼 희	*선상규 조합장이 조용래 조합장으로 교체
"	보성농협	조합장	선 상 규	
"	남면농협	조합장	조 응 래	
"	예산능금농협	조합장	윤 익 로	
"	상주축협	조합장	이 정 백	
"	전북인삼협	조합장	이 종 근	
"	경북중앙낙협	조합장	이 종 준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 춘 성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 광 훈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황 창 주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 민 영	* 중도사퇴
간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 응 채	
	계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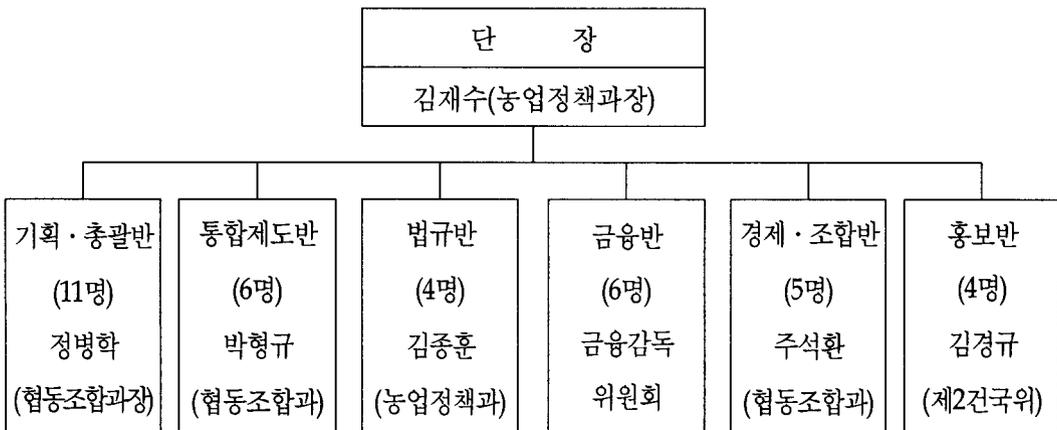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논의할 방안이 협의되었다.<표 4-2> 참조)

<표 4-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운영경과

일 시	장 소	주요 협의 내용
1999.3. 18	농림부 회의실	○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
3. 26	농림부 회의실	○ 협동조합 개혁방안 검토 및 협의
4. 1	농림부 회의실	○ 협동조합 개혁방안 검토 및 협의
4. 10	농림부 회의실	○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안) 검토 및 의견수렴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에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을 설치하였다. 작업단은 김재수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6개 반(기획·총괄반, 통합제도반, 법규반, 금융반, 경제·조합반, 홍보반)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정부와 협동조합측 실무자로 구성되었다(<표 4-3> 참조).

<표 4-3>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구성



2)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검토·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회의(1999.3.18)

□ 중앙회 통합 문제

대다수의 위원들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기본원칙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일부의 위원들이 중앙회 통합은 조직의 융화문제, 생산성 저하문제, 사업이관에 따른 회원조합의 신뢰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중앙회 통합보다는 중앙회의 권한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중앙회의 자체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회 통합시 인삼협동조합의 대표성 확보와 직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

대다수의 위원들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일부 소수의 위원들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일부 위원은 우선 독립사업부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경제·지도사업의 여건이 성숙된 후에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단계적 분리 입장을 주장했다.

□ 회원조합의 합병 문제

회원조합의 합병은 정부가 먼저 합병해야 할 조합의 수를 제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회원조합의 합병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의 위원이 개진하였다. 지

역농협의 경우 1시군 1조합의 원칙을 강요하기 보다는 생활권·경제권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육성방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부실조합의 합병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였다.

□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문제

정부가 제시한 중앙회장의 간선제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현행의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조합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직선제의 역사적 의의와 조합장의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광역조합의 경우 직선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조합장의 경영책임 문제

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조합경영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은 위법·부당한 행위로 경영을 잘못했을 때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기타 논의사항

우선, 회원조합이 합병을 통해 광역화될 경우 상임감사제도 보다는 중앙회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정당당

하게 반론을 제시하는 홍보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 제2차 회의(1999.3.26)

□ 중앙회 통합 문제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통합중앙회장 산하에 지도사업, 유통경제, 신용사업의 3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제1안)과 지도사업, 농업·유통, 축산사업, 신용사업의 4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제2안)을 논의한 결과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2안으로 모아졌다. 다만 지도사업은 통합중앙회장 직속으로 하여 농정·지도·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경종·축산부문의 균형된 자금배분과 독립적 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금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금융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농업금융위원회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일부 위원은 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이 급격한 통합보다는 2001년까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인삼협도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통합중앙회에 부회장급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회원조합의 합병 문제

제1차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이 정부방안에 이견을 제시하였던 부분인데, 제2차 회의에서는 회원조합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1시군 1조합으로 추진하되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문제

제1차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이 정부방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였던 부분인데, 제2차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즉, 조합장 선거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중앙회장 선거방식도 조합장 직선제로 하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투표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 기타 논의사항

지역축협은 당분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문축협으로 나아가야 하며, 농업소득의 30-40%를 차지하는 시설원예 및 과채류 등 특수작목의 육성을 위해 전문조합의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협동조합개혁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위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심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기로 하고, 회의 수당 전액을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3) 제3차 회의(1999.4.1)

□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기능 문제

제2차 회의에서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에 대하여 농협, 축협, 인삼협이 제3차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협은 제2차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합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인삼협은 제2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인삼사업본부를 독립사업부로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축협은 1999년 3월 26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통합반대를 결의하고, 3월 31일 농축협중앙회,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농축협은행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3차 회의에서는 농협이 제시한 방안과 축협이 제시한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축협측의 주장은 신용사업을 별도법인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비사업적 기능을 하는 농축협중앙회를 별도법인으로 두며,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와 같은 별도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의 주장은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그 내부에 경제·신용·지도의 독립사업부를 두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 대립은 98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건의했던 3가지 복수의견 가운데 각각 제2안(기능별 분리·통합, 농·축·임·인삼협중앙회, 각 경제사업연합회, 협동조합 은행의 별도법인 분리방안)과 제3안(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1개 법인으로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의 대립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축협은 그동안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1안(현행 각 중앙회체제 유지,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을 주장하였으며,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논의과정에서도 제1안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이후에 제2안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3안을 주장하였으나, 1999년 2월 집행부 교체 이후에 제2안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 통합중앙회의 운영

제2차 회의에서 농업금융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농업금융위원회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제3차 회의에서는 농업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2/3를 조합장이 차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업종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중앙회장의 자격은 조합원에서 조합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4) 제4차 회의(1999.4.10)

□ 중앙회 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

제3차 회의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부분이며, 제4차 회의에서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축협측과 일부 위원들은 별도법인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농협측과 기타 위원들은 통합중앙회 1개 법인체제와 독립사업부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현실적 여건과 이상적 방향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개의 통합중앙회와 독립사업부제가 가장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일부 위원은 신경분리 주장에 대해 신용부분의 대표이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도로 중앙회 통합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통합중앙회의 명칭 문제

농협측은 새명칭 사용에 따른 비용문제와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축협측은 농축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삼협은 통합중앙회 명칭에 축산부분이 들어간다면 인삼도 포함시켜 농축인삼협중앙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농·축협이 상호합의해서 정하되, 차선책으로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여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고로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농업인협동조합으로 잠정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기능문제

중앙회 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과 별도로, 다수의 위원들이 중앙회를 1개로 통합하고 경제·신용사업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자는 정부의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중앙회의 농업유통기구를 농업담당 혹은 경제사업 대표이사로 개정하고 △전문조합 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상호금융금리 인하부분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며 △인삼분야 본부장의 역할을 명시하고 △중앙회 대의원회에 업종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분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타 논의사항

공청회에 제시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이 공청회(안)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안)으로 하고,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청회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3. 협동조합개혁 관련 공청회·간담회 등 의견수렴과정

1) 공청회 개최

정부가 1999년 3월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치는 한편, 일선 농민조합원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4월 15일과 16일에 3회에 걸쳐 농민조합원, 농민단체 대표, 조합장 및 조합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창원, 수원에서 각각 개최되었다.(<표 4-4> 참조)

<표 4-4>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전북	1999. 4. 15 14:00-17:30	전주(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	약 400여명
경남	1999. 4. 15 14:00-17:00	창원(경남도청 회의실)	약 450여명
중앙	1999. 4. 16 14:20-17:30	수원(농업인회관)	약 500여명
합 계			약 1,350여명

<표 4-5>에 나타난 각 공청회의 사회, 주제발표, 토론자, 청중토론 참여자 등의 명단

에서 알 수 있듯이 3회의 공청회에서 21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청중토론에 27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표 4-5〉 공청회 의견발표자 명단

〈전북지역 공청회(1999.4.15.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사 회 자 : 박정근(전북대 교수)
주제발표 : 김응채(농림부 농업정책국장)
토 론 자 : 강대선(전북 북전주농협 조합장)
김병무(순천대 교수)
양영수(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
유서옥(전북 완주군 농업인)
이기동(전북양계조합 조합장)
황만길(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실장)
청중토론 : 정원환(전북 고창군 무장면 경인리 대산양돈단지 대표)
장두섭(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
정석원(전북 동진강낙농조합 조합장)
나명원(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 정읍시 축산농가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 전무
이경해(전라북도의회 의원)
신건중(농협중앙회)

<경남지역 공청회(1999.4.15. 경남도청 회의실)>

사 회 자 : 설인준(경상대 교수)

주제발표 : 김재수(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토 론 자 : 김무광(경남 산청농협 조합장)

김병택(경상대 교수)

박민웅(전농 경남도연맹 사무처장)

박홍수(한농연 경남도연합회장)

이규석(경남 의령군 농업인)

임정근(경남 하동축협 조합장)

청중토론 : 허기중(경남낙농축협 조합장)

허창권(경남 밀양시)

부산 대정농협 조합장

정일오(경남 함안군 축산농가)

김영길(경남 거창군 신원조합 조합장)

김성원(경남 사천시)

이종구(경남 양산축협 이사)

경남 진주시 서부농협 조합장

이판권(경남 합천군 농업인)

최득규(경남 합천군 가야농협 조합장)

정안식(경남 거창군 농업인)

박길수(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중앙 공청회(1999.4.16. 수원 농업인회관)>

사 회 자 : 성진근(충북대 교수)

주제발표 : 김용채(농림부 농업정책국장)

토 론 자 : 강기갑(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강춘성(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용택(농협중앙회 종합조정실장)

김재욱(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류광열(경기 파주시 농업인)

안장현(경기 여주군 농업인)

장원석(단국대 교수)

황엽(축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

황창주(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청중토론 : 유인명(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회장)

주재양(전남 영광군 농업인)

최준구(서울·경기양계조합 조합장)

김기선(용인시 구성농협 조합장)

정종화(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부회장)

양명권(인삼농가)

신건중(농협중앙회)

2) 공청회의 주요의견

이상과 같은 3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을 각 분야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기능 문제

신용사업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협동조합중앙회는 연합회체제로 전환하며 지도·교육·농정활동을 전담하는 별도법인 형태의 중앙회(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연합회 체제와 관련하여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를 각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품목별·업종별 연합회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완전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통합중앙회가 신용·경제·지도사업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일부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조직체계를 상향식 연합회 체제(중앙회-도연합회-시군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통합중앙회내에 별도의 인삼사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별도의 인삼사업본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도·농정분야는 중앙회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독립사업부제하에서 경영권을 가지는 부회장의 수를 3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통합중앙회의 명칭 문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와 축산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포괄적 의미의 농업이라는 산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과 명칭변경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정부안(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농협안(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협안(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이 중요하며 명칭은 소모적 논쟁을 벌일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결과에 따

라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결정하지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3) 중앙회장 선출 및 대표이사 임면 문제

중앙회장의 선출은 현행대로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신용사업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할 경우 비적격자 선출의 우려가 있고 타사업부문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업경제 부회장과 축산경제 부회장을 해당 조합별 협의회에서 추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4) 회원조합 합병 문제

회원조합의 합병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의견은 경제권·생활권·작목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합병추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지역정서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추진방식 보다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1시·군 1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권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며, 합병 보다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5) 조합장의 선출방식 및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 문제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현행과 같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만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조합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조합장직을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직선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해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6)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문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 대해 상임감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나 중앙회 감사, 외부회계감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상임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평가단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제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평가제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사외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7) 기타 의견

조합의 급여체계에 있어서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합의 운영비가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고 임직원의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이사에 품목별·직능별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 중앙회 통합에 따른 정부재정 지원 여부를 묻는 의견, 중앙회 통합에 따른 충격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3) 기타 간담회 및 의견수렴

정부는 1999년 3월 8일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와 중앙·전북·경남 공청회를 통해 일선의 농민조합원과 농민단체 그리고 협동조합 임직원 등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개혁법안의 입법예고 이전에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1999.3.8)하고 입법예고(1999.4.19)하기까지 76회의 간담회와 14회의 설명회 등 총 90회에 걸쳐 각계각층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 축협·축산단체·축산농가 등과 관련된 간

담회·설명회를 총 71회에 걸쳐 개최하여 축산분야 종사자의 의견수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표 4-6>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3.8)에서 입법예고(4.19)까지 간담회 개최 현황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3. 12	○농·소·정 원로회의 개최 및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장관)
3. 13	○21세기 농정자문위원회 개최 및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장관) ○일선 농·축협 조합장과 간담회(차관)
3. 15	○농업·농촌재도약 추진협의회 개최 및 개혁방안 설명(장관)
3. 16	○축산업발전대책위원회 개최 및 개혁방안 설명(차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간담회(차관)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동조합개혁 코너 신설
3. 17	○농림부 4개 개혁위원회 초청간담회(장관)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차관보)
3. 18	○낙농진흥회 임원과 간담회(장관) ○전직 명예장관 초청 간담회(장관)
3. 19	○협동조합개혁 신문고 개설
3. 20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임원 설명회(장관)
3. 23	○농·축·임·인삼협중앙회장과 간담회(장관) ○협동조합 개혁방안 지방설명회(경북-500명, 경남-420명)
3. 25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장관) ○경북지역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차관)
3. 29	○축산신문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 워크숍 참석(농업정책국장)
3. 31	○축협 통합저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간담회(차관) ○농수축산신문 주최 공청회 참석(기획관리실장)

일 시	주 요 내 용
1999. 3. 31	○경남지역 축산인 설명회(차관보)
4. 1	○한농연 충청남도연합회 주최 토론회 참석(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4. 8	○축협중앙회장과의 조찬간담회(차관보)
4. 9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차관보)
	○TBC(대구방송) 주최 토론회 참석(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전농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향 토론회 참석(농업정책국장)
4. 10	○축산관련단체장(24명)과의 간담회(장관)
	○전남지역 축산인과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양계농가와의 간담회(축산국장)
	○농축협중앙회장 간담회(차관)
4. 12	○축협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간담회(차관)
	○지역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4. 12	○협동조합개혁 관련 농업인 설명회·간담회
- 17	- 9개도 54개 시군지역, 지역농민대표 등 2,517명 참석
4. 13	○농협중앙회 임원과의 간담회(차관)
	○협동조합 대의원 초청 토론회(농업정책국장)
4. 17	○축산관련 교수와의 오찬 간담회(차관)
	○농정평가 자문위원 간담회(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합계 : 간담회 76회, 설명회 14회

4.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1999년 3월 8일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반영하듯 각계의 입장이 봇물처럼 표출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한다”는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일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혁방안과 의견을 같이하지만 중앙회 통합 및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을 달리하면서 정부의 개혁방안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소수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기서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1999.3.8)되고 입법예고(1999.4.19)가 이루어지기까지 각계의 입장을 농민단체(혹은 농업관련단체),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농민단체의 입장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998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용·경제·지도사업은 독립사업부제 운영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주장해 왔다. 또한 한농연은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1999년 3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 △통합중앙회의 신용·경제·지도사업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 △중앙회의 계통조직을 상향식 민주적 조직체계(중앙회-도연합회-시군연합회)로 전환 등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한농연은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1999년 3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개혁방안이 한농연의 개혁방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몇가지 세부사항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중앙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유지 △조합장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 △지역현실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합병추진 △중앙회 계통조직을 상향식 조직체계로 전환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추진기구에 농민의 참여 보장 등이었다.

한편, 한농연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개혁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래로부터

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998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한농연과 공동으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용·경제·지도사업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9년 2월 집행부의 교체와 더불어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농은 1999년 3월 11일 “농민 외면한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철회하고 김성훈장관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동조합개혁을 농민이 주체가 되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농은 1999년 3월 18일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협동조합 개악안을 저지하기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때까지 전농이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농은 1999년 3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존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통합하여 농정활동과 지도·조정과 대외적 교섭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중앙회로 개편 △기존 각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독립된 전국연합회체제로 전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는 3월 13일 농림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가운데 수정·보완할 사항을 제시했다. 그 주요내용은 △통합으로 인해 중앙회의 비대화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중앙회 부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 △조합장 선거제도는 직선제·간선제중에서 조합이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할 것 △조합간 협동체제가 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리고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는 1999년 3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으로 중앙회의 비대화 우려 △상향식 연합회 체제 구축 미흡 △신용사업 중심의 지속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감시기능 취약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합의 자율합병 보장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은 조합장으로 제한 △조합장 직간선제는 현행 유지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는 1999년 3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통합중앙회 명칭은 농축협중앙회로 할 것 △축산의 위상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 △업종조합 활성화 △조합장은 조합원중에 직간선제로 할 것

△개혁은 반드시 추진하되 축산인의 의사를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6개의 축산관련단체가 1999년 4월 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다시한번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한국유기농업협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정농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회중앙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30여개 농민단체·농업관련단체가 농·축협중앙회의 통합과 독립사업부제의 실시를 포함한 협동조합개혁에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한농연과 농단협은 1999년 3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농민조합원이 아닌 협동조합 임직원 등 특정이해집단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협동조합개혁의 방향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의 원칙마저 거부하고 집단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유기농업협회도 1999년 3월 24일 “협동조합 통합 반대세력의 반국가적 준동을 크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분출되는 가운데,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한다”는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일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던 한농연·농단협 등 대다수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999년 4월 13일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를 결성하고 협동조합 개혁과정에 농민·농업세력이 단결된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개혁입법 과정에 농민조합원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일부 소수의 농민단체·농업관련단체들은 1999년 4월 24일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후에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한 입법예고 및 국회입법 과정에서 협개연과 국민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협동조합측의 입장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등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부내에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1999.3.8.4.10)에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개혁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명서, 건의문, 호소문, 결의문 등의 형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각 협동조합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1999년 3월 25일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통해 “농협이 농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농민과 국민에게 부응하는 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999년 3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한 선통합선언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협에 돌린데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99년 3월 31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부의 개혁안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토대로 더욱 좋은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축협측은 정부의 개혁방안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자마자 1999년 3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축산농민을 죽이는 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추진 음모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위배하여 관치적 통합을 주도하는 관계자는 퇴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는 1999년 3월 19일 성명을 통해 “농·축·임·인삼협의 일방적인 통합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했다. 그리고 1999년 3월 26일 축협중앙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합결정에 반대하며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

시한 반개혁적인 통합을 주도한 장관은 사퇴할 것 △축산발전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 위원회를 해체하고 '협동조합통합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총력 투쟁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는 1999년 4월 15일 "4월 13일 급조되어 결성한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는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의 음모를 의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다음날인 4월 16일 즉각 "농민의 협동조합개혁 열망을 무시하는 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협개연은 이 성명에서 "축협 임직원의 반개혁적 행태는 농민조합원의 분명한 의사에 놀란 나머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나, 축협 노조가 통합과정에서 고용안정 등을 요구한다면 농민조합원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협개연은 신경분리 주장으로 중앙회 통합을 막기 위한 축협측의 의도를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농연과 한국낙농육우협회 그리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도 각각 4월 17일 반박성명을 발표하여 협개연과 참여 농민단체에 대한 축협중앙회 노조의 중상모략과 매도행위를 규탄하면서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각 "축협 직원들이 37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아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문광고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축산농가는 분노한다"면서 "축협은 축산업의 전문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동안 한우전문조합의 결성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축협중앙회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의 병폐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시대적 과제인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협은 1999년 3월 12일 임협중앙회 및 전국임협 임직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였으며, 아울러 "산림사업 실행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임산물직거래 사업을 통한 유통개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협의 상호금융을 지역토착형 소매금융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삼협은 1999년 3월 18일 인삼협중앙회 및 전국인삼협 임직원 일동 명의로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개혁과정에서 △인삼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이사제 실현 △통합시 신분상 불이익을 없어야 함 △인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통합될 협동조합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함 △인삼협회의 상호금융은 발전시켜 조합원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함 △고려인삼의 대표성이 지속되도록 정부가 특단대책을 마련할 것 등과 같은 인삼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3) 기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입장을 밝혔다. 축협중앙회 노조가 당초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3월 9일 특별결의문을 통해 △반농민적인 농·축협 비리 임직원을 즉각 처벌할 것 △노사합의없는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구조조정 반대 △정부는 인원감축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 △정부, 농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9년 3월 18일 성명을 통해 △농·축협중앙회는 통합하고 경제·지도사업중심기구로 개편할 것 △회원조합은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고 지역공동화를 방지할 것 △신경분리문제는 농업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립과 지원기능이 상호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외부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것 △조합 경영진에게는 경영책임을 조합원에게는 경영위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홍사단 농업개혁위원회는 1999년 4월 1일 성명을 통해 △농·축협중앙회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슬림화하여 통합하고, 회원조합과 조합원 지원체제로 전환할 것 △농·축협의 회원조합 통폐합은 자율적인 의사수렴과정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완료할 것 △협동조합은행을 만들어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농축산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조합장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것은 잘못임 △조합원의 경영참여와 외부전문가의 영입 등을 활성화하여 조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999년 4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축임삼협은 통합하되,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농정활동 등 비사업적인 기능만 수행할 것 △일선조합의 통폐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맡기고, 전문 조합·업종조합을 육성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여 독립법인체로 하되, 통합중앙회의 지도감독하에 자금공급할 것 △외부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것 △조합 경영진에게 경영책임을 묻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이 선택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4) 각계의 입장발표 현황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1999.3.8)되고 입법예고(1999.4.19)가 이루어지기까지 각 계에서 발표한 성명서·결의문 등의 현황은 <표 4-7>와 같다.

<표 4-7>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3.8)에서 입법예고(4.19)까지 각계 입장 발표 현황

일 자	단 체	내 용
1999. 3. 8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	○ 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추진음모 철회
3. 9	민주노총 특별결의문	○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3. 11	전농 성명	○ 농림부 개혁안 철회, 김성훈 장관 사과
3. 12	임협중앙회 및 전국임협 임직원 결의문	○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
3. 13	한농연 성명	○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3. 13	농단협 건의문	○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입장
3. 16	한농연·농단협의 공동 성명	○ 협동조합개혁은 농민조합원 주도로 이루어져야
3. 18	한농연·농단협의 공동 성명	○ 농민 의견수렴하여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해야

일 자	단 체	내 용
3. 18	삼협중앙회 및 전국 삼협 임직원 결의문	○협동조합개혁에 동참, 인삼대표이사제 보장
3. 18	경실련 성명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 요구
3. 18	전농 특별결의문	○정부의 일방적 개악안 저지 투쟁
3. 19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	○농축임인삼협의 일방적 통합 재고되어야
3. 19	가농 성명	○농협개혁과 전농사태에 대한 가농의 입장
3. 24	유기농업협회 성명	○통합반대세력의 반국가적 준동을 우려
3. 24	낙농육우·양돈·양계 협회 공동성명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3. 25	전국농협조합장 탄원서	○그동안의 잘못 반성, 새롭게 태어날 것
3. 26	전국축협조합장 결의문	○일방적인 통합결정에 반대, 농림부장관 사퇴
1999. 3. 26	화훼협회·화훼종자협회 공동성명	○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3. 27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 책위 성명	○졸속통합선언 중단, 농정실패 책임을 농협에 돌린데 대해 정부가 사과
3. 29	과수협회·과수묘목협회 공동성명	○농축협중앙회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혁동참
3. 29	종자협회 성명	○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3. 29	온실협회 성명	○조직이기주의나 이해관계는 배제되어야
3. 30	전농 성명	○신경분리, 경제사업연합회, 비사업기능 중앙회
3. 30	생약협회 성명	○농축협중앙회는 진정한 생산자단체로 거듭나야
3. 31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	○농림부 개혁안 겹쳐히 수용, 더 좋은 개혁방안 도출되도록 진지하고 책임있는 노력
3. 31	정농회 성명	○일부 협동조합 임직원의 반개혁행태 즉각 중단
4. 1	낙농진흥회·대한수의사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 련 26개 단체의 공동성명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 자	단 체	내 용
4. 1	농촌지도자연합회 · 생활 개선회 공동성명 경북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4. 1	최고경영자과 정 학생 일동 성명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라
4.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연합회 성명	○집단이기주의와 조직적 방해에 개탄
4. 1	홍사단 농업개혁위원 회 성명	○중앙회 통합, 신경분리 반대, 조합장 직선제 등
4. 1	참여연대 · 녹색연합 · 전 국귀농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신용사업은 독립 법인체로 완전 분리
4. 2	농산물냉장협회 성명	○농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4. 2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성명	○정부의 개혁방안은 적절시점에 나온 점에서 환 영, 집단적 이해를 앞세운 의사표명에 우려
4. 3	자연농업협회 성명	○농축협은 개혁에 동참하라
4. 3	농단협 성명	○김대중대통령의 협동조합 개혁의지 환영
4. 6	쌀가공식품협회 성명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4. 6	순천대 최고경영자과 정 학생 일동 성명	○농축협의 조속한 통합, 조합장 직선제
4. 6	곡물협회 성명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4. 6	농기계협동조합 성명	○비대한 중앙회 조직을 통폐합
4. 8	협동조합을 걱정하는 경 북농민 일동 성명	○농민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
4. 14	전농 성명	○협개연은 즉각 해체해야
4. 14	협개연 기자회견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 경제사업의 일선조 합 이관, 품목별 · 업종별 전문화 육성, 무자격 조합원 퇴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일 자	단 체	내 용
4. 15	축협중앙회 노조 비 상투쟁위원회 성명	○ 급조된 협개연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 장관 및 기획관리실장 퇴진
4. 15	협개연 성명	○ 억지주장, 안하무인 전농의 반성과 사과 요구
4. 16	협개연 성명	○ 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 규탄 및 사과요구
4. 16	전국 농과계대학 최 고경영자과정협의회 학 생회 성명	○ 정부의 개혁실천에 끝까지 최선 다해야
4. 17	농업기술자협회 성명	○ 축협노조의 모략행위 중단 및 사과 요구
4. 17	낙농육우협회 성명	○ 축협노조의 명예훼손 표현에 대해 사과 요구
4. 17	한농연 성명	○ 축협노조의 반개혁적 행위 규탄 및 사과 요구
4. 19	협개연	○ 축협노조의 총파업 협박 규탄, 축산조합원을 볼모로 한 반개혁행위 중단 요구

5)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1999년 4월 19일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갤럽이 주관하여 전국 9개도에서 만20세 이상의 농업인 1,602명을 추출하여 4월 10일 전화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이다. 이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농협, 축협, 인삼협의 3개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절대다수의 농업인이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농업인(1,602명)의 78.7%가 3개 중앙회를 통합하고 중앙회 사업을 대폭 일선조합에 이관하는데 찬성하였으며, 이중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원도 각각 67%와 69.6%가 찬성하였다. 한편, 통합중앙회장은 지도·교육·농정활동과 대표권만을 행사하고 사업은 전문 대표이사가 전담토록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73.3%의 농업인들이 찬성하였다.

둘째,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를 현재와 같이 독립된 법인체로 그대로 두고, 그 위

에 통합중앙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찬성한다는 응답(38.2%)보다 많았다. 특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30대이하 67.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이상 65.5%)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선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일선조합을 지역권, 생활권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보다 전문화하자는 개혁내용에 대해 절대다수인 86.8%의 농업인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축협조합장들의 경영부실 등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대해서도 88.3%의 농업인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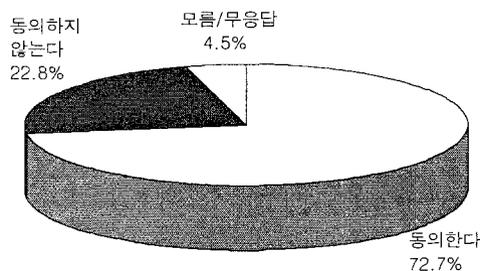
넷째, 협동조합의 역할과 관련, 그동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업인보다는 조합임직원들의 이익에 치중해 왔다는데 대해 72.7%의 농업인들이 '동의한다'고 답해 협동조합이 농업인들과 상당히 괴리되었음이 밝혀졌다. 농·축협도 사회 전분야의 구조조정 과정과 개혁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78.7%의 농업인들이 '동의한다'라고 응답해 농·축협 개혁을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를 각 분야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역할 및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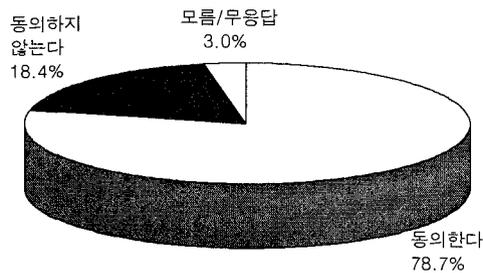
농협·축협 등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업인보다는 조합 임직원들의 이익에 치중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72.7%)의 농업인들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의식



또한 그동안 기능중복과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어온 농협·축협도 사회전분야의 구조조정 과정과 개혁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대부분(78.7%)의 농업인들이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4%로 나타났다. (<표 4-9> 참조)

<표 4-9> 협동조합 개혁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



(2)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여론

동일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품목별로 나누어져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 중앙회와 축협중앙회, 그리고 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중앙회의 중요사업을 일선조합에 대폭 넘겨 조합원 농민의 이익을 살리자는 개혁내용에 대해 대부분(78.7%)의 농업인들이 '찬성'한다고 했으며, '반대'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찬성'응답이 높지만,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원의 경우 '찬성'응답이 각각 67.0%와 69.6%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었다.(<표 4-1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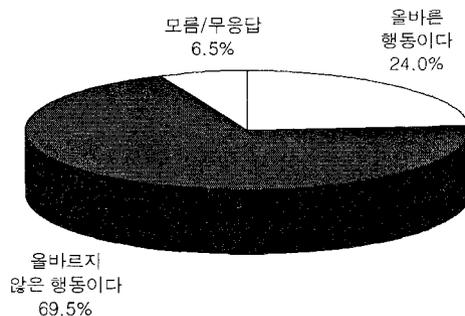
〈표 4-10〉 전반적인 개혁내용에 대한 찬반

(%)

특 성 \ 응 답	사례수	찬 성	반 대	모름/무응답	계
전체	1602	78.7	19.9	1.4	100.0
업종별					
경공업	1420	79.4	19.2	1.4	100.0
축 산 업	91	67.0 ↓	31.9 ↑	1.1	100.0
과 수 / 화훼업	91	79.1	18.9	2.2	100.0
조 합 원 여 부					
농 협 조 합 원	1077	79.9	18.9	1.2	100.0
축 협 조 합 원	23	69.6 ↓	30.4 ↑	-	100.0
농+축협조합원	341	74.5	23.8	1.8	100.0
비조합원	161	80.7	16.8	2.5	100.0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통합과 관련하여 축협임직원들과 일부 축협조합장들이 대규모집회의 광고게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69.5%)'고 했으며, '올바른 행동이다'는 4명중 1명꼴(24.0%)이었다.(〈표 4-11〉 참조)

〈표 4-11〉 통합관련 축협의 행동에 대한 견해



축협대표들은 농협과 축협 중앙회를 통합하여 중복기능을 줄이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했다는 개혁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여 현재와 같이 농협과 축협 중앙회는 독립된 법

인체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위에 통합 중앙회를 새로 별도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찬성'한다는 응답(38.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수/화훼업 농가,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특히 더 높았다.<표 4-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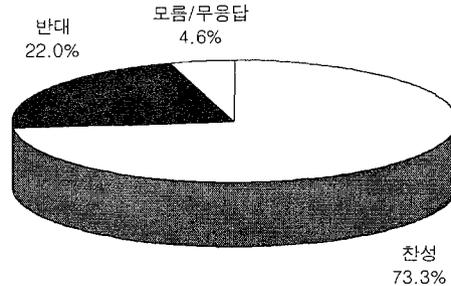
그리고 새로 탄생될 통합 중앙회 회장은 지도·교육·농정활동 등 대표권만을 행사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전문가 대표 이사에게 전담하여 독립운영케 해야 한다는 개혁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민들이 '찬성(73.3%)'한다고 밝혔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2> 축협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

특 성 \ 응 답	사 례 수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계
전체	1602	38.2	57.7	4.1	100.0
연령별					
30대이하	314	30.3	67.2	2.5	100.0
40대	382	35.9	59.4	4.7	100.0
50대	392	41.6	54.6	3.8	100.0
60세이상	514	42.2	52.9	4.9	100.0
교육수준별					
초 등 졸 이 하	674	43.9	49.6	6.5	100.0
중졸	348	38.2	60.3	1.4	100.0
고졸이상	580	31.6	65.5	2.9	100.0
업종별					
경종업	1420	38.6	57.3	4.1	100.0
축산업	91	37.4	57.1	5.5	100.0
과 수 / 화훼업	91	33.0	63.7 ↑	3.3	100.0
경지면적별					
3 ha 이 상	170	33.5	63.5	2.9	100.0
1~3 ha미 만	532	35.7	60.7	3.6	100.0
1 ha 미 만	900	40.6	54.8	4.7	100.0
조합원여부					
농 협 조 합 원	1077	37.7	58.7	3.6	100.0
축 협 조 합 원	23	34.8	65.2 ↑	-	100.0
농 + 축협조합원	341	42.8 ↑	51.0	6.2	100.0
비조합원	161	32.3	64.0 ↑	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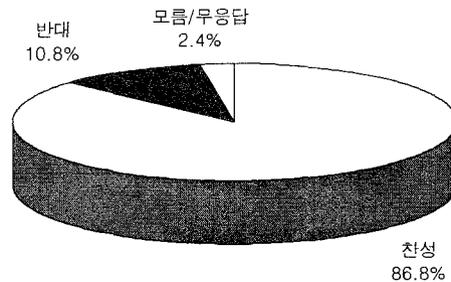
〈표 4-13〉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대한 찬반



(3) 일선조합 육성에 대한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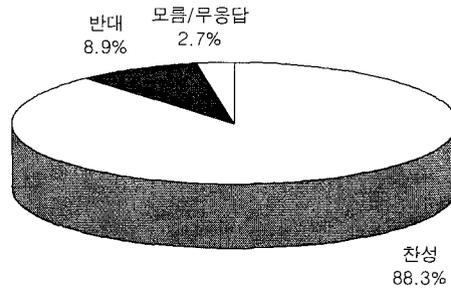
현재의 소규모 일선농협과 축협으로는 유통사업 등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권·생활권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통합·광역화하고 농민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하는 개혁내용에 대해 절대다수(86.8%)의 농업인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의견은 10.8%에 불과했다.(〈표 4-14〉 참조)

〈표 4-14〉 일선 조합 광역화에 대한 찬반



또한, 그동안 명예직이면서도 대표권 외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농협·축협 조합장들에 대해 경영부실 등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혁내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8.3%)의 농업인들이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표 4-15〉 참조)

〈표 4-15〉 조합장 경영책임 강화에 대한 찬반



제2절.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계 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앙·전북·경남지역 등 3회의 공청회를 통해 일선 현장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농협과 축협 등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농업계 각계각층과 총 90회에 달하는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는 당초 1999년 3월 8일 발표했던 협동조합 개혁방안 가운데 각계 대표와 대다수의 농민단체·농민조합원 등으로부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받은 점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99년 4월 19일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1999.4.19~5.8)하였다.

1)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4차례에 걸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 3차례에 걸친 공청회, 각계각층

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가 4월 19일 입법예고한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안해설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안 제정이유

농업관련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축·인삼협중앙회를 1개로 통합하여 새로운 중앙회를 설립하고, 현재 중복되어 있는 중앙회 기능을 대폭 일선 회원조합에 이관, 경량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기존 일선조합은 규모화·전문화하고 일선조합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조합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2) 법안 주요골자

첫째,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과 인삼협동조합법을 각각 폐지하고 농업·축산업 및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를 해산하여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한다(안 부칙 제2조).

둘째,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중앙회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원조합과 공동출자, 공동운영하도록 하여 중앙회 기능의 슬림화를 도모한다(안 제6조 및 제17조).

셋째,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신용업무의 건전화·효율화를 도모한다(안 제11조).

넷째,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또는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조합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6조 제3항).

다섯째, 조합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에 따른 과실 책임까지 지도록 한다(안 제54조 제2항).

여섯째, 조합장이 비상임 명예직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한다(안 제47조 제1항).

일곱째,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이 생산·출하조절기금을 조성·운영하고,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1조 및 제62조).

여덟째, 중앙회의 자기자본확충을 통한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다(안 제125조).

아홉째, 중앙회에 업종별 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업종별조합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134조).

열번째,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지도·교육·농정활동에 전념토록 한다(안 제136조).

열한번째, 중앙회의 농업·축산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담당 부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경영목표 설정, 중장기 사업 및 자금계획수립 등 각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한다(안 제137조).

열두번째, 회원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여 조합원 및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1조).

열세번째, 농림부장관은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결과, 자본을 잠식한 조합이 중앙회장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경영지도,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합병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7조 및 제16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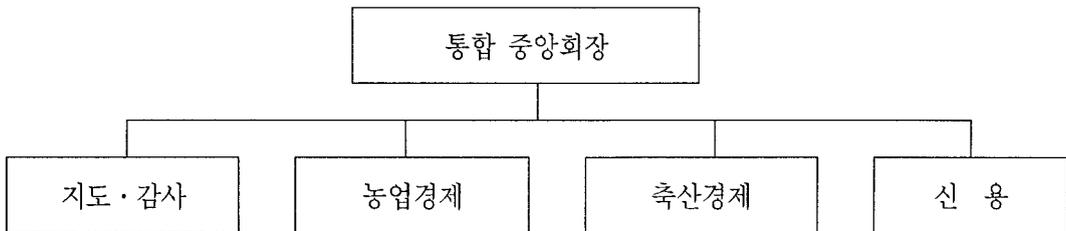
(3) 법안 주요내용 해설

중앙회 통합 및 사업별 독립성 보장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통합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을 갖고 운동체적 성

격의 지도·교육·정보화와 농정활동을 전담한다. 한편, 중앙회를 통합할 경우 축산부문의 전문성이 없어져 축산발전이 저해되고 축산농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통합중앙회 내에 경제관련사업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로 나누고 각 사업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회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축산과 인삼부문은 지금보다 더욱 건실한 통합중앙회로부터 자금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표 4-16〉 통합중앙회 조직체계



□ 신용사업·경제사업 경영

농협과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합쳐서 별도은행으로 설립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농업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즉, 별도은행 설립시 은행자체의 판단기준이 앞서 수익성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농업부문에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되므로 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사업 이익금은 일단 법인세를 납부한 후 잔여이익을 가지고 지도사업에 배당하기 때문에 지원가능액이 크게 줄 수 밖에 없다. 물론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별도 은행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장의 현안과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용사업을 부회장에 의한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특수성이 반영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건전성 확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만

약 별도은행으로 독립할 때에는 시중은행 수준의 BIS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1조원 정도의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은행설립에 따른 특별부가세·취득세 등 설립비용만도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품목별·업종별 연합회 설립 기반 조성

업종별 연합회 체제를 전제로 한 전국협동조합중앙회 체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체제이나, 업종별 조합이 많지 않은 우리의 현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회원을 위해 진정으로 서비스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의 회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조합의 능력상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아직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합회는 같은 품목, 같은 업종의 조합끼리 모여서 만들어야 그 효과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품목별 또는 업종별 특성이 없는 지역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합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업종별 연합회와 전국 중앙회를 만든다면, 현행 농·축협중앙회를 명칭만 연합회로 바꾸고, 여기에 통합중앙회를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지금보다 상부조직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정부안의 경우 기초실, 총무부, 회원지원부, 조사부, 홍보부, 감사실과 상호금융, 공제관련부서 등은 통폐합이 가능하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조직슬림화의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품목별·업종별조합협의회를 구성해서 조합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선조합 전문화를 기초로 장차 연합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중앙회사업 이양 및 일선조합 육성

중앙회가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수익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주식회사인지 협동조합인지, 중앙회직원을 위한 조직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중앙회의 사업을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하거나 공동출자·공동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현행 출자금 1~2억원과 예수금 500억원 내외의 소규모 일선조합으로는 빠른 금융

개방과 심화되는 유통경쟁 속에서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선농협과 일선축협을 경제권·생활권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신축적으로 통합하여 광역화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하지만 경영부실조합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합병할 경우에 우량조합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합병기준과 이행수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앙회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부실조합 우선으로 합병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선조합이 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지포장센터운영 등 수지맞는 경제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선조합을 지역농협·지역축협·업종별 농협과 업종별 축협으로 구분하여 경제사업의 핵심체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특성화대학과 연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작황·유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역농업정보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조합장 책임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조합장이 업무집행·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책임을 지는 장치가 미흡하여 부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합장 선출방식은 현행 직·간선제 외에 '이사회 호선제'를 포함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조합장이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경과실(업무소홀)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조합장에 대해 대의원회가 해임건의시 조합원투표로 해임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내부견제를 강화하며, 이사정수의 1/3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가 형식화되어 있는 등 경영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계감사를 확대하며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일선조합에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일선조합의 감사는 필요시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2년에 1회로 정례화하였다. 그리고 예금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예금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개혁방안(1999.3.8)과 입법예고(안)의 비교

정부가 1999년 4월 19일 입법예고한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은 당초에 발표했던 협동조합 개혁방안(1999.3.8)에 비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지역순회 공청회, 각종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복되어 제기되었던 사항들 가운데 일부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의 개혁방안에는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의 적정 경제사업 단위로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한 '농협은 1,203개에서 300개로, 축협은 202개에서 100개로 합병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급격한 합병에 따른 우량조합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일선조합 합병은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또한 당초에 제시되었던 농협·축협의 합병해야 할 목표치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둘째,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개혁방안에는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조합장 출마자격은 조합원 이외에 외부에도 개방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합장 선출방식은 일선조합의 자율선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의 출마자격은 현행과 같이 조합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현재의 직·간선제와 이사회 호선제 가운데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조합장 출마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셋째, 조합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방안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합장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합의 실태에 따라 조합장의 경영권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한계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에

고(안)에는 '조합장은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중과실 책임만 묻도록 하되, 상임 조합장은 경과실 책임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넷째, 일선조합의 취약한 자체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혁방안에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임감사제도는 운영부담이 과중하므로 조합자율에 맡겨야 하며 그 대신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객관적인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상임감사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상임감사 도입의 근거만 마련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의 감사가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에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다섯째, 독립사업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개혁방안에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농가가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다수의 농민조합원과 농민단체가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경제사업 부문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로 구분하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은 각각 사업별 부회장 책임경영체로 운영하여 사업부문별 대표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여섯째, 개혁방안에는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회원조합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조합장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일곱째, 개혁방안에는 '인삼협중앙회는 1999년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와 통합하고 축협중앙회는 2001년까지 통합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시기를 일원화하여 통합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에 따른 실무작업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협중앙

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의 통합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농·축·인삼협중앙회를 모두 2000년 7월 1일에 통합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당초에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수정되었다.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 4-17>이다. <표 4-17>은 협동조합 개혁방안(1999.3.8)과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안)의 내용 가운데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만을 비교하여 열거한 것이다.

<표 4-17> 개혁방안(1999.3.8)과 입법예고(안)의 차이점 비교표

개혁방안(1999.3.8)	입법예고(안)(1999.4.19)
<input type="checkbox"/>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의 적정 경제사업단위로 통폐합 - 농협조합 1,203개소를 1군 1조합원칙으로 300개소 내외로 합병, 축협조합은 202개에서 100개소 내외로 합병	<input type="checkbox"/> 일선조합을 지역농협·축협, 업종조합으로 구분 육성하되 - 일선조합 합병은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추진
<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선거제도를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회 선출 간선제로 개편 - 조합장의 자격은 조합원 이외 외부인에게도 개방	<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선출방식을 현재의 직·간선제이외에 이사회 호선제를 포함시켜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조합장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합장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	<input type="checkbox"/> 조합장은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중과실 책임만 부담하고, 상임 조합장은 중과실·경과실 책임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혁방안(1999.3.8)	입법예고(안)(1999.4.19)
<input type="checkbox"/>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상임감사제를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의 감사가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input type="checkbox"/>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전문책임경영체제 확립	<input type="checkbox"/> 경제사업부문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로 구분하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은 각각 사업별 부회장 책임경영체로 운영하여 사업부문별 대표성과 독립성을 보장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으로 개편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
<input type="checkbox"/> 인삼협중앙회는 1999년 상반기까지 통합하고 축협중앙회는 2001년까지 통합	<input type="checkbox"/> 농·축·인삼협중앙회를 모두 2000년 7월 1일에 통합

2.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정부는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을 1999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부기관, 협동조합, 농민단체, 개인 등이 총 1,555건의 의견을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축협중앙회가 제시한 의견은 축협중앙회 개혁 11101-205(1999.4.17)의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인 1999년 5월 20일 기존의 입장이었던 '별도법인 연합회 체제와 농축산은행 분리설립' 주장을 철회하고 조건부 중앙회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문서로 농림부에 통보하였으며, 축협중앙회는 이때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13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발표(1999.4.19)에서부터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1999.6.14)까지 주요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 축협중앙회의 경우 당초에 제시한 의견(1999.4.17)과 수정제시의견(1999.5.20)을 각각 구분하였다.

1) 농협중앙회의 의견제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법·통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제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신용사업 부회장도 다른 부회장과 동일하게 대의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인삼분야 집행간부에 소관업무 대표권을 삭제한다.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규정, 사업부문별 경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한다. △중앙회장의 종합조정권을 유지해야 하며, 회원조합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출마자격 가운데 조합원 신분 5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총회선출을 명문화한다.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회원조합과 공동출자·공동운영으로 의무화하지 말고 임의사항으로 변경한다. △중앙회의 신용사업 명칭을 금융사업으로 변경한다. △중앙회의 사업중 주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인가사항으로 변경한다. △중앙회의 연차보고서 제출조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부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합병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무화한다. △품목별·업종별 전문

조합의 전국단위 '연합회'를 '협의회'로 변경한다.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변경을 대의원회 특별결의(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2/3이상 찬성)로 가능하도록 한다. △직선조합장의 해임은 조합원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의 특별결의로 해임이 가능한 조항은 삭제한다.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삭제한다. △조합장 출마자격 가운데 조합원 신분을 5년 이상 보유한 자로 강화한다. △회원조합에 '상임감사제' 도입을 삭제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단 조항을 삭제한다.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자 선임을 방지한다. △조합감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장의 검사권을 유지한다. △2개 이상의 조합가입 금지를 2개 이상의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 조합가입 금지로 변경하여 농협조합원과 축협조합원의 이중조합원 현실을 반영한다. △이사회의 조합원자격 심사의무를 완화하여 조합자율로 실시하도록 한다.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변경한다. △농림부장관의 조합경영지도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회의 지도로 대체한다.

2) 축협중앙회의 의견제시(축협중앙회 개혁 11101-205(1999.4.17) 근거)

축협중앙회가 제시한 4월 17일 의견 가운데 중앙회부문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통합중앙회의 조직과 명칭은 각각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축산업·인삼업의 각 경제사업연합회, 농축산은행 등으로 하고 각각의 조직을 별도법인화 한다.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의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조합장 대의원회'를 신설하고, 각 연합회장의 선출, 정관제정·개폐, 사업계획·수지예산 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통합중앙회 이사회는 각 경제사업연합회간의 이해조정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중앙회장 산하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각 경제사업연합회, 농축산은행에 집행기능 이사회 성격의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통합중앙회 설립준비과정에서 농·축협 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 △종사직원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회원조합의 명칭은 현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종조합간 합병근거를 삭제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단 운영을 삭제하고 중앙회 경영평가로 대체하도록 한다. △회원조합에 상임감사제도 도입 규정을 삭제한다. △회원조합에 외부이사제도 도입 규정을 삭제한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위원 참여 규정을 삭제한다. △축협·농협에 이종조합원 가입을 금지하고, 농협 가입규정에 축산농가를 삭제한다. △이사회의 조합원자격심사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지도로 유도하도록 한다. △조합에 전문지도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권 및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을 삭제한다.

3) 축협중앙회의 수정의견제시(축협중앙회 기초(종기) 11101-266(1999.5.20) 근거)

축협중앙회는 5월 20일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중앙회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정관변경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부문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사업부문별 전문성·독립성을 위해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대표이사 추천, 사업계획·수지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한다. △회장의 직무중 대표이사간 업무조정권을 이사회로 이관한다. △이사회와 별도로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는 관리기능 이사회로 하고, 경영위원회는 집행기능 이사회로 하도록 한다.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대표이사를 추천하되, 단수로 추천한다. △다른 법률(은행법 등)의 적용시한을 공포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연기한다.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원한다.

그리고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운영평가 자문회의'를 삭제하고 중앙회의 경영평가로 대체한다. △외부이사를 배제하여 조합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외부선거관리위원을 배제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상임감사제'를 삭제한다. △이종조합간 합병을 배제하고 합병은 동종조합으로 유도한다.

4) 삼협중앙회의 의견제시

삼협중앙회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합원의 자격중 동일가구 2인 조합원 가입과 조합원은 2이상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인삼조합은 예외규정을 인정한다. △통합중앙회의 인삼사업본부장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통합중앙회의 인삼사업본부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하도록 한다. △통합중앙회의 인삼사업 전담 집행간부는 인삼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인삼사업분야 종사직원은 인삼사업본부장이 임면권을 가지도록 한다. △인삼사업의 종류 및 세부사항을 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현행 인삼조합의 관할구역을 법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한다.

5)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의 의견제시

협개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축·삼협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되, 사전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앙회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한다.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중앙회 집행간부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중앙회의 농업·축산·신용사업을 완전히 전문화하여 재정·회계·인사·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대표와 품목별·업종별연합회 대표를 이사로 참여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품목별·업종별 전국연합회(비출자법인으로 비사업적 기능 수행) 설립을 허용한다. △도단위 지역본부체제를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1단계로 도단위 조합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이 선출직 지역본부장으로서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하며, 2단계로 지역본부를 도연합회로 개편하고 선출직 도연합회장이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한다. △중앙회의 우선

출자제도는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한다. △조합장 임기중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1인을 감사로 채용하도록 한다. △광역합병조합의 이사회구성에 품목대표성을 위해 직능이사제도를 도입한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장 선출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조합이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며,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에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도입하고, 조합장 출마자격을 조합원 보유기간 5년이상으로 강화한다. △회원조합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회장 직속의 감사기구를 구성한다. △조합합병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에 필요한 직접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합병추진시 경영평가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기타 주요 개혁조치 사항으로서, 중앙회 구조조정 성과의 조합원에 직접환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자산재평가를 통한 조합원 출자금 현실화, 조합운영 공개 의무화, 조합원 교육 및 지도사업 강화, 영농계획에 의한 상호 금융대출 원칙 확립, 중앙회의 품목별 사업체계를 확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6)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국민연대)의 의견제시

국민연대가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국농협중앙회는 연합회와 조합, 은행의 지도대표조직으로서 비사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출자특수법인 형태로 구성한다. △연합회는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삼협연합회, 품목별연합회, 축종별연합회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경제사업연합회로서 독립법인 형태로 구성한다.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조합과 연합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법인 형태로 구성한다. △현행 각 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중앙회·연합회·은행의 설립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의 정치관여금지조항을 폐지한다. △중앙회장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감독업무의 일부를 중앙회에 위임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 경제사업기능을 수행하는 출자법인으로서 경제사업연

합회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연합회장의 출마자격은 조합장으로 제한하고, 대표권만 부여하며, 연합회의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가 수행한다. △은행의 이사장 출마자격은 조합장 및 연합회장으로 제한하고 대표권만 부여하며, 은행의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은행장이 수행한다. △복수조합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조합의 경영책임자, 조합장 선거방식은 조합자율로 선택한다.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에 공개토론회를 신설한다. △조합에 외부전문가 이사를 도입하고 품목별·축종별 대표를 이사에 포함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로 이관한다. △회원조합의 설립 인가권을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로 이관한다.

7) 입법예고(1999.4.19)에서 국회제출(1999.6.14)까지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

정부는 1999년 4월 19일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99년 6월 14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표 4-18>에 따르면, 정부는 각계에서 주최한 26회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9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를 가장 강하게 부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하였던 축협·국민연대 당사자들과 11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18> 입법예고(1999.4.19)에서 국회제출(1999.6.14)까지의 토론회·간담회 현황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4. 19	○이길재의원 주제 협동조합개혁 관계자 간담회(차관)
4. 21	○축협노조와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4. 22	○농협노조와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4. 23	○축협노조와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YMCA주최 협동조합개혁토론회 참석(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 농·축·인삼협중앙회장과의 간담회(차관)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과의 간담회(자문관) ○ 부산지역 기독교실업인과의 간담회(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장) ○ 축협노조와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통합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차관)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대 주최 협동조합개혁방안 토론회 참석(농업정책국장)
5. 4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지역 농업인과의 토론회 참석 - 18개 시군 개최, 농업인, 농축협조합장 등 600명 참석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학회 주최 토론회 참석(농업정책국장)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인삼협 임원 간담회 개최(농업정책국장) ○ 농협 통합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차관)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협동조합과장)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대와의 간담회(장관)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법안 협의 및 농축협부회장 간담회(차관)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노조와의 간담회(차관)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노조와의 간담회(장관)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여당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농업정책국장)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과의 간담회(협동조합과장)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당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협동조합과장)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협 부회장 및 기초실장과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노조와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농업정책국장, 축산정책국장)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 조합원대표자협의회와의 간담회(차관보)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대표단과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국무총리)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연구소 포럼 참석(협동조합과장)

3. 입법예고(안)과 주요 단체의 입장 비교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삼협중앙회, 협개연, 국민연대 등이 제시한 의견의 주요내용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안)과 주요단체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표4-19>과 같다.

<표 4-19> 입법예고(안)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통합법 :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법 ○ 국민연대 :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통합중앙회 :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협개연 : 신중히 결정 ○ 국민연대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input type="checkbox"/> 경제사업 : 농업경제(독립사업부) 축산경제(독립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축협(5.20)·협개연 : 좌동 ○ 축협(4.17)·국민연대 - 농협연합회(법인), 축협연합회(법인)
<input type="checkbox"/> 신용사업 : 신용사업(독립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축협(5.20)·협개연 : 좌동 ○ 축협(4.17)·국민연대 : 별도은행(법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농축협중앙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손실보전 자금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협개연 : 통합제비용을 국고지원 ○ 축협·국민연대 - 통합시 부실채권 등 손실보전 지원
<input type="checkbox"/> 도단위 지역본부의 개편 :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 1단계 -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2단계 - 도연합회(대표선출)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조합장대표자회의 : 규정없음 <input type="checkbox"/> 경영위원회 : 규정없음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조정권 행사 대표이사 부회장은 독립적 경영권 행사 <input type="checkbox"/>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신용담당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 설치반대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부문에 심의 · 의결기구로 각각 설치 ○농협 : 설치반대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부문에 심의 · 의결기구로 각각 설치 ○농협·협개연 : 좌동 ○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장 : 조합원 - 연합회장 : 조합장 - 은행 이사장 : 조합장·연합회장 - 은행장 : 외부 전문경영인 ○농협·협개연 : 좌동 ○축협 : 업무조정권은 이사회로 ○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회장, 은행 이사장은 대표권 - 업무집행권은 전무이사, 은행장에게 ○농협·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축협(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하고, 회장이 임명 ○삼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사업본부장도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대표이사 부회장의 제청으로 중앙회장이 임면</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하며 회원조합장 이사는 사업과 업종을 감안하여 선임</p> <p><input type="checkbox"/> 통합설립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input type="checkbox"/>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 능력,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p>	<p>○국민연대</p> <p>-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별도은행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전무이사, 은행장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함</p> <p>○농협 : 좌동</p> <p>○협개연</p> <p>- 대표이사 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면</p> <p>○축협(5.20)</p> <p>- 대표이사 부회장이 임면권 행사</p> <p>○삼협</p> <p>- 인삼분야 집행간부는 인삼사업본부장이 임면</p> <p>○협개연</p> <p>- 도단위 조합장협의회회장(도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기타 외부전문가로 하여 구성</p> <p>○축협(5.20)·국민연대</p> <p>- 위원은 농·축협 동수로 구성</p> <p>○농협 : 좌동</p> <p>○축협(5.20) :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p>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에 업종별조합협의회 설치 허용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설치 : 규정없음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권을 인정함(지도, 감사, 경영평가)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단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감독권만 위임 가능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인정(업무정지, 합명명령, 설립인가취소 등 가능)	○농협 : 좌동 ○협개연 - 비출자법인으로 비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 ○국민연대 - 출자법인으로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 ○농협 : 설치반대 ○축협(5.20), 국민연대 - 회원조합의 감사를 전담할 감사위원회를 중앙회내에 별도부서로 설치 ○농협 : 좌동 ○축협(5.20), 국민연대 - 중앙회장의 지도권을 삭제함 ○농협 : 좌동 ○국민연대 -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위임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만 위임 가능 ○농협·축협·국민연대 - 농림부 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경영평가단 구성 삭제함 ○협개연 : 좌동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협개연·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 농협·축협 이중조합원 현실 인정 ○축협 : 좌동(농·축협 이중가입 금지) ○삼협 : 삼협의 예외규정 인정
<input type="checkbox"/> 상임감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상임감사제 도입 삭제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전문지도사 규정 삭제
<input type="checkbox"/> 조합이 지역축협 또는 업종조합과 합병할 경우에도 다른 합병규정을 준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5.20) : 이중조합간 합병근거 삭제
<input type="checkbox"/>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자금지원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도 상호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정관이 정한 납입출자를 2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 국고지원 ○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의 직접비용은 국고지원 의무화 - 합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의무화

입법예고(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대 : 좌동 ○ 농협·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 5년 이상인 자로 조합장 출마자격을 강화함 ○ 농협·축협 : 공개토론회 삭제 ○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 ○ 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이사회에 품목별 대표와 여성 조합원 대표를 포함시키기 위해 직능이사제도를 도입함 ○ 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 - 1/3이상은 품목과 축종을 대표하는 이사로 함

제3절.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확정 및 국회제출

1. 법안확정 및 국회제출 과정

1) 정부의 주요 추진경과

정부는 1999년 4월 19일 입법예고했던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월 8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표 4-20> 참조).

〈표 4-20〉 입법예고(1999.4.19) 이후 국회제출까지 정부의 주요 추진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4. 19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5. 8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5. 11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검토
5. 12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 회의 ○국무총리실에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5. 13	○법제처에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 요청
5. 13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관계
- 6. 2	부처 재협의(법안 일부 수정) ※ 축협중앙회가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제출(5.20)함에 따라 종전 법안을 수정하여 농림부가 수정안 마련(법안 일부 수정)
5. 2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부터 법안의 규제영향심사 결과 접수
5. 31	○법제처에 법안 수정안 심의 요청
6. 3	○차관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의결(법안 일부 수정)
6. 8	○국무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의결
6. 14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국회 제출(정부입법)

농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법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5월 12일 농림부 자체적으로 법안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5월 12일 농업협동조합법안의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의뢰하였고, 5월 13일 법제처에 법안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재협의를 진행하였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1일 규제영향심사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하였다.

한편, 축협중앙회가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반대하던 주장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새로운 수정의견을 5월 20일 농림부에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의 수정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는 등 종전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농림부는 이 수정된 법안을 5월 31일 다시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6월 3일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월 8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제안내용대로 의결됨으로써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법안은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농림부는 1999년 5월 12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의뢰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경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부의 의뢰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5월 21일 농림부에 통보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농림부가 의뢰한 총 46건의 규제사항(신설규제 1건, 강화규제 12건, 누락규제 33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강화규제 2건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타 규제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경제2분과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 가. 일시 : '99.5.21(금) 13:30-15:00
 - 나. 장소 : 국무위원식당(세종로청사 215호)
 - 다. 심사대상 : 46건(신설 1, 강화 12, 누락 33건)
 - 라. 심의결과 : 수정의결(강화규제 2건), 기타 원안 통과
- (1) 중앙회의 사업제한과 관련된 법 제143조 제1항의 강화규제는 법에서는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시행령 등에서 내용을 정할 것(개선권고)
 - (2) 조합의 발기인수를 현행(20인)에서 50인으로 상향하는 강화규제는 현행(20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개선권고)
 - (3) 기타 44건의 규제(누락규제 33건 포함)는 원안 수용

3) 관계부처 협의 및 법안 일부 수정

농림부는 1999년 5월 13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하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리고 축협중앙회가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5월 20일 제시해오에 따라, 그 가운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5월 31일 법제처에 수정안의 심의를 요청했다. 이같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차관회의에 제출되었다.

먼저 재정경제부의 경우 은행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전문가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협중앙회의 임원은 금융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의 임원자격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은행법 제32조 적용요구는 반영되었다. 은행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타금융기관과 동일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공제대출, 상호금융대출을 제외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대해서만 동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반영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은행법 제66조 및 금융기관이 아닌자가 은행, 은행법, 은행업무라는 용어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은행법 제68조 제2항 적용요구는 반영되었다.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신용사업전담 부회장은 신용사업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사외이사는 회장이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반영되었다. 내부유보확충을 위해 법정적립금의 상환을 자기자본의 3배로 해야 한다는 요

구는 매회계년도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건전성확보를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주식 및 장기채권 보유한도는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은행법 제38조 제1호 및 중앙회의 자기자본 내용증 가입금은 제외하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해야 BIS기준에 부합된다는 은행법 제2조 제5호를 적용하자는 요구는 반영되었다. 우선출자의 누적배당제도를 삭제하고 지분환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회 신용사업 중 겸영업무(신탁·카드) 수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되었다.

신용사업부문 집행간부는 신용사업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사업부 회장이 임면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집행간부는 중앙회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회장이 대표이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은행법 제28조 제1항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대통령령으로 제한된다는 은행법 제38조 제3호 적용 요구는 농협중앙회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조합원과 회원을 위해 지도·경제·유통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재무기준을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재무기준은 신용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신탁법 제43조에 상환준비금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조합의 여유자금에 대해 중앙회 예치 하한비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신탁법 적용시 수익위주로 자금을 운영하게 되어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탁과 달리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은 정책자금 일시조달 등을 위해 중앙회 예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 신탁법의 준용근거를 명시하자는 요구는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신탁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반영되었으며, 조합의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

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신용사업에 관한 재무 및 손익상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한다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부분 반영되었다. 신용사업 관련 정관변경을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발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는 법령 제·개정권이 재정경제부에 있으며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앙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경영지도 및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문을 신설하자는 요구와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권을 추가하자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반영되었다. 금융기관의 사채발행은 건전성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은행법 제33조 적용요구는 반영되었다. 농협의 방만한 사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회사발행 주식의 100분의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농협이 종합사업체로서 목적달성을 위해 경제 및 유통관련 회사 등의 경영권 지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가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신설하기로 되어 있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기획예산처와의 합의사항은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는데 반영되었다.

4) 차관회의 심의 및 법안 일부 수정·의결

농림부는 이상과 같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농업인협동조합 법안을 차관회의에 제출하였다. 1999년 6월 3일 차관회의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

첫째, 조합 및 중앙회의 유통지원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안 제59조 제2항 및 제136조 제2항). 또한 조합의 신용사업관련 재무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 정하도록(안 제63조 제4항) 수정했다.

둘째, 중앙회의 사외이사는 조합원 이사와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안 제130조 제3항),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안 제131조 제4항).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41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권고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안 제165조).

셋째, 법안 중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고(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농림부장관이 설립정관을 인가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부칙 제3조 제5항). 조합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다(부칙 제17조 제7항).

2. 정부가 확정 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내용

관계부처 차관회의(1999.6.3)에서 수정·의결된 법안은 19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으로 확정되었으며, 1999년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1) 정부법안의 주요내용

먼저, 정부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정부법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안 해설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법안 제정이유

농업관련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일선 조합의 경영에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법안 주요골자

첫째,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한다(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제6조).

둘째,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중앙회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안 제6조 및 제137조).

셋째,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한다(안 제11조 및 제164조).

넷째, 조합원에게 총회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안 제39조 및 제65조).

다섯째,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9조 및 제60조).

여섯째, 중앙회에 농업경제 대표이사·축산경제 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를 두되,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한다(안 제128조).

일곱째,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42조 내지 제145조 및 제16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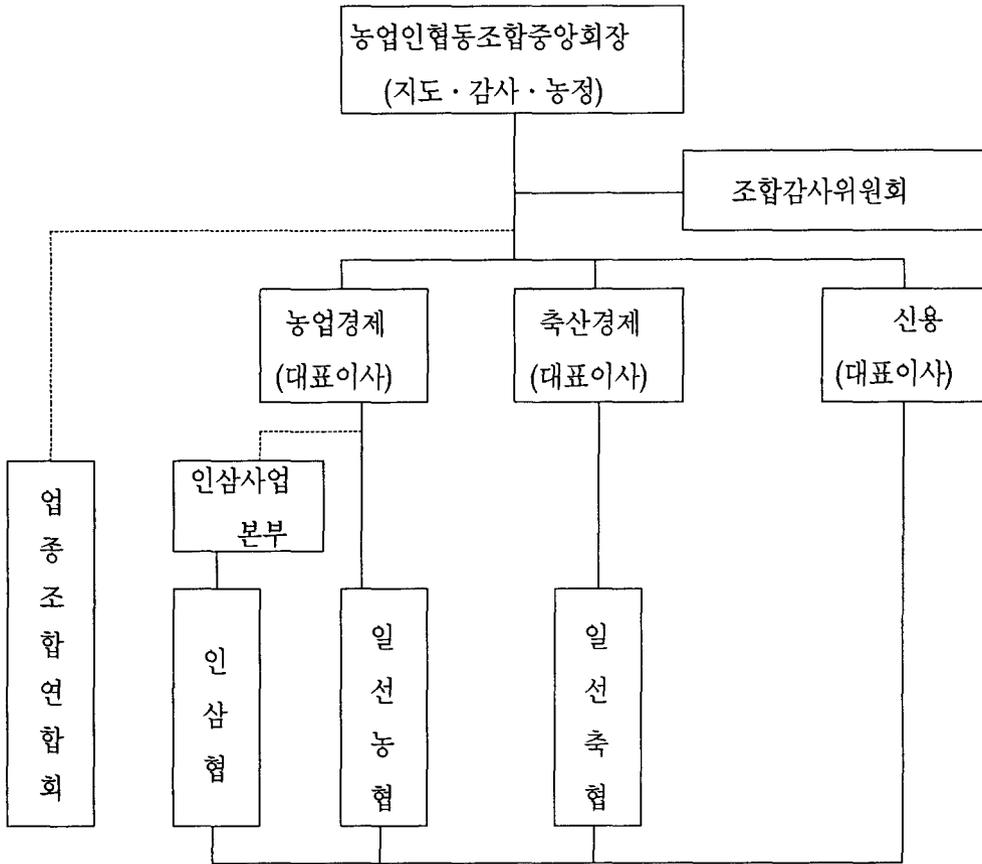
여덟째, 중앙회의 자기자본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한다(안 제146조 내지 제151조).

(3) 법안 주요내용 해설

□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 권익보호기능을 강화
품목별로 나누어진 농·축·인삼협중앙회를 1개로 통합하여 2000. 7. 1에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를 출범시키며, 통합은 중복기능 정비, 경제사업의 회원조합 이관 등 조직 슬림화와 각 부문별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하나로마트·물류센터·사료공장 등 중앙회 소관사업을 단계적으로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출자·공동경영 방식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각 사업부문간 이견과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비대해진 기능을 축소하고 농업인 권익보호기능을 강화시키며 회원조합 중심의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표 4-22〉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조직체계



또한 중앙회장에게 조합 경영평가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부실조합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회장 밑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사의 중립성·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와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실효성이 없는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회원조합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 부문별 대표이사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시에도 총회동의를 받도록하여 임기를 보장했으며, 각 대표이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현재의 형식적인 독립사업부제에서 탈피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갖는 사업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조합의 유통·지도사업 적극 육성, 경영제도의 대폭 개편

조합에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등 협동조합개혁과 농산물유통개혁을 연계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위해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의 유통물량취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물류비와 유통마진을 축소시키도록 하며 신용사업에 의존한 조합운영에서 탈피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내에 전국단위의 업종별연합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선조합의 합병은 경제권·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합병조합장의 임기연장, 이종조합간 합병근거 마련 등 합병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선조합의 자율적인 전문화·광역화 촉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합회의 발전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합장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상임 임원은 경과실로 인해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조합장 선출은 현재의 직선제·간선제외에 이사회 선출제를 추가하여 조합이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가구당 조합원의 가입제한 폐지, 정관변경·임원해임시 각종 의결 요건 완화 등 조합운영에 관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 경영투명성과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제기능 강화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조합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합장(회장)은 이사회 회

의록 등을 비치·공개하고 소수 조합원에게도 회계장부 열람권,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자본 전액잠식 조합, 예금지급불능 조합 등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경영지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제도를 설립인가의 최소 또는 합병명령으로 바꾸는 등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조합원과 예금주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법상의 신용사업감독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일선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법상의 임직원 제재 규정을 신규로 적용토록 하고, 중앙회에 의결권은 없되 우선배당권리를 갖는 우선출자발행을 허용하는 등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신용사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조달의 한계가 있는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2) 정부법안과 입법예고(안)의 주요 차이점 비교

정부가 입법예고(1999.4.19)를 하고,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1999.6.8)하여 국회에 제출(1999.6.14)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당초의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다. 수정된 내용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23> 참조)

첫째, 입법예고(안)에는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통합중앙회의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통합중앙회의 설립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입법예고(안)에는 그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심의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여 조합

장대표 심의기구를 신설하였다.

셋째,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장은 부회장의 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권을 가지고, 이사회는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중앙회장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련한 대표이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되었다.

넷째, 입법예고(안)에는 “지도사업전담 부회장, 농업경제사업 전담 부회장, 축산경제사업 전담 부회장, 신용사업전담 부회장 등 부회장이 4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농업경제 대표이사, 축산경제 대표이사, 신용 대표이사 등 대표이사 3명”으로 하여 지도사업전담 부회장이 삭제되고, 독립사업부의 대표자 명칭도 ‘부회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입법예고(안)에는 “지도사업·농업경제·축산경제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신용사업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추천·동의·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의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의 추천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여섯째, 입법예고(안)에는 “집행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로 수정되었다.

일곱째,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하며 회원조합장 이사는 사업과 업종을 감안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중앙회 이사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고 하여 회원조합장의 이사구성비율을 높였다.

여덟째,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설립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통합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농·축·인삼협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아홉째,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능력·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 직원의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인정하였다.

열번째,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는 업종별조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중앙회내에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업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조합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등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으로서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설립을 허용하였다.

열한번째, 입법예고(안)에는 그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중앙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의 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열두번째,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권(지도·감사·경영평가)을 인정”하였으나, 정부법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권한만 인정”하고 감사권은 조합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열세번째,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은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한다”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한다”로 하여 경영평가단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열네번째, 입법예고(안)에는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동일가구에 2인까지만 가입을 허용했던 제한을 폐지하여 완전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지역농협가입 금지, 2개 이상의 지역축협가입 금지, 2개 이상의 동일 품목 또

는 업종조합에 가입금지"로 하여 농·축협등 서로 다른 이종간의 조합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법안에는 삼협의 경우 이동경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열다섯째,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은 조합의 지도사업을 위해 주요 품목별 전문 지도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회원조합은 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전문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열여섯째, 입법예고(안)에는 그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에 실시하고 있던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축협이 업종축협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신용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일곱째, 입법예고(안)에는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법안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 이상)계속 보유해야만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합장 출마자격을 일부 강화하였다.

열여덟째, 입법예고(안)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함에 따라 정부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표 4-23〉 입법예고(안)(1999.4.19)과 정부법안(1999.6.8)의 비교표

입법예고(안)(1999.4.19)	정부법안(1999.6.8)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통합중앙회의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심의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부회장의 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권 가짐, 이사회는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권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한 부회장간의 이견조정,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input type="checkbox"/> 지도사업전담 부회장, 농업경제사업전담 부회장, 축산경제사업 전담 부회장, 신용사업전담 부회장	<input type="checkbox"/> 농업경제 대표이사, 축산경제 대표이사, 신용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지도사업·농업경제·축산경제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신용사업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input type="checkbox"/>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입법예고(안)(1999.4.19)	정부법안(1999.6.8)
<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하며 사업과 업종을 감안하여 선임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통합설립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input type="checkbox"/> 통합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 능력,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	<input type="checkbox"/> 규정삭제(포괄적 고용승계 인정)
<input type="checkbox"/> 중앙회는 업종별조합협의회 설치 가능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업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조합연합회 설치 가능 - 비사업적 기능의 비출자법인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권을 인정함(지도·감사·경영평가)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는 인정,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수행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매년 1회 경영실태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함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함

입법예고(안)(1999.4.19)	정부법안(1999.6.8)
<p><input type="checkbox"/>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 가능,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조합가입 금지</p>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주요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할 수 있음(조합지도사업 전담)</p>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p>	<p><input type="checkbox"/> 동일가구에 2인까지만 조합원 인정하는 제한규정을 삭제(완전복수조합원제), 2이상의 지역농협가입 금지, 2이상의 지역축협가입 금지, 2이상의 동일 품목 또는 업종조합에 가입금지(농축협 이중조합원 가입 허용), 삼협의 예외 인정</p>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기술교육과 경영상담)</p> <p><input type="checkbox"/>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하더라도 조직변경 당시에 실시하고 있던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지역축협이 업종축협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신용사업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 이상)계속 보유해야만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p>

3. 정부법안과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

앞의 <표 4-19>에 나타난 같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개진되었다. 특히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삼협중앙회 등 이해당사자와 협개연·국민연대 등 주요 농민단체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의 차이와 대립을 검토하여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확정된 법안에 각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는 뒤의 <표 4-24>에 잘 나타나 있다.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별로 혹은 주요 단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

첫째, 통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각각 '농업인협동조합법'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국민연대는 각각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장하였고, 축협은 '농축산업협동조합법'과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장하였으며, 협개연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과 축협의 합의를 요청했으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했다.

둘째, 중앙회 조직체계와 신경분리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일원화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며 신용사업은 별도은행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농협·협개연은 입법예고(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축협(4.17)과 국민연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로서 농협연합회·축협연합회·삼협연합회,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은행 등 5개의 별도법인 형태의 조직체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축협(5.20)은 종전의 통합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의 기본원칙과 다수의 여론 그리고 축협의 입장변경에 따

라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했다.

셋째, 통합비용의 지원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가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축협(5.20)·국민연대는 입법예고(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농협·협개연은 부실채권 정리외에 통합에 소요되는 제비용도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협개연의 의견을 부분반영하여 부실채권 정리와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넷째, 도단위 지역본부의 개편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1단계로 도단위 조합장협의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 지역본부를 도연합회로 전환하여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섯째,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농업경제·축산경제 사업부문별로 심의·의결기구 성격의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협은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수정반영하여 심의기구 성격의 조합장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구성·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여섯째, 경영위원회 설치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농업경제·축산경제 사업부문별로 심의·의결기구 성격의 경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협은 경영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앙회 내부기구로 하여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일곱째,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장의 출마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입법예고(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연대는 5개 별도법인의 중앙회장(조합원), 연합회장(조합장), 은행 이사장(조합장·연합회장), 은행장(외부 전문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

부는 개혁의 기본원칙과 다수의 여론에 따라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했다.

여덟째,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장이 부회장의 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권을 가지고, 이사회는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입법예고(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축협은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을 이사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연합회장 및 은행 이사장은 대표권만 갖고 모든 업무집행권은 전문경영인인 전무이사 및 은행장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과 축협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중앙회장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련한 대표이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아홉째, 대표이사 선임방법의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도사업·농업경제·축산경제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신용사업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 모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축협은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삼협은 인삼사업 본부장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수정반영하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복수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번째, 집행간부의 임명방법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집행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입법예고(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축협은 부회장이 해당 사업부문 집행간부의 임면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삼협은 인삼분야 집행간부는 인삼사업본부장이 임면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개연은 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

장이 임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집행 간부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을 확정했다.

열한번째, 중앙회 이사회 구성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하며 회원조합장 이사는 사업과 업종을 감안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지역대표성(도단위 조합장협의회장 혹은 도연합회장)과 품목대표성(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협개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중앙회 이사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을 확정했다.

열두번째, 통합설립위원회 구성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설립위원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축협·국민연대는 농·축협 동수로 통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을 확정했다.

열세번째,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능력·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축협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농협은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 직원의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을 확정했다.

열네번째, 품목별·업종별조합연합회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업종별조합협의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농협은 입법예고(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개연은 비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비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민연대는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협개연의 의견을 수용하여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업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조합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다섯째, 중앙회장의 지도권 및 조합감사위원회 설치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지도권(지도·감사·경영평가)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축협·국민연대는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의 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기구로서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며, 농협은 입법예고(안)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수정반영하여 중앙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여섯째,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위임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의 감독권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는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농협은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예고(안)대로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일곱째, 경영평가단 설치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은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은 경영평가단 설치에 반대하며 조합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협개연은 입법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축협의 의견을 수정반영하여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여덟째,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업무정지, 합병명령, 설립인가 취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국민연대는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선조합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입법예고(안)대로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열아홉째, 복수조합원제도 및 이중조합원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이중조합 가입 금지를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하여 농협과 축협에 이중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농협·협개연·국민연대는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의 조합에 대해서만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이중간의 조합에 대해서는 이중가입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삼협은 인삼경작의 특성상 인삼농가의 경우 이중가입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개연·국민연대는 완전한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농협·협개연·국민연대·삼협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중조합간에는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인삼농가의 경우 이중가입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협개연·국민연대의 의견을 수용하여 완전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무번째, 상임감사제 도입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조합에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국민연대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농협·축협은 상임감사제의 도입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협개연·국민연대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예고(안)대로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물한번째, 전문지도사 도입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회원조합은 조합의 지도사업을 위해 주요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은 전문지도사 도입에 반대하면서 조합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협개연·국민연대는 입법예고(안)대로 전문지도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축협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회원조합은 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물두번째, 조직변경시 신용사업 유지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신용사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축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신용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물세번째, 조합장 출마자격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협·협개연의 의견을 부분수용하여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 이상)계속 보유해야만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물네번째, 합병지원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개연은 합병의 직접비용까지도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민연대는 입법예고(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연대의 의견과 같이 입법예고(안)대로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스물다섯째, 공개토론회 도입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은 공개토론회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개연·국민연대는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협개연·국민연대의 의견과 같이 입법예고(안)대로 정부법안을 확정했다.

2) 주요 단체별 의견의 반영여부

정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 가운데 주요 단체별로 얼마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시했던 의견 가운데 △중앙회의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중앙회장 출마자격 조합원으로 제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에 위임 △이종조합간에는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등 5건이 정부가 확정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통합비용의 국고지원 △중앙회에 경영위원회 설치반대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 유지 △중앙회 집행간부의 임면방식 △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포괄적 지도권 유지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반대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반대 △조합합병비용의 국고지원 △조합장 출마자격 강화(조합원 신분 5년 이상 보유) 등 9건이 부분적으로 수정반영되었다. 그러나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 명칭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반대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선임방식 △통합시 직원의 처우 및 복무관계처리조항 △업종별조합협의회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상임감사제 삭제 △조합장 선거방법중 공개토론회 삭제 등 9건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축협중앙회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시했던 의견 가운데 통합중앙회의 조직체제 및 기능분리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협중앙회의 입장이 변경·번복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쟁점사항별로 살펴볼 때 △중앙회 통합시 손실보전 지원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 △포괄적 고용승계 △통합설립위원회에 농·축협 동수로 구성 △지역축협의 업종조합 전환시 신용사업 유지 등 6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중앙회에 경영위원회 설치 △중앙회장 업무조정권 삭제 △중앙회장의 회원조합 지도권 삭제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 삭제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삭제 △대표이사 선임방식 등 6건이 부분적으로 수정반영되었다. 그러나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의 명칭 △이종조합간 이중조합원 금지 △집행간부 임면방식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상임감사제 삭제 △조합장 선거 공개토론회 삭제 등

6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축협중앙회가 1999년 5월 20일 기존의 통합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제시하였던 수정의견 가운데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 △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대한 조합원대표자회의 추천권 보장 △대표이사간 업무조정권의 이사회 이관 △사업부문별 경영위원회 설치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업무·인사·회계) 보장 △통합시 손실보전 지원 △조합에 운영평가자문회의 삭제 △조합에 상임감사제 도입 삭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견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수용하였다. 이때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외부이사 배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인사 배제 △정관변경심의위원회 신설 △은행법 등의 적용시한 연기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의 명칭 등이었다.

그리고 삼협중앙회가 제시한 가운데 인삼농가에 대해서는 이동경작의 특성상 이중조합가입금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의견은 반영되었고, 인삼사업본부장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자는 의견은 정관에 의해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 반영되었다. 그러나 인삼사업본부장이 인삼분야 집행간부를 임명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협개연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중앙회장 출마자격 조합원으로 제한 △이종조합간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비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립 △상임감사제 도입 △조합장선거 공개토론회 도입 등 7건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통합관련 제비용의 국고지원 △집행간부 임면방식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조합합병비용 국고지원 △조합장 출마자격 강화(조합원 신분보유기간 5년 이상) 등 6건은 부분수정되어 반영되었다. 그러나 △도단위 지역본부 개편 △중앙회 이사회 구성(지역대표성, 품목대표성) 등 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대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통합중앙회의 조직체제와 기능문제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기본원칙과 다수 여론에 따라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이종조합간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통합비용 국고지원 △조합합병비용 국고지원 △상임감사제 도입 △조합장 선거 공개토론회 도입 △통합설립위원회에

농·축협 동수로 구성 등 6건의 의견은 반영되었다. 그리고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독립기구로서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사업기능을 하는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립 등 3건은 부분수정되어 반영되었다. 그러나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의 명칭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만 위임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등 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표 4-24〉 정부법안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통합법 :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법 ○국민연대 :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통합중앙회 :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연대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input type="checkbox"/> 경제사업 : 농업경제(독립사업부) 축산경제(독립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5.20)·협개연 : 좌동 ○축협(4.17)·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연합회(법인), 축협연합회(법인)
<input type="checkbox"/> 신용사업 : 신용사업(독립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5.20)·협개연 : 좌동 ○축협(4.17)·국민연대 : 별도은행(법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통합중앙회의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협개연 : 통합제비용을 국고지원 ○축협·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 부실채권 등 손실보전 지원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도단위 지역본부의 개편 : 규정없음</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 설치 가능함. 심의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함</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경영위원회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앙회 내부기구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 조합원</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의 업무에 관련한 부회장간의 이견조정,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p> <p><input type="checkbox"/>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p>	<p>○ 협개연 : 1단계 -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2단계 - 도연합회(대표선출)</p> <p>○ 농협 :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반대</p> <p>○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에 심의·의결기구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p> <p>○ 농협 : 경영위원회 설치반대</p> <p>○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부문에 심의·의결기구로 각각 설치</p> <p>○ 농협·협개연 : 좌동</p> <p>○ 국민연대 - 중앙회장·연합회장 : 조합원 - 은행장 : 외부 전문경영인</p> <p>○ 농협·협개연 : 중앙회장 업무조정권 인정</p> <p>○ 축협 : 중앙회장 업무조정권은 이사회로</p> <p>○ 국민연대 - 연합회장, 은행 이사장은 대표권 - 업무집행권은 전무이사, 은행장에게</p> <p>○ 농협·협개연 - 모든 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p>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p>장이 임명,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p> <p><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p> <p><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통합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함</p>	<p>○축협(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단수추천하고, 회장이 임명 <p>○삼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사업본부장도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p>○국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별도은행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전무이사, 은행장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함 <p>○농협 : 대표이사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p> <p>○협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면 <p>○축협(5.20) : 대표이사가 임면권 행사</p> <p>○삼협 : 인삼분야 집행간부 임면권 보장</p> <p>○협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단위 조합장협의회장(도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기타 외부전문가로 하여 구성 <p>○축협(5.20)·국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농·축협 동수로 구성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업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조합연합회 설치 가능 - 비사업적 기능을 비출자법인 <input type="checkbox"/> 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는 인정,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수행	○농협 -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 능력,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 ○축협(5.20) :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 ○농협 - 협의체 성격의 업종조합협의회 구성 ○협개연 - 비출자법인으로 비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 ○국민연대 - 출자법인으로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 ○농협 : 조합감사위원회 설치반대 ○축협(5.20), 국민연대 - 회원조합의 감사를 전담할 감사위원회를 중앙회내에 별도부서로 설치 ○농협 - 중앙회장의 포괄적 지도권(지도·감사·경영평가) 인정 ○축협(5.20), 국민연대 - 중앙회장의 지도권을 삭제함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단 지자체장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 감독권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 좌동 ○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위임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만 위임 가능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인정(업무정지, 합명명령, 설립인가취소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경영평가단 구성 삭제함 ○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운영, 매년 1회 경영실태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
<input type="checkbox"/> 동일가구에 2인까지만 조합원 인정하는 제한규정을 삭제(완전복수조합원제), 2이상의 지역농협가입 금지, 2이상의 지역축협가입 금지, 2이상의 동일 품목 또는 업종조합에 가입금지(농축협 이중조합원 가입 허용), 삼협의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협개연·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 농협·축협 이중조합원 현실 인정 ○축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조합가입 금지 - 농·축협 이중가입 금지 ○삼협 : 삼협의 예외규정 인정
<input type="checkbox"/> 상임감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상임감사제 도입 삭제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기술교육과 경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전문지도사 규정 삭제 ○협개연·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지도사업을 전담하는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input type="checkbox"/>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하더라도 조직변경 당시에 실시하고 있던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지역축협이 업종축협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신용사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합의 업종조합 전환시 상호금융 실시 근거 마련함
<input type="checkbox"/>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자금지원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 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 국고지원 ○협개연 : 합병 직접비용 국고지원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조합정관이 정한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이상)계속 보유해야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대 : 좌동 ○농협·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 5년 이상인자로 출마자격을 강화함
<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토론회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축협 : 공개토론회 삭제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이사회에 품목별 대표와 여성 조합원을 위한 직능이사제도 도입함

정 부 법 안	주요단체의 입장
	○국민연대 -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 - 1/3이상은 품목과 축종을 대표하는 이사로 함

제4절.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과 각계의 입장 및 활동

1. 농협측의 입장과 활동

1) 농협측의 주요입장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 조직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1998년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 마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신용·지도사업은 통합중앙회 내에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주장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협동조합 개혁방안(1999.3.8), 입법예고(안)(1999.4.19)을 거쳐 정부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반영되었다.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있어서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농협측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 농협측의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인 1999년 2월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국민적인 비판여론의 표적이 되었으며, 급기야 원철회 농협

중앙회장이 사퇴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협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견뎌하게 수용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협중앙회는 기관의 입장이나 임직원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개혁에 반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회원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농업·농촌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통합중앙회 내부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고, 축산분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농협내부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지만 중앙회통합이라는 개혁원칙을 지키지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되고 이를 둘러싼 끝없는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중앙회통합은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복합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많은 우리나라 농업구조에 가장 적합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앙조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개혁입법에 그동안 농협이 개정을 주장해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기존 법률의 낡은 내용을 털어냄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개혁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통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문제, 둘째,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항은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우선 통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첫째, '농업'이라는 용어는 축산과 인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및 농업단체의 명칭에는 모두 농업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농림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라는 명칭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 미국의 농무성, 농업협동조합등이다. 둘째, 축산업이 농업총생산액의 23%나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하면 6.9%에 불과하고 그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80년 8.4% ⇒ '97년 6.9%). 즉, 농가소득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총생산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축산업을 명칭에 포함시키면 그 보다 비중이 큰 원예업(32%)과 인삼업도 명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고, 이 경우 '농·축·원예·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명칭이 될 것이다. 셋째,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바꿀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상표 및 간판교체 그리고 CI 통일 등에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넷째,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바꿀 경우 약 10조원에 달하는 무형 자산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41년의 전통을 가진 농협이라는 명칭에 매우 친숙해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명칭을 변경할 경우 국제적인 위상의 저하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세계 협동조합계에서 그동안 쌓아온 지명도의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 농협은 2001년 ICA(세계협동조합연맹)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ICAO(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5,000개에 달하는 각국은행과 외환업무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섯째, 통합중앙회의 명칭에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업중심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동단체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일곱째, ICA의 93개 회원국 236개 협동조합중 농업인(Farmers)이라는 용어를 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인도의 Farmers Fertilizer Cooperative는 농업용 비료구매조합으로써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동일법 체계내에서 중앙회와 그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데, 회원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앙회는 농

업인협동조합중앙회를 사용한다면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협동조합이 통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비용·고효율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담을 통합협동조합이 부담할 경우 결국 농업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라는 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4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지원에 힘입은 일반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금융을 전담하고 있는 협동조합 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IMF 구제금융 이후 농가의 영농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여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통합비용을 제시했다. 통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는 설립위원회 운영비용, 전산통합비용, CI 통일 비용 등이 있으며, 통합 후 회원조합 경영건실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부실조합 자본잠식액 보전비용, 회원조합 합병비용 등이 있다. 이같은 통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둘째, 통합후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후순위채권 인수를 제시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셋째,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과 같은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의 명칭문제와 통합비용 정부지원 문제외에 농협 중앙회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우선출자대상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률안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하고 있는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출자만으로는 중앙회 자기자본의 증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출자증권 발행 대상에 국

가 및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에서 우선 출자대상
에 국가 및 공공단체를 포함시키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
지만 우선출자증권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둘
째, 대표이사 선임절차 변경에 관한 것이다. 법률안에는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신용 대
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자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
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문별 대표이사는 모두 회장
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왜냐하
면, 회장이 추천하더라도 사업부문별 대표성과 독립성은 유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심
의기구에서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각 사업부문이 별도법인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축협과 국민연대 등 농업계 일부에서 주장했던 연합회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농업관련
기관의 난립이다. 연합회 체제는 현재의 농·축협중앙회를 별도법인으로 그대로 존치
시킨 채 중앙회와 협동조합은행 그리고 품목별·업종별연합회를 법인형태로 새로이
설립하지는 것인데, 이는 농업관련기관의 난립을 초래하게 된다. 농업관련기관이 난립
되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규모화함으로써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자는
협동조합 개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비용·저효율의
비능률적인 체제를 초래한다. 별도법인으로 각각 설립되는 연합회는 조직, 시설, 사업,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비능률적인 체제로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즉, 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등
의 기관과 계통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별
도법인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지도, 기획관리, 구매사업 등을 각각 별도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 농축산물 유통시설을 각 연합회가 별
도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낭비는 물론 종합유통체제의 구축이 곤란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 시설, 업무의 중복현상이다.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조직의 확대를

추구하는 속성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관간 조직, 시설, 업무의 중복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축협과 국민연대 등 농업계 일부에서 주장했던 별도은행 설립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신용사업 부문에서 지도·경제사업 부문으로 공급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자금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상실한다. 둘째, 연간 1,300~2,000억원에 이르는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어려워져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셋째, 금융점포의 농산물판매(연간 2,400억원),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공금예금 등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넷째, 현재는 콜머니(연간 1,031억원 규모)를 해서라도 농업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사업이 별도은행으로 독립될 경우 농업자금의 적기지원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섯째, 농협의 신용사업을 법인화할 경우 BIS자기자본 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조 6,3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농협이 출자 가능한 자본금은 9,600억원으로 약 7천억원의 막대한 추가출자가 소요된다. 여섯째, 은행신설시 사업규모가 비슷한 금융기관과 비교할 경우 1,000여명의 추가인력 및 조직확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관리비용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특정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이나, 지방은행도 결국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은행화하거나 부실로 타은행에 인수되어 버린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도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의 지도사업비 지원이 관철되어야 한다. 회원조합의 회비로 납부되어야 하지만 회원조합의 경영이 어려워 회비충당이 어렵다. 현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도사업비 지원에 의한 경제사업의 적자는 신용사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신용사업의 타사업부문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중앙회의 슬림화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지도사업비의 충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사업기능을 갖춘

중앙회 슬림화의 일환으로 중앙회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면, 회원조합연합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일부회원조합의 이해만을 위해 중앙회가 공동출자하기는 어렵는데, 중앙회의 사업기능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할 때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 전국단위 회원조합연합회를 구축한 다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현재 조건에서 전국단위의 사업과 도매형 사업은 전체 회원조합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회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 셋째, 조합장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비상임조합장의 대외적인 활동의 성과가 사업에 반영되기 어렵고,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대표활동이 사업영역과 비사업영역으로 나누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며,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의 신분적 지위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농가부채가 상환불능인 상태로 된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구조개선자금 대부분을 농가소득으로 연결하지 못하여 부채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연대보증 등에 의해 일부 농촌지역은 지역사회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고 있고, 대출 회수 문제로 협동조합이 농민들과 적대관계로 비춰지기도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의 요구도 여기에서 출발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농민 불만의 가장 큰 요인은 농업금융 지도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불능인 농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시적으로 '농가부채대책특별신용기금(가칭)'을 협동조합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업인협동조합'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돼야 한다. 단지 '농업협동조합' 명칭에 일부 조합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향후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협동조합'이란 명칭은 농협이 농업인들로만 구성된 '직능협동조합'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고, 지역농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이미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개념의 크기를 비교하여도 '농업'이 '농업인'보다 더 큰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 면에서 '농협'의 이미지를 '농업인 대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법은 한글(한자) 병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조합 상임 임원 및

전(상)무에 대한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덟째, 조합원에게 서류열람, 이사회 참관, 농협운영에 대한 건의 등 일반회사 소수주주권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아홉째,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열번째, 중앙회 노조추천 이사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현재 1/3이 사외이사로 약 6명인데, 이 중 1명은 노동조합에서 사회적 명망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 열한번째, 중앙회 감사제도(법 제140조)는 1명의 상임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되, 나머지 1명의 비상임감사는 감사업무의 외적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외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로 임명해야 한다.

2) 농협측의 주요활동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일간지 광고(1999.3.10)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하여 농협중앙회 스스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내에 '농협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1999.3.11). 이는 당시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과 농업계의 개혁요구가 분출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기본원칙과 핵심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농협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농협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부가 구성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 농협의 대표가 참여하여 농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농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특히 정부의 입법에 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하고 통합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일선의 회원농협도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의 명의로 호소문(1999.3.25)을 발표하여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태어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각 지역별로 협

동조합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농협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농촌현장의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일선의 회원농협 조합장 대표들은 ‘협동조합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1999.4.27)하여 각계 각층에 농협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그 이후 ‘통합협동조합법 입법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1999.5.11)하여 농협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일간지 광고(1999.5.13)를 통해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하고 통합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농림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을 방문하여 이같은 농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나 회원농협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농협의 정치독립 선언’이라는 성명발표와 일간지광고(1999.3.15)를 통해 농협 임직원에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과 비난행위를 비판하고 농협 스스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편으로는 줄속 통합선언의 책임자를 색출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1999.3.27). 그러나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1999년 3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제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검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더 나은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동조합 개혁의 대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협동조합개혁과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1999.3.26)하고, 농림부를 방문하여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1999.4.22, 5.11, 5.13)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 나갔다.

또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1999년 4월 24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협노동자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통합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99년 5월 28일부터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과 명예회복을 위한 2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정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확정(1999.6.8)하고 국회에 제출(1999.6.14)하는 것에 맞추어 농협측은 정부의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총력대응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일간지 광고(1999.6.10)를 통해 “정부의 통합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원농협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통합협동조합 입법 비상대책위원회’도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도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개편(1999.6.25)하고 입법과정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축협·국민연대 등 일부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반대 주장과 반대운동이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2000년 4월에 예정된 제16대 총선의 준비일정을 고려할 때 1999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협동조합 개혁입법은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비록 농업계 전체가 100%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혁의 기본원칙과 핵심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혁입법 그 자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개혁입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입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농업계 다수의 여론에 따라 각각 별도로 활동하고 있던 농협과 협개연이 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농협중앙회가 협개연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농협과 협개연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1999년 6월 14일 정식으로 협개연에 가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농협측의 주요한 활동 경과를 정리하면 <표 4-25>와 같다.

〈표 4-25〉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농협측의 주요활동경과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1999.3. 10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 11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3. 15	○농협중앙회 노조 일간지 광고(농협 정치독립 선언)
3. 25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호소문(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태어남)
3. 26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3. 27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졸속 통합선언 책임자 색출 요구)
3. 31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정부 개혁방안 검허히 수용, 더 나은 개혁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
3. 31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정부의 개혁에 동참, 농업인의 농협으로)
4. 22	○농협중앙회 노조의 농림부 방문 및 농림부차관과 간담회 - 통합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4. 24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농협노동자 생존권 시수를 위한 전진대회
4. 27	○농협 협동조합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4. 28	○농협 통합협동조합비상대책위, 농림부차관과의 간담회 및 건의문 전달
5. 3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정부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5. 7	○농협 협동조합통합대책위원회, 농림부차관과의 간담회
5. 11	○농협 통합협동조합 입법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5. 13	○농협중앙회 노조, 농림부차관 방문 및 노조입장 전달
5. 19	○농협 통합협동조합대책위원회 일간지 광고 - 통합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개혁 본질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5. 28	○농협중앙회 노조,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과 명예회복을 위한 2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6. 10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정부의 통합법률안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6. 14	○농협중앙회, 협개연 가입
6. 25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개편

2. 축협측의 입장과 활동

1) 축협측의 입장변경 ·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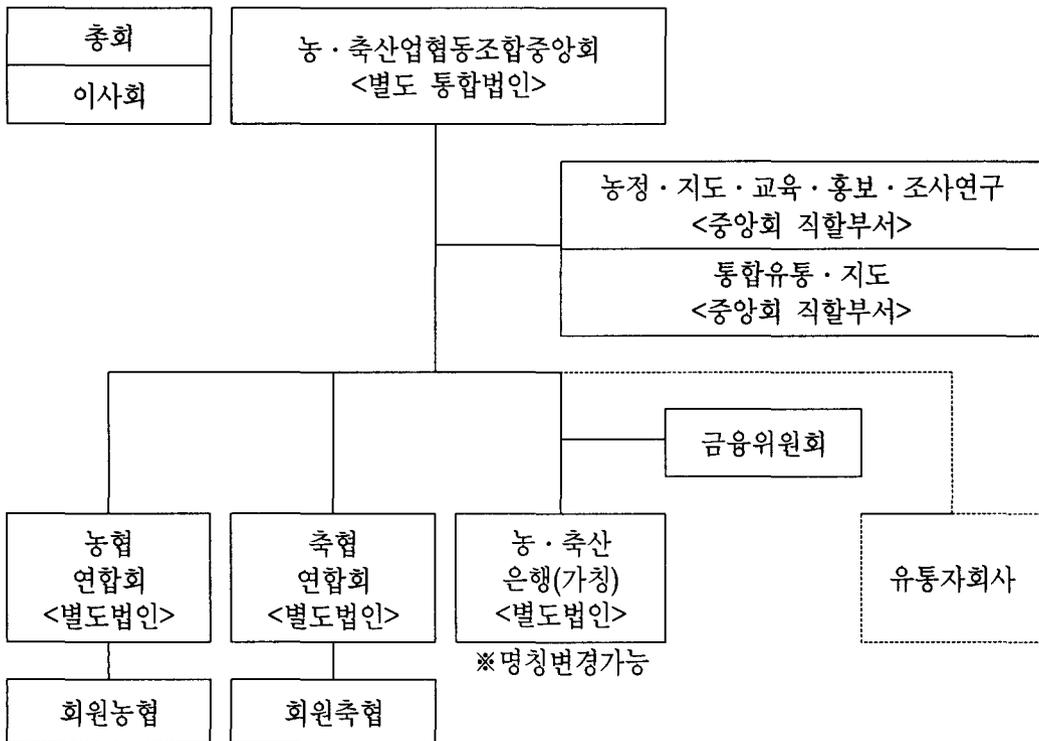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 조직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입장이 변경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4.13-7.31)에서 축협중앙회는 “현행 각 농·축·임·삼협중앙회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각 중앙회 내부에서 경제·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며, 신경분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같은 축협중앙회의 입장은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농협·축협·임협·삼협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1999년 2월 23일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공동개혁안 마련의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1999.3.8)하면서 중앙회 조직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중앙회내에서 신용·경제사업의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축협중앙회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중앙회 조직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축협중앙회는 1999년 3월 26일 전국조합장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를 축협중앙회의 입장으로 결정하고, 1999년 3월 31일 공식으로 농림부에 문서를 보내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농·축협중앙회는 어느 일방의 흡수통합이 아닌 새로운 협동조합법에 의거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중앙회를 설립한다. 새로운 중앙회의 명칭은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새로운 중앙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현 농·축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대표와 조합원, 외부전문가로 균형되게 구성한다. 그리고 새로운 중앙회는 현 농·축협중앙회의 공통유사업무인 농정활동·통상협력·조사연구·조합원 교육지도·홍보업무를 승계하며, 현 농·축협중앙회에서 승계되는 사업·재산·직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직원 배분은 균등한 비율로 한다. 둘째, 현 농·축협중앙회는 새로운 중앙회내에 농산과 축산부문을 분리하여 연합조직으로 하

되, 독립된 “별도법인”으로 한다. 축산부문의 연합조직인 “별도법인”의 명칭은 ‘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대표자의 선출권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을 위한 경제·지도사업(검사포함), 조합원 기술지도,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연합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수행과 조직운동을 위한 기획, 예산, 조직 및 인력관리, 자체감사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현 농·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제1금융 및 그 부대업무에 한함)은 경제·지도사업 및 회원조합상호금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 시점에 “별도법인”인 ‘농·축산은행(가칭)’으로 일원화 한다. 넷째, 새로운 중앙회와 ‘농·축산은행(가칭)’의 설립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되 설립위원회는 동수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표 4-26〉 축협중앙회가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계(1999.3.31)



그러나 축협중앙회의 이같은 입장변경에 대해 “축협이 그동안 현행 4개 중앙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각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해오다가 정부가 4개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중앙회통합에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신경분리 및 연합회체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축협의 주장은 소수의견이었으며, 대다수 농민단체의 입장도 축협의 주장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일선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축협의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농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여 농·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축협중앙회는 수차례에 걸쳐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내부적인 진통을 겪은 끝에 축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999년 5월 20일 축협중앙회는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의 주장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축협중앙회가 제출한 ‘협동조합 통합법안에 의한 축협의견’에 따르면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조합장대표자회의·경영위원회를 법적인 심의·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평가자문회의를 삭제하고 중앙회의 경영평가로 대체하며, 외부이사 및 외부선거관리위원을 배제한다. 둘째, 조합경영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며, 상임감사제는 삭제하고 농림부장관과 중앙회장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이종조합간 합병은 상호 조합원자격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종조합간 조합합병을 배제하며, 조합합병은 동종조합(농협 상호간, 축협 상호간)으로 유도한다. 넷째, 농·축협중앙회의 통합 이미지 제고 및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바꾼다. 다섯째, 통합중앙회의 각 사업부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정관변경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부문

별 이해가 상반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시 반드시 심의하도록 한다. 여섯째, 농업 및 축산경제 사업부문의 철저한 독립사업부제 실시를 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운영하여 사업부문별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조합장대표자회의는 대표이사 추천,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장의 직무중 대표이사간 업무조정권은 이사회로 이관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표이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둔다. 이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는 관리기능 이사회로, 경영위원회는 집행기능 이사회로 이사회 기능이 분리된다. 또한 독립사업부제 실시 근기를 명문화하고, 조합장대표자회의의 대표이사 추천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축산경제대표이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일곱째, 기본 업무처리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결산종료후에 다른 법률(은행법 등)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시기를 현행 공포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한다. 여덟째, 통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

이상과 같은 축협의 수정의견에 대해 정부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당초 농민단체 및 학계의 요구사항인 경영평가단을 그 기능과 권한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반영 △외부이사 및 외부선거관리위원은 대다수의 농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농민조합원도 조합 이사의 1/3이내에서 인정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미반영 △상임감사제는 당초 농민단체 및 학계의 요구사항이었으나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수정반영 △통합중앙회 명칭은 농협과 축협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으로 하여 미반영 △정관변경심의위원회 미반영 △조합장대표자회의는 심의기구로 하여 수정반영 △경영위원회는 내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정관에서 반영하기로 하여 수정반영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은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이사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반영 △독립사업부제 실시 근기의 명문화는 반영 △조합장대표자회의의 대표이사 단수추천권 보장은 복수추천으로 수정반영 △은행법 등의 적용시기 연기는 법률체계의 형평성 문제로 미반영 △통합시 손실보전 요구는 반영하는 등 축협측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특히 수정의견의 핵심적 사항이었던 명칭문제는 농협과 축협의 의견을 모두 수

용하지 않고 정부의 방안으로 하였으며, 조합장대표자회의와 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은 농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이처럼 축협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농협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협을 협동조합개혁에 참여시키기 위해 그 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법안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축협중앙회의 이같은 수정의견 제시에 대해 축협 노동조합과 회원 조합장 등 강경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축협중앙회는 내부적으로 진통을 거듭하였다. 결국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은 1999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축협중앙회는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축협중앙회의 수정의견을 번복하고 또다시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2) 정부법안에 대한 축협의 반대주장

이와 같이 축협중앙회는 수차례의 입장변경과 번복과정을 거쳐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 협개연 등 농민단체에서는 축협중앙회가 중앙회 통합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축협중앙회의 진정한 목적은 중앙회 통합을 반대하는데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법안의 위헌성과 협동조합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우선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 사법인(私法人)은 헌법 제 21조가 정하는 ‘결사의 자유’ 즉,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말하므로 정부가 축협중앙회를 해산시키는 농업인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는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그중에서도 단체존속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둘째, 재산권의 침해이다. 새로 설립되는 농업인협동조합 중앙회에 그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부칙 제7조는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가 향유하고 있는 재산권의 소유·행사·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관청인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국가의 지원이나 감독권의 행사, 그밖에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에도 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범위를 일탈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다음으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농림부가 그 회원과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축협중앙회를 해산하고 농협중앙회와 통합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서로의 회원 및 조합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구성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발적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둘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자 등이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결합한 인적단체로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체라는 원칙을 가지는데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입자유 원칙에 반한다. 특정조합의 결성과 해산, 가입과 탈퇴, 존속여부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데도,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3개의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므로 그 조합들을 실질적으로 통합중앙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민주적 관리의 원칙에 반한다.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명시된 외부운영평가자문회의(법제44조), 외부이사영입(제45조 제1항), 외부선거관리위원 위촉제도(제51조)등은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에 반한다. 협동조합 사업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이 참여하고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운영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과 사업의 접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섯째, 자율과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 농업인협동조합법은 농림부장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도권, 설립인가취소권 등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통제수단이 매우 광범위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적 판단을 행정처분으로 말살시

킬 수 있어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일곱째,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의 원칙에 반한다.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에 중앙회장의 업무로 지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회장의 권한범위로 보아 각 사업에 대한 법적·도의적 경영 책임을 지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다. 여덟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반한다. 농업인협동조합법은 현행 각 중앙회의 통합을 강제하고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외의 새로운 중앙회나 전국연합회의 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동 원칙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아홉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에 반한다.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3) 축협측의 주요활동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1999.3.8)된 이후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축협의 강경대응을 주도해 나갔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1999년 3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강제통합에 결사반대하며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곧바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비투위)’를 설치하고 강경대응의 자세를 갖추는 한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성명(1999.3.9)을 통해 “노사합의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을 측면지원하였으며, 노동조합은 3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협동조합 강제통합음모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원회는 3월 21일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초기의 강경대응을 주도해 나갔다. 이날 대회에서 일부 연설자들은 “통합을 주도하는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3월 27일부터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월 29일에는 축협중앙회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가 전국조합장전체회의(1999.3.26)에서 승인된 축협중앙회의 입장을 농림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한편,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3월 26일 전국조합장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반대 결

의문을 채택하고,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축협외의 입장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조합장 대표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통투위)'를 결성하여 조합장들도 적극적인 통합반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날 결정된 축협중앙회의 입장(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은 노동조합의 항의와 저지로 인해 곧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3월 31일 농림부에 제출되었으며, 그 후 4월 17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축협중앙회의 입장으로 농림부에 다시 제출되었다. 한편,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통합저지투쟁위원회(통투위)는 4월 2일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범축산인 쉼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을 주도한 농림부장관을 규탄하면서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중심의 강경대응도 계속되었는데, 4월 11일에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지역분회 가운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분회가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강제통합을 규탄하면서 일방적인 강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일선 회원축협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4월 18일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결성대회 및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축산농민·축협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축협말살 강제통합 주범 농림부장관은 퇴진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편 축협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4월 23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축협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같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한 통합반대운동으로 축협내부를 결속하는 한편 농림부를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1999.4.21, 4.23, 4.27).

한편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4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부의 여론조작과 농민단체 줄세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4월 13일 급조된 협개연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의 음모가 있었음을 의심"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협개연으로부터 "농민의 개혁열망을 무시하는 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에 분노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으며(1999.4.16), 곧바로 협개연의 주요 구성단체인 한국농업경

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단체로부터 “축협 임직원의 반개혁적 행태를 규탄하고, 농민단체에 대한 음해와 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 주요 농민단체는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협동조합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반농민적·반개혁적 행태이며, 축협 임직원의 반개혁적 행태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며 축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주요 농민단체의 이같은 반응의 이면에는 “그동안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던 임직원들이 농민단체의 개혁요구에 대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혁에 적극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단체마저도 매도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런 가운데 축협중앙회는 4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축협의 공식입장으로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일선 축협조합장 중심의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통투위)를 해체하고, 축협 전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총력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5월 2일 축협중앙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축협의 공식입장으로 밝혔으며, 5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

그러나 축협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18일 축협중앙회이 제시한 수정의견(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승인하였으며, 축협중앙회는 이같은 수정의견을 5월 20일 농림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는 수정의견 제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부갈등과 진통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의 해임이 의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축협중앙회의 이같은 입장변경·번복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축협측의 강경대응을 주도해 나갔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은 6월 1일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축협노동자 쫓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개혁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축산인의 의지가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10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등은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축협노동자 쉼기대회’를 개최하고 “농림부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3일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에서 각 지역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분회가 주최한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쉼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한편, 축협중앙회 경영진, 일선 축협조합장,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6월 4일 결성식을 갖고 통합반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서울·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명의 지역대표와 1명의 여성대표 그리고 회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협개연 등으로부터 축협조합원의 대표성도 없고 실체도 없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축협측의 주요한 활동 경과를 정리하면 <표 4-27>와 같다.

<표 4-27>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축협측의 주요활동경과

일 자	주요 활동 내용
1999. 3. 8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 발표(통합 결사반대 및 강력투쟁 선언) - 축협중앙회 노조,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결성
3. 9	○민주노총 성명 발표(노사합의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한다)
3. 16	○축협중앙회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및 협동조합 강제통합음모 규탄대회,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
3. 21	○축협중앙회 노조·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반대 규탄대회 개최
3. 26	○전국조합장전체회의, 통합반대 결의문채택·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축협의 입장으로 채택·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결성(조합장대표로 구성)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3. 27	○축협중앙회 노조,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3. 29	○축협중앙회 노조, 회장실 점거농성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의 농림부 제출을 저지하고 강력한 투쟁을 촉구)
3. 31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방안을 농림부에 제출
4. 2	○통합저지투쟁위원회,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범축산인 쟁기대회
4. 11	○축협중앙회 노조 5대분회 집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15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여론조작 중담, 협개연 의혹)
4. 17	○축협중앙회, 농업인협동조합법에 대한 축협의 입장 농림부에 제출
4. 18	○전국축협노조,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축협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4. 21	○축협중앙회 노조,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4. 23	○축협중앙회 노조,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4. 27	○축협중앙회 노조,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1999. 4. 30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비상대책위 결성 결의, 별도 연합회 및 신경분리를 축협의 공식입장으로 결의
5. 2	○축협중앙회장 기자회견, 별도 연합회 및 신경분리가 축협 공식입장
5. 3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통합저지투쟁위원회 확대개편)
5. 18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별도연합회 체제 및 신경분리안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 확정
5. 20	○축협중앙회, 수정의견 농림부에 제출
5. 31	○축협중앙회, 협동조합 강제통합반대와 연합회안 국회청원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종료(273,540명중 152,115명(56%) 서명참가)
6. 1	○축협중앙회 노조, 축협노동자 총 쟁기 대회
6. 4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회장 유인명) 결성대회
6. 7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농림부 방문
6. 10	○축협중앙회 노조, 축협노동자 총 쟁기대회
6. 11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유사한 사건이 협동조합통합과정에서도 지행되고 있다)
6. 13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 8개 지역별 집회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 19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중앙회장 해임의결, 회장직무대행체제

3.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의 입장과 활동

1) 협개연 발족 배경 및 조직구성

1999년 4월 13일 전국농업기술자회관에서 68개의 농민·시민단체가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출범식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 개혁이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협개연의 입장과 활동을 볼때 협개연은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농·축협중앙회 통합 요구(1997년 농정개혁 14대 과제중의 하나),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의 농·축·임·삼협중앙회 통합 및 협동조합 개혁요구(1998년),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으로 농·축·임·삼협중앙회 통합 및 협동조합 개혁요구(1998.4.13-7.31) 등으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1999.3.8)하면서, 본격적인 협동조합개혁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주요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각 협동조합이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협동조합은 기존의 안일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협동조합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농업계 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채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정돈되지 못한 주장을 펼쳐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개혁을 혼선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점에도 인식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개혁요구에 따라 진행중인 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민단체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협개연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협개연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기득

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서는 일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으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4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여 강력히 구조조정하는 것과 함께 현장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회원조합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한 협개연은 참여단체의 의견을 집약한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여론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또한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고 농민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을 감시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협개연은 4월 13일 출범 당시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다수 농민단체가 가입하였다. 그 이후 협동조합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홍사단 농업개혁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정부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농협중앙회가 협개연에 가입하는 등 총 68개 농민·시민단체가 가입하였다.

협개연은 주요 농민·시민단체의 대표들로 상임대표단을 구성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황창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병국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정장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한수웅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류광열 전국새농민회 회장 △박순화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장원석 홍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그리고 협개연은 △권광식 방송대 교수 △박권우 고려대 교수 △박정근 전북대 교수 △성진근 충북대 교수 △이재훈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이호철 경북대 교수 △장원석 단국대 교수 △정복조 고려대 교수 등 총 35명의 학계 및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한편 협개연에 가입한 68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 산자협회, 낙농진흥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 동물약품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은 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등이다.

2) 협개연의 기본입장

협개연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앙회의 개혁방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먼저 각 중앙회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실·중복·불필요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인력·시설·장비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후 통합해야 한다.

둘째, 통합중앙회의 부회장은 철저한 독립사업부제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앙회 집행간부의 임면은 부회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토록 변경한다.

넷째, 통합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완전히 전문화하여 재정·회계·인사·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을 가지고 교육·지도·농정활동을 책임관장하도록 하고, 신용·농업·축산경제 담당 사업본부장은 전문경영인(부회장)에게 포괄적 경영권을 부여하여 책임경영토록 한다.

다섯째, 통합중앙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연합회 대표 △도단위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할 도 조합장협의회 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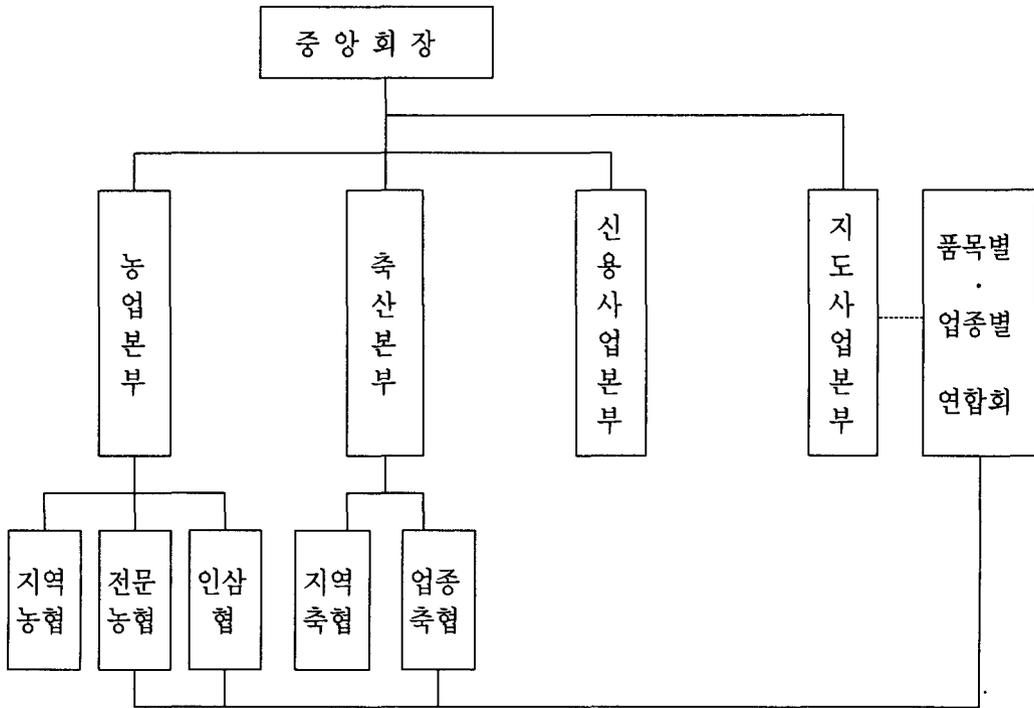
여섯째, 품목별·업종별 조합을 관장할 품목별·업종별 연합회를 무출자·비사업 법인으로 설치하여 품목 및 업종관련 농정활동과 지도, 교육 등 비경제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일곱째, 통합중앙회의 도조직의 경우 1단계로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구성을 통해 농정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2단계로 조합장 중에서 도대표를 선출하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한다. 연합회의 구성은 품목·업종별 조합, 품목별 주산지 지역조합이며, 기능은 품목 및 업종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지도·교육·생산 및 출하조절(비경제사업으로 국한)이 되어야 한다. 한편, 연합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요건은 강화(예시 : 전국 회원조합 10개 이상시 설립인가)해야 한다. 참고로 한농연에서는 즉각적인 연합회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도내 조합장중에서 도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여덟째, '우선출자제도'는 국가 및 비농민조직 또는 기업에 의해 농민조합의 자율적 경영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농업의 자본참여가 필요한 분야 또는 사업은 '프로젝트 공동 추진방식' 또는 '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방식' 등으로 추진토록 한다.

아홉째, 기타사항으로 통합중앙회 명칭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표 4-28〉 협개연이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향



다음으로 회원조합의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조합 조합장의 경영능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경영권을 가진 조합장의 경우 신용·경제사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명예직 조합장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조합원봉사체계를 수립한다. 조합장 임기 중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경우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1인을 감사로 채용한다. 광역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품목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직능이사제를 도입한다. 둘째,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비중제고와 품목별 전문조합의 육성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자구노력을 보장한다.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조합은 일정비율 이상으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현행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및 삼협 등은 조합원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인가요건을 구비한 후 새로운 전문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향후 법인화된 중앙단위 품목별·업종별 연합

회를 통해 전문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무자격 조합원 정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며, 조합원자격을 갖춰 조합장에 당선되었다도 조합원 자격의 상실사유가 발생시에는 즉각 조합장직을 박탈하도록 한다. 조합장 선출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 중 해당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장 후보의 능력검증을 위해 조합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도입한다. 또, 조합장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넷째, 회원조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독을 위해 통합중앙회 회장 직속으로 '감사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일선조합 금융사업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사업 원칙에 의해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 다섯째, 지역실정을 감안한 자율합병 추진 및 합병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합병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경영분석, 경제사업 발전방안, 합병이후 조합 구조조정 계획 등)하고, 마을 단위로 조합원 간담회 및 종합토론회를 갖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을 전제로, 합병시 필요한 직접비용에 대해 금융권 구조조정 지원과 같이 국고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조합 구조조정 방안 개선 및 경제사업 인력을 보강한다. 이는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닌 불필요한 중상위 관리직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그동안 등한시되어온 지도직과 경제사업분야 인력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개연은 이상과 같은 중앙회·회원조합 개혁방안외에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추진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조치사항과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조치사항을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개혁추진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조치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회 구조조정 성과를 조합원에게 직접 환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각 중앙회의 자체구조조정 성과와 통합 1차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추계되는 1,549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의 통합 성과를 조합원에 직접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조합 경제사업 투여 등 간접 지원방식보다는 당장 농가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을 위한 연체 및 연대

보증문제 해결 등을 위해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약속한 상호금융부채 대체용 저리자금(7천억원 규모) 공급과 농협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9.75%의 저리자금 4조 원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이 난망하므로 추가지원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한다. 둘째, 조합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출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중앙회 및 일선조합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 출자금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조합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출자금 현실화 이전에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해야 하며, 재평가자산의 출자전환은 조합자산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조합원 가입기간을 감안하여 연차적·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합병추진시 경영평가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합병이 단순통합으로 끝날 경우 조합원 참여가 더욱 낮아지고 조직통합으로 인한 조합원의 불편만 가중되므로 향후 발전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중앙회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경제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협동조합 합병지원법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합운영 공개를 의무화한다. 회원조합은 본소와 각 사업장마다 관련 기초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공개토록 하며,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마진과 여신액 및 수신액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 구매사업의 구매원가와 수수료를 공개하여, 조합원 구입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농업경제, 축산경제사업부 역시 각종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의 수입을 품목별 또는 부류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합중앙회의 품목별 사업체계를 확립한다. 전문화되어가는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품목별 가격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서체계를 품목별로 재편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 교육 및 지도사업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 증대를 위해 조합원 교육 및 지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영농계획에 의한 상호금융 대출원칙을 확립한다. 현행의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인 위주의 대출제도를 철저한 신용대출 중심의 지도금융 체제로 전환하고, 조합원의 영농능력과 사업 타당성에 따른 대출을 통해 상호금융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실수요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협개연의 주요활동

협개연은 4월 13일 전국농업기술자회관에서 결성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되자 대다수의 많은 농민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중앙회 조직체제와 관련하여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 및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아울러 몇가지 개선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축산부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한다는 정부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며 △조합장 선거 역시 간선제로 한다는 정부방안을 철회하고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조합장 출마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한다는 정부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회원조합의 합병은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정하지 말고 경제권·생활권에 따라 조합자율로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농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입법예고(안)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정부가 확정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도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많은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임직원이 농민조합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였고, 특히 조직적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가하였다. 1999년 4월 1일부터 3일 동안 연속으로 매일 ‘농민생존권 사수와 농정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였던 한농연은 4월 2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반농업세력의 반농업적 행위를 규탄하는 농민대회를 통해 정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비판을 가했다.

한편 협개연 결성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월 14일 성명을 통해 “협개연은 협동조합개혁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음모로써 즉각 해체되고 주동자는 역사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개연은 농민단체간에 논의된 적이 없으며, 논의주체와 사전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4월 15일 성명을 통해 “협개연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의 음모가 있었음을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4월 15일 “근거없는 억지주장과 명예훼손, 안하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협개연의 결성에 대해 농민단체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부의장이 논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놓고도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으로 비방하는 저의가 무엇이나”며 반박했다. 아울러 협개연은 전농에 대해 “그동안 농·축협중앙회 통합 및 신경분리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다수 농민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같이해 오다가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입장이 바뀐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협개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협동조합개혁에 반대하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등과 연대를 추진하려는 것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협개연은 4월 16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부조리와 부실경영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불러온 축협 임직원이 개혁의 주체일 수 있는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빙자하는 오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저항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강력한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축협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협개연은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통합과정에서 고용안정 등을 요구한다면 농민조합원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으나, 순수 농민단체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협개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농민단체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등도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중상모략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개연은 출범 직후 1999년 4월 14일 상임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협개연의 요구사항을 농업전문지에 광고로 게재하였다. 이후 협개연은 성명서와 농업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농민조합원이 요구하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알리는 활동에 집중하였으

며, 한편으로는 반개혁세력의 개혁반대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협개연은 5월 6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부입장을 정리하여, 5월 8일 농림부에 그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협개연에 가입한 단체들에게도 협개연의 개혁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협개연은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지역여론을 확산시키고 현장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결집시키기 위해 각도별 순회 범농업인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강원(5.12), 경기(5.13), 충남(5.14), 전북(5.14), 전남(5.17), 경북(5.17), 경남(5.18), 충북(5.19), 제주(5.31) 등 전국 9개도 지역에서 범농업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지역별 순회 범농업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축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관철시켜 나감은 물론 농민조합원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또한 “개혁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농협 및 축협연합회 체제론을 주장하거나 농민의 돈주머니를 넘겨주는 신경분리 등 반농민적 주장을 일삼고 있는 반개혁세력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역별 협개연을 구성한 곳도 있는데 전남(5.24), 경기(5.25), 제주(5.31) 등에서는 도단위 협개연이 구성되어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지역단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협개연은 축협측의 조직적인 반개혁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하였으며 성명을 통해 △축협조합장들의 반개혁적 결의 비판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총파업 협박에 대한 취소 요구 △축협중앙회의 대규모 국회의원 후원 개최 계획 철회 요구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반개혁적 집회 철회 요구 △초등학생의 동심을 이용한 반개혁운동 중단 촉구 △대표성도 없고 실체도 없는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 해체 촉구 △축협중앙회의 입장변경·번복에 대한 비판 등의 입장을 밝혔다.

협개연 상임대표단은 6월 9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촌현장의 정서와 개혁에 대한 농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공동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협개연 상임대표단은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6월 14일 여야 각 정당을 방문하여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한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축협과 국민연대 등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이 강력하게 전개됨에 따라 개혁입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에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개연은 농협중앙회를 가입단체로 받아들이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4-29〉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협개연의 주요활동경과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1999. 4. 1 - 3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생존권 사수 및 농정공약 이행 촉구 농민대회 개최(협동조합 개혁 촉구 및 반개혁세력 규탄)
4. 13	○ 협개연 결성식(전국농업기술자회관), 결성선언문 발표
4. 14	○ 협개연 상임대표 기자회견, 협동조합개혁 요구사항 발표
4. 15	○ 농업전문지 광고(협개연 발족 및 개혁 요구사항) ○ 성명발표(전국농민회총연맹의 4월 14일 성명에 대한 반박)
4. 16	○ 성명발표(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4월 15일 성명에 대한 반박)
4. 17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4월 15일 성명에 대한 참여단체 반박성명 발표 - 농기협, 지도자중앙회, 전업농중앙회, 한농연, 한국낙농육우협회
4. 20	○ 성명발표(축협의 총파업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방문 및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입장 전달
4. 23	○ 성명발표(이상론에 치우친 학계일부의 협동조합 개혁론을 경계한다) ○ 성명발표(협동조합 반개혁세력은 중상모략과 개혁호도 즉각 중단)
1999. 4. 26	○ 시민단체에 협조문서 발송(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올바른 판단 요청) ○ 농업전문지 광고(협동조합 입법예고안 협개연의 입장)
4. 28	○ 성명발표(협동조합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발표(기득권에 급급한 축협조합장 총회의 반개혁 결의 비판)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5. 3	○성명발표(축협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획 취소 촉구)
5. 4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한 협개연의 입장 정리
5. 6	○시민단체의 협개연 가입 및 협개연 조직 확대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개연의 입장 농림부에 전달
5. 8	○협개연 순회 강원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2	○협개연 순회 경기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3	○협개연 순회 충청남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4	○협개연 순회 전북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4	○협개연 순회 전남도 범농업인대회
5. 17	○협개연 순회 경북도 범농업인대회 ○협동조합 개혁관련 긴급의견서를 농림부에 전달
5. 18	○협개연 순회 경남도 범농업인대회
5. 18	○협개연 순회 충북도 범농업인대회
5. 19	○성명발표(축협의 대규모 집회 및 강제적인 투쟁기금 모금 중단 촉구)
5. 20	○전남도 지역 협개연 결성
5. 24	○개혁입법에 대한 임시국회 의정감시단 결성
5. 25	○경기도 지역 협개연 결성 ○성명발표(초등학교 동심을 이용한 개혁반대활동 중단 촉구)
5. 27	○협개연 순회 제주도 범농업인대회 및 제주도 지역 협개연 결성
5. 31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이중적 행위에 대한 비판)
6. 7	-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즉각 해체 요구 ○협개연 상임대표단 국무총리 방문 및 개혁입법에 대한 입장 전달
6. 9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입장변경·번복 비판)
6. 11	○협개연 상임대표단 여야 각 정당 방문 및 개혁입법 초기처리 촉구
6. 14	○농협중앙회의 협개연 가입

4.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국민연대)의 입장과 활동

1) 국민연대 발족 배경 및 조직구성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토론회(1999.4.8)'에서 국민연대를 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4월 23일 31개 단체와 18명의 자문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협동조합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함께 국민연대의 결성을 공식 천명하였다.

국민연대 결성선언문에 의하면, "농업·농민 생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며 농민의 조합,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협동조합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반드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실천과 입법청원운동을 전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기독교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일부 농민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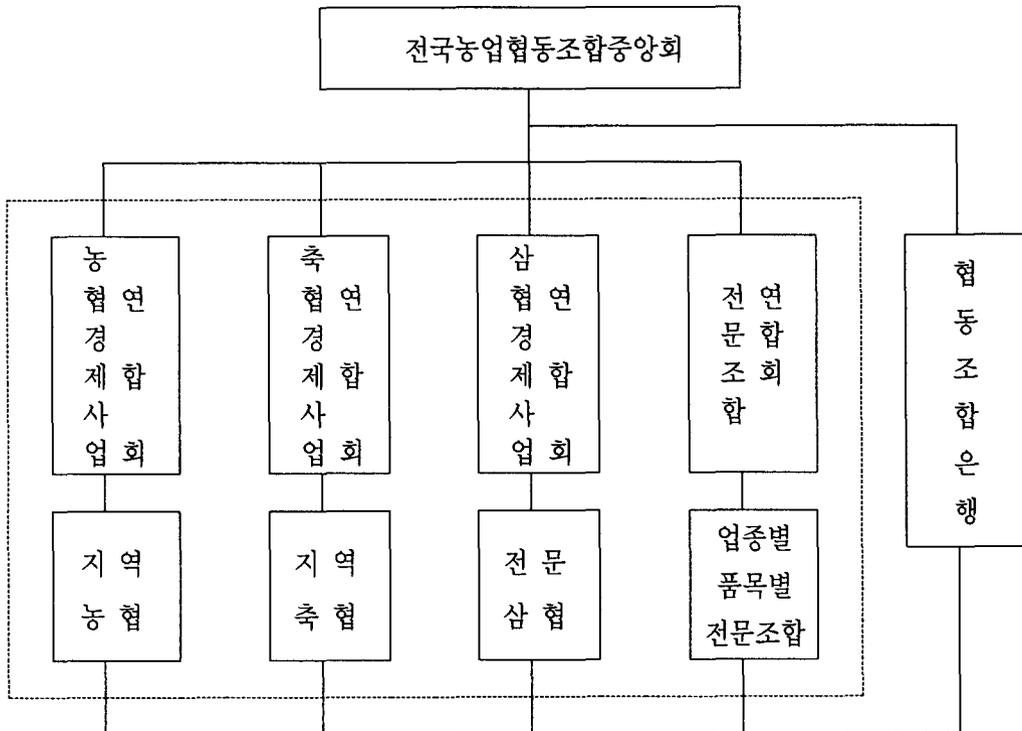
국민연대 조직성구성과 관련하여, 김병태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대표를 상임대표로 하고 △유초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갑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하였으며, 집행위원장은 최병상 전기독교농민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한편 국민연대는 자문위원으로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

병문 변호사 △김주숙 한신대학교수 △류진춘 경북대학교수 △박광서 전남대학교수 △박진도 충남대학교수 △서기원 순천향대학교수 △서중일 상지대학교수 △성상희 변호사 △윤수종 조선대학교수 △우영균 상지대학교수 △이병태 한신대학교수 △이현범 변호사 △장상환 경상대학교수 △정미화 변호사 △정영일 서울대학교수 △한도현 교수 △허석렬 충북대학교수 등을 위촉하였다.

2) 국민연대의 기본입장

국민연대는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가칭)농업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입법청원을 시도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중앙회 조직체제는 <표 4-3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30> 국민연대가 제시한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방안



국민연대가 제시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현행 각 중앙회는 통합하되, 각 중앙회가 갖고 있는 상호 이질적인 세가지 기능(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경제사업, 신용사업)은 명백히 분화시켜 전문화·효율화를 추구한다. 둘째, 통합중앙회(가칭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비사업조직으로서 농민의 권익대변과 농정활동, 지도·교육·감독활동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셋째, 현행 중앙회의 사업 가운데, 신용사업은 분야별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신용담당 독립법인(가칭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한다. 넷째, 현행 중앙회 사업 가운데 경제사업은 업종별 특성이 있으므로 각각 경제사업연합회 체제의 독립법인이 담당하여 전문성의 이점을 살리도록 한다. 연합회 체제를 통해 회원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경제사업 중심 체제로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다섯째, 회원조합(지역조합의 경우)은 현행대로 종합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조합의 전문적인 사업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규모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기본방향에 기초한 국민연대의 개혁방안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업전국연합회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사업전국연합회는 농산물유통·가공·자재공급 등 회원조합 경제사업 연합기능을 전담하고,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소유는 회원조합의 출자에 의한 회원조합 연합조직과, 연합회 전환시 회원조합의 추가 출자없이 기존 중앙회 경제사업 몫의 자본금으로 자본조성을 한다. 운영은 연합회장이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여 대표권을 보유하고, 전문경영을 선임하여 책임경영체제로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원조합의 대표(2/3)와 외부전문가 이사,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하지만, 현재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매우 취약함으로 이들간의 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경제사업 전담조직체로 운영되게 되면 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 및 조합원 편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적자구조의 해소가 가능하며, 신용사업 이익 의존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 정책사업에 있어서 경제논리의 관철이 가능하다. 그 외 주요 품목의 수급 및 출하조절이 용이하고, 소비지에서 윈스톱 쇼핑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행에 관한 부분이다. 협동조합은행은 신용사업수행조합의 중앙은행으로서 연합회 및 조합의 경제사업 자금과 농업관련정책자금을 공급하며, 도시민의 농어업지원은행의 역할을 한다.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이며, 은행설립시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추가 출자없이 각 중앙회 신용사업 몫의 자본금으로 자본을 조성하고, 필요시 중앙회 신용사업의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한다. 은행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이사회는 조합 및 연합회 대표(2/3 이상), 외부전문가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 이사회 의장은 조합 및 연합회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은행금융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연합 업무, 정책자금 공급업무 등 금융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취급함으로써 회원조합과 연합회와의 결속력을 제고하고, 신용사업 중 은행금융(일반예수금과 공공예금 구분)과 정책금융을 회계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분리·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신용사업의 수익을 전적으로 회원조합에 배당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되고, 협동조합은행의 수익이 온전히 조합으로 이전되어 조합에서 중앙회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행으로의 통합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회 신용사업의 부실채권, 적자점포 및 중복점포, 중복인원 등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행의 설립은 신용사업의 전문화로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고, 금융빅뱅하 금융산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인 1차산업의 통합전문금융기관으로의 특화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자금지원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축·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있다. 더욱이 일선 조합의 신용사업간 경쟁과 중복체제의 정비가 가능해지고, 신용사업 통합으로 농업인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부분이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 및 조

정, 조사연구, 홍보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농정협력 기능과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대표 지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법상 조합,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이 가입한 비출자특수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이사회는 회원조합, 연합회, 협동조합은행 대표(2/3 이상), 외부전문가 이사,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고, 회원조합, 각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의 조수익의 일정 비율을 회비 또는 지도사업비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으로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도감사 수행이 가능하고,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 운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기능의 집중화로 협동조합간 협동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 갈등과 업무중복을 조정할 수 있는 지도감독 기능과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농정협력 수행이 가능하다.

3) 국민연대의 주요활동

국민연대는 1999년 4월 30일 결성식과 더불어 '한국협동조합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국민연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혁입법의 필요성과 정부법안의 문제점'(장종의 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과 '개혁입법의 기본틀과 주요 요지'(김병문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농민단체와 학계 대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토론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5월 8일 공동대표단이 농림부장관을 방문하여 국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연대의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하였다. 국민연대가 전달한 내용의 요지는 '현행 각 중앙회의 기능과 활동을 통합해 하나의 중앙회로 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경제사업, 신용사업은 전국연합회체제 독립법인이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대가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대는 6월 9일 국무회의가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을 의결(1999.6.8)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며, 5월 26일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며,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압박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개혁입법 법안 기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표 4-31〉 정부법안의 국회제출(6.14)까지 국민연대의 주요활동경과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1999. 4. 8	○ 전국농민회총연맹,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민연대 결성의 필요성 제기
4. 16	○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연대(준) 성명발표(농림부의 농민·농민단체 분열행위 중단 촉구)
4. 23	○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4. 30	○ 국민연대 결성식, 결성선언문 발표 ○ 한국협동조합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5. 8	○ 공동대표단, 농림부장관 방문 및 입장 전달
5. 13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연대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
5. 26	○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협동조합 개혁입법 법안 기초위원회 구성
6. 9	○ 성명발표(국무회의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의결을 비판)

제 5 장

국회의 협동조합 개혁입법 처리과정

- 제1절. 개혁입법의 의결과정
- 제2절.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활동
-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여 백

제5장. 국회의 협동조합 개혁입법 처리과정

제1절. 개혁입법의 의결과정

1. 개혁입법의 의결경과

1) 개혁입법의 의결과정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1999.6.8)을 거쳐 국회에 제출(1999.6.14)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1999.6.16)되었고, 1999년 7월 9일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되었으며,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999년 7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하에 개최된 공청회에는 각계를 대표하여 △손은남 농협중앙회 부회장 △허삼웅 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장기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강춘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장상환 경상대교수 △장원석 단국대교수 △유경중 강화인삼조합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중양회통합과 관련하여 찬반입장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제2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정우택 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차원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김범명 의원)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할 경우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대외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도 축협의 반발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김범명

의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제205회 임시국회는 전체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며, 법안의 처리는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 그 이후에 제206회 임시국회가 개원되었으나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였으며, 여야 각 정당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계의 입법요구 활동이 총력대응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까지를 회기로 정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으며, 국회가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다.

1999년 8월 6일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는 위원 전원을 비롯하여 김성훈 농림부장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조남근 삼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가지기에 앞서 위원장, 3당 간사, 위원 중 2인 등 총 6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농·축협중앙회장과 중앙회 통합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대체토론 이후 1999년 8월 10일 제3차 회의를 통해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김기춘(한나라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윤한도(한나라당) 위원, 이상배(한나라당) 위원, 이우재(한나라당) 위원, 송훈석(새정치국민회의) 위원, 이길재(새정치국민회의) 위원, 최선영(새정치국민회의) 위원, 허남훈(자유민주연합) 위원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축협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걸쳐 비공식적인 회합을 갖기도 하고, 2차에 걸쳐 공식회의를 진행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열띤 격론을 벌여야 했다. 결국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마감 하루전인 1999년 8월 12일 14:30부터 21:00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통해 농협과 축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축

협측의 의견을 대폭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여, 이 조정안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999년 8월 12일 21:20경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쟁점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특히 축산부분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특례조항까지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1999년 8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위헌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대립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였고, 박준규 국회의장은 “오후 2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법안을 넘기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결국 국회의장 직권으로 회기마감일인 1999년 8월 13일 제20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법안상정 직전에 김종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축협회장의 할복기도와 농·축협의 통합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홍문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할복기도는 입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만약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불법적 행위로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이후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권오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다.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제2의 UR협상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대단결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란

다”고 보고했다. 권오을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절차를 무시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통합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중앙회의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공식적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23시 45분경 곧바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출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47표, 반대 10표, 기권 115표로 의결·통과되었다.

〈표 5-1〉 국회의 개혁입법 의결경과

일 자	주요 개혁입법 의결경과
1999. 6. 14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국회 제출
6. 16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7. 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축협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7. 9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상정
7. 1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개최
7. 14	○축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청원 제출(김중위 의원 소개)
7. 16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청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8. 5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3당 간사, 의원중 2인 등 대표단 6명이 농·축협중앙회장과 간담회 개최
8. 6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수정·의결
8.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8. 13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20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 국회의장 직권으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상정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의결안을 표결처리 - 출석의원 272명중 찬성 147표, 반대 10표, 기권 115표로 통과
8. 31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9. 7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 공포

2) 개혁입법 의결과정의 주요단편사례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해 농민단체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축협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처리과정은 진통을 거듭하였다.

특히, 1999년 7월 13일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심한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의 비중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어 법안의 처리여부에 대한 농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공청회의 열기가 높았기 때문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이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9년 8월 6일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농협이나 축협 등의 입법요구활동이 너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한 협개연이 협동조합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분명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도한 입법요구활동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관련자에게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그만큼 협동조합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주장이 물밀 듯이 밀려들었으며, 의원들이 받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는 점을 말해 주는 사례이다.

한편, 1999년 8월 12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는 시점에서, 당시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던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법안통과에 항의하여 할복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구범 회장은 즉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신구범 회장의 회복에 흥분한 축협 관계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 30여명이 약 2시간 40분 동안 회의장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8월 13일에는 신구범 회장의 회복소식을 전해들은 축협중앙회 임직원 등 3천여명이 여의도광장에 집결하여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1999년 7월 9일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노석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1)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농업인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품목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농업·축산업·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고, 일선 조합은 농업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도 및 경제·유통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여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농·축·삼협중앙회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고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둘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별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농민조합원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선조합 경영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넷째, 중앙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를 두어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도록 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우리농업의 구조가 고도화·전문화될 것에 대비하여 전문조합이 품목별·업종별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조합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중앙회에 회원조합감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건전성 도모를 위해 회원조합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결권은 없고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여덟째, 중앙회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되 신용사업의 건전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여 부실경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농업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춰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수없이 많은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하여는 500만 농업인과 절대다수의 농업계 인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

끝으로 김성훈 장관은 협동조합 개혁을 통한 농업계의 자구노력을 온 국민앞에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농업부문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금년말부터 시작되는 WTO차기협상과 2001년 쇠고기수입개방대책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첫째, 안 제130조 제2항에서는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을 하되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득권에 대한 배려와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안 제128조 제6항에서는 동 기구를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구 성격과 권한의 내용이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면이 있고, 심의기구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사회 기능과의 충돌문제 등이 예상됨으로 축산경제조합장대표 심의기구를 대표이사추천 조합장대표회의로 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업경제 및 신용대표이사의 추천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별개조직을 하나로 통합·신설하는 조직에 대하여 대표이사 추천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정관 설립 및 변경시마다 계속적으로 분쟁의 소지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통상의 입법례와 같이 추천절차를 이 법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안 부칙 제3조 등에서는 이 법 공포후 설립되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한 정관이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기존 3개 조합중앙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총회의 의결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설립위원회가 설립준비과정에서 기존 3개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설립정관에 의해 합병절차를 밟고자 하는 취지에서 총회 의결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이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안 제131조 제2항에서는 기존 농협 및 축협과 같이 별도의 대표이사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인삼협중앙회와 인삼조합으로서는 협동조합간의 형평성 문제의 제기와 인삼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용과정에서 인력이나 예산지원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려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일선조합의 합병 및 합병지원과 관련하여 합병지원 예산금이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 정기국회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회원조합 사업과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조합에게 중앙회 사업의 이관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실제 법적용과정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자기입장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안 제146조 등에서는 조합 자본제도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적 성격과 외국사례를 감안해 굳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안 제59조 등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자금의 설치규정은 계약재배 등 조합 자율적인 생산출자조절사업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을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성되는 자금으로 금번 경제사업체제로 지향하는 일선조합 개혁의 중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의 조성방법조차 명시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1999.7.9)되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의 비중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999년 7월 13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7인의 진술인 그리고 정부·농협·축협·삼협·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일관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를 대표하여 진술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손은남 농협중앙회 부회장 △허삼웅 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강기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강춘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장상환 경상대학교수 △장원석 단국대학교수 △유경종 강화인삼조합장 등 7인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7인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허삼웅(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축협중앙회는 4월 30일 내부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재의 협동조합체제인 독립사업부제로는 한계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해서 각자 독립적인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갖는 연합회안을 주장하였다. 축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개혁의 목적이나 효과가 불투명하다. 농림부가 실시한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론조사 또한 축협조합원 보다 농협조합원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법안대로 하면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구조나 조직비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합된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사실상 독립사업부제 실시가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너무도 어긋난다. △정부법안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국가가 협동조합을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고, 사적재산권까지도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손은남(농협중앙회 부회장)

농협은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견뎌하게 수용하면서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법안은 농민의 이익증진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농협은 찬성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관이나 직원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정부법안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회원조합의 입장에서, 농업·농촌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농협이 정부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중앙회가 통합이 되면 저비용·고효율조직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농민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농협이 개정을 요구해 왔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률로 새단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안 심의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 한다. 둘째, 우선출자대상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 통합에 따른 많은 비용과 자금이 소요되는데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후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통합에 따른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이 필요하다.

□ 강기갑(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국민연대에서 제출한 입법청원안에 대해서도 병행심의를 했으면 한다. 농업·농촌·농민이 위기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바로 개혁하는 것이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목별·품목별·업종별·축종별 전문화 조직을 연합회 조직체제로 가져가야 한다. 연합회 단위로 경제사업을 하도록 독립법인화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경제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협동조합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신경유착 때문이다. 이 신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신경분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자율조직이고 농민권익조직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는데, ICA원칙에 맞게 협동조합의 정치관여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 강춘성(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에 상정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농촌을 살리는 이 협동조합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부탁한다. 신경분리 또는 연합회구성은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의 축협 가운데 한우조합이 없다. 왜냐하면 한우조합이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한우조합 결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협동조합 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혁과정이 너무 졸속적이며 강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통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개혁안은 농민, 협동조합, 정부의 의지가 담긴 합작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에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협동조합개혁은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 장상환(경상대교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을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협과 축협의 현행 체제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통합에는 반대한다. 비사업적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중앙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은행으로 묶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정부법안에는 회원조합끼리 자유롭게 법인형태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협동조합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정권인수위에서 만든 사항과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미시적인 형태의 정태적인 시각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대가 제시한 개혁안을 검토하여 제대로 된 개혁법을 만들어야 한다.

□ 장원석(단국대교수)

정부법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범농업인21C농업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68개 단체로 구성된 협개연의 의견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신경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앙회 통합과 신경분리 반대는 정부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방안이었다. 중앙회를 통합하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농축협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매유통시설을 통합운영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생활물자사업의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사료사업의 구매력 증가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사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일반은행들도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규모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일선사무소, 사업장을 통폐합할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신경분리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준비성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준비를 해서 연합회체제 및 은행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법안 가운데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협동조합으로 한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통합에 따른 비용은 다른 금융기관 합병때의 내용과 기준에 맞추어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하며,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통합중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정치관여금지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우선출자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 유경중(강화인삼조합장)

삼협중앙회는 독자적인 예산·인사 등 제반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표이사제를 보장하면 통합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법안에 의하면 인삼사업전담 대표이사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업경제 대표이사 산하의 상무급 직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삼협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할 것이며,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대응을 해나가겠다. 정부법안에는 삼협이 농협에 흡수합병되는 형태로서 인삼사업의 특수성, 역사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법안에 반대한다. 인삼분야의 대표이사제로 독립성을 보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협과 같이 통합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진술인 7인의 의견발표가 끝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삼분야에 대표이사제가 도입되면 삼협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가(김기춘 의원, 이해구 의원) △인삼분야의 대표이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윤철상 의원, 송훈석 의원) △축협중앙회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조항이 수정되면 축협도 통합에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보완하더라도 축협중앙회는 절대 반대하는가(김기춘 의원, 이해구 의원) △농협은 축협의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축협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이강두 의원)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축·인삼협중앙회라고 할 경우에도 농업인협동조합으로 할 때와 같은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이나 무형자산의 손실이 있는가(김기춘 의원)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무엇인가(허남훈 의원, 주진우 의원)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윤한도 의원) △개혁논의 과정에서 축협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협동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었는가(이상배 의원) △농림부의 개혁추진방식에 대한 농·축협중앙회의 의견은 무엇인가(주진우 의원) △협동조합개혁에 정부가 개입을 꼭 해야 하고 협동조합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가(변정일 의원) △총선을 앞두고 협동조합 길들이기가 아닌가(이상배 의원) △축협은 왜 농민단체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생각하는가(변정일 의원) △통합을 하면 정부지원이 더 용이해지는가 아니면 불리해지는가(이상배 의원) △농협과 축협은 각각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것이 농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가(권오을 의원, 배종무 의원) △농축협중앙회는 과연 그동안 얼마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가(이상배 의원, 권오을 의원) △통합을 하면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해구 의원) △신경분리를 목표로 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정부법안과 같은 체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해구 의원) △농협에서는 2-3년의 준비기간을 두더라도 신경분리에 반대하는가(이우재 의원) △신경분리가 되더라도 적시에 농자금의 대출이나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경제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모순이 아닌가(윤철상 의원) △통합법안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사업 감독권을 가지더라도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윤한도 의원)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과 축협의 입장은 무엇인가(권오을 의원)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신용사업을 줄이고 경제사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허남훈 의원) △농협은 품목별 전문조합을 근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는가(이우재 의원) △축협은 통합을 하지 않고 본래의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주진우 의원, 윤철상 의원) △축협중앙회가 사업자금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지원 없이 축협의 존립이 가능한가, 그리고 정부지원하에 있는 축협중앙회가 농민의 자조·자율조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김무성 의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축협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가 그리고 독자생존의 길은 무엇인가(변정일 의원) △축협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무엇인가(이길재 의원) △농협과 축협의 최근 경영상태와 향후 2-3년의 경영전망은 어떠한가(권오을 의원) △통합이후에 WTO차기협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배종무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작년에는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을 주장하다가 집행부가 교체된 이후에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과 차이점은 무엇인가(김무성 의원) △농협과 축협의 중복되는 조합원은 얼마나 되는가(송훈석 의원)

△중앙회통합이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김성곤 의원)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단위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허남훈 의원) △통합법안이 제정되면 단위조합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영세 단위조합의 통폐합이 가능한가(허남훈 의원) △중앙회통합에 따른 내부갈등으로 조직의 슬림화가 오히려 어렵지 않겠는가(변정일 의원) △통합중앙회의 조직이 과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가(변정일 의원) △중앙회통합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구조조정만으로 통합과 같은 수준의 비용절감은 불가능한가(변정일 의원) △농협에서는 통합이후에 축협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윤철상 의원) △통합법안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하는 것인가(변정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축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김기춘 의원) △정부법안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허남훈 의원) △중앙회는 조합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조합원의 의결이 없기 때문에 통합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는가(최선영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한 진술인의 답변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경종(강화인삼조합장)

인삼분야의 대표이사제가 확실히 도입되고 독립운영체로서 보장이 되면 삼협은 통합법안에 찬성한다.

□ 장원석(단국대교수)

첫째, 통합으로 인해 농민과 회원조합을 위한 직·간접적인 효과로는 제6조, 제13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37조가 있다. 그러나 통합후에도 후속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상쇄당할 수 있다. 통합법안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위기극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둘째, 농축협이 모두 사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통합으로 사료사업을 합치게 되면 각각의 장점을 묶어서 구매체계가 합리화되고 농민조합원에게 편리하고 비용상 유리하게 되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셋째, 축협중앙회의 소규모 금융사업으로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농협과 축협의 신용사업을 합해도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신용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농협과 축협의 신용사업을 통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넷째, 인력구조와 관련하여 농협과 축협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데, 통합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인력재배치를 해야 한다.

다섯째, 농협과 축협의 소매유통시설을 별도로 두고 협력하는 관계보다는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계통구매와 계통판매의 유리성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증대된다.

□ 장상환(경상대학교수)

첫째, 신경분리를 하고 품목별 연합회체제가 되어야만 올바로 경제사업을 할 수 있고 농가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경제사업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고 경제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은 굳이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적정 이자만 지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다.

□ 강춘성(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군중을 동원한 집회를 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거나, 의원들에게 협박성에 가까운 호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입법이든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게 대립할 경우 상호간 100% 만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소 불만세력이 있더라도 최대공약수에 의해 다수의 뜻에 따라 입법이 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에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별다른 저항없이 입법이 가능하겠는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리고 나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개혁은 집권 초반기에 바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입법이 되지 않으면 차기정권에서나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축협이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논의 과정에서 축협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항상 동수로 참석하여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전화로 협박하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축협이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해 왔다. 축협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농민단체가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왔고, 만들어진 개혁안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길들이기 차원의 일이었다면 농민단체가 참여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은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를 통합하고 그 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한다면 회원조합이 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축산업도 현재의 체제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축협중앙회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 이대로 두고서 축협중앙회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 돌아간다.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기능을 이번의 개혁입법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기갑(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통합을 하면서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대가 의원입법으로 청원했다. 그 방법은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이다. 중앙회는 영리나 사업에서 자유롭게 하여 비사업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기능은 품목별·업종별 경제사업연합회가 수행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

중앙회통합에 대한 전농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작년에도 중앙회 통합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분리에 반대했는데 현장의 개혁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경분리가 도출되었으며 현재는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신경분리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공식입장으로 확정한 상태다

□ 손은남(농협중앙회 부회장)

농협의 이름을 농업인협동조합으로 하거나 농·축·인삼협동조합으로 하거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같다.

농협은 그동안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31개 부서 가운데 4개 부서를 줄이고, 중앙회 인원도 18,136명 가운데 4,588명을 감축했으며, 회원조합도 약 53,000명 가운데 13,570명을 감축했으며, 인건비도 약 20% 수준으로 감축했다. 회원조합의 통합은 자율적으로 경제권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에 136개 조합이 합병되었다.

그리고 중앙회를 통합하게 되면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시설과 인력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용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즉, 신용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농협의 금융기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아 시군금고를 유치하기도 하고 경제·지도사업과 연관된 금융기능이 생겨서 된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경쟁시대에 농협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은행들도 이 점을 배우려고 한다.

통합과정에서 부실채권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농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하여 약 1조원을 선별하여 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노력하고 있다.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는 재경부, 농림부, 금감원과 협의중이며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통합이 되더라도 축산분야의 전문인력이 그대로 승계된다. 또한 농협의 경제·지도사업 인력도 승계된다. 최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이 중복되는 비율은 적게는 80%, 많게는 90%, 평균적으로 약 85% 수준이다.

□ 허삼웅(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축협은 무조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에 기초한 개혁방안에 응할 수 있다.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여건하에서라면 얼마든지 농협과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

축협은 그동안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연도말로 진행 중이다. 회원조합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상태가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축협의 경영상태가 부실화되어 굉장히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음해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축협이 존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지원의 대부분은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정부사업을 대행하지 못할 뿐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원배치, 고용조정, 자원배분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단위축협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4.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으나, 국회 전체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법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6일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 전원을 비롯하여 김성훈 농림부장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조남근 삼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대체토론은 농·축협중앙회장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그후에 의원들의 질의와 농림부장관 및 농·축협중앙회장의 답변이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삼협중앙회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의견

농협은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 한국은 가족농 중심의 복합영농방식이 우세하기 때문에 농·축협중앙회가 통합되어야 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3개 중앙회를 통합하여 중복된 기능과 시설, 인력을 슬림화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비용절감효과를 농업인과 일선조합에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중앙회통합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하고 절박한 선택이다. 협동조합이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경영체로서, 사업체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축협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협의 자금력과 조직력의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신경분리는 종합농협체제의 시너지효과를 상실하게 만들고, 농업인의 돈주머니를 비농업부분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신경분리에 반대한다. 축협도 그동안 신경분리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 연합회체제 역시 기관의 난립을 초래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동안 축협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나 축협은 집행부, 노동조합, 조합장, 조합원대표자협의회 등이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고 그동안 여러번 입장을 변경·번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당사자간에 수많은 논의와 대화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개혁을 지연시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자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법률안이라도 이해당사자들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제는 하루빨리 개혁입법을 마무리짓고 농업계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WTO차기협상, 농가부채 해결 등 산적한 농촌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농·축·삼협중앙회를 통합하는데 일선 농민과 일선 회원조합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의 의견

축협은 통합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통합은 협동조합의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도 신경분리와 비대한 중앙회의 축소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비대한 중앙회를 축소하고, 돈장사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자는 논의가 모아졌다. 그래서 신경분리와 품목별·업종별 연합회체제가 올바른 개혁방향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정부법안은 그동안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던 법안이다. 제대로 심도있게 논의되지도 않은 방안을 농협이 주장하고 농림부가 수용한 것이다. 비대한 중앙회 축소와 돈장사 위주에서 벗어나는 개혁방안은 신경분리만 제대로 되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은 이 기회에 제대로 개혁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통합법안은 협동조합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농협이 제시하는 통합의 세가지 실익, 즉 농·축·삼협중앙회의 유통소매시설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중복기능의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그리고 회원조합의 활성화 효과는 허구이다. 축협은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협동조합 개혁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품목별·업종별 연합회로 전문화해 나가야 하고,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금융상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협동조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축협의 입장이다. 그리고 통합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수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 조남근 삼협중앙회장의 의견

삼협은 농협이나 축협과는 다르게 인삼 하나만을 갖고 전문성을 추구해 왔다. 한국은 인삼종주국이면서도 세계시장의 2%만 차지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인삼의 전문성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인삼대표이사도 반영이 안되었다. 정부법안대로 하면 인삼부분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실된다. 인삼부분은 중앙회 통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중앙회내에 인삼분야의 대표이사를 배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농·축·삼협중앙회장 3인의 의견발표에 이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한을 정해서 통합법안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전략을 세우다 보니 결국 양측간의 극한대립이 오지 않았는가(이강두 의원, 권오을 의원) △통합법안을 둘러싼 농민과 축산인의 극한대립은 농림부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변정일 의원, 허남훈 의원) △중앙회통합에 대해 농협과 축협의 타협을 유도할 가능성은 없는가(허남훈 의원, 권오을 의원, 이상배 의원) △농협과 축협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김기춘 의원) △정부가 그동안 축산농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윤철상 의원) △그동안 축협은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문제점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 왔는데 오늘 축협중앙회장은 통합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축협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축협의 입장에서 통합법안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은 없는가(이강두 의원, 김성곤 의원, 이우재 의원) △축협은 어떤 형태의 통합도 반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받아들일 수도 있는가(변정일 의원, 배종무 의원, 김기춘 의원) △그동안 축협의 주장 가운데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무엇인가(윤철상 의원) △축협은 농림부가 주장하는 통합의 실익이 허구라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김기춘 의원) △만약 별도법인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

서는 축협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한가(김성곤 의원) △일본식의 연합회체제방
 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김성곤 의원) △연합회체제로 갈 경우 실제로 옥상옥의 기
 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윤철상 의원) △현실적으로 신경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기간(예를 들면 3년)을 두어 여건이 성숙되면 신경분리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삽입
 할 용의는 없는가(김성곤 의원, 이우재 의원) △신경분리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송훈석 의원, 허남훈 의원, 배종무 의원, 윤철상 의원) △신경분리가 되었을
 경우 경제사업을 합리화시킬 방안이 있는가(배종무 의원) △신경분리를 할 경우 농민
 들이 1조원에 가까운 출자금을 낼 여력이 있는가(윤철상 의원) △정부법안에 경제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윤철상 의원) △2003년 7월 1일까지
 중앙회가 100% 출자한 사업에 대해 지역조합의 50%이상 참여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
 는가(이우재 의원) △농협은 그동안 신경분리, 품목별 연합회, 비대한 중앙회의 축소
 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이우재 의원) △품목별 전문화, 축산의 전문화 방안은
 무엇인가(이해구 의원)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송훈석 의원, 배종무 의원, 이우재 의원) △한국의 영
 농형태를 고려할 때 품목별 전문조합보다는 종합농협 형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윤철상 의원) △인삼부분의 대표
 이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윤철상 의원) △중앙회통합이 슬림화를 목표로 한다
 면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를 둘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만 구분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하지 않는가(김기춘 의원) △통합에 필
 요한 정부지원 총액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강두
 의원, 이완구 의원, 이해구 의원, 송훈석 의원, 허남훈 의원, 권오을 의원, 윤철상 의원)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업인협동조합 보다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축산업협동조합
 이 맞지 않은가(김성곤 의원, 송훈석 의원, 김기춘 의원) △일선조합의 신용사업을 강
 화할 방안은 없는가(이해구 의원) △중앙회통합으로 일선 축협이 받게 되는 피해는 무
 엇인가(허남훈 의원) △우선출자대상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송훈석 의원) △조합장대표자회의와 경영위원회 설치는 일사불란한 조직운동을 저해

하지 않는가(윤철상 의원) △2001년 쇠고기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현재의 축협이 개방 파고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는가(윤철상 의원) △축협은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혀달라(이강두 의원) △일선 축협은 중앙회가 통합되면 지역축협도 농협과 통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윤철상 의원) △농림부에서 농협과 축협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는가(변정일 의원) △이번 회기중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강두 의원, 허남훈 의원) △이번 회기중에 통합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타협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권오을 의원, 이우재 의원) △통합 이후의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변정일 의원, 이상배 의원, 윤철상 의원) △농민의 입장에서 통합법안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와 실익은 무엇인가(이해구 의원, 이상배 의원, 배종무 의원, 윤철상 의원) △통합법안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송훈석 의원, 권오을 의원, 윤철상 의원) △중앙회통합이 총선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이상배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 축협중앙회장이 총괄답변과 개별답변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답변요지

협동조합개혁은 우리나라 농업의 사활과 관계된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협동조합체제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과 통합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상당부분의 내용은 이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이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농민의 열망이었다.

정부는 1998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방안을 논의하였고, 농민단체 대표와 협동조합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3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래서 1998년 7월 28일 이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4개 협동조합중앙회끼리 협의하여

공동개혁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농축협중앙회는 9월말까지 합의를 못하고 12월말까지 시한을 달라고 해서, 12월말까지 연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해를 넘겨 2월말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3회에 걸쳐 7개월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3월 8일 부득불 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것이다. 정부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농협과 축협을 각각 동수로 참여시켜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축협은 처음에는 중앙회통합에도 반대하고 신경분리에도 반대하면서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다가, 1999년 3월 31일 별도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9년 5월 20일 축협조합장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통합중앙회체제를 수용하되 명칭은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축산분야 조합장대표자회의와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명칭문제는 농림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농업인협동조합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는 6월 19일 전임 축협중앙회장을 해임하고 7월 9일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했고, 별도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다시 축협의 입장으로 들고 나왔다. 이때는 이미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림부가 조정할 수는 없고 조정권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통합비용문제나 부실채권 인수문제 그리고 2001년 쇠고기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중재하거나 조정한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답변요지

농협은 중앙회통합의 직접비용으로 약 1,200억원, 회원조합의 합병지원비용으로 약

3,00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중앙회 및 회원농협의 부실채권 약 2조 5,000억원의 매입을 성업공사에 요청했으며,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감면을 희망하는 공문을 정부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통합법안이 지연되면 될 수록 농민단체와 농업인간의 반목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소모성 논쟁만 계속 될 것이다. 중앙회통합으로 중앙회를 저비용·고효율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대신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는 것이 이번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혁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현안문제에 힘을 모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개혁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난 3월에 농·축·삼협중앙회장이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중앙회통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인원조정은 동일비율로 하고, 명칭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 맡기자고 합의가 되었으며, 그 뒤에 실무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에 축협조합장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서 농협과 축협간의 통합논의가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렸다

2001년 쇠고기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WTO차기협상에 대해서도 통합중앙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농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중앙회의 통합유통체계를 활용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통합중앙회가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경분리가 될 경우 신용사업에서 경제·지도사업에 지원하는 연간 약 1,500억원의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며, 경제·지도사업 때문에 가능했던 약 13조5,000억원의 공금을 유치할 명분도 사라진다. 신용사업과 경제·지도사업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별도은행을 설립할 경우 약 1조원의 추가출자가 필요한데 농민조합원의

출자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신경분리는 시기상조다. 특히 신경분리는 농업인의 돈쌈지를 비농업분야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경분리는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비중이 5:1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신용사업은 지난 40년간의 사업누계이지만, 경제사업은 매년 새로 집계되는 사업총액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굳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연간 비중을 평가한다면 55:45가 될 것이다.

일본의 품목조합연합회는 사업기능이 없고 비사업기능만 있다. 우리도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는 사업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법인의 연합회로 할 것이 아니라 비사업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통합중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기능을 일원화하여 저비용·고효율체제로 탈바꿈시키고, 중앙회의 권한이나 사업은 회원조합으로 이관시켜 중앙회를 슬림화해 나가겠다. 각 부문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겠다.

□ 신규범 축협중앙회장의 답변요지

축협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강제통합, 단순통합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축협은 품목별·업종별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중앙회통합을 원한다. 81년에 농협에서 축협이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농협속에 묶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비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방안이 발표되고 농협과 축협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5월 3일에는 예금계좌 추적이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축협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정황적 판단을 했다.

또한 축협이 지난해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독립사업부제 방안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반개혁적인 것처럼 지적되기에 올해 4월 30일 축협 총회에서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로 수정하였고, 7월 14일 청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5

월 20일 전임 축협중앙회장이 수정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으나 법적으로 반영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축협의 입장이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로 굳어졌다.

축협은 2001년 쇠고기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급육 생산을 중심으로 농가에 대한 교육·지도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축협은 개혁다운 개혁을 원한다.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은 농협이 반대해서 무산되어 왔다. 농협도 축협도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대상인 농협이 중앙회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축협 때문에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농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5.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 도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대체토론 이후 1999년 8월 10일 제3차 회의를 통해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김기춘(한나라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윤한도(한나라당) 위원, 이상배(한나라당) 위원, 이우재(한나라당) 위원, 송훈석(새정치국민회의) 위원, 이길재(새정치국민회의) 위원, 최선영(새정치국민회의) 위원, 허남훈(자유민주연합) 위원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제206회 임시국회는 회기 마감시한이 8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적어도 8월 12일까지는 개혁입법 처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농협과 축협 등 이해당사자와 협개연, 국민연대 등 농업계의 입법요구활동이 총력대응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회는 이에 따른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과연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으며 진통을 겪어야 했다. 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농협과 축협의 의견

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비공식적인 회합을 갖기도 하고, 2차에 걸쳐 공식회의를 진행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열띤 격론을 벌여야 했다. 또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농·축협을 비롯하여 협개연·국민연대 등과도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타협을 중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개혁입법의 조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 조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축협은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국민연대의 중심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내부적으로 조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결국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마감 하루전인 1999년 8월 12일 14:30부터 21:00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통해 정부법안을 토대로 농협과 축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축협측의 의견을 대폭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여, 이 조정안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여 개혁입법을 의결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개혁입법의 처리를 주장했던 농협·협개연측에서는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고, 개혁입법의 처리를 반대했던 축협·국민연대측에서는 개혁입법의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개혁입법은 곧바로 8월 12일 21:20경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마감일인 8월 13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통과되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부법안 가운데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협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분야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회장이 임명토록 하고, 종전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중앙회가 인력감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농·축협중앙회 등의 인원규모 비율에 따라 감원·조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였다.

둘째, 법률안의 제명과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협동조합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수정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셋째, 신경분리와 관련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도록 하고, 동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및 농업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회원조합의 중앙회 사업참여를 확대하고자 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조합이 출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일선조합의 편의 도모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요청이 있는 때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농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중앙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한 때에는 역시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품목별 일선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법인 형태의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합회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품목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품목조합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앙회의 우선출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포함 시킴으로써 우선출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여덟째,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토록 명문화하여 조합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홉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품목조합 조합장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열번째, 중앙회장의 대리인 선임규정, 시행일 및 일선 조합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부칙사항과 조합장 선출·해임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였다.

제2절.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활동

1. 정부의 주요활동

농림부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설명하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의 심의를 포함하여 보완·수정·의결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1999년 6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농림부 국장 이상 간부들이 여야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회일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정부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농림부는 6월 23일 충북지역 6개 시군에서 축협조합장, 축협조합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개혁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내용과 농민에게 실익이 기대되는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설명회·간담회를 10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농·축협조합장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그리고 농업인 등 수천명 이상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일선에 잘못 알려진 사항을 바로 알리는 한편,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축협중앙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6월 17일과 18일에 걸쳐 축협중앙회에 업무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축협중앙회에 대규모 집회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고, 7월 7일에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림부는 축협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7월 10일에는 신임 축협중앙회장과 7월 21일과 26일에는 축협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면서 축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과 24일에는 축협조합장을 비롯하여 축협직원과 조합원에게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하여 개혁입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축협이 계속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강경한 대응활동을 전개하자 8월 3일에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파업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축협중앙회가 파업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업무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축협이 광고, 선전물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농림부장관 등 개인에 대한 음해와 비방행위를 지속하자 8월 4일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표 5-2>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주요활동

일 자	주요 활동 경과
1999. 6. 15	○ 정부법안의 내용 설명 및 개혁입법 처리의 협조 요청
- 7. 22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및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
6. 15	○ 축협중앙회에 개인인신공격성 광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통보
6. 17	○ 축협중앙회의 업무정상화 촉구
6. 18	○ 축협중앙회의 업무정상화 촉구
6. 21	○ 전농 충남도연맹 주최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참석(기획관리실장)
6. 22	○ 경기도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토론회 참석(협동조합과장)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6. 23 -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개혁방안 지역설명회·간담회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의 시군단위별로 100회 이상 개최 - 농·축협조합장, 농·축협 임직원, 조합원(축산농가 포함 농업인) 등 약 10,000명 이상과 대화의 시간 마련
6. 2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법안 설명
6. 25	○축협중앙회에 협동조합 대토론회 개최 제의(시간 및 장소 위임)
6. 28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한 당정회의 개최
6. 30	○축협중앙회에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도록 촉구
7. 1	○한농연 중앙임원 및 도연합회장과의 간담회(장관)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장 및 협개연 상임대표단과의 간담회(차관)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당사 점거농성 등 극한행동 자제 촉구, 불법과업 계획 철회 강력히 촉구
7. 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 법안 제안설명(장관)
7. 10	○신임 축협중앙회장과와의 간담회(장관)
7. 12	○경북 성주지역 농협조합장과 간담회(차관)
7. 1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참석(차관)
1999. 7. 16	○일일 명예장관 초청 간담회(장관)
7. 19	○협개연과의 조찬간담회(농업정책국장)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기획관리실장) ○정농회 회원 250명과의 간담회(차관보)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전상무 등 250명과의 간담회(협동조합과장) ○축협조합장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협조 당부 서신 발송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직원 및 조합원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협조당부 서신 발송 ○농민단체장 초청 간담회(장관)
7. 26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농업정책국장)
8. 3	○축협중앙회에 파업대책 강구 및 업무정상화 촉구
8. 4	○축협중앙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개사과 촉구
8. 6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참석,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장관)
8. 1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참석,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의결(장관)

2. 농협측의 주요활동

농협은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과 동시에 개혁입법의 관철을 위해 대국회 입법요구활동에 총력을 경주했다. 농협은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통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보할 것 △우선출자대상에 국가와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 등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농협은 개혁입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 농업계의 반목과 불신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농협측의 기본입장은 1999년 7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한 손은남 농협중앙회 부회장의 발언과 8월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에서 농협중앙회 대표로 참석했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발표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농협중앙회는 6월 23일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농정관련 결의대회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농협의 기본입장을 담은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조합장 대표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하고 농협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 지역별로 입법관련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농협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농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 지역별로 개혁입법의 조기통과를 위한 특별간담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농협의 입장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도 입법과정에서 농협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6월 25일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총력대응을 전개해 나갔다. 그전에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6월 18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광고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제205회 임시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7월 5일 개혁입법의 조기통과를 위한 '대국회 농정활동 추진반'을 구성하는 한편, 7월 6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농업인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7월 7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

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혁입법의 조기통과를 요청했다. 7월 9일에는 협개연과 공동으로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전국의 농민과 농협 관계자 등 약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및 통합비용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대국회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제205회 임시국회가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각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개혁입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206회 임시국회 개원을 대비하여 7월 26일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206회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중앙회는 8월 3일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개혁입법의 관철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갖추었으며,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농협 비상대책위원회도 8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기간중 입법활동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5-3〉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농협측의 주요활동

일 자	주요 활동 경과
1999. 6. 16	○대국회 활동 전개(상임위 소속 의원 대상 입법활동)
6. 18	○한나라당 총재와의 간담회 개최 ○농협중앙회 노조, 축협중앙회 노조 광고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행정실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제2차 입법관련 국회의원 초청 지역간담회 개최(6.16-6.18)
6. 23	○임시 대의원회 및 농정관련 결의대회 개최 및 대국회 건의문 채택 ○농협조합장 대표단 국회방문 및 개혁입법에 대한 입장 전달
6. 24	○통합협동조합법 조기 입법추진을 위한 지역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 30	- 전국의 각 지역단위별로 간담회 또는 결의대회 개최
6. 25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 총력 투쟁 전개하기로 의결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7. 5	○대국회 농정활동 추진반 구성 및 운영
7. 6	○국회의원에게 농업인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7. 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7. 9	○협개연과 공동으로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및 통합비용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 - 결의문 및 대국회 건의문 채택 - 여의도 저수부지, 약 10명 참가(전국 농민, 농협 관계자)
7. 1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참석(부회장)
7. 15	○축협중앙회장과의 간담회
7. 16	○지역단위 개혁입법 촉구활동(7.16-7.19)
7. 26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7. 29	○기자 설명회 개최(통합의 당위성 및 조기입법 필요성)
8. 3	○제206회 임시국회 통합협동조합법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 및 운영, 대국회 활동 집중(8.3-8.12) ○농협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임시국회 입법활동 총력대응 결의
8. 5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의 간담회 참석(회장)
8. 6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 참석(회장)

3. 축협측의 주요활동

축협은 정부법안이 단순·강제통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축협은 정부법안의 대안으로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가 축협의 입장이라는 점도 밝혔다. 따라서 축협은 정부법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축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축협측의 기본입장은 1999년 7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에 참가했던 허삼웅 축협중앙회 상무의 발언과 8월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에서 축협중앙회 대표로 참석했던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의 발표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축협중앙회는 5월 20일 농림부에 중앙회통합을 전제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던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을 해임하였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당시 박순용 회장이 중앙회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축협의 입장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박순용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며, 축협중앙회는 6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75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52명, 기권 3명으로 박순용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신임 중앙회장이 선출되기전까지 이범섭 부회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였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6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의 회장 해임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은 6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임 회장은 강제통합 저지의 신념과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그 자격요건을 밝혔다. 축협중앙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등록을 거쳐 7월 9일 신임 축협중앙회장에 신구범 후보를 선출하였다.

신임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은 통합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에 전념하였다. 7월 15일 농협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필두로 7월 20일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하였고, 7월 27일에는 축산관련 단체장과, 7월 28일에는 협동조합 관련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7월 30일에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의 입장 관철과 개혁입법 통과 반대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7월 9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전남지역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대통령의 광양발언은 조작된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개연 등으로부터 공개질의를 비롯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축협중앙회는 신임 중앙회장의 선출과 함께 개혁입법 반대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축협중앙회는 7월 22일 국회의원에게 개혁입법에 대한 축협의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보냈으며, 7월 30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축협중앙회의 입장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다시 8월 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부법안에 따른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8월 11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만약 개혁입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회원조합이 중앙회에서 탈퇴하는 등 끝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결의했다.

그리고 축협조합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축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개혁입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했다. 축협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9일 박순용 축협중앙회 장의 해임의결을 주도하였으며, 6월 29일 축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강제통합에 반대한 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7월 5일 성명을 통해 협개연에 대해 농심분열행위를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같이 7월 6일부터 한나라당사에서 단식농성 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출신 축협조합장들은 한국농 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 가운데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축산경영인연합회를 조직하려고 시도하였으며, 8월 3일 축산경영인이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경영인연합회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 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협개연 등으로부터 농민단체 분열행위로 규정되어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 움직임은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로 잠잠해졌다.

그리고 협개연 등으로부터 축협의 지원하에 결성되어 대표성도 실체도 없는 조직으 로 비판받았던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회장 유인명)는 농림부, 농민단체,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축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혁입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 조했다.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6월 22일 농림부를 항의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협 개연 소속 농민단체를 항의방문하였다. 이로 인해 협개연 등으로부터 “축협조합원대 표자협의회의 협개연 참여단체 방문 및 협박에 대한 항의 및 사과요구”를 받기도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7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방문하 고, 7월 20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강제통합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혁입법의 국회처리과정에서 축협의 강경대응을 주도한 것은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었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6월 15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조폐창음모가 농·축협 강제통합에도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6월 23일부터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전국 국토 도보 순례’를 개시하였으며, 6월 24일 강제통합에 항의하는 축협 직원의 삭발운동을 전개하였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7월 1일 ‘협동조합 강제통합저지 축산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졌으며, 7월 6일부터 한나라당사에서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전개하였고, 7월 8일부터는 자유민주연합 당사에서도 단식농성을 벌였다. 또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7월 12일부터 여야 각 정당의 시도지부와 지구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7월 9일 파업계획을 발표하고 7월 13일과 14일에 걸쳐 부분적인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7월 29일부터 거주지 및 출신지 지역구 의원에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편지보내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8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계획을 가졌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잠정유보되었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제206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중에 8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인협동조합법이 강행통과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정부법안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농축산업협동조합법안을 7월 14일 국회에 입법청원(김중위 의원 소개)하였다. 축협의 입법청원안은 7월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8월 12일 축협의 의견을 대폭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부법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축협의 입법청원안은 폐기되었다.

8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혁입법이 의결되는 순간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은 회의장 앞으로 걸어나와 즉석에서 할복을 기도하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축협중앙회장의 할복에 흥분한 축협 직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

하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30여명이 회의장에 2시간 40분동안 간혀 있기도 했다. 한편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8월 13일 개혁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조건부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축협조합장도 8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혁입법의 통과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축협중앙회는 8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며, 통합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표 5-4〉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축협측의 주요활동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1999. 6. 15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대국회 활동 개시 ○축협중앙회 노조·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일간지 광고(제2의 조폐창 음모가 농축협 강제통합에도 자행되고 있다)
6. 19	○축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박순용 중앙회장 해임 의결 - 참석 175명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52명, 기권 3명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총회의 회장 해임의결을 환영한다)
6. 22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농림부에 항의방문 ○축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6. 23	○축협중앙회 노조,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국토도보순례 개시
6. 24	○축협중앙회 노조, 강제통합 항의 삭발운동 전개
6. 28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신임회장은 경제통합 저지의 신념과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어야 한다) ○축협조합장 일동 성명서 및 호소문 발표(단순통합에 반대한다)
7. 1	○축협중앙회 노조, 협동조합 강제통합저지 축산농민 총궐기대회 개최
7. 5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림부와 협개연의 비이성적 행위 규탄)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발표(협개연은 농심분열행위 중단하라)
7. 6	○한농연 출신 축협조합장 축산경영인연합회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1999. 7. 7	○축협중앙회 노조·축협 비상대책위원회, 한나라당에서 단식농성 돌입 ○축협중앙회 광고(어용 관계 집회를 철회하라)
7. 8	○축협중앙회 노조, 자민련 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
7. 9	○축협중앙회 신임 신구범 중앙회장 선출 ○축협중앙회 노조, 파업계획 발표
7. 12	○축협중앙회 노조, 각 정당 시도지부 및 농림해양수산위원 지역구 농성
7. 13	○축협중앙회, 국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참석(기획관리상무) ○축협중앙회 노조, 부분파업 돌입(7.13-7.14)
7. 14	○축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청원 국회제출
7. 15	○축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과 간담회
7. 16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국민회의 방문
7. 20	○축협중앙회 노조, 명동성당 천막농성 철회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농협중앙회 방문
7. 22	○축협중앙회장, 자민련 총재 방문 및 입장 전달
7. 27	○축협중앙회, 국회의원에게 진정서 송부
7. 28	○축협중앙회, 농축산 관련 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7. 29	○축협중앙회,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7. 30	○축협중앙회 노조, 거주지 및 출신지 지역구 의원에 편지보내기운동 추진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축협의 입장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축협중앙회, 기자간담회 개최 ○축협중앙회 노조, 8월 3일 예정이던 집회계획 잠정유보
8. 2	○축협조합장,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8. 3	- 축산경영인연합회 발기인 선출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한다)
8. 4	○축협중앙회, 국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체토론 참석(축협중앙회장)
8. 6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통합법안 강행통과시 총파업대응 선언)
8. 11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중앙회 탈퇴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의결시 할복 기도

일 자	주요 활동 경과
8. 12	○축협중앙회 노조, 국회앞 시위 및 조건부 총파업 선언
8. 13	○전국축협조합장 성명발표(잘못된 권력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천명)
1999. 8. 13	○축협조합장 전체회의 개최(법을 지키면서 강력한 투쟁 전개) ○축협중앙회 기자회견(외압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요구, 헌법 소원 제기 천명,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 발표)
8. 14	○축협중앙회장 담화문 발표(파업자제 및 지속적 투쟁 전개)
8. 16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업협동조합법을 폐기하라)
8. 17	○축협중앙회 노조 집회(국회, 세종로, 명동성당)
8. 18	○축협중앙회 노조, 민주노총과 연대집회

4. 협개연의 입장과 활동

협개연은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협개연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각 정당의 총선전략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2000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는 개혁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개혁입법의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협개연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협개연은 비록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농·축협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한 개혁입법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개혁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협개연의 이같은 기본입장은 1999년 7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기본인식하에 협개연은 6월 18일 한나라당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7월 1일 신문광고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으며, 7월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혁입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복태 부회장은 7월 6일 국회앞에서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고, 협개연의 장원석 상임집행위원장은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개혁입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협개연은 개혁입법이 일선 농민의 개혁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다수의 농민이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7월 9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명의 농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및 통합비용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협개연은 결의문과 대국회 건의문을 통해 "개혁입법은 5백만 농민의 개혁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제205회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협개연은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 지연은 5백만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7월 12일에는 협개연이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각 정당에게 개혁입법의 초기처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경남지역 농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 개혁입법의 조기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7월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전국 시군회장단 약 240명이 7월 13일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협동조합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205회 임시국회가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입법도 처리되지 못한 채 폐회되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개혁입법을 처리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협개연의 상임대표단과 농민단체장도 7월 19일과 21일에 각각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한

나라당 총재를 방문하여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개혁입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제206회 임시국회 소집 계획이 발표되자 협개연 상임대표단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206회 임시국회가 개원되자 협개연은 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입법요구활동을 전개하였다. 협개연은 8월 5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긴급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혁입법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8월 6일 성명을 발표하여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8월 7일 성명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일부 의원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도 8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개혁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의원들이 농협과 축협의 입장을 조정하여 중재안을 도출했으나, 축협은 국회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협개연은 8월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합리적 절충안 마저 거부한 축협은 더 이상 개혁의사가 없으므로 여야는 개혁법안을 보완하여 즉각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이 협개연은 국회의 개혁입법 조기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축협 등 개혁반대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협개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그리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은 6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협중앙회 노조가 제2의 조폐창 음모 운운하는 일간지 광고를 낸 것에 대해 반개혁적 입장을 은폐하는 광고라고 규탄하였다. 대한양계협회 등 7개 축산관련단체도 6월 16일 성명을 통해 “축협은 개혁을 허위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흥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역시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 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협회의 부도덕한 광고에 대한 개탄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개연은 6월 23일 성명을 통해 “축협조합원대표자협회가 협개연에 가입한 농민단체를 방문하여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협개연은 축협측이 대규모 집회, 여야 각 정당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지구당에서 단식농성, 총파업계획 발표 등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개혁열망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반개혁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6월 26일 성명을 통해 7월 1일로 예정된 축협의 대규모 집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7월 7일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단식농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며, 7월 14일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연대하여 개혁입법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7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축협측 참가자들이 협개연 대표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협개연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각 성명을 통해 “축협의 비상식적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강력히 규탄하며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축협 지도부는 사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협개연은 7월 30일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장이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광양발언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축협중앙회장의 비이성적 반개혁행위를 규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 축협조합장들이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회원 가운데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축산경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협개연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축협은 농민단체 분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는 8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축산경영인연합회 결성 움직임의 배후에는 축협중앙회가 있으며, 한농연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협개연은 8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혁입법을 계기로 농업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농업계의 대립과 반목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소하고 WTO차기협상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표 5-5〉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협개연의 주요활동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1999. 6. 15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조합원대표자협의회 반개혁적 광고 규탄)
1999. 6. 15	○ 한농연 성명발표(제2조폐창 음모 운운한 축협의 반개혁적 광고 규탄)
6. 16	○ 농업기술자협회 성명발표(반개혁에 앞장서는 축협노조와 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즉각 사과하라)
	○ 양계협회 등 7개 축산관련단체 성명발표(축협은 개혁을 허위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6. 18	○ 흥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성명발표(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의 부도덕한 광고를 개탄한다)
6. 20	○ 협개연 상임대표단, 한나라당 총재와 간담회
6. 22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6.19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
	○ 경기도 협개연,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개최
6. 24	○ 협개연,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활자료집 각 대학 총학생회 배포
6. 26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의 협박에 대한 사과요구)
7. 1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와 비대위는 7.1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 협개연 신문광고(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 요구)
7. 2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7.1집회는 기득권 고수하려는 반개혁적 행동)
7. 6	○ 한농연 성명발표(개혁법안 통과 반대의원에 대한 규탄)
7. 7	○ 한농연 박복태 부회장 개혁입법 촉구 국회앞 단식농성
	○ 협개연 기자회견(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7. 8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의 단식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7. 9	○ 협개연 성명발표(농림위 의사일정지연은 5백만 농민에 대한 기만)
	○ 협개연,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촉구 통합비용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
7. 12	- 여의도 저수부지(전국에서 약 10만명 참석)
	○ 경남지역 농민단체 기자회견(한나라당에 개혁입법 촉구)
	○ 협개연 기자회견(개혁입법의 조기처리 촉구)
	○ 경실련 성명발표(국회에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요구)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연,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협동조합개혁 촉구) ○ 협개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참석 ○ 협개연 성명발표(공청회에서 폭언·협박 자행한 축협지도부는 사죄) ○ 협개연 상임집행위원장 단식농성 돌입(7.13-7.21)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발표(축협의 비상식적 언어폭력, 인격모독 등 폭력행사 규탄)
1999.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 노조의 파업 규탄)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상임대표단,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방문 및 입장 전달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장, 한나라당 총재 방문 및 입장 전달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연 성명발표(임시국회 조속히 소집하여 개혁입법 처리하라)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전농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라)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상임대표단,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간담회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와 전농이 8.3 연대집회 취소요구)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장의 비이성적 반개혁책동을 규탄,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 처벌 요구)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한농연 분열 음모 규탄)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거짓선전과 농민단체 분열행위 공개질의)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연 기자회견(축협의 축산경영인조직화에 대한 입장)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긴급건의문 전달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은 억지주장과 농민단체 분열행위 중단하라) ○ 협개연 성명발표(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의원 낙선운동 선언)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실련 성명발표(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의 무소신, 직무유기 우려) ○ 농업변호사 모임 성명발표(개혁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국회의 합리적 절충안 마저 거부한 축협은 더 이상 개혁의사가 없으므로 여야는 개혁법안을 보완하여 즉각 처리하라)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개혁입법을 계기로 농업계가 하나되어야 한다)

5. 국민연대의 입장과 활동

국민연대는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정부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연대는 정부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연대가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가 제시한 방안은 품목별·업종별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임시국회 기간중에 정부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협개연의 이같은 기본입장은 1999년 7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국민연대는 6월 23일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대가 마련한 (가칭)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시했다. 국민연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김봉호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이 소개하려다 이를 철회함에 따라 소개의원이 없게 되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안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의견으로 참고되었다.

국민연대는 정부법안을 철회하고 국민연대가 제시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협동조합개혁을 '올바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월 2일과 3일 동안 각 지역별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월 3일 각 도단위별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민연대는 7월 5일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는 요지로 7월 8일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7월 16일 '협동조합개혁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206회 임시국회가 개원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8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정부법안을 반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8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악의 우려가 있는 정부법안 철회 및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8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려는 중재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민연대의 최소요구수준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대의 중심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회의 중재안에 대해 내부의견이 엇갈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8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8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변칙·강행처리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 5-6〉 국회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국민연대의 주요활동

일 자	주 요 활 동 경 과
1999. 6. 21	○전농 충남도연맹, 협동조합개혁토론회 개최
6. 23	○국민연대,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입법청원운동 선언
7. 2	○전국농민회총연맹, 각 지역별 농민대회 개최(7.2-7.3)
7. 3	○전국농민회총연맹, 도단위 농민대회 개최
7. 5	○국민연대,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
7. 8	○전국농민회총연맹, 국회앞 시위 및 성명(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7. 16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 개최
8. 5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발표(국회는 정부법안을 반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민교협·민변·참여연대·학단협 성명발표(개악의 우려가 있는 정부법안 철회 및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 요구)
8. 10	○국민연대 성명발표(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8. 16	○국민연대 성명발표(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변칙·강행처리 규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6. 개혁입법 반대주장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입법의 처리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인 협동조합법안 공청회(1999.7.13)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체토론(1999.8.6) 등에서 축협·국민연대 등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정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축협과 국민연대의 반대논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 및 대체토론에서 살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같은 반대주장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회 통합이 전문화·세분화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축협중앙회가 주장하는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축산업의 2대 분류를 기준으로 양자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데 오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과 축산업은 별개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지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전문화를 얘기하면서 축산·농업으로 양분하여, 축산업을 담당하니까 전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화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축산업의 전문화는 양돈·한우·양계·낙농 등 축종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 협동조합법은 축종별·품목별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통합중앙회는 회원조합 및 조합원을 지도·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양돈조합연합회, 낙농조합연합회, 화훼조합연합회 등 품목별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선조합은 실제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생산·판매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된다.

그동안 축협중앙회의 실제 행동은 전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우조합을 만드는데 축협중앙회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였고,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였으며, 축산관련 단체들의 자조금 조성 계획도 반대하는 등 전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현재의 축협중앙회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일선조합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중앙회 조직 유지를 위해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분야에도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역량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부법안은 중앙회 비대화, 조직의 관료화, 돈장사 위주의 폐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각 3개의 중앙회로 분리·운영되면 효율적이고, 중복·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중앙회로 운영하게 되면 비대화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업분야의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기초조직으로서 일선조합을 품목별·업종별로 다양하게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것을 비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서비스를 농협이 독점하게 되어 관료화된다는 주장은 통합대상이 아닌 일선 농·축협 통합을 전제로 한 허위주장인 것이다. 게다가 일선조합은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현행 명칭과 조직을 유지한 채 존속되므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경분리가 되지않았다고 해서 돈장사 치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협동조합에 은행업무를 허용한 취지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그 이익금을 회원조합 및 조합원에게 환원하는데 있으며, 신용사업을 중앙회 내부에 운영하느냐, 별도 은행화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98년말 기준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수익금은 지도사업비로 1,289억원, 회원조합 지원금으로 2,482억원을 투입하였다.

3) 통합 소요비용은 총4조 9,036억원임에 반해 정부 지원은 용자 600억원에 불과하며, 전산·장표 등의 통합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는 WTO 2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합에 소요되는 총비용 4조 9,036억원은 대부분 부실채권 정리비용으로서 농·축협중앙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이며, 협동조합중앙회 통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성업공사를 통하여 채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한목소리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이 농업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개방압력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고, 실례로 WTO 농산물 차기협상에 서 쌀문제는 거론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을 양보할 것이라는 축협중앙회의 주장은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4) 이번 통합은 농·축·임·인삼·수협 등 5개 협동조합중 사실상 농·축협만 통합되는 불완전한 통합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농·축·인삼협과 임협 그리고 수협은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상호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협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60% 이상이 소재산주가 아닌 부채산주이며, 정부대행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금을 얻고 있는 점에서 협동조합적 성격보다는 공공조합의 특성이 강한 조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협동조합개혁 과정에서 산림조합으로 그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기로 하고 임협법을 전면 개정중에 있으며, 수협 또한 조합원으로 일반 어민외에 수산업 가공업자도 포함되어 있고, 수산업의 특성상 농·축산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농·축·인삼협의 경우에는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의 중복가입율이 80% 이상으로 복합영농체제의 우리 농업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농협과 삼협은 100% 조합원이 중복되는 등 별도로 그 중앙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실익이 없다. 이와 같은 각 업종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농정·지도·지원기능을 일원화하려는 차원에서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5)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은 생산자 자주조직인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통합농협법은 3개 중앙회의 통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선 축협을 농협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포함하는 500만 농업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청회,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절대 다수의 농업인이 중

양회 통합에 찬성하였다.

또한 중앙회는 일선회원조합과 달리 법률로만 해산이 가능하다. 농민들의 자주적·인적단체인 일선 협동조합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 해산이 가능하지만, 일선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그 지도·조정·권익대변·은행 업무수행 등의 공적인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그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법률로만 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신탁법, 새마을금고법, 수협법 등 많은 입법례에서 중앙회에 대해 그 회원인 신탁, 새마을금고, 수협 등과는 달리 그 해산을 법률로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된 통합농협법에 의해 중앙회를 해산하는 것이므로 결코 강제통합이 아니다.

6) 공청회의 일방·독선적 진행,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동원, 여론조작 등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번 협동조합개혁은 수많은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찬성·반대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 균형되게 참여하였으며, 특히 축협측 참가자는 축협중앙회의 추천을 받는 등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였고, 간담회, 토론회 과정에서 축협중앙회는 자기 입장을 아무런 방해없이 충분히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축협측 의견이 비현실적·비합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개혁 추진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입장을 번복해 왔으며, 외압이 있었다면 이러한 입장번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신·경분리반대→신·경분리 및 연합회 체제→통합중앙회 체제→통합반대→신·경분리). 한편, 감사원 감사는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축협뿐만 아니라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농수협 등 모든 관련기관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감사 결과 그 비리가 심각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농림부도 1급을 포함한 7명이나 퇴직하는 등 그 휴우증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이

마치 자기들만 감사·수사 받고 꺾박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농협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는데, 국회차원의 사상유례없는 공청회와 상임위 여·야대표의원에 의한 수많은 중재활동,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축협 주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협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가 여야를 떠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만든 법률에도 불구하고 축협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7) 정부법안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국가의 농어민자조조직 보호의무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조정·지원 등 은행업무 수행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선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그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선협동조합과는 그 존속·해산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되고 있다. 중앙회는 법률로만 해산하도록 하는 현행 축협법 제 11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통합농협법 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개혁입법에서도 일선조합의 재산은 조합자율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조합 재산을 신설 중앙회의 소유로 하지 않고, 일선축협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통합중앙회에 승계되며, 축협조합들의 출자금 환급청구권도 당연 보장되므로 재산권 침해는 없다.

셋째,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새 중앙회로 통합되더라도 기존의 축협중앙회의 업무는 그대로 신설 중앙회로 이관되며, 기존의 축협중앙회 직원들도 새 중앙회 소속직원이 되므로, 근로의 내용이나 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축협중앙회 임직원들만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넷째, 고비용·저효율의 3개 중앙회 체제를 타파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통합중앙회를 설립함으로써 절감되는 경영관리비 등 재원을 일선조합에 환원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기존 3개 중앙회 직원의 승계를 보장하여 통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적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통합농협법은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고 있다. 더우기 3개 중앙회의 통합으로 인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다섯째, 개혁입법은 중앙회 통합으로 인한 직원이나 조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헌법상의 국가의 농어민자조조직 보호육성의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

8) 공통·중복업무는 통합, 고유업무는 분리하여 독립법인화하는 주장에 대하여

축협중앙회의 주장은 3개 중앙회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도·농정·감사업무는 별도의 중앙회로 독립하고, 신용사업은 농업은행으로 독립, 경제사업은 농협연합회·축협연합회로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축협주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동조합에서 신용사업을 당장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1조원 이상의 추가자본 조달이 곤란(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자본 미분리)하고 신용사업의 이익금 없이는 지도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농업인들이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또, 농협연합회와 축협연합회는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인데, 축산이라고 다 같은 축산이 아니다. 실례로 낙농업과 양돈업은 사료에서부터 사양관리,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공통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초기 일정기간 동안 중앙회가 지도·감사·농정, 경제 및 신용사업을 통합 수행하고, 한우조합 등 품목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면 경제사업은 점차 연합회로 이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히려 협동조합을 농협과 축협으로 양분하게 되면 더욱 더 품목별연합회 설립이 어려울 것이다.

9)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22개 농민·시민단체가 통합에 반대하고 친농림부 성향의 60여개 단체가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축협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국민연대 가입 회원 22개 단체중 농업관련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단지 3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해 협동조합개혁 논의과정에서 중앙회 통합을 줄곧 정부에 요청하다가 새집행부 교체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경분리를 주장한 단체로서 집행부가 누구냐에 따라 공식의견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나머지 단체들은 노동, 환경, 의료, 사회, 교육, 통일 분야와 관련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나 식견이 많지 않다. 그러나,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협력하였던 60여개 단체는 실질적으로 주요 농업인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축산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농업단체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농업분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이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1. 정부제출법안과 국회의결법안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국회는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진통을 거듭하면서 조정안을 도출하여 중재노력을 하였다.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정부법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이 내용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부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쟁점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특히 축산부분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특례조항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국회가 수정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5-7> 참조)

첫째, 통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이 수정되었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각각 ‘농업인협동조합법’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는 이를 수정하여 각각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의결하였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및 중앙회 회원가입 승낙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토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중앙회에 회원가입 신청시에도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셋째, 조합원의 조합이용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 등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넷째, 조합장 및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조합장 및 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당해 조합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다섯째, 품목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축산업의 업종을 명확하게 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축산업의 업종은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으로 명시하여 축산업의 업종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여섯째, 중앙회의 소송대리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회장 또는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직원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일곱째, 축산경제사업부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복수추천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중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외의 재산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여덟째, 품목조합연합회의 형식을 수정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협의체성격의 비법인연합회를 중양회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는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출자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홉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전 실험법 부칙에 의하여 운영된 안전기금을 인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열번째, 우선출자제도 출자대상을 수정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정부와 공동단체는 출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는 “우선출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외국의 운용선례를 감안하여 우선출자대상에 국가와 공공단체를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열한번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방법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유통지원자금의 운용방법을 명시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열두째, 신경분리에 관한 부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신경분리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의뢰하고, 농림부 장관은 법시행후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하며, 신경분리 추진을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열셋째, 회원조합의 중앙회 사업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중앙회·회원조합이 공동운영하는 경제사업에 대하여 2003년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조합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표 5-7〉 정부제출법안과 국회의결법안의 비교

정부제출법안(1999.6.14)	국회의결법안(1999.8.13)
<input type="checkbox"/> 법률명 : 농업인협동조합법 중앙회 명칭 :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법률명 :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 명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input type="checkbox"/>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중앙회에 회원가입 신청시에도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도록 함 - 다만, 법시행 당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가입 불가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 등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조합장 및 이사가 정관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당해 조합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함

정부제출법안(1999.6.14)	국회의결법안(1999.8.13)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대표자회의에서 복수추천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함</p> <p><input type="checkbox"/> 협의체적 성격의 비법인 연합회를 중앙회내에 구성함</p>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 신탁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 안전기금으로 운영</p> <p><input type="checkbox"/> 우선출자제도 출자대상에서 국가와 공공단체를 제외함</p>	<p><input type="checkbox"/> 축산업의 업종은 한우사육업,낙농업, 양돈업,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으로 명시하여 축산업의 업종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p> <p><input type="checkbox"/> 회장 또는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하고,</p> <p><input type="checkbox"/>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외의 재산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토록하여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함</p> <p><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출자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 있는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농협법내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신탁법 부칙에 의하여 운영된 안전기금을 인수하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우선출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외국의 운용선례를 감안하여 우선출자대상 제한규정을 수정하여 정부와 공공단체를 출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p>

정부제출법안(1999.6.14)	국회의결법안(1999.8.13)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출자증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우선출자명부에 등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p><input type="checkbox"/> 유통지원자금의 운용방법을 명시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 농산물 및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 매취사업 - 기타 유통관련 사업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운영하는 경제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조합이 출자하도록 조치함</p> <p><input type="checkbox"/>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경분리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의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은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하며, - 신경분리 추진을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함

2. 농업협동조합법과 각계 입장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해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삼협중앙회 등 이해당사자와 협개연·국민연대 등 주요 농민단체가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이같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안을 도출하여 중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에 각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는 뒤의 <표 5-8>에 잘 나타나 있다.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별로 또는 주요 단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1)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의 반영여부

첫째, 통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각각 '농업인협동조합법'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국민연대는 각각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장하였고, 축협은 '농축산업협동조합법'과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장하였다. 국회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는 농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둘째, 중앙회 조직체계와 신경분리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일원화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며 신용사업은 별도은행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농협·협개연은 정부제출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축협·국민연대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로서 농협연합회·축협연합회·삼협연합회,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은행 등 별도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를 주장하였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경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의뢰를 하고, 농림부장관은 법시행후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

에 따른 조치를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하며, 신경분리 추진을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셋째, 통합비용의 지원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국가가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설립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농협·축협·협개연·국민연대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부실채권 정리 및 설립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정부지원금액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국회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하였다.

넷째, 도단위 지역본부의 개편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1단계로 도단위 조합장협의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 지역본부를 도연합회로 전환하여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도 이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섯째,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부문별로 심의기구 성격의 조합장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대표기구의 명칭·구성·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조합장대표기구의 성격을 심의·의결기구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협은 조합장대표기구의 설치에 반대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농협과 축협이 의견을 절충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여섯째, 경영위원회 설치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정부는 경영위원회를 중앙회의 내부기구로 정관에 반영하겠다는 협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축협은 농업경제·축산경제 사업부문별로 심의·의결기구 성격의 경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협은 경영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는 중앙회 내부기구로 하여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일곱째,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출마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정부제출법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국민연대는 5개 별도법인의 중앙회장(조합원), 연합회장(조합장), 은행 이사장(조합장·연합회장), 은행장(외부 전문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중앙회 조직체제와 관련하여 정부제출법안을 수용하여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문제로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여덟째,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중앙회장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련한 대표이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농협·협개연은 중앙회장이 부회장의 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권을 가지고, 이사회는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축협은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을 이사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연합회장 및 은행 이사장은 대표권만 갖고 모든 업무집행권은 전문경영인인 전무이사 및 은행장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농협과 축협의 의견을 조정했다고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하였다.

아홉째, 대표이사 선임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관 조합장대표 심의기구에서 복수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대표이사 모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축협은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삼협은 인삼사업본부장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축산경제사업부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축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된 자를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에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회의 재산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토록하여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결했다.

열번제, 집행간부의 임명방법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집행간부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집행간부를 임면하는 의견을, 축협은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부문 집행간부의 임면권을 갖는 방안을, 삼협은 인삼분야 집행간부는 인삼사업본부장이 임면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개연은 대표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한번제, 중앙회 이사회 구성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지역대표성(도단위 조합장협의회회장 혹은 도연합회장)과 품목대표성(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협개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두제, 통합설립위원회 구성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통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축협·국민연대는 농·축협 동수로 통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축협·국민연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세제,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 직원의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직원의 경력·능력·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축협은 정부제출법안대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하였다. 국회는 축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네제, 품목별·업종별조합연합회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업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조합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종조합연합회는 협의체 성격의 비법인 연합회로 되어 있었다. 농협은 업종조합협의회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협개연은 정부제출법안대로 비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비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민연대는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국민연대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인격을 갖는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했다.

열다섯째, 중앙회장의 지도권 및 조합감사위원회 설치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중앙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 기능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포괄적 지도권(지도·감사·경영평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축협·국민연대는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의 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기구로서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각계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여섯째,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위임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의 감독권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는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농협은 정부제출법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농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일곱째, 경영평가단 설치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은 회원조합의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협·축협은 경영평가단 설치에 반대하며 조합자율에

말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로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여덟째,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업무정지, 합병명령, 설립인가 취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
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국민연대는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을 삭제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일선조합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열아홉째, 복수조합원제도 및 이중조합원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이중조합간
에는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인삼농가의 경우 이중가입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며, 완
전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이중조합 가입
금지를 엄격히 하여 농협과 축협에 이중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으며, 농협·협개연·국민연대는 정부제출법안대로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의 조합에
대해서만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이중간의 조합에 대해서는 이중가입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삼협도 정부제출법안대로 인삼경작의 특성상 인삼농가
의 경우 이중가입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개연·
국민연대는 완전한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무번째, 상임감사제 도입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조합에 상임감사를 둘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국민연대는 정부제출법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농협·축협은 상임감사제의 도입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물한번째, 전문지도사 도입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회원조합이 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협개연·국민연대는 회원조합이 조합의 지도사업을 위해 주요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협·축협은 전문지도사 도입에 반대하면서
조합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물두째, 조직변경시 신용사업 유지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지역조합이 업종 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신용사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역시 축협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축협도 정부제출법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축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물셋째, 조합장 출마자격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 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 이상)계속 보유해야만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협개연은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물넷째, 합병지원 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개연은 합병의 직접비용까지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민연대는 정부제출법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스물다섯째, 공개토론회 도입문제이다. 정부제출법안에는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축협은 공개토론회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개연·국민연대는 정부제출법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제출법안대로 의결했다.

2) 주요 단체별 의견의 반영여부

국회가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주요 단체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쟁점사항에 대해 주요 단체별로 얼마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시했던 의견 가운데 △중앙회의 통합 △독립 사업부제 실시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 명칭 △통합비용의 국고지원 △중앙회장 출마자격 조합원으로 제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에 위임 △이종조합간

에는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등 7건이 국회에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중앙회에 경영위원회 설치반대 △중앙회장의 업무조정권 유지 △중앙회 집행간부의 임면방식 △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포괄적 지도권 유지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반대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반대 △조합합병비용의 국고지원 △조합장 출마자격 강화(조합원 신분 5년 이상 보유) 등 8건이 부분적으로 수정반영되었다. 그러나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반대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선임방식 △통합시 직원의 처우 및 복무관계처리조항 △업종별조합협의회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상임감사제 삭제 △조합장 선거방법중 공개토론회 삭제 등 8건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축협중앙회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시했던 의견 가운데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임방식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중앙회 통합시 손실보전 지원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 △포괄적 고용승계 △통합설립위원회에 농축협 동수로 구성 △지역축협의 업종조합 전환시 신용사업 유지 등 8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중앙회에 경영위원회 설치 △중앙회장 업무조정권 삭제 △중앙회장의 회원조합 지도권 삭제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 삭제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삭제 등 5건이 부분적으로 수정반영되었다. 그러나 △연합회체제 △신경분리 △통합법 및 통합중앙회의 명칭 △이종조합간 이중조합원 금지 △집행간부 임면방식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상임감사제 삭제 △조합장 선거 공개토론회 삭제 등 8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축산경제사업부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사업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 된 자를 회장이 임명 △중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외의 재산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 △통합중앙회 잉여인력 조정시 농·축협이 같은 비율로 적용 △축산부문 사업계획 수립 등 축산부문사업 수행시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등의 조합을 신설하는 등 축협의 입장을 배려했다.

그리고 삼협중앙회가 제시한 가운데 인삼농가에 대해서는 이동경작의 특성상 이중조

합가입금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의견은 반영되었고, 인삼사업본부장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의견은 정관에 의해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반영되었다. 그러나 인삼사업본부장이 인삼분야 집행간부를 임명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협개연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중앙회장 출마자격 조합원으로 제한 △이종조합간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상임감사제 도입 △조합장선거 공개토론회 도입 등 6건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통합관련 제비용의 국고지원 △비출자법인 성격의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립 △집행간부 임면방식 △조합에 경영평가단 설치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조합합병비용 국고지원 △조합장 출마자격 강화(조합원 신분보유기간 5년 이상) 등 6건은 부분수정되어 반영되었다. 그러나 △도단위 지역본부 개편 △중앙회 이사회 구성(지역대표성, 품목대표성) 등 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대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통합중앙회의 조직체제와 기능문제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격을 갖는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립 △이종조합간 조합원의 이중가입 허용 △통합비용 국고지원 △조합합병비용 국고지원 △상임감사제 도입 △조합장 선거 공개토론회 도입 △통합설립위원회에 농축협 동수로 구성 등 7건의 의견은 반영되었다. 그리고 △조합에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 △독립기구로서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등 2건은 부분수정되어 반영되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만 위임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 등 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표 5-8〉 농업협동조합법과 주요단체의 입장 비교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input type="checkbox"/> 통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법 ○ 국민연대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통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input type="checkbox"/> 경제사업 : 농업경제(독립사업부) 축산경제(독립사업부)</p> <p><input type="checkbox"/> 신용사업 : 신용사업(독립사업부)</p> <p><input type="checkbox"/> 국가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통합중앙회의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도단위 지역본부의 개편 : 규정없음</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 설치 가능함. 심의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함</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경영위원회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앙회 내부기구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출마자격 : 조합원</p>	<p>○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 축협 :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 국민연대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 농협·협개연 : 좌동</p> <p>○ 축협·국민연대 - 농협연합회(법인), 축협연합회(법인)</p> <p>○ 농협·협개연 : 좌동</p> <p>○ 축협·국민연대 : 별도은행(법인)</p> <p>○ 농협·협개연 : 통합제비용을 국고지원</p> <p>○ 축협·국민연대 - 통합시 부실채권 등 손실보전 지원</p> <p>○ 협개연 : 1단계 -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2단계 - 도연합회(대표선출)</p> <p>○ 농협 :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반대</p> <p>○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 심의·의결기구인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p> <p>○ 농협 : 경영위원회 설치반대</p> <p>○ 축협 : 농업경제·축산경제부문에 심의·의결기구로 각각 설치</p> <p>○ 농협·협개연 : 좌동</p> <p>○ 국민연대 - 중앙회장 : 조합원 - 연합회장 : 조합장 - 은행 이사장 : 조합장·연합회장 - 은행장 : 외부 전문경영인</p>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의 업무에 관련한 부회장간의 이견조정, 이사회는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p> <p><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회원조합장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장 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p> <p>-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회의 재산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함</p>	<p>○ 농협·협개연</p> <p>- 중앙회장 업무조정권 인정</p> <p>○ 축협 :</p> <p>- 중앙회장 업무조정권은 이사회로</p> <p>○ 국민연대</p> <p>- 연합회장, 은행 이사장은 대표권</p> <p>- 업무집행권은 전무이사, 은행장에게</p> <p>○ 협개연</p> <p>- 선출직 도단위 조합장협의회(도연합회장)를 당연직 이사로,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그리고 기타 외부전문가로 하여 구성</p> <p>○ 농협·협개연</p> <p>- 모든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p> <p>○ 축협(5.20)</p> <p>-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하고, 회장이 임명</p> <p>○ 삼협</p> <p>- 인삼사업본부장도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p> <p>○ 국민연대</p> <p>-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별도은행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전무이사, 은행장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함</p>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부문 조합장 대표 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p> <p>-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회의 재산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함</p> <p><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p> <p><input type="checkbox"/> 통합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농축인삼협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함</p>	<p>○ 농협·협개연</p> <p>- 모든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p> <p>○ 축협(5.20)</p> <p>-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단수추천하고, 회장이 임명</p> <p>○ 삼협</p> <p>- 인삼사업본부장도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p> <p>○ 국민연대</p> <p>-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별도은행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전무이사, 은행장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함</p> <p>○ 농협</p> <p>- 대표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p> <p>○ 협개연</p> <p>- 대표이사 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p> <p>○ 축협(5.20)</p> <p>- 대표이사 부회장이 임면권 행사</p> <p>○ 삼협</p> <p>- 인삼분야 집행간부는 인삼사업본부장이 임명</p> <p>○ 축협·국민연대</p> <p>- 위원은 농·축협 동수로 구성</p>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p> <p><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출자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 있는 품목조합연합회 설립 허용</p> <p><input type="checkbox"/> 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지도·경영평가는 인정,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수행</p>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단 지자체장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 감독권만 위임</p>	<p>○ 농협 - 통합시 직원의 처우와 기타 복무관계는 각 직원의 경력, 능력,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유지</p> <p>○ 축협(5.20) :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p> <p>○ 농협 - 협의체 성격의 업종조합협의회 구성</p> <p>○ 협개연 - 비출자법인으로 비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p> <p>○ 국민연대 - 출자법인으로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전국연합회 설치 허용</p> <p>○ 농협 : 조합감사위원회 설치반대</p> <p>○ 축협·국민연대 - 회원조합의 감사를 전담할 감사위원회를 중앙회내에 별도부서로 설치</p> <p>○ 농협 - 중앙회장의 포괄적 지도권(지도·감사·경영평가) 인정</p> <p>○ 축협·국민연대 - 중앙회장의 지도권을 삭제함</p> <p>○ 농협 : 좌동</p> <p>○ 국민연대 -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위임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만 위임 가능</p>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경영지도권 인정(업무정지, 합명명령, 설립인가취소 등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상임감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회원조합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동일가구에 2인까지만 조합원 인정하는 제한규정을 삭제(완전복수조합원제), 2이상의 지역농협가입 금지, 2이상의 지역축협가입 금지, 2이상의 동일 품목 또는 업종조합에 가입금지(농축협 이중조합원 가입 허용), 삼협의 예외 인정</p> <p><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은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기술교육과 경영상담)</p>	<p>○ 농협·축협·국민연대 - 농림부 장관의 경영지도권 삭제</p> <p>○ 농협·축협 : 상임감사제 도입 삭제</p> <p>○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p> <p>○ 농협·축협 : 경영평가단 구성 삭제함</p> <p>○ 협개연 - 회원조합은 경영평가를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 매년 1회 경영실태 평가하여 조합장에게 통보</p> <p>○ 농협·협개연·국민연대 - 2개 이상의 동일품목 또는 동일업종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p> <p>- 농협·축협 이중조합원 현실 인정</p> <p>○ 축협 : - 2개 이상의 조합가입 금지</p> <p>- 농·축협 이중가입 금지</p> <p>○ 삼협 : 삼협의 예외규정 인정</p> <p>○ 농협·축협 : 전문지도사 규정 삭제</p> <p>○ 협개연·국민연대 - 조합의 지도사업을 전담하는 품목별 전문지도사 도입</p>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단체의 입장
<p><input type="checkbox"/>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조직변경하더라도 조직변경 당시에 실시하고 있던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지역축협이 업종축협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신용사업 가능)</p> <p><input type="checkbox"/>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자금지원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은 5년 이상)계속 보유해야만 조합장 출마자격 인정</p> <p><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토론회 실시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이사의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p>	<p>○ 축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합의 업종조합 전환시 상호금융 실시 근거 마련함 <p>○ 농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경영부실액 정리 국고지원 <p>○ 협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의 직접비용은 국고지원 의무화 <p>○ 국민연대 : 좌동</p> <p>○ 농협·협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 5년 이상인 자로 출마자격을 강화함 <p>○ 농협·축협 : 공개토론회 삭제</p> <p>○ 협개연·국민연대 : 좌동</p> <p>○ 협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이사회에 품목별 대표와 여성조합원 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해 품목별·직능별 직능이사제도 도입함 <p>○ 국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이상은 조합원으로 함 - 1/3이상은 품목과 축종을 대표하는 이사로 함

3.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1) 회원조합관련 규정

(1) 일선조합 육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추진

일선조합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취지로 강조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한 농민단체와 일선 농업인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책무를 부과하였으며(제6조),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조합이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37조).

(2)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

이번 협동조합 개혁을 논의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선조합이 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금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지포장센터 운영 등 유통·경제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금융시장 개방과 경쟁의 심화로 소규모 일선조합의 금융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합별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59조). 이에 따르면 중앙회 통합에 따른 절감재원과 정부재정자금을 단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조합당 30~50억 내외의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우수조합을 선별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며, 이 자금은 계약재배, 출하조절, 매취사업, 선도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50/10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부칙 제17조). 중앙회 사업에 대하여 일선조합이 출자하여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우선적

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아울러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두어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실시하여 조합원에 대한 수준높은 영농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제60조).

(3) 조합장 선출방식을 다양화하고 임원의 책임 범위도 확대

종전에는 조합장이 명예직으로 되어있고 상임·비상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실질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한도가 너무 낮아 조합부실화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농협은 49%(647개), 축협 82%(158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판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조합장직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의 경영책임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비상임조합장직을 선택한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제45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 또한 상임인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중과실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했다(제53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되(제53조 제3항), 조합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임원의 경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제71조 제4항).

(4)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의 운영상황 및 경영상태 공개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회의」에서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44조), 이때 조합장은 평가 및 건의사항을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주사무소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 정관, 총회 의사록, 조합원명부 외에 이사회의사록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

개토록 했다(제65조 제2항).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바꾸어 임원의 경영능력과 조합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결정토록 했다(제35조 제1항 제9호).

(5)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조합운영 참여기회를 확대

그동안 지적받아온 조합원의 참여기회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에게 새로 인정했다(제39조 제3항). 또한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청구권도 새로이 인정했다(제65조 제4항).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현행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의 동의에서 5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제36조). 아울러 현재 동일가구당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하여 여성농업인, 젊은 후계농업인의 조합활동 참여를 보장(제19조)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조합경영과 조합의 사업 이용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소속의식을 고취하도록 했으며(제24조 제2항), 1년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정한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토록 했다(제30조 제1항 제1호).

2) 중앙회관련 규정

(1) 3개 중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중앙회 설립

법 시행과 동시에 농·축·삼협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3개 중앙회 합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했다(부칙 제6조). 이에 새로운 중앙회는 기존 농·축·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했다(부칙 제7조). 또한 3개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고 그 직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8조 및 제10조). 또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은 새로운 중앙회의 당연 회원으로 간주한다(부칙 제11조).

(2) 중앙회장은 대정부 건의 등 농정활동에 전념토록 제도화

통합중앙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제130조)하고, 자격조건은 조합원 신분 2년이상 보유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제161조). 또한 통합중앙회의 회장은 사업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및 대농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했으며(제127조),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 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했다(제127조 제2항 제4호).

(3)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제 도입으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중앙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를 두되,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으며(제128조),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하되, 승진·전보는 소관 대표이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소관의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하고(제128조 제6항),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제130조 제2항).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제132조 제1항).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제131조), 인삼사업 집행간부를 반드시 두되 그 업무는 농업경제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전결처리하도록 했다.

(4)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제132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단수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명토록 하여 대표자회의에 실질적인 대표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축협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신용사업관련 재산은 제외)과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했다. 또, 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할 때에는 중앙회별로 각각 승계한 직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평을 맞게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축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5) 공정한 회원조합 감사를 위해 회원조합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앙회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한 회원조합 감사를 위해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장 소속하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상임, 위원은 비상임)하고(제143조),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 동의를 얻어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감사방향, 징계 및 문책, 변상책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조합을 감사하며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회원조합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했다(제146조, 제142조). 그리고 경영실태가 부실하여 조합원의 피해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예금지급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66조).

(6) 신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본금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우선출자를 발행(제147조)하고, 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수행하며,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을 인정하도록 했다(162조).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원조합 신용사업 감사권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경영지도기준을 제정(제11조)하고, 은행법상의 영업행위 중지, 금융기관 및 임직

원에 대한 제재,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제11조). 중앙회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점포의 축소, 임원의 직무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과 같은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65조). 또한 조합에 납입한 예금과 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41조).

한편 협동조합에 관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신경분리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부칙 제16조).

3) 품목조합관련 규정

(1)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 육성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관할 구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조합의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9조). 그리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조합특성에 맞게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제110조). 또한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78조)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조직전환이 가능해지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1/3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였다(제125조).

(2) 전국단위 품목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1994년에 권역별 업종조합연합회 설립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규정에 해당하는 연합회 설립은 없었고 농축협 내에 「품목별 전국협의회」 형태로 운영해 왔다. 품목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일선조합의 전문화 미흡, 중앙회의 견제, 정부지원 부족 등이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조합이 5개 이상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38조 제1항), 전국에 있는 동일 품목조합의 2/3이상이 참가할 경우 전국단위의 연합회 결성이 가능토록 했다. 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여토록 했으며(제138조 제3항), 연합회는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중앙회 사업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제115조).

(3) 품목조합연합회는 사업기능을 수행

품목조합연합회는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홍보, 정보교환 등의 사업 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나 제품의 공동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138조 제2항), 연합회는 연합회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회원을 위한 자금알선도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현재 농·축·삼협중앙회의 회원인 품목조합은 통합 중앙회의 회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품목조합은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중앙회와 품목조합연합회의 동시 회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품목조합은 중앙회를 탈퇴하고 연합회 회원자격만 보유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품목조합연합회는 품목조합이 자율적으로 모여 설립하고 자치규범인 정관을 스스로 작성하는 등 조직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4) 농업협동조합법과 종전 농·축협법과의 비교

〈표 5-9〉 제정 농협법과 종전 농·축협법과의 비교

항 목	종전 농·축협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3개)	<input type="checkbox"/> 농업협동조합중앙회(1개)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 권한	<input type="checkbox"/>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input type="checkbox"/> 중앙회를 대표하되, 농정활동 및 지도·감사 등 농업인 권익보장활동에 전념

항 목	종전 농·축협법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전담 대표 이사의 권한	<input type="checkbox"/> 부회장 : 신용사업 담당, 경제사업 담당 - 회장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전결처리 -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input type="checkbox"/> 사업전담 대표이사 : 농업경제 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 - 소관업무 관하여 중앙회 대표 - 추천 → 총회동의 → 회장이 임명 - 축산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
<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input type="checkbox"/> 부회장 소속 집행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 - 직원에 대한 임면은 부회장이 위임·전결처리	<input type="checkbox"/> 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 -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는 소관대표이사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 -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전보는 대표이사가 행사
<input type="checkbox"/>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input type="checkbox"/> 회장직속의 감사부가 실시	<input type="checkbox"/>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실시 - 5인의 위원(위원장 : 상임) - 총회동의로 회장이 위원장 임명 - 감사방향, 징계·문책수준, 시정·개선요구사항 등 의결
<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설치, 운영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선조합에 대한 예·적금 환급보장을 위한 기금 설치, 운영 - 기금재원 : 회원출연금, 전입금·차입금, 수익금 등

항 목	종전 농·축협법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우선출자제도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회원조합외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출자 발행 - 자기자본 1/2범위내 출자가능 - 의결권 없고 우선배당권 부여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가입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회원가입제한 금지	<input type="checkbox"/>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중앙회 가입 신청시 60일 이내 승낙가입 의무화 ※ 설립인가기준 미달조합 제외
<input type="checkbox"/> 품목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법인인 연합회는 3이상의 전문조합이 정관작성, 인가 필요 - 권역별, 전국일부지역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5이상의 품목조합으로 정관 작성인가 받으면 법인격 부여 - 전국 동일품목조합의 2/3이상 참여시 전국연합회 설립 허용
<회원조합>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와의 경합관계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어 그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사업의 회원공동운영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는 조치 의무화

항 목	종전 농·축협법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유통지원자금 조성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국가 및 중앙회는 예산을 지원 계약재배사업, 출하조절사업, 매취사업,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자금으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전문지도사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고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실시
<input type="checkbox"/> 조합장선출방식	<input type="checkbox"/> 직선제 원칙 - 조합실정에 따라 간선제 가능	<input type="checkbox"/> 직선제·간선제·호선제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선택
<input type="checkbox"/> 조합장의 신분	<input type="checkbox"/> 비상임	<input type="checkbox"/>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자율선택하되, 비상임조합장 조합은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집행
<input type="checkbox"/> 임원의 책임	<input type="checkbox"/> 상임·비상임 구분없이 모두 중과실책임만 부과	<input type="checkbox"/> 상임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중과실외에 경과실책임도 부과
<input type="checkbox"/> 운영평가 자문회의	※ 별도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자문회의에서 조합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조합에 대한 감사	<input type="checkbox"/> 비상임감사 2인 운영	<input type="checkbox"/> 감사 2인을 두되, 조합실정에 따라 상임감사 운영가능 - 외부회계감사 방안을 마련, 경영의 투명성 제고

항 목	종전 농·축협법	농업협동조합법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의 조합 경영참여제고	<input type="checkbox"/> 총회의사록·정관, 조합원 명부 비치	<input type="checkbox"/> 조합의 회계장부, 서류 열람 권 부여 - 총회부의안건 제안권 부여 - 총회의결취소 청구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복수조합원제도	<input type="checkbox"/> 동일가구당 2인까지만 조합 원 가입 허용	<input type="checkbox"/> 동일 가구당 조합원 가입제 한 폐지
<input type="checkbox"/> 품목조합의 조합원 자격	<input type="checkbox"/> 시행령에서 규정 - 한우 20두, 양돈 200두 - 시설채소 2천m ² - 채소 5천m ² 이상 등	<input type="checkbox"/> 조합 스스로 정관으로 규정

제 6 장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합헌결정과정

- 제1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판결 주요경과
-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주장
-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결정

여 백

제6장.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합헌결정과정

제1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결정 주요경과

1. 축협이 헌법소원 제기

1) 헌법소원의 배경

축협은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근거의 하나로 개혁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해 축협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고, △축협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축협은 1999년 4월 30일 임시총회에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하였고, 6월 11일 축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축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후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부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중앙회의 해산 등으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고, △축협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농어민 자조조직에 대한 국가의 육성발전의무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정립하였다. 이같은 입장과 논리에 따라 축협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1999.7.13)와 대체토론(1999.8.6)에서 축협측 참가자들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수정·의결되고, 다음날인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축협중앙회는 8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1999년 8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9월 7일 법률 제6018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축협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9월 22일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2) 헌법소원 제기 및 ICA에 협조요청

축협중앙회는 1999년 9월 17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9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축협중앙회, 10개의 회원축협, 2인의 축협 조합원, 3인의 축협중앙회 임·직원,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등 17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2개의 법무법인과 5인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구인(축협중앙회장의 16인)은 농업협동조합법(1999.9.7. 법률 제6018호)의 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재산권의 보장(헌법 제23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의 축협의 반대활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축협은 수차에 걸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소원 결과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축협은 협동조합 통합 반대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10월 1일 친구범 축협중앙회장 명의로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

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는 협동조합중앙회를 강제로 통합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까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작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편파적인 정부계획아래 축협, 농협, 삼협의 동의절차 없이 통합”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은 세계적으로 승인된 ICA협동조합원칙을 위배하고,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서한문의 말미에 “한국의 협동조합 강제통합과정에 대해 ICA와 ICA회원기관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고, 축협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ICA회장의 깊은 이해와 위에 언급된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ICA는 축협중앙회의 이같은 의견요청에 대해 10월 중순경 브루스 토다손 사무총장의 명의로 “ICA는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체와 같이 각국의 정책이나 각국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들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ICA는 한국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으로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보내 축협의 지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2. 헌법소원의 진행과정

1) 농림부와 축협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는 축협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접수(사건번호 99헌마553)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에 의하여 1999년 10월 13일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통지하면서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에 따라 1개 법무법인과 1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11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를 제출했다. 농림부의 대리인은 2000년 1월에 1개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2인)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농림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축협이 제시한 위헌의 근거, 즉 결사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규제원칙의 위배 등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협은 2000년 1월 29일 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유 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축협은 이 보충서를 통해 농림부의 의견서(1999.11.18)를 반박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했다. 당시 축협은 보충서와 더불어 정종섭(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1999년 신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2000.1)'라는 연구보고서와 장종익(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우영균(상지대 교수)의 '협동조합 이념과 원칙에 비추어본 농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2000.1)'라는 연구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정종섭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축협과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협중앙회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축협과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규제의 원칙에 위배되며,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를 부정한 국가의 강제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종익·우영균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이 협동조합의 원칙, 즉 △제1원칙(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제2원칙(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자율과 독립) △제5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제6원칙(협동조합간 협동) △제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 비추어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법 제정과정의 비민주성과 조합원이 배제된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축협이 청구이유 보충서를 통해 농림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3월 24일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축협 주장의 문제점과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또한 농림부는 보충의견서와 더불어 최대권(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농축협중앙회 통합의 합헌성 연구(2000.3)'라는 연구보고서와 김학성(강원대 법과대학 교수)의 '새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 위헌주장에 대한 반론(2000.3)'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대권은 보고서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농축협 통합의 합리성을 근거로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학성은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을 검토하면서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입법형성권 등의 측면에서 위헌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농림부는 추가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3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축협이 제시한 위헌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

이와 같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1999.9.7. 법률 제6,018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99헌마553)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은 2000년 3월 23일, 200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축협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헌법소원(사건번호 99헌마553)의 결정선고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헌법소원 선고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 위원회가 기존 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위헌으로 선언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선고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작업을 중지해야만 천문학적 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통합작업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청구인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축협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담당재판부에 회부하였다(사건번호 2000헌사116). 이에 대해 농림부는 4월 11일 대리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상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선언되기에 충분

하다는 축협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농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므로 통합작업에 따른 통합비용이나 축협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축협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및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축협이 제기한 농업협동조합법(1999.9.7. 법률 제6018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번호 99헌마553)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 청구인(축협)의 대리인과 이해관계인(농림부)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농림부, 농협, 축협, 농업관련기관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2000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차 공개변론이 개최되었다. 제1차 공개변론은 먼저 축협 대리인과 농림부 대리인의 변론이 있었으며, 이어서 축협과 농림부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었다.

먼저 축협의 대리인은 변론을 통해 “27만 조합원과 19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협의 동의없는 통합은 헌법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현재 설립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시급한 결정을 요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대리인은 변론을 통해 “농협법 전체를 위헌으로 청구하였는지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청구하였는지 석명”을 요구하였으며, “협동조합 개혁은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으면 이는 공공복리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은 입법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변론에 대해 축협의 대리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축협의 부실은 중앙회가 아닌 조합의 문제이며, 축협중앙회는 대의기구인 총회가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해야지 공청회,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통합법이 공공의 목적달성과 농업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검증된 바 없으며, 조합원과 회원조합이 원하지 않는다”면서 “축협법은 국가가 축협의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본권보호적, 실현적 법률유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부의 대리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통합은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의 유사중복기능을 해소시켜

경영관리비 절감, 경영효율로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며, “유사중복기능의 통합은 현재 사회적 판단과 같으므로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축협에게 농협법 전부가 위헌인지, 아니면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인지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농림부와 축협 양측에 최종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4월 11일 농림부와 축협은 각각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와 청구이유 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축협은 청구이유 보충서를 통해 위헌심판의 대상을 되는 법률조항을 자세히 열거하였으며, 침해받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축협중앙회, 회원축협, 축협조합원), 재산권(축협중앙회, 회원축협, 축협조합원), 직업선택의 자유(축협중앙회, 축협조합원, 축협중앙회 임직원)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축협중앙회의 강제해산합병이 과연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축협은 청구이유보충서를 통해 축협의 축산정책자금·인력·사업·구조조정 등 축협의 경영전반에 대해 농림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을 설명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입법의 목적 그리고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사의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 항목별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성을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제1차 공개변론에 이어 4월 12일 대심판정에서 제2차 공개변론을 속개하였다. 축협 대리인과 농림부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개변론은 구두변론 없이 서면심의로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재판부는 다시 한번 최종의견서의 제출을 양측에 요구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5월 4일 대리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축협은 5월 18일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양측은 각각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 일치로 농업협동조합법(1999.9.7. 법률 제6018호)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축협이 청구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0헌사116)을 기각하였다.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해산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통합 농협중앙회에 통합토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축협중앙회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새 농업협동조합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중앙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는 것에 대한 법적 장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축협으로 하여금 더 이상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즉, 그동안 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통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농·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통합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작업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통합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축협중앙회장은 언론과의 대담이나 연설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 축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축협으로서 더 이상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3. 헌법소원 제기에서 합헌결정까지의 주요경과

축협이 중앙회 통합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주요경과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표 6-1〉 헌법소원제기에서 합헌결정까지의 주요경과

일 자	헌법소원제기에서 합헌결정까지 주요경과
1999. 8. 13	○ 축협중앙회 기자회견(헌법소원 제기,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 천명)
9. 17	○ 축협중앙회 이사회, 임시총회(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결과시까지 설립위원회 참여 유보 결정)
9. 22	○ 축협,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99헌마553) ○ 농림부, 축협중앙회 임시총회(9.17) 결의사항 취소 명령
10. 1	○ 축협중앙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협조 요청 - 10월 중순경 ICA 답변서 회신(축협의 지지요구 거절)
10. 13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결정 및 전원재판부 회부
11. 18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2000. 1. 29	○ 축협,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 정종섭, 장중익·우영균 등 2건의 연구보고서 동시 제출
3. 23	○ 축협, 헌법재판소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접수 (2000헌사116)
3. 24	○ 헌법재판소,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신청 사건 배당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 최대권, 김학성 등 2건의 연구보고서 동시 제출
3. 29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추가선임 대리인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3. 30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
4. 11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축협,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4. 12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 대한 제2차 공개변론(변론 종결, 심의 착수)
5. 4	○ 농림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5. 18	○ 축협,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6. 1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부 전원 일치 결정 -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심판청구(99헌마553)에 대해 합헌 결정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2000헌사116)에 대해 기각결정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주장

1. 축협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요지(1999.9.22)

1)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청구인 조합들은 사법인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결사의 자유, 즉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어민의 자조조직체로서의 단체결성 및 단체존속과 활동, 잔류, 해산에 있어 자주적으로 이를 판단, 수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축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사법인, 즉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면서도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규율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 사법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축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주체라 하겠으며, 각 조합을 이루고 있는 양측인 조합원들이 기본권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들이나 노동조합 역시 동 중앙회의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역시 노동조합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1) 이 사건 법률 부칙 제6조, 제11조의 기본권 침해

이 사건 법안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은 이 법안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존의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보며, 동 제6조에서 종전의 각 중앙회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은 각 중앙회가 합병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조합이나 조합원으로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으로서 고유한 업무에 관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여 주는 연합체를 가질 자유, 어떠한 조합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합체가 조합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탈퇴하여 별도의 연합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은 강제로 그 조합과 중앙회를 농협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14조, 제105조의 기본권 침해

동 법 제3조는 그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칭사용독점을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일조직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의 결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협동조합의 자조자율원칙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내에서는 2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부정하고, 한편으로 동일지역이나 경제권내에서 복수의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로막으며, 전국연합회 결성을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조직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3) 부칙 제3조의 결사의 자유 침해 -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

부칙 제3조를 보면, 이 사건 법률의 공포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3개 각 조합중앙회의 해산과 통합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며,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의 기본인 정관을 단독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구성회원이 각 조합과 조합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중앙

회의 설립에는 당연히 구성원의 조합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마땅히 기존 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여부에 관한 찬반여부나 그 절차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는 회원인 조합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정부 스스로가 만일 신속한 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에 방해를 받을 것을 염려한 탓인지, 누가 어떻게 그 절차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조합의 의사표명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는 정부가 나서서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협동공사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규정된 창립총회는 정관의 세부규정에 대한 찬반투표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설중앙회의 설립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회의 해산과 설립에 대한 회원조합의 의사표명의 자유(결사의 자유의 행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부칙 제4조의 기본권 침해 - 재산권의 침해

중앙회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모두 조합원들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 조합과 중앙회의 재산을 모두 일방적으로 설립되는 신설중앙회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 및 각 조합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현존 중앙회가 해산되는 것으로 의제된 이상, 현존 중앙회의 재산은 기존 회원조합들의 의사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며, 신설 중앙회에 가입하는 조합은 새로이 출자하고, 출자규모도 새로이 정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과 그에 따른 자산부채, 자본에 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나 동 중앙회로서는 당연히 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개개조합이 그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절차도 마련됨 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합됨으로써 청구인 조합들이나 동 중앙회는 그 고유 재산권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5)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제해산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 바, 결국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그동안 영위 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 중앙회에서 임원 및 직원으로 근무 하던 사람들이나 동 조합의 직원들로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는 더 이상의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법률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설중앙회가 설립될 경우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대로 그 지위가 신설중앙회에 승계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축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신설 중앙회의 설립으로 법인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각 조합 중앙회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6) 과잉규제금지원칙의 위배

어떠한 법률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은 물론이며,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것이라 하면 침해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수단에 있어서 반드시 적정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국가에 의한 강제적 통합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축산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축협중앙회의 결성, 임원의 구성, 조직운영에의 참여, 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미 20여년 가까이 전문분야별로 독립하여 활동하여 온 각 업종별 농민협동조합체의 고유한 이익을 무시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건 법률처럼 조합원들의 자조적 결사체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무시하고 그 중앙회를 해산, 통합하는 것이 개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되는 지는 더욱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비하여 중앙회의 강제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중앙회, 각 임직원 및 조합원들이 당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하여 과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를 합병계약이나 총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해산간주하고 이를 농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등과 강제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마땅히 위헌선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른 것입니다.

2.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요지(1999.11.18)

1) 새농협법의 입법과정

(1) 새농협법의 제정경위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동조합 개혁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는 바, 그 일환으로 1998. 4. 13. 농민단체대표와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축협중앙회 등 모든 농업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기초로 한 농림부의 1998. 7. 28.자 의견제시에 따라 농·축·임·삼협 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이 공동개혁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나 중앙회의 조직체계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1999. 2. 23. 공동개혁안 마련을 공식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4대 중앙회의 자율적 단일개혁안 마련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1999. 3. 8. 부득이 정부의 개혁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협중앙회장과 일선조합장 그리고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토론회 110회, 공청회 5회, 간담회 76회 개최 등을 통하여 최종개혁안을 만들어 지난 6. 14.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 법안은 1999. 8.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축산업협동조합측의 새농협법 제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충분한 반영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 최종안을 확정짓기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특히 축산업협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측과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며, 축협 경영진은 지난 5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축협중앙회장 명의의 단일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여론수렴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나, 정부는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대폭 수정하여 최종개혁안을 마련하고 지난 6. 14.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측은 정부가 자신들이 제시한 안을 100%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시한 안을 번복하고, 당시 박순용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퇴진시키는 한편 지난 7. 9. 통합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구범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지난 7. 13.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축산업협동조합측 관계자, 그리고 협동조합전담연구자 등과 여러차례의 비공식 의견교환과 농축협중앙회장과의 공식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합의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새농협법의 합헌성

(1)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검토 -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축산업협동조합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

나, 축협중앙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적인 특수법인이므로 기본권 주체성에 제약이 있고,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그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마47). 따라서 축협중앙회가 사법인성을 가진 축산업협동조합을 그 회원으로 한다는 점만을 들어 축협중앙회 역시 사법인이고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는 전제하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근거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설령 축협중앙회가 사법인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서 본 것처럼 공법인성을 겸유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역시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축협중앙회를 자연인이나 일반 사법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 곧 입법권자의 입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결사의 자유 침해 주장

새농협법 부칙 제6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이 오로지 축협중앙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중앙회의 종래의 기능을 새로운 중앙회의 독자적·전문적인 책임경영 조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의 해산이 그 자체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축협중앙회 설립의 취지가 전혀 누수없이 새농협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새농협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축협중앙회의 해산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비하여 비길 바 없이 크고, 설령 축협중앙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가 본질적인 면에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새농협법 부칙 제11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이 본래 일선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농협의 제정과 시행으로 축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결사의 자유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활동이 연속되며, 가입·탈퇴의 자유가 제한됨이 없다면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농협법 제3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이 축산업협동조합들의 연합체 결성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법의 규정이나 법의 취지를 오해한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축협법에서의 동일한 규정이 축협법의 제정시부터 합헌성에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였는데, 동일한 조항이 새농협법에 채용된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대로 축협중앙회의 새농협법으로의 승화·발전을 저해하려는 축협중앙회 임직원의 이기주의의 소산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새농협법 제104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유롭게 민법상의 또는 특별법상의 결사를 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농협법에 의한 구역의 제한 및 동일구역 내에서의 새농협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중복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는 규정은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써 그 본질을 해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새농협법 부칙 제3조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은 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새농협중앙회의 설립사무를 그 설립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이들은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농협법에 반영되도록 한 이상, 제정된 법에 따른 업무수행절차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부칙 제7조 - 재산권 침해 주장

어떠한 이유로도 새농협법에 축협중앙회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축산업협동조합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설혹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범위내의, 즉 수인범위내의 것으로서 위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재산권 자체가 가지는 상대적으로 큰 제한가능성(헌

법 제23조), 새농협법이 가지는 공익성, 축협중앙회의 해산을 전제로 더 효율적이고 큰 규모의 대체기구인 새농협중앙회의 설립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동일한 지위의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농협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제한방식, 여전히 출자금의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해는 재산권의 본질적 성격을 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위헌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4) 부칙 제10조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종전의 축협중앙회의 업무는 그대로 신설중앙회로 이전되며, 그 근무하던 임직원들도 새농협중앙회의 임직원으로 그대로 전환되어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새농협법 부칙 제10조 제1항). 따라서 축협중앙회 임직원의 소속이 새농협중앙회로 변경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의 내용이나 질의 변환이 필연적인 것도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는 것이 됩니다.

고용조정 가능성을 내포한 법규정이 새농협법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반드시 새농협법이 아니더라도 노동관계법에 의한 고용조정이 가능하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축협중앙회와의 위임관계에 있어 언제든지 합의에 의해 사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과잉금지규제 원칙의 위배 주장

축협중앙회 경영부실로 초래될 농민과 일반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조합원을, 간접적으로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획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등 3개 중앙회의 통합은 농민의 자조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민과 기타 국민의 경제생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내놓은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의 하나로 3개 중앙회의 해산은 현행 농협법 및 축협법 등의 법률규정을 그대로 준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농협법은 방법상 적정성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농협법은 종전의 3개 중앙회를 1개로 통합하는 것일 뿐 회원조합들의 체제나 지위 등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3개 중앙회의 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관계 및 직원의 지위 승계 등 기존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농협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농협법에 의한 개혁은, 중복·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3개 중앙회를 통합하여 엄청난 규모의 연간 경영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그 비용을 회원조합 육성자금으로 집중지원하여 일선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체제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협동조합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그 공익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새농협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전혀 없거나, 있다면 일부 축협중앙회 임직원들의 현실화 여부가 확인될 수 없는 지위불안에 불과합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할 때, 새농협법이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새농협법의 제정 및 시행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이 사건 주장은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없고, 새농협법의 제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축협의 심판청구 보충의견서 요지(2000.1.29)

1) 신농협법의 입법취지 및 중앙회 통합의 사회·경제적 평가

(1) 신농협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 특히 중앙회 통합문제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의 통합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먼저 개혁하여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변화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통합의 효과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조직을 통합할 때에는 구성원간 이질적인 조
직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종사원의 지위불안
에 따른 생산성 저하, 사무소폐쇄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 신용점포의 정리에 따른 수
익감소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발생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농촌경제연구원
의 연구결과는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
제적 효과는 이미 각 중앙회가 마련한 자체구조조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림부가 주장하는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입법을 정당화
하기 위해 통합의 긍정적 효과만을 과대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농림부의 주장대로 통합할 경우 중앙회에는 신용사업과 농정활동만 남게 되
고, 사실상의 경제사업은 포기하게 되므로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상실로 인
하여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손실이 농림부가 주장하는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의 이익보
다 훨씬 크다 할 것이고, 또한 중앙회는 단순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림부의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습
니다. 더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개혁의 방법과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
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체로
서 시민사회의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던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고, 일반 사법인보다
훨씬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협동조합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통폐합하는
조치로서 협동조합 원칙에도 위배되는 커다란 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신농협법의 입법과정상 문제점

정부는 농어민의 자율적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동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협동조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협동조합 당사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협동조합개혁은 처음부터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농림부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같은 농민단체들에 대하여만 의견수렴을 하고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농민조합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이해관계자인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개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였으나, 농림부장관이 감사원에 요청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결과가 1999. 2. 25. 발표되어 협동조합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져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같은 해 3. 2. 검찰의 협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1999. 3. 8. 농림부는 갑자기 농·축·임·삼협중앙회를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진한 공청회 등도 농림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토론자도 농림부의 개혁방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참석자들도 대부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의 구성원들로서 축협의 경우 양축가 조합원에 대한 정상적인 여론수렴의 장이 된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개혁방안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회의 장으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농림부는 1999. 3. 8. 이후 축협측이 농림부의 중앙회 통합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연합회안으로 개혁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이를 여론화하자,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후에는 사상유래가 없는 대규모의 검찰력을 동원하여 축협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입건자수를 기록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또 다시 축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축협의 개혁관련 업무담당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친인척 8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농림부가 주장하는 축협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대폭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은 축협중앙회는 흡수합병되고 통합중앙회내에서 중앙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통제하에서 단순히 업무집행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축협측이 주장하는 독립법인으로서의 연합회의 법적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축협측의 의견을 대폭반영하였다고 하는 농림부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1999. 5. 20. 비상대책위원회의 조건부 승인하에 의하여 축협경영진이 제시한 의견인 법률명 및 중앙회 명칭에 '축'자의 반영이나, 축산경제부문에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경영위원회 및 조합장대표자회의 설치요구 역시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농림부는 실질적으로는 축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동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동 위원회 검토 중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23시 45분에 임시국회의 폐회를 몇 분 남겨두지 아니한 가운데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림부가 제출한 신농협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가운데 통과된 것입니다.

농림부가 축협측에 충분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신농협법은 농림부의 입안과정에서부터 그 추진과정 및 최종안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다분히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었으며 축협측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 농민조합원을 위하는 올바른 협동조합의 개혁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축산업의 전문화와 독립의 필요성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축산물의 완전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축산업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전문화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전문성 제고 및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축가 조합원들은 신농협법에 의한 농협·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전문화를 후퇴시켜 결과적으로는 축산업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 상실로 인한 농촌경제의 붕괴와 국가적 식량안보자원의 상실을 초래한다 하여 처음부터 반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농림부가 다수의 농업인이 중앙회의 통합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1999. 4. 10.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총 조사대상자 1,602명 가운데 순수 축협조합원은 23명으로 1.4%에 불과하고, 농협과 축협에 중복가입한 조합원을 합하더라도 364명으로 22.7%에 불과합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경종 및 과수원에업에 종사하는 자가 1,511명으로 94.3%이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91명으로 5.7%에 불과하여 그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인 중앙회 통합에 관한 진정한 농업인의 의견 특히 축산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신농협법의 위헌성

(1)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축협중앙회는 축협과 같이 축협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고, 이러한 중앙회도 사법인인 각 축협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단체이고 자체의 정관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축협중앙회는 사법인이되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협중앙회는 개별 축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전체 구조속에서 중앙회가 가지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요소가 중앙회를 국가조직이나 공법인으로 변질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축협이나 축협중앙회 모두 기본적으로 사법인임은 분명하되, 국가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상 필요한 지원·감독에 따라 일정한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주체로서 결사의 자유 등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협동조합의 하나인 축협중앙회의 성격상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2) 결사의 자유 침해 문제

신농협법 부칙 제6조, 제11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농림부에 의하면 축협중앙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중앙회로 기능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축협에 대해서도 기존 중앙회를 통하여 얻는 결사의 자유에 대해 통합중앙회를 통하면 되므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일단 형식적으로 보아서도 결사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 기능이나 이익이 다른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는 분명합니다. 또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결사 자체의 존속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 하겠습니다.

신농협법 제3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모든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에 단일한 형태의 농협중앙회 이외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는 명백히 다른 형태의 전국조직이나 복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양하게 발전하는 길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복수의 축협이나 복수의 전국중앙회(또는 전국연합회)가 결성할 자유가 침해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역시 하나의 단일한 전국조직을 통해 힘을 모아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전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협동조합의 스스로의 노력과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농협법 제104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지역축협에 대해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상의 일정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공개의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신농협법 부칙 제3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축협중앙회 및 단위축협,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고, 위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재산권 침해 문제 - 신농협법 부칙 제7조의 위헌성

축협이나 축협중앙회가 사법인이고 더구나 회원의 출자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임을 고려한다면 축협중앙회의 해산시 청산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만약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회원조합의 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입니다. 또한 신농협법 부칙 제11조의 당연승계 규정이 결사의 자유에 반하여 위헌인 이상, 기존 축협중앙회의 해산시 그 재산의 포괄승계에 대한 신농협법의 부칙 제7조의 규정은 회원조합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박탈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 및 축산발전기금에 의한 지원금액은 중앙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과 같이 중앙회에 대한 출자가 아니며, 이후 재산형성과정에서 회원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의한 자산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기여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을 감수하여 얻어지는 축산물수입이익금 위주로 조성되고,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운용되는 축산발전기금이 축협중앙회의 사업 중 일부사업에 보조, 지원되었다고 해서 축협중앙회를 공법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협중앙회가 해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통합중앙회의 재산으로 자동승계한 산농협법 부칙 제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환급청구권의 보장만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신농협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합중앙회 설립이 과연 공익적 방향인가 자체도 농림부의 주장일 뿐이고, 나아가 일정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중앙회에 재산이 승계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분명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이며,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면에서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4)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 - 신농협법 부칙 제10조의 위헌성

신농협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 의해 중앙회 합병에 따른 잉여인력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단지 농림부 주장대로 '불확실한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규정입니다. 그리고 신설중앙회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한계를 준수한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 역시 축협중앙회를 해산하고 임직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함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에서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전체가 승계되더라도 농협이나 인삼협 중앙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중앙회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미 구성원에서나 그 성격에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서는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문제

어떤 협동조합의 경영이 부실하고 그 활동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협동조합원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조치를 취하면서 개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축협의 활동이 그간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회원조합들이 기대한 것보다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해 축협과 그 조합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당해 중앙회, 조합,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축협의 소속을 강제로 변경하고 등 중앙회를 폐지하며 그 재

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 등을 정한 신농협법상의 규정들은 입법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축협중앙회의 활동부진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기존의 축협을 새로 신설되는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변경시키고,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강제로 폐지하며 그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수단으로써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축산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신농협법의 제정이라는 강제수단을 통해 오로지 국가가 정해주는 방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혀 적합한 수단도 아니고 국가가 이에 대해 책임질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수단이 피해를 최소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타당성이 없습니다. 축협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가가 축협의 소속을 강제적으로 변경하고 동 중앙회를 폐지하여 다른 협동조합중앙회와 강제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은 통상 피해의 최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피해가 많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과 동 중앙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동조합을 전제로 하고 또 축협을 회원으로 하여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앙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아예 이러한 조직을 다른 단체에 소속시키거나 축협중앙회의 해체와 같이 단체 자체의 해체를 택하는 것은 축산인들의 자조조직 결성과 단체의 운영 및 활동이라는 결사의 자유를 가장 강한 수준에서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익간의 형량에서도 현격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에 비추어볼 때, 신농협법에 의한 기존 축협중앙회의 해산, 그 재산의 강제이관, 이로 인한 임직원 등의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신농협법에 의한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단결권 등의 침해는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이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제한으로 보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으로 위헌이며, 중앙회 통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농림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크지도 않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요지(2000.3.24)

1) 청구인들 주장의 근본적인 오류들

(1) 이상적인 협동조합제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실현과정의 처리

1999. 10. 1. 축협중앙회장이 축협과 그 조합원인 축산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협을 농협에 통합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며 그에 대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한 서한에 대해서, ICA는 같은 달 하순 경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으로서 협동조합개혁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하면서도 협동조합은 다른 모든 기업체와 같이 각국의 정책이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별히 명시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우리나라에 없는, 나아가 이상적인 따라서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협동조합만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할 ICA원칙을 기초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ICA원칙은 구체적(현실적)인 협동조합이 지향하여야 할 협동조합의 이상이며, 현실적인 협동조합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미 존재하는 현실적인 법제도로서의 협동조합을 해석으로써 변형(왜곡)시키는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현실적인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성격규정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ICA원칙을 기초로 협동조합에 대한 성격규정에서 출발하여 협동조합의 개혁을 판단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새농협법의 합헌성의 기준시점 - 현재 및 미래

협동조합 제도의 개혁은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 특히 개혁의 중심이 된 각 중앙회가 과거 수행하여 온 업무 및 그 결과들은 그것이 현재 및 미래에 각 중앙회의 본래의 목적수행의 가능성 여부를 더욱 명백히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 및 그 방향설정과 연관될 뿐입니다. 개혁작업 당시 및 현재, 그리고 장래의 상황이나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사정, 대외환경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만이 예측의 정확성이 담보되므로, 개혁의 필요성 유무 역시 이러한 고려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를 신설되는 새농협중앙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협동조합제도의 개혁이 과거 축협중앙회가 수행해 온 업무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결과 나타난 모습이며, 그 과거지사를 제대로 평가할 경우 축협중앙회를 사실상 없애는 형태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청구인들 주장의 근거에 깔려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제도의 개혁은 바람직한 협동조합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으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냉철한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수결의 원칙과 입법과정

청구인들의 주장은 새농협법의 제정과정에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농협법의 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반영되었습니

다. 따라서 이를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없겠지만, 설령 이러한 주장이 의사 수렴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의제 및 다수결의 원칙에 비추어 직접 위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며 또 지적해야 할 주요사안입니다.

농협과 축협의 각 조합원 자격기준은 상당부분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중복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규모 복합영농인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나아가 농업은 축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협조합원 중 78.6%가 농협의 조합원이기도 하며, 이는 결국 농협조합원을 배제한 채 축협조합원만을 위한 독자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이론적 약점으로 작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의는 결과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축협측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4) 비민주성과 실상의 왜곡실태

청구인들은 축협이 ICA원칙에 따라 자조적, 자치적, 자발적, 자기의존적 성격을 가지며, 심지어 축협중앙회를 포함한 축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상향식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합니다(보충의견서 7면).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축협조합원과 축협, 그리고 축협중앙회 등의 운영이 이와 같아야 함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농협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 준 축협측의 반대운동은 축협측 내부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여러부분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새농협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설립위원회에 참여한 축협중앙회 이사인 회원조합장들을 이사직으로부터 해임의결하는 등 전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축협의 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축협중앙회는 2000. 2. 17. 일선 축협으로 하여금 축협중앙회를 배제한 정책자금을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이러한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시함으로써 일선 축협과 그 조합원인 축산농가에 지원되어야 할 정책자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축협중앙회의 일선축협의 장악력은 그 스스로 회원들에 의해 구성된 자율적인 단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ICA의 협동조합 원칙이나 유일한 상향식 협동조합이라는 등은 현실과 괴리된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협중앙회 등은 적어도 새농협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자조성과 자율성 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여론조성에 임하는 비법률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과 새농협법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

(1) 협동조합개혁의 필연성

협동조합제도의 개혁은 헌법으로부터 농민보호라는 중대한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에게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연성에 대해서 축협측이 보충의견서를 통하여 다투어 온 내용들 역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개혁의 가능성도 점쳐지기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농민의 자조조직이라는 본질적인 성격과 그 기능을 유지시켜 우리 경제의 바탕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제도의 개혁은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새로운 수단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도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 등과 대승적으로 합체하여 새농협법상의 새농협중앙회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전환하되, 기존의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게 가장 영향이 적은 새농협법이라는 방안이 축협중앙회가 노정시킨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며, 사회적인 파장을 축소하는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2) 입법과정상의 적법절차 종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거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견만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전원이 동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일 뿐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색깔을 가진 다수의 단체에 관련된 것이라면 의견개진의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절차적 정의는 실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개선된 의견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뿐입니다. 축협측의 주장의 중심은 그들의 주장이 일부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리와 관련하여 위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새농협법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에 의해 이례적으로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농협의 제정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위법문제는 당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성안하는 내부절차를 들여다 볼 때, 축협측의 인사를 포함하여 농업관련단체나 전문가가 깊숙히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축협측이 제시한 내용 중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청회의 토론자로서 조합장 등 농협 및 축협 임직원을 포함시킴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단체, 교수, 농업인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축협의 토론자는 농축협중앙회의 의뢰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공청회의 결과들은 법안에 수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방청객도 농협 및 축협의 입장이 균형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와 발언의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농협법 초안을 만들어가던 일정한 시점 이후로는 축협측이 일방적인 불참의사를 표시한 이후 의견을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선된 의사가 의견수렴과정에서 부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개진이 봉쇄되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개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허위의 것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감사원의 축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농업분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에 의해 투융자된 42조원의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원이 자체 권한으로(축협법 제135조) 축협 축 뿐만 아니라 농림부 및 농협측까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결과 농축협의 각종 비리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축협측이 모를리 없을텐데도 유독 축협측만 감사 및 수사 등의 수단으로 협박을 받았으며, 그것이 농림부의 감사의뢰 및 고발에 기인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축산농가를 별도로 표본 추출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축산농가 여부를 확인하여 경종농가와외의 조사결과와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농업인이 경종농업과 축산을 겸하고 있는 관계(겸업농가 75% 추정)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는 경종업이라고 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표본 1,602명 중 축산농가로 답한 농가수는 91농가로 5.7%에 해당되어, 실제 준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업인(약 3만명 이내)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0.6%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조합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축협조합원과 축협 및 농협에 중복가입한 조합원이 364명으로 22.7%에 이르러 농협조합원(약 200만명) 대비 축협조합원(약 28만명) 비율 14%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여론조사는 너무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 그것도 새농협법이 완성된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8. 9. 경에 이루어졌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양축농가가 반대하였다는 질문의 내용이 축협이 통째로 농협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론조사의 시기가 아직 축협과 그 조합원은 그대로 둔 채 새농협법에 의해 중앙회만이 통합되는 방식으로의 통합방향이 정해지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내용은 축협측이 대외적으로 알리는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허위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질문 및 대답은 축협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3) 새농협법의 합헌성

(1) 결사의 자유

부칙 제6조 및 제11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축협법은 축협중앙회의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며, 이는 헌법, 국가, 입법자라는 한계내의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축협중앙회가 새농협법 부칙 제6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새농협법 부칙 제11조는 축협중앙회의 회원들에 대한 규정이므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축협중앙회와 무관한 조항입니다.

축협법은 국가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수단의 의미를 가지므로, 축협이 가지는 축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결사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하에 있는 것입니다. 축협 자체가 축협법에 근거하여 실체를 형성하게 된 법인이고, 그 목적 역시 축협법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협 자체가 가지는 다른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가령 축협들이 축협중앙회 외의 일정한 결사를 결성할 자유)는 부정되지 않으며, 해산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협중앙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합병 방식을 택할 경우, 축협중앙회의 회원인 축협들이 자동적으로 신설합병 법인인 새농협중앙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새농협중앙회에 대한 새로운 가입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이를 간소화하였다는 점을 넘어 합병의 법리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실질을 무시한 형식논리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축협이 현행 축협중앙회에 가입, 탈퇴의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농협중앙회에 대한 가입,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합병의 당연한 포괄승계의 법리상 자동가입이 의제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축협중앙회의 새농협중앙회에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축협의 결사의 자유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침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범위내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에까지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축협중앙회를 새농협중앙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헌법에 다른 특정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축협중

양회가 해산된다고 하여 간접적인 또는 수혜자적인 지위에 있는 축협의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결사의 자유도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새농협법에 따라 축협법이 폐지됨과 아울러 축협중앙회도 새농협중앙회에 통합되는 관계에서라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면 새농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농민의 자조조직의 설립을 금지한다거나 그 자조조직들이 다시 일정한 단체를 결성하는 것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이를 제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104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새농협법 상정하는 복수의 지역축협 이외의 어떠한 단체(당해 지역축협 포함)에 관한 결사의 자유도 금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며, 새농협법은 지역축협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정한 행정구역에서는 하나의 지역축협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 조항이 설령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내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3조의 위헌주장과 관련하여, 설립위원회는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 국가가 입법자에 위해 제정된 새농협법으로 개혁을 함에 있어 그 준비작업만을 하는 한시적인 특별수임자이며, 설립위원회의 설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이 농민 및 그 자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무는 개혁의 준비작업에 있으며, 그 준비작업도 축협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의사반영의 기회가 부여되는 한편, 준비결과는 모든 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다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참여도 강제적으로 막으면서, 협동조합의 개혁작업에 대하여 전혀 동참하지 않는 축협측이 본 조항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가 오히려 이상합니다.

(2) 재산권 침해

해산의 사유가 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 등 일체가 합병법인(본 건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인 새농협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는 합병이 가지는 본질적인 법률효과입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청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연히 청산절차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협중앙회의 재산 등 일체의 법률관계가 신설 합병법인인 새농협중앙회에 승계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축협의 재산권을 침해할 사유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권의 침해가 본질적인 것이어서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가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축협중앙회의 통합으로 인하여 그 회원인 축협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넘어 강화되고 있으므로 침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개혁이 축협을 포함하여 농협, 인삼협 등 법에 의한 자조조직을 위해 이루어짐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새농협중앙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미쳐질 순기능까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재산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직업의 자유 침해

축협법의 폐지 및 새농협법의 제정은 헌법상의 요구라고 해야 하고, 나아가 입법권자의 행위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앞서 본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보조를 함께 하는 협동조합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민의 보호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직장의 상실은 그대로 무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새농협법에서 축협중앙회의 직원들을 새농협중앙회의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조정가능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각

중앙회가 제시한 인력감축안 등을 감안하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농협법상의 규정은 그 목적이 농민 및 그 자조조직의 육성이라는 헌법상 요구인 공익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은 축협중앙회를 그 임직원들의 직업의 자유 보호를 위해 존치시키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며, 법률의 형식으로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축협중앙회 임직원들의 직업의 자유는 협동조합의 개혁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과잉금지 원칙 위반

청구인들은 협동조합 스스로 결의하게 할 일을 국가가 강제조치로서 한 것이라거나 자신들의 개혁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을 거론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반박합니다(보충의견서 111면 내지 113면). 이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청구인들에게 축협법 및 새농협법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가 있는 듯 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협법은 농민의 자조조직의 한 형태로 축협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담보하는 축협법의 목적은 본시 국가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농민 및 그 자조조직의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취약해지고 농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종전의 축협법만으로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또는 의무이행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농축협을 포함한 농민은 물론 국가가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의 요청에 부응하고, 또 입법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새농협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새농협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헌법제정권자, 헌법, 입법자 및 국민에 의해 이미 확보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순전한 자율결사라는 전제하에 축협을 바라보고 그러한 결사의 자조조직으로 축협중앙회를 풀이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해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입법과정에서의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들어 입법의 정당성

결여를 운운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입법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 다수의 의사대로 수렴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므로 이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입법목적의 부당성의 판단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기존의 축협법에 의한 농민, 즉 축협조합원 및 그 조직체인 축협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기왕에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국가의 지원행위 및 지원의 기초가 손상됨이 없도록 해야 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 재산과 구성원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 신속하고 간단없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부적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선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축협중앙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회원인 축협이나 그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이를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농협법을 통한 협동조합 개혁에 의해, 축협중앙회의 업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더구나 축협중앙회 해산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가진 법률관계까지도 신설법인인 새농협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농협법의 제정논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적 요구에서 발원하는 것이고, 더구나 침해의 최소성 여부는 양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실질에서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법익의 균형성 문제는 새농협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에 의해 침해를 당하게 되는 법익과 그 반면에 성취되는 법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이행 및 입법자의 협력에 의해 마련된 새농협법이라는 수단에 의해 축협법에 의해 보장되던 법익이 형식적으로는 동일하게, 양적으로는 우월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설사 이를 교량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협이나 그 조합원이 상실한 것은 새농협법 제정의 부수적 효과로 오로지 축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결사의 자유 등에 불과한데 비하여 그들이 새농협법에 의해 얻은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니 더 우월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새농협법과 축협법이 헌법과의 관련하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 인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할 때 새 농협법이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새농협법은 절차적으로는 물론이고 그 실체적으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신청 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5. 축협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요지(2000.3.23)

1) 신청취지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재판소 99헌마553 농업 협동조합법 위헌확인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그 시행을 중지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위 본안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종전의 인 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2)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축협중앙회의 설립 근거규범인 축협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건대,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역축협, 업종축협, 업종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 등의 신청인들은 축협중앙회의 존속 및 유지에 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 축협중앙회를 해산하는데 정당한 입법목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입법목적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 실현을 위하여 축협중앙회를 반드시 해산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입법목적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은 축협중앙회의 해산에서 나아가 통합중앙회에 합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까지 이르러야 할만한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 축협법 제111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축협중앙회를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인들은 축협중앙회의 해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규정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축협중앙회가 바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들의 신뢰를 심히 해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하겠습니까.

3)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종전의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및 삼협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축협중앙회가 해산되고 통합중앙회에 합병되었다가 추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위헌으로 선고되는 경우, 그동안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연인원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통합중앙회에서 축협중앙회 등을 분리하는데 다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축협중앙회가 해산되고 통합중앙회에 합병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그 존립을 상실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추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다시 축협중앙회가 부활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그동안 입었던 실질적 손해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심히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긴급성의 존재

위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00. 7. 1. 농협법이 시행되기 이전은 물론, 설립위원회의 사무처리가 가능한 한 더 이상 진전되기 이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이미 그 사무처리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설립위원회가 투입하여 허비하게 되는 비용과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안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에 우선 일정한 가처분을 결정함으로써 국가적인 비용의 낭비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5)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인 인용된 뒤 추후에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은 통합중앙회의 설립이 본안심판 기각결정심판시점까지 지연될 뿐입니다. 반면에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은, 설립위원회가 통합추진과정에서 사용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원은 쓸모없는 일에 허비한 셈이

되고, 통합중앙회에서 축협중앙회를 다시 분리하는데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원이 소요될 것이며, 통합중앙회의 설립과 해체과정에서 신청인들은 그 존재를 상실하였다가 회복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하였다가 회복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가 회복되는 등 그 침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내용이 재산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등과 같은 비재산적인 부분 및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법익은 일단 침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분신청이 기각된 뒤 추후에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가치분이 인용된 뒤 추후에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다대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6. 가치분신청에 대한 농림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요지(2000.4.12)

1) 가치분신청의 부적법성

신청인들은 새농협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본안으로 하는 사건에서 가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청구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경우에 대해서만 가치분신청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따라서 가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치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결국 헌법소원 사건을 가치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전형적인 본안사건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치분신청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체로 위헌 및 위법적인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2) 승소가능성에 대한 반박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의 전제는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승소가능성입니다. 이미 헌법소원 본안사건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일선축협이나 그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가운데 축협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그리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제정된 것으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한 것인 만큼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법률안의 성안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론지어진 것이므로, 소수의견, 따라서 다수결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의사를 표현했던 축협으로서도 다수결의 결과인 새농협법에 따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 본안사건에서의 승소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패소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인데(헌법재판실무개요, 헌법재판소 1998, 44면) 본안사건에서 신청인들에게 패소가능성만이 있을 뿐이므로 신청인들이 가처분의 이유의 하나로서 본안사건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3)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에 대한 반박

축협중앙회 등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3개의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으로 직접 확보하게 되는 자금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아도 연 2,400억원에 이르므로, 통합에 따라 농민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모든 이익까지는 살피지 않은 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통합비용 측면에서만 살펴보더라도 개혁작업을 비난하거나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합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청인들로서는 오히려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통합작업이 순조롭고 간이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농협법에서 시행일을 공포일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원칙

론에는 동의하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라 하지 않음을 넘어 위법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태도에 바탕한 본 가처분신청 역시 본안사건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인들은 새농협법이 위헌으로 선고될 경우 새농협중앙회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새농협중앙회의 분리에 필요한 비용을 염려하고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 등 실질적 침해를 들어 가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새농협법이 위헌으로 선고되는 것을 가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할 경우 주장의 내용이 정반대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농협법이 합헌으로 선고될 경우 2000. 7. 1. 시행되어야 함에도 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 협동조합제도의 개혁이 좌초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개혁에 찬성하는 농협 및 인삼협측 조합원 및 일선 농협과 인삼협, 그리고 국민경제에 초래되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인들은 새농협법이 위헌으로 선고될 경우만을 가정하고, 그때에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증대하여 가처분이 필연적이라는 것인 바, 오로지 자신들이 통합작업에 주체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그 참여의 거부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단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4) 긴급성에 대한 반박

신청인들은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들어 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긴급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통합비용은 축협중앙회의 존속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혈세로서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하는 개혁의 비용이지 신청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인들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통합작업에 참여하여 새농협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통합준비작업 없이 새농협법이 시행되는 것은 국가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제정한 새농협법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국가법질서의 혼란까지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새농협법이 예정하는대로 사전 준비작업에 완벽을 기함으로

서 새농협중앙회가 자연스럽게 각 중앙회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이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금년 7. 1. 새농협법이 시행되기 전에 본안사건이 선고될 경우 가처분의 긴급성이란 애초부터 문제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5)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협동조합개혁은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해 축협법을 대체하는 새농협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법률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되어야 함이 합헌이며 적법입니다. 새농협법의 시행이라는 당위 앞에서 그 시행으로 인한 득실을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설혹 이해득실을 비교해 본다고 하여도 축협 및 축협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축협법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축협조합과 축산농민 및 농민을 위한다는 존재이유를 가진 축협중앙회로서도 축협법을 갈음하는 새농협법이 양적·질적으로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는 것이므로,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편으로 통합작업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에 의해 새농협법의 시행이나 설립위원회의 준비행위가 제지될 경우 초래될 혼란은 축협만을 넘어 농민전체 나아가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새농협법이 합헌이라면 신청인들에게 회복될 기본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며,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 신청인들의 기본권은 애초부터 침해된 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새농협법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새농협중앙회 설립준비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하등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의 합헌결정

1. 합헌결정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0년 6월 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해산하여 새로 신설되는 통합 농협중앙회에 통합토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축협중앙회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사건번호 99헌마553)를 기각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축협중앙회 등이 신청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2000헌사116)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축협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 조합원, 축협중앙회의 임직원,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서, 2000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축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와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각 해산하여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이하 ‘신설중앙회’라 한다)에 합병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되자, 신법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9월 2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신법의 조항들 중 축협에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들이나, 그 중 주된 쟁점은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중앙회에 합병토

록 하고, 신설중앙회가 기존 축협중앙회의 자산·조직 및 직원을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법 부칙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이하 이들 조항을 “통합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툼으로 집약된다.

(2) 통합조항의 위헌성 여부

① 기본권의 제한 : 통합조항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중앙회에 합병시키고, 축협중앙회 회원조합을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설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보도록 하며, 축협중앙회의 자산을 신설중앙회에 이전시키고, 축협중앙회의 직원을 신설중앙회의 직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헌법 제123조 제5항과 국가의 자주조직 육성 의무 :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주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주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주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되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축협법 제111조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 축협중앙회는 단순한 사법인이라 볼 수 없고 많은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축협법 제111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여서만 중앙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은 단순히 농민의 이익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축협중앙회는 한편으로는 회원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을 보조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해산에 관한 한, 중앙회 회원들끼리 함부로 중앙회를 임의해산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중앙회의 유지·존속을 꾀함과 아울러, 중앙회의 존속여부 및 해산방식에 관하여는 법 자체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유보하여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제정책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행위는, 사회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파악과 그

러한 입법행위가 가져올 영향 및 다른 사회경제정책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판단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자의 정책기술적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되, 다만 입법자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만 이에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입법목적의 정당성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축협법을 만들어냄으로써 1981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축협중앙회가 분가·창립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영농이 특징인 우리 농촌의 현실상 축협 조합원중 약 80%가 농협 조합원으로 상당부분 중복되고 농축협의 경제사업은 정부의 보조·용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자생력이 취약하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사업에서의 적자를 보존하여 오던 신용사업은 오늘날 금융권의 경쟁이 격화되고 예금이 안전한 우량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농협은 국내 최대규모급의 금융기관인 반면, 축협은 제1금융권 중 최소규모로서 신용부문 경쟁력은 매우 뒤떨어지고, 한편 그동안 축협중앙회의 상당한 자금원이 되어 왔던 쇠고기 수입사업 마저도 수입자유화로 더 이상 재원이 될 수 없어 이제 축협중앙회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농가 및 축산농가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협동조합 종사인원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협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목적이다.

⑤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화성 :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의 중복기능 및 불필요한 자산의 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하나로 축소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며, 달리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 합병과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혁 및 효율성의 추구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거대 기업체와 대항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다. 통합으로 인하여 축협중앙회의 개성이 완전히 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법에서도 축산부문의 자율성·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⑥ 법익의 균형성 : 통합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모든 농축산인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다. 축협중앙회의 부실이 최악의 경우에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회원축협들도 동반 파산되어 우리나라의 축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축산인들만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통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⑦ 결론 : 비록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기본권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통합조항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합헌결정의 의미 및 각계반응

1) 합헌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근본취지는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신법이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통합을 거부한다는 축협중앙회의 통합거부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 선 것이다.

이 결정은 기존의 각 중앙회를 강제통합하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률조항에 합헌성을 인정하였지만 축협중앙회를 자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과 같은 공법인으로 본 것은 아니며, 다만 중앙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제한을 헌법상 위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축산분야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신설되는 통합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통합만으로 그간의 비능률과 부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신설되

는 통합중앙회는 그동안 국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옴으로써 발생한 부실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경영개선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보다 거대한 부실과 비효율의 공룡을 만든 것이 되어 우리의 후대에 그 처리의 부담을 지우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법에 의해 2000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는 모두 해산되고,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에 통합하도록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2000년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에 장애가 되었던 모든 법률적 장애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축협으로 하여금 더 이상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축협은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통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농·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통합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축협중앙회장은 언론과의 대담이나 연설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 축협은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전원 일치로 합헌판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승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축협으로는 더 이상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통합중앙회의 출범에 가로놓였던 커다란 장애요소가 해소되었다.

2) 합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합헌’으로 결정하자 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6월 1일 새 협동조합법에 대한 합헌 선고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500만 농업인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민주적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새 협동조합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서 사필귀정으로 매우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

했다. 또한 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군사독재정치하에서 밀실결정에 의해 무원칙하게 분리되었던 농·축협중앙회를 통합,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는데 대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 것”으로 해석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직이기주의에 치우쳐 농심과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 축협측의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제 정부와 농업인, 농민단체는 그동안 법령·정관 등 하드웨어적·양적 개혁에서 소프트웨어적·질적 개혁으로 전환하여 내실있는 협동조합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도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여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통합준비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축협중앙회는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국축협노조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을 통해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6월 2일 신문광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6월 1일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가와 농업인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결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과 축협조합장, 그리고 축협노동조합원께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하여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6월 2일 신문광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1980년 국보위 시절 군사독재정권의 밀실 결정에 의해 무원칙하게 분리되었던 농축협중앙회를 통합시킴으로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으로서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축협중앙회 신규범희장과 경영진 그리고 협동조합 통합에 극렬 반대한 세력은 농축산인과 국민 그리고 축협노동자를 오도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개연은 6월 1일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협동조합통합저지 반대운동을 이끌며 협동조합개혁을 방해해 온 인물을 축산부문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축협이 현재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도 6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협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축협노조 역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협동조합간 화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중앙회 설립 작업의 차질로 일선의 농업인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 7 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과정

- 제1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의 주요경과
- 제2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구 운영
- 제3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 추진과정
- 제4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제5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범

여 백

제7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과정

제1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의 주요경과

1. 통합중앙회 설립 주요경과

1) 통합중앙회 설립추진기구 운영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통과(1999.8.13)된 농업협동조합법을 1999년 9월 7일 정식으로 공포(법률 제6018호)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통합중앙회'라 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통합중앙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1999년 9월 10일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립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과 통합중앙회 정관 작성 그리고 통합중앙회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 통합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10월 8일 설립기획단을 설치하였는데, 설립기획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설립기획단은 설립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심도있게 논의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또한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업무를 보조하고 설립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설립사무국은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기구로서 회의를 준비하고 상정안건을 사전검토하며 실무작업단의 작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작업내용을 지도·조정하는 등 통합중앙회 출범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설립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인원으로 1999년 9월 20일 구성되었다. 한편 실무작업단은 1999년 11월 1일 작업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총 187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작업단은 설립사무국의 지휘를 받아 설립작업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추진하였다.

2) 통합중앙회 설립작업 추진

설립위원회를 비롯하여 설립기획단·설립사무국·실무작업단 등과 같은 통합중앙회 설립추진기구가 구성되면서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설립작업은 시행령·시행규칙 등과 같은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조합정관(예) 등 통합중앙회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조직·사업장 조정방안, 인사·보수 정비방안,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자산실사, 전산통합 등 통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설립위원회가 1999년 12월 15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의결함에 따라 2000년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월 9일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시행령(안)은 2월 1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3월 9일 차관회의,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어, 3월 24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또한 시행규칙(안)은 3월 22일 법제처의 심사를 필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은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설립위원회 제10차 회의(2000.3.10)에서 통합중앙회 정관(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등을 의결하였다. 4월 17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이 제정되었으며,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이 의결되었다.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당일로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인가를 통보하였다. 그 이후 설립위원회는 6월 2일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과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일선조합 정관의 예시사항인 조합정관(예)는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12일 정식으로 고시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과 아울러 통합중앙회의 조직·사업장, 인사·보수, 제규정, 자산실사, 전산통합 등과 같은 실질적인 통합작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농·축·삼협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립사무국 주관으로 3회(1999.11.10~11.27, 2000.2.8~3.4, 2000.3.8~3.31)에 걸쳐 각종 사업장 및 업무시설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축협측의 비협조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축협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지방문조사가 별도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통합중앙회 비전제시, 조직·인력통합방안, 경제사업 이관방안, 인사·보수통합체계 등에 대해 1999년 12월 6일에 삼성경제연구소 및 아더앤더슨코리아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2월 17일에 농·축·삼협중앙회 자산실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립위원회는 이같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6월 8일에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통합중앙회 인사·보수 정비방안,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6월 9일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설립위원회의 권고안으로 통보하였다.

3) 통합중앙회 임원선출

설립위원회는 2000년 3월 10일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할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선거관리사무국은 4월 3일 구성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공고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5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를 선출하였다.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결과 정대근 후보가 통합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윤승혁 후보가 상임감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통합중앙회 비상임감사, 이사,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기존의 농·축·삼협별로 통합중앙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사회후보자 추천회의를 개최하였다. 농협과 삼협측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4월 26일까지 농협측 대의원 239명, 삼협측 대의원 7명의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5월 7일까지 농협과 삼협측 이사회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었다. 반면에 축협측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4월 28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5월 3일 지역축협분야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7명과 5월 4일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6명이 선출되는 등 일부만 선출되었다. 또한 5월 8일 축협측 이사회후보자 6명은 추천되었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는 성원미달로 무산되었다. 결국 이같은 상황하에서 5월 12일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와 신용대표이사(현의송)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비상임감사(박준식)와 이사 27명을 선출하였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선임되지 못했다.

그런데 5월 12일 대의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와 신용대표이사(현의송)가 일신상의 사유로 5월 19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식으로 있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의 사업전담 대표이사 전원을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한편, 5월 26일 축협측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8명이 추가로 선출되었고, 5월 29일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을 의뢰하였다. 결국 6월 2일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농업경제대표이사(노의현) 및 신용대표이사(현의송)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축산경제대표이사(송석우)가 추천됨으로써 통합중앙회 임원선출이 일단락되었다.

4) 통합중앙회 설립 주요경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중앙회 설립기구의 구성, 설립작업의 추진, 임원 선출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1999년 9월 7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어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기까지의 주요경과를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표 7-1> 통합중앙회 설립 주요경과

일 시	주요 경과
1999. 9. 7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을 공포(2000.7.1 시행)
9. 10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15명) 및 제1차 회의 - 위원회 운영방향 및 설립위원회 규정 의결
9. 20	○설립사무국·설립기획단 운영 및 설립작업 세부추진계획 의결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 구성(25명)
10. 8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구성(17명) 및 제1차 회의
11. 1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구성 및 단원 교육 실시
11. 10	○11.10~11.27까지 농·축·삼협의 경제사업 및 전산시설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11. 16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의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마련
12. 6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 삼성경제연구소, 아더앤더슨코리아
12. 15	○설립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 및 의결
2000. 1. 6	○1.7~1.27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27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및 변경
1. 28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일정 확정
2. 8	○중앙회 통합 관련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2.8~3.4) ○전산통합을 위한 축협전산센터 제1차 현지방문조사(2.8~2.10)
2.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확정, 법제처 심사 의뢰
2. 1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2. 14	○전산통합을 위한 축협전산센터 제2차 현지방문조사(2.14~2.15)
2. 17	○각 중앙회 자산실사를 위한 외부용역업체 선정(안진회계법인)
2. 23	○농·축·삼협중앙회 통합 관련 현지실태조사 중간 보고
3. 4	○통합중앙회 정관(안) 심의 및 일부 수정·의결
3. 8	○중앙회 통합 관련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3.8~3.31)

일 시	주요 경과
2000. 3.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차관회의 상정·의결
3. 10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심의·수정·의결 - 창립총회 및 회장·상임감사 선거 실시계획(안) 의결
3. 1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16	○중앙회 통합 관련 축협 전산정보센터 방문조사(3.16~3.22)
3. 2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필
3.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
3. 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
3. 29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일정 확정
4. 3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설치
4. 4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심의
4. 6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공고
4. 17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 참석대상 1,383명중 1,142명 참석(참석률 82.6%)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제정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의결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4.17~5.12) 및 제1차 회의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농림부,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인가
4. 18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후보등록(4.18~4.24)
4. 26	○통합중앙회 농협분야 대의원선거 완료(239명)
	○통합중앙회 인삼협분야 대의원 선거 완료(7명)
4. 28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및 재선거 실시 공문 시행
5. 2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 - 정대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82.8%인 965표 획득) - 윤승혁 후보가 상임감사로 당선(92.8%인 1,067표 획득)
5. 3	○지역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7명)
5. 4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6명)

일 시	주요 경과
2000. 5. 7	○농협중앙회 및 삼협중앙회는 통합중앙회 이사후보자 추천 완료
5. 8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6인 추천)
	○통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는 성원 미달로 무산
5. 12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 신용대표(현의송), 농업경제대표(손은남) 임명동의안 의결 - 비상임감사(박준식) 선출 - 이사 선출 : 회원조합장 20명, 외부인사 7명
5. 17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설치,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5. 19	○설립위원회가 축협조합장에게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 공문 송부
5. 26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 사의 표명 ○설립위원회가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심의
5. 29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추가선출(8명)
6. 1	○헌법소원 합헌결정
6. 2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개최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 농업경제대표(노의현)·신용대표(현의송) 임명동의안 의결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개최 : 축산경제대표이사(송석우) 추천
6. 8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5차 회의 -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 통합중앙회 인사·보수 정비방안 -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6. 9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설립위원회의 권고안 통보
6. 12	○통합중앙회 조합정관(예) 고시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5차 회의(통합중앙회 조직 및 정원)
6. 14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6차 회의(제규정 제정(안))
6. 21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7차 회의(직급·호봉 조정방향)
7. 1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통합중앙회) 출범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기존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해산

2.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의 갈등

1) 설립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갈등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1999.9.7)되면서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축협이 설립작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였다. 이같은 갈등과 대립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1999.9.10)에 서부터 통합중앙회가 공식 출범(2000.7.1)할 때까지 거의 전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고 축협이 이 결정을 수용하여 통합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999년 9월 9일 신규범 축협중앙회장을 면담하고 축협이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설립위원회 역시 9월 16일과 21일에 각각 축협중앙회에 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는 문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축협은 9월 17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한다고 의결하고 그 입장을 9월 20일 농림부에 통보하였다(축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경과,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6장 참조).

이에 대해 농림부는 9월 22일, 축협중앙회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은 축협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부당한 의결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시달하였고, 축협중앙회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0월 11일 취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농림부의 취소명령이 부당하다며 10월 12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축협이사회 및 총회결의사항 취소명령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축협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12월 27일 농림부의 취소명령이 정당하다면서 축협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협중앙회는 2000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99구37708호).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6월 13일 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처럼 축협은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격렬한 통합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축협중앙회 노조는 농림부와 설립위원회가 축협측에 수차례에 걸쳐 설립작업 참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1999년 10월 12일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는 더 이상 축협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축협경영진은 농림부의 설립기획단 추진에 강력 대처하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축협조합장 일동은 10월 20일 신문광고를 통해 “농림부는 축협에 간섭하지 말고 농정현안에 충실하라”고 주장하는 등 ‘통합반대 및 설립작업 참여 거부’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협중앙회는 축협VISA카드 고객에게 친구범 축협중앙회장의 할복기도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를 보내 통합반대의 입장을 여론화시키고자 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11.11)에 정부가 축협중앙회장을 참석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편, 친구범 축협중앙회장은 11월 21일 YTN과 가진 대담에서 “차기 WTO협상에서 쌀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축산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축협이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축협중앙회는 농림부와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 축산농가의 사례를 들어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가슴을 적시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11.25)와 “이 할머니의 눈물, 그 의미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신문광고(12.2) 등을 게재하는 등 국민들에게 축협과 축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등은 11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림부의 축협생매장 행위 고발, 농림부장관의 즉각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11월 23일 공동명의로 “인터넷 명의도용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으며, 12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비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등의 공동명의로 12월 3일 신문광고를 통해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홍보하였다.

이처럼 축협이 통합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통합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농림부는 10월 11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가용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

여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축협조합장 일동 명의의 신문광고(10.20자)에 대해 10월 23일 왜곡·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고, 11월 30일에는 전국의 축협조합장에게 서신을 보내 협동조합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 축협중앙회장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통합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각종 불법·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정부가 축협중앙회장을 정상적인 농업단체장으로 인정하여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탈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림부는 12월 29일 ‘협동조합 개혁, 이것이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협동조합개혁 홍보물을 발간·배포하여 축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2000년 1월 14일 협동조합개혁 홍보용 멀티슬라이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1월 25일에는 축협중앙회에 설립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12월 9일 신문광고를 통해 중앙회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협중앙회 노조는 12월 10일 신문광고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협개연은 12월 10일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의 통합반대 활동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12월 30일 신문광고를 통해 “축협은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설립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12월 31일 신문광고를 통해 “축협은 국론분열행위를 중단하고 축산농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축협의 통합반대 활동과 별개로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이 중앙회통합과 관련하여 조직·인사 개편 등 세부실천계획을 담은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련과 공동으로 1999년 11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작업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11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1월 25일에는 농협조합장 일동이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본구상(안)은 농림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일선 농협조합장에게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2) 지속적인 통합반대 운동

축협중앙회는 신문광고, 성명서,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통합반대 여론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같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통합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원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축사모)’의 결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합반대에 대한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국민여론의 확산을 시도했다. 축사모는 △고두심(연기인) △김병태(전 건국대 교수) △김숙희(전 교육부장관, 아시아영양학회장) △김진홍(목사, 두레마을공동체대표) △김현욱(서울대교수) △단병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제창(건국대교수) △법타(스님,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회장) △손호철(서강대교수, 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득룡(전 축협중앙회장)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함세웅(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황영구(한국종축개발협회 고문) 등 14인을 공동대표로하여, 1999년 12월 9일 “수입개방, 균형없는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하며 결성되었다.

축사모는 결성 직후 12월 10일과 12월 23일 각각 신문광고를 통해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을 홍보하였고, 축협중앙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트리플2000(2000년에 2000만 북한동포에게 2000만개 계란보내기 운동), 축산사랑·축협사랑 퀴즈대잔치, 새천년 목우촌장학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축협과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 24일 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 △축산업이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할 것 △WTO차기협상에서 품목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축산업을 상대적으로 희생시키지 말 것 △수입쇠

고기 소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농림부장관은 자진사퇴할 것 △광우병, O-157, 다 이옥신, 납탄 등 수입축산물의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등 5개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축협중앙회와 축사모는 300만명을 목표로 '통합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를 위해 12월 9일 각 시·도지회별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서명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임직원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농협중앙회 노조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2000년 2월 17일 '우리농업·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월 29일 500만명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하고 협동조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2000년 1월 13일자 강원도민일보에 "축협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의 발언이 보도되고, 이어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축협의 각 시·도지회를 순회방문하면서 축협의 정치세력화 및 4.13총선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나 집단과의 정책연대 추진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축협의 정치세력화 문제가 쟁점화되었다. 2월 12일자 국제신문은 "축협이 여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정책연대를 구상하고 있으며, 축사모를 16대 총선에 적극 활용해 통합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신구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축협중앙회 노조는 1월 17일 전국분회장회의를 열고, 1월 20일부터 4.13총선전까지 여당의 각 지구당사 앞에서 매일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총선시기에 맞춘 정치권 압박 및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각 도단위별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공동으로 "축산말살정책 정부 및 민주당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에 대하여 정치세력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축협중앙회의 4.13총선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전방지를 공식 요청하였다.

그리고 축협중앙회 및 전국축협조합은 공동주관으로 3월 12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축산사랑·축협전이용·축산업사수·강제통합반대 전국축산인대회'를 개최하고, 강

제통합 반대 및 통합법안 철폐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외중에 3월하순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과동이 일어나자 축협중앙회는 통합반대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 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여 개 시민·노동·농민·사회단체는 3월 29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7일 신문광고를 통해 "구제역과동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통합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4월 9일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 및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통합작업 추진과정의 갈등

이런 가운데 축협중앙회는 2000년 2월 17일 총회에서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던 이기동(전북양계축협)조합장과 안명수(광주광역시축협)조합장에 대해 이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동·안명수 조합장은 2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에 대한 이사 해임 의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축협을 위기로 몰고 가는 특정세력과 특정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2월 17일 축협중앙회 총회의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을 내렸다. 축협중앙회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농림부의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6월 13일에 취하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협중앙회는 2월 17일 총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에 불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2월 18일부터 '중앙회를 배제한 일체의 정책사업이나 정책자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축협중앙회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일선 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3월 3일에는 일선축협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절차는 축협이 정책사업과 정책자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정책사업 추진 및 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여 축협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4월 17일에 개최된 통합중앙회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축협이 일선 축협조합장의 참석을 저지하는 등 창립총회 개최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4월 12일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에 대하여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축협중앙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창립총회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 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4월 17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회의장(서울교육문화회관)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이에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4월 18일 창립총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불법집회개최 등의 사유로 오상현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과 김의열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을 형사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5월 2일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여전히 축협측이 일선 축협조합장의 총회참석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4월 28일 축협중앙회에 임시총회 방해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구제역대책 대토론회(5.1~5.2)를 명분으로 축협조합장의 임시총회 참석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축협중앙회 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범국민대책위원회 주관하에 5월 2일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막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축협측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다.

한편, 4월 17일 창립총회가 끝난 이후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농협과 삼협측은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이사후보자 추천 과정을 무난하게 진행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추천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축협측은 설립위원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사후보자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4월 26일 축협은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4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축협분야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직접 나서 5월 3일과 4일에 13명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를 각각 선출하고 5월 8일 축협측 이사후보자까지는 추천하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축산경제대표

이사 추천회의는 성원미달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5월 26일 축협분야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8명이 추가로 선출되었고, 6월 2일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선거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었다. 한편 5월 12일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통합중앙회 이사로 회원조합장 20명과 외부 인사 7명 등 총 27명이 선출되었는데, 축협중앙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방법원에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민사소송과 '통합중앙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축협중앙회는 6월 13일 이 두 가지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축협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이 하나씩 진척되어 나가는 가운데, 축협중앙회 노조는 5월 22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3%의 찬성으로 총파업(5.31~6.3)을 결의하였으며, 전국축협노조도 총파업(5.31)을 결의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5월 25일 축협중앙회 및 전국축협에 총파업자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5월 27일부터는 파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다. 그리고 축협중앙회 노조 및 전국축협노조가 추진한 총파업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6.1)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6.1) 이후 헌법소원을 이유로 축협중앙회가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벌인 책임을 물어 6월 2일 신규범 축협중앙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형사고발조치하였으며, 전국축협조합장에게는 통합농협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그리고 농림부는 6월 3일 축협중앙회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6월 7일 신규범 축협중앙회장이 퇴임하였으며, 6월 8일부터 축협중앙회가 설립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설립과정 갈등의 주요경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은 출발부터 축협의 참여 유보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대립과 갈등의 주요경과를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 통합중앙회 설립과정 갈등의 주요경과

일 시	주요 경과
1999. 9. 9 9. 16 9. 17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이 축협중앙회장과 면담 및 설립위원회 참여 촉구 ○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참여를 촉구 ○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결과시까지 설립위원회 참여 유보 ○ 축협이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참여 보류 입장을 통보
1999. 9. 21 9. 22 10. 8 10. 11 10. 12 10. 20 11. 2 11. 13 11. 16 11. 18 11. 21 11. 23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위원회 및 실무작업단 구성 협조 요청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임시총회(9.17) 결의사항 취소 명령 시달 ○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취소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의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취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설립위원회·설립기획단 참여 재차 촉구 ○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총회의결 취소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림부는 축협분열 획책하지 말라) ○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축협에 간섭 말고 농정현안에 충실하라) ○ 한농연 경남연합회 성명(축협은 통합작업에 동참하라) ○ 한농연 성명(축협노조는 노동자대회 참여를 중단할 것을 촉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농림부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 성명(농림부장관의 즉각사퇴와 책임자 처벌) ○ 민주노총 기자회견(농림부장관의 사퇴 촉구) ○ 사무금융노련 성명(축협죽이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농림부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저질러) ○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은 정부의 실험대상도 방패막이도 아니다 -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작업에 대한 월권행위 중단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 광고(인터넷 명의도용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자 누구인가?) ○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을 철회하라)

일 시	주요 경과
11. 25	○농협조합장 일동이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문 전달 - 기본구상(안)은 농림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힐 것 등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11. 30	○농림부가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에게 개혁 협조 서신 송부
12. 2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 성명(농림부의 비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1999. 12. 2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이 할머니의 눈물, 그 의미를 아십니까?)
12. 3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신문광고(누구를 위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인가?)
12. 9	○농협중앙회 신문광고(중앙회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결성(공동대표 14명)
12. 10	○농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협동조합개혁, 소모적 논쟁은 끝났다)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 서명운동 중단하라)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대국민 호소문)
12. 13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 서명운동을 중단하라)
12. 23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12. 24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광고(부끄러운 거짓말, 국민의 정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12. 27	○행정심판위원회가 축협의 '축협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농림부의 취소명령 인정)
12. 30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은 소모적 논쟁 중지, 설립작업 동참해야)
12. 31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은 국론분열행위를 중단하고 축산농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2000. 1. 6	○축협중앙회가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1. 12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축협 정치세력화' 발언
1. 17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분회장회의(4.13총선 관련 여당 지구당사 항의집회 결의)
1. 24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성명(농림부장관 자진사퇴 등)
1. 25	○축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농림부장관 교체, 농협법 철폐)
2. 10	○축협중앙회에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차 촉구

일 시	주요 경과
2000. 2. 11	○농협중앙회 노조, 금융노련, 한국노총이 농림부장관과 간담회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이사해임 중단을 재차 촉구
2. 14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정치세력화 움직임 중단을 재차 촉구
2. 15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전산통합 현장방문조사 방해 중단 촉구
	○농림부가 중앙선관위에 축협중앙회의 4.13총선 관여 협조 요청
	○농림부장관과 민주노총의 간담회
2. 17	○축협중앙회 총회 개최, 설립위원회 및 기획단 참여 조합장 이
	사(2명) 해임 의결,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불참 결의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총회의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
	○해임된 축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2명의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농협중앙회 노조,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우리농업·환경살
	리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
2. 18	○축협중앙회 총회 의결사항(2.17)에 대한 일선 축협의 의견 확인
	- 중앙회를 배제한 일체의 정책사업이나 정책자금 취급하지
	않겠다는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일선 조합의 입장 확인
2. 23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2. 24	○민주노총 신문광고(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하라)
2. 29	○축협중앙회장 기자회견(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 결정시까지 설
	립위원회 참여 유보 입장 확인)
3. 3	○농림부가 일선축협에 정책사업·정책자금 취급 여부 재차 확인
3. 12	○축협중앙회·전국축협조합이 '전국축산인대회' 개최(여의도)
	- 강제통합 반대 및 통합법안 철폐
3. 29	○농협중앙회 노조,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우리농업·환경살
	리기 위한 500만명 서명부'를 정부·헌법재판소 등에 전달
	○축협중앙회 노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개 단체가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
4. 7	위원회' 결성
4. 7	○범국민대책위원회 신문광고
	- 구제역과동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통합일정 즉각 중단 요구
4. 9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강제통합 반대 및 통합농협법 철폐 국
	민대회' 개최

일 시	주요 경과
2000. 4. 12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에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협조 요청
4. 14	○축협중앙회와 축협운영협의회 의장에게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방해활동 중단 촉구
4. 17	○축협측이 창립총회 회의장 진입시도 및 경찰과 충돌
4. 18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과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을 형사고발조치
4. 26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
4. 28	○축협이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 선출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
4. 28	○축협중앙회에 임시총회(5.2) 방해행위 중단 촉구
5. 2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및 재선거 실시 공문 시행
5. 2	○축협측이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 저지를 위해 임시총회 회의장 진입시도 및 경찰과 충돌
5. 10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에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
5. 17	○축협중앙회가 통합중앙회 이사선임 무효확인소송 제기
5. 22	○축협중앙회 노조, 파업찬반투표 및 총파업결의(5.31~6.3)
5. 25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및 전국 축협에 5.31총파업 자체 촉구
5. 29	○축협중앙회가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 -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 축협측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5. 31	○축협중앙회 노조 및 전국축협노조의 부분파업 진행
6. 1	○헌법재판소가 축협의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합헌결정
6. 2	○축협중앙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형사고발
6. 3	○축협조합장에게 통합농협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 시달
6. 3	○축협중앙회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
6. 7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퇴임
6. 8	○축협이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에 참여
6. 13	○축협중앙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 - 축협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취소 청구 취하 - 축협중앙회 정기총회 결의 취소명령 처분취소 청구 취하 -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취하 - 통합중앙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취하

제2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구 운영

1. 설립위원회

1) 구성 및 기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1999년 9월 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인삼협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통합중앙회의 설립절차 확정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 조합정관(예) 제정(안) 마련 △통합중앙회 임원 등 집행부 및 의결기구 구성 △통합중앙회의 조직·사업장 조정방안 제시 △통합중앙회의 인사·보수 정비방안 제시 △통합중앙회의 제규정 정비방향 제시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해산등기 및 인수인계 관련업무 △통합중앙회의 설립등기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설립위원회 운영예산 편성 등 통합작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량감 있는 각계인사를 형평에 맞게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축협의 대등통합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농·축협 임직원은 동수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1999년 9월 10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김동태 농림부차관과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정세욱 명지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농림부, 농·축·삼협 임직원, 농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언론계 대표 13인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립사무국장이 설립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다. 한편, 2000년 1월 27일 농림부차관의 교체로 신임 김동근 농림부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위원중에서도 한두봉 위원이 조병찬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으로 교체되는 등 부분적인 변동이 있었다. 또한 5월 24일에는 손은남 위원(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이내수 위원(농협중앙회 부회장)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설립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7-3>과 같다.

〈표 7-3〉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기 간	
공동위원장	김 동 태	농림부 차관	1999. 9.10~2000. 1.26	
"	김 동 근	"	2000. 1.27~2000. 6.30	
위 원	정 세 욱	명지대학교 교수	1999. 9.10~2000. 6.30	
	안 종 운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	
	손 은 남	농협중앙회 부회장	1999. 9.10~2000. 5.23	
	"	이 내 수	"	2000. 5.24~2000. 6.30
	"	이 범 섭	축협중앙회 부회장	1999. 9.10~2000. 6.30
	"	노 종 규	삼협중앙회 상무	"
	"	조 응 래	양주군 남면농협 조합장	"
	"	안 명 수	광주광역시축협 조합장	"
	"	정 장 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
	"	서 순 악	옥잠화영농법인 대표	"
	"	강 봉 순	서울대학교 교수	"
	"	한 두 봉	고려대학교 교수	1999. 9.10~2000. 1.26
	"	조 병 찬	동국대학교 교수	2000. 1.27~2000. 6.30
	"	김 동 원	수원대학교 교수	1999. 9.10~2000. 6.30
간 사	배 병 휴	매일경제신문 고문	"	
	전 정 희	농수축산신문 사장	"	
	서 성 배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1999. 9.10~1999.12.30	
"	정 학 수	"	1999.12.31~2000. 6.30	
계	설립위원회 위원 : 15명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축협중앙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위촉의 수락과 회의참여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축협중앙회가 강제할 수 없다고 농림부에 회신하는 등 위원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특히, 축협중앙회를 대표하여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범섭(축협중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축

협이 농·축협중앙회의 단순통합에 반대해 왔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설립위원회 참여를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원위촉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범섭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0.6.1) 이후에 2차례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안명수 위원(광주광역시축협 조합장)은 설립위원회 제7차 회의(2000.2.8)부터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식으로 참가하였다.

2) 주요 활동

설립위원회는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해산 및 인수인계 그리고 새로운 통합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모든 작업을 총괄하면서 그에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회의(1999.9.10)

설립위원회는 1999년 9월 10일 현판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설립위원회 규정을 의결하고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결정하였다. 설립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설립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기획단과 설립사무국 및 실무작업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당사자간의 자율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설립사무국이 실무작업단의 활동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관계자로만 구성된 실무작업단이 임직원의 이익만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9월 16일 축협중앙회에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설립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9월 16일 설립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결과를 담은 소식지 제1호를 발행하였다.

(2) 제2차 회의(1999.9.20)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설립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기획단 및 설립사무국의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설립기획단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필요시마다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인삼협조합장과 여성농민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설립사무국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여 그 산하에 기획총무, 경제사업, 법령정비, 교육홍보반의 4개 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축협측이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21일 축협중앙회에 대하여 설립위원회 및 실무작업단에 위원을 추천하는 등 통합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설립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추진세부계획을 검토하고, 10월 1일 농·축·인삼협중앙회에 위원회 규정 및 세부추진일정을 전달하면서 설립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10월 4일에는 농·축·인삼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조합정관(예) 등에 반영할 사항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축협이 설립위원회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10월 15일 재차 자료제출을 촉구하였고, 축협은 10월 28일 현황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통합과 관련하여 농·축·인삼협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농·축·인삼협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는 11월 1일 현지실태조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설립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경제사업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1999.11.17)

제3차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 설립은 자유롭게 하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되 경영이 부실한 조합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조합원·조합 상임이사·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조합감사위원회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4) 제4차 회의(1999.12.4)

제4차 회의에서는 설립사무국이 마련한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이 설립위원회의 의결과정 없이 발표되어 일선농협과 농협중앙회 노조의 반발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설립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논의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설립위원회 산하의 설립기획단, 설립사무국, 실무작업반 등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차기회의로 이월하였고, 김동원 위원과 조용래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도 차기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축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협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그 방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중앙회의 비전, 조직·인력의 통합방안, 경제사업장의 이관방안, 인사·보수체계 통합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12월 6일 삼성경제연구소 및 아더앤더슨코리아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제5차 회의(1999.12.15)

제4차 회의에서 축협의 입장을 듣기로 한 결정에 따라 제5차 회의에 축협중앙회의 이범섭 부회장이 참석하여 축협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범섭 부회장은 신경분리를 통한 별도은행 설립, 종전 농·축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축협연합회로 개편, 연합회와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회 설립 등을 주장하였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설립위원회 참여는 헌법소원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참여를 유보하였으며 헌법소원 결과는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범섭 부회장은 통합법은 신경분리 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고, 통합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통합에 대한 정부관여는 최소화 할 것과 설립위원회는 법에서 부여한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경제사업 슬림화 등 법 이외의 사항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설립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성배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신경분리는 현 단계에서 무리이며 앞으로 2년간 연구하여 결정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설립작업에 정부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가 제정한 통합법도 정당한 입법이므로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축협이 설립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설립위원회 위원들은 신경분리 및 별도법인화가 축협의 기본입장이라면 이는 이미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축협이 계속하여 투쟁할 명분이 되지 못하며, 이같은 축협의 주장은 통합법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설립위원회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제5차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를 계속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조합의 조합원수는 현행 1,0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대도시·산간·오지·도서조합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으로 하고, 출자금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지역조합은 3억원 이상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는 협동조합원칙 및 농업인의 자율결정을 고려해서 현행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경제·신용대표이사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는 모두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인삼협에서 건의한 △중앙회 업무의 품목조합연합회 위탁근거 마련 △품목조합연합회의 정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근거 마련 △중앙회 이사회에 품목조합연합회장의 당연직 포함 등은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농협법을 개정할 경우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로 임명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의 위임전결처리 업무에 소속직원 인사(승진, 전보) 포함 △직원인사교류에 연합회장과 사전 협의 근거 마련 등은 중앙회 정관 제정시 반영 여부를 종합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에서 의결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치를 거쳐 2000년 1월 6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월 7일부터 27일까지로 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27일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을 맡고 있던 김동태 농림부차관이 이임하고 신임 김동근 농림부차관이 취임함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교체되었으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조병찬 동국대학교 교수로 교체되었다.

(6) 제6차 회의(2000.1.28)

제6차 회의에서는 △중앙회 사업 및 조직 통합작업 △하위법령 및 규정정비 △집행부 및 대의원회 구성 등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을 의결·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2월 1일 협동조합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을 통보하면서 전산통합과 자산실사에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금융상품 통합에도 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만큼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축·삼협중앙회가 자료제출, 직원과건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설립위원회는 종전 농·축·삼협중앙회가 무분별한 직급조정, 선심성 사업집행,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중앙회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농림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2월 2일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7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7월 1일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출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통합추진일정을 홍보하였다.

(7) 제7차 회의(2000.2.8)

제7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의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 임명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회의 구성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 승진전보권 △경영위원회 설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의 의결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총회 임명동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은 중앙회 통합과 관련하여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산통합을 위한 축협 전산정보센터 현지방문조사는 1차(2.8~2.10), 2차(2.14~2.15)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현지 축협 직원들의 반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2월 17일 농·축·삼협중앙회 자산실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안진회계법인과 자산실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8) 제8차 회의(2000.2.21)

제8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하였다. 우선, 대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수가 8개 이상인 시·군에 대해 대의원 1인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3개 조합당 1인으로 하되, 인삼조합은 도별 1인씩 총 7인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이사수는 당연직 이사 4인을 포함해서 31인으로 하고 지역농협 10인, 지역축협 3인, 전문농협 3인, 업종축협 3인, 인삼조합 1인, 사외이사 7인으로 하되, 사외이사 선정시 1인을 인삼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와 관련하여 구성원수는 50명 이내로 하고, 선출방법은 대의원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기능은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만약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 128조 5항에 의해 직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중앙회장이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명동의안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인삼사업 전담 집행간부 임명 절차는 인삼조합장 회의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제청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삼사업 전담 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은 현행대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회의(2000.3.4)

제9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각도별 조합수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배정한 결과 지역축협이 당초 49명에서 48명으로, 전문농협·업종축협이 각각 16명에

서 15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대의원수를 312명에서 309명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축산경제대표자회의의 구성원수를 50명 이내에서 45명 이상 55명 이하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제9차 회의에서 확정된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해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일선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10) 제10차 회의(2000.3.10)

제10차 회의에서는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한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신용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중앙회(농업경제 및 축산경제부문 종사자 제외) 또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수정하여 신용대표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외에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과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도 의결하였고, 정관제정을 위한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4월 17일에,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 총회를 5월 2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3월 17일 농·축·삼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국내외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설립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요청하였다.

(11) 제11차 회의(2000.3.29)

제11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하였다. 대의원회는 5월 12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은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후보자 추천은 선거일 5일전까지인 5월 2일부터 7일까지로 하고,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는 5월 9일에 설립위원장이 소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제11차 회의에서는 조합정관(예) 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조합과 거래할 수 있는 규모는 신용사업은 1억원

으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지역농협의 경우 거래건당 1천만원, 거래총잔액 5천만원,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경우 거래건당은 2천만원, 거래총잔액 1억5천만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출자전환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품목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을 수정하였는데, 한우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을 한육우 20두 이상에서 10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 외에 인삼조합의 구역문제는 추후 행정지도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를 인삼조합의 사업에 추가하는 문제는 인삼조합에서 자체 정관에 반영하여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제11차 회의결과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3월 30일 농·축·삼협중앙회에 선거관리위원 및 사무국 직원 추천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가 4월 3일에 완료되었다.

(12) 제12차 회의(2000.4.4)

제12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최종적으로 협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회의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자격요건에 국가기관 종사경력을 추가하고, 신용대표이사 결격사유에 일반금융기관의 은행장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정관(안)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전산통합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농·축협 전산시스템 규모차이에 따른 통합비용과 통합시스템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협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통합비용 763억원은 정부가 보조·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농협기종으로 통합함에 따라 축협 전산센터 직원 183명에 대한 고용안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설립위원회는 제11차 회의결과에 따라 4월 6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공고하고, 4월 7일에는 전국의 시장·군수에게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선 축협조합장에게 창립총회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7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을 제정하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

제조조합대표자 선거규약을 의결하였다. 농림부는 4월 17일 당일로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을 인가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통보했다.

(13) 제13차 회의(2000.5.26)

제13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출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축산경제조합대표자가 구성원의 과반수인 25명 이상 선출될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를 6월 1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자 추천마감을 5월 30일 12:00로, 후보자 심사 확정도 5월 30일 18:00로 하루 연장하였다. 그리고 축산경제조합대표자가 25명 미만일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6월 2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의 특례를 여러 차례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조합장들이 축산경제조합대표자 회의를 구성치 않아 그 선출특례를 축협조합장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중앙회장 당선자가 축산경제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축산경제 대의원회에서 이를 선출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제12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통합중앙회의 인수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외에 농·축·삼협중앙회의 자산·부채 실사 추진계획에 대한 실무작업단장의 보고가 있었다.

(14) 제14차 회의(2000.6.2)

제14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과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경제조합대표자회의의 원만한 구성과 회의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별·품목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그 구성원의 수를 지역축협 및 축산계품목조합의 조합장 '45인이상, 55인이하'에서 '15인이상, 30인이하'로 하향조정하고, 그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축산계품목조합의 조합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합장대표자가 지역별·축종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축협의 조합장은 도별로 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3개 축종 이상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 선출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는 개정된 정관 및 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임명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4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을 다시 논의하였는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복 조직 및 점포를 대폭 정리토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의결하되, 설립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송부하여 조직정비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설립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에 따라 6월 2일 통합중앙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신용대표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6월 2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축산경제대표이사도 선임되었다.

(15) 제15차 회의(2000.6.8)

제15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인사 및 보수제도 정비방안, 제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앙회장의 직속조직으로 1위원회·2본부·8부실·2센터·1국을 두고,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조직으로 4본부·1실·9부를,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조직으로 2본부·1실·4부를, 신용대표이사 소관조직으로 3본부·1실·10부를 각각 두기로 하였고, 시·도 조직은 16개 시·도지회로 운영하되,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도지회에는 4부를 두고, 제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등 8개 시·도지회에는 2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조합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산하에 2개국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통합중앙회의 조직개편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경제사업장 조정방안으로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만 정하기로 하고 사업유형별 적용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신용점포는 전산시설 교체 필요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농·축협 점포간 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 비교열위 점포를 2000년말까지 정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98년 이후 신설 또는 폐쇄된 사업장의 인원증감요인을 고려하여 감축인원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직급 및 호봉조정은 농협중앙회체제를 기준으로 하되, 중앙회 직원간 형평성 도모와 조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력구조조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설립위원회에서는 원칙적인 기본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설립위원회는 제15차 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통합중앙회 인사·보수 정비방안 △통합중앙회 체규정 정비방향 등에 대한 설립위원회 권고안을 6월 9일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16) 제16차 회의(2000.6.28)

제16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설립등기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3개 중앙회의 지분비율과 관련하여 축협의 비협조로 자산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월말 기준으로 등기신청일 현재 3개 중앙회의 등기부상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에 통합중앙회가 자산실사결과와 결산손익결과를 반영하여 종전의 3개 중앙회별 지분배분비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3) 주요 운영경과

이상과 같이 진행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주요 운영경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7-4>와 같다.

〈표 7-4〉 설립위원회 주요 운영경과

구 분	일 시	주요 운영 사항
제1차 회의	1999. 9. 10	○ 설립위원회 규정 의결 및 위원회 운영방향 결정
제2차 회의	9. 20	○ 설립기획단 및 설립사무국 운영계획 확정 ○ 설립세부추진계획 검토
제3차 회의	11. 17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조합상임이사·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조합감사위원회 자격기준 등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보고
제4차 회의	12. 4	○ 축협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 ○ 축협의 입장 청취 및 논의
제5차 회의	12. 15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자격기준 등 - 삼협 건의사항 검토
제6차 회의	2000. 1. 28	○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일정 의결 - 사업 및 조직통합, 하위법령 및 규정정비, 집행부 및 대의원회 구성 등
제7차 회의	2. 8	○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 논의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 임명,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전보권, 경영위원회 설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의 의결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총회 임명동의 등
제8차 회의	2. 21	○ 통합중앙회 정관(안) 심의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 임명,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의 의결권 등

구 분	일 시	주요 운영 사항
제9차 회의	3. 4	○통합중앙회 정관(안) 의결 - 대의원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등
제10차 회의	1999. 3. 10	○통합중앙회 정관(안) 수정(신용대표이사 자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의결 ○대의원회및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의결
제11차 회의	3. 29	○창립총회 및 회장·상임감사 선거계획 확정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일정 확정
제12차 회의	4. 4	○조합정관(예) 제정방향 논의 ○통합중앙회 정관(안) 수정·의결 - 사업전담대표이사 자격요건
제13차 회의	2000. 5. 26	○통합중앙회 전산통합 추진방안 협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논의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논의
제14차 회의	6. 2	○농·축·삼협중앙회 자산실사추진계획 보고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제15차 회의	6. 8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논의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논의
제16차 회의	6. 26	○통합중앙회 인사 및 보수제도 정비방안 논의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논의 ○통합중앙회 설립등기 추진방안 논의

2. 설립기획단

1) 구성 및 기능

설립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설립기획단은 설립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심도있게 논의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설립기획단에서 검토된 모든 사항은 설립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설립기획단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이더라도 복수안을 마련하여 설립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설립기획단은 1999년 10월 8일 농림부, 농·축협중앙회 임직원 2인, 일선 농·축·삼협 조합장 5인, 농민단체 4인, 학계 및 전문가 5인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설립기획단의 위원장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맡았는데, 처음에는 서성배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맡았으나 농림부 인사이동으로 12월 31일부터는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이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설립기획단의 구성은 <표 7-5>와 같다. 그리고 설립기획단의 위원장은 각종 설립추진기구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설립위원회의 간사 및 설립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임하였다.

<표 7-5>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구성

성 명	소속 및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책
서 성 배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 성 기	농업전문가
정 학 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교체)	남 경 우	축산전문가
김 용 택	농협중앙회 종합조정실장	김 정 주	건국대학교 교수
황 영	축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	노 재 선	서울대학교 교수
강 성 국	영주 평은농협 조합장	박 성 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 태 언	아산 원예농협 조합장	박 복 태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박 문 재	무안축협 조합장	김 인 식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 기 동	전북양계축협 조합장	장 연 숙	여성농업인연합회 부회장
유 경 종	강화 인삼조합 조합장	권 미 영	여성농민총연합 정책실장
계	위원 : 17명		

한편, 설립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축협은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설립 작업에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설립기획단 위원위촉의 수락 및 회의참여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의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축협중앙회가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황엽 축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설립기획단 위원 위촉을 거부하였으나, 박문재 무안축협장과 이기동 전북양계축협 조합장은 설립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기동 위원의 경우 통합중앙회 설립업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명수(광주축협 조합장) 설립위원회 위원과 함께 2000년 2월 17일 축협중앙회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

2) 주요 활동

(1) 제1차 회의(1999.10.8)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규정 및 설립기획단의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축협이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를 외면한 잘못된 일로서 설립기획단 위원들이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축협을 설득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 제2차 회의(1999.10.22)

제2차 회의에 축협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박문재 무안축협 조합장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회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관련하여 조합원수를 현행 1,000인 이상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오지와 대도시지역 조합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합의 출자금 상향조정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억원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과다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는 축협의 조합원자격을 상향조정해서 농협의 조합원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에 조합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로 제한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조합장을 상근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회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근무직급별 이수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금융기관 종사경력자도 상근직에 포함하여 조합의 선택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넷째, 지역조합의 중앙회로부터의 신용사업자금차입한도는 신용사업차입 한도를 현행 1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지역조합의 조합원 1인에 대한 대출한도와 관련하여 동일조합원 대출한도에 있어서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대출한도를 확대하되,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조합의 여유자금예치가능 금융기관 확대여부와 관련하여 조합여유자금을 농협법에 의한 다른 조합에 대출해서 조합간 자금유통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합여유자금을 중앙회에만 예치하도록 하자는 반론이 제기되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제3차 회의(1999.11.12)

제3차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안)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우선, 조합의 여유자금예치가능 금융기관의 범위에 농협법에 의한 조합을 포함시켜 조합간 자금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합의 여유자금으로 매입 가능한 유가증권의 대상을 종전에 채권형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주식형 수익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우채 문제 등 위험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둘째,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도 허용하되, 자본금 2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관련법인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자본금 100억원 이상 정

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용어를 농산물 가공·자재생산업체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보완에 대해, 농업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 등에 종사한 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조합장경력도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슬림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 경제사업의 회원조합 이관 및 자회사화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을 다 이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중앙회 사업과 경합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회원조합사업의 중앙회 이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관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이후 회원조합의 경영능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중앙회 경제사업의 자회사 설립은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자회사는 수익증대가 주목적이므로 결국 농민조합원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제4차 회의(1999.12.1)

제4차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우선,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는 현행기준 1,000명을 유지하되, 대도시·산간·오지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고, 출자금은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조합상임이사,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회 등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셋째, 조합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등과 관련하여 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을 매분기별 예·적금의 5/10,000로 정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범위에 주식형 수익증권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5) 제5차 회의(1999.12.23)

제5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주로 △대의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조합장 대표자회의 구성 △인삼협 건의사항 △경영전략 조정회의와 경영위원회 설치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첫째, 농협측은 대의원회 구성을 400명으로 하되, 협동조합원칙에 따라 가중치없이 3개 조합당 1인을 선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삼·축협·원예조합장 등은 소수 존중차원에서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인 지역축협과 품목·업종조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지만, 기준설정 등 구체적인 문제는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체적으로 이사수를 25~30인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사의 배분문제는 대의원 배분문제와 연계하여 추가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학경이사수를 늘리자는 의견과 여성 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셋째, 조합장 대표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농업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 및 품목조합과 지역조합간 대표자수 배분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에 대해서 인삼조합장협의회에 추천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인삼사업본부 소속직원의 승진·전보권을 인삼집행간부에게 위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간부 추천권과 연계·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연합회·중앙회간 인사교류 주장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대표이사간 업무상 이견조정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는 필요하므로 그 구성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경영위원회는 경영전략회의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6) 제6차 회의(2000.1.11)

제6차 회의에서도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이 계속 논의되었다. 우선, 대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수 배분시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근거가 불

명확하고, 조합별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이사회의 구성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25인과 30인으로 2개 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학경이사의 배분방안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당연직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정수의 1/3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는 회원조합에 배분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의 역할, 업종축협과 지역축협간 대표자수 배분문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넷째,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 임명과 관련하여 △인삼조합장협의회에 추천권을 인정하는 방안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가운데 설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삼사업 소속직원의 승진·전보권은 인사규정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중앙회 정관 제정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경영전략조정회의와 경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경영전략조정회의만 설치하는 방안과 두 기구를 모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설립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총회의결사항으로 하는 방안 △현행대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설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7) 제7차 회의(2000.1.18)

제7차 회의에서도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다. 우선, 대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품목조합은 2개조합당 1인, 지역축협은 2개 시·군당 1인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으로 하되, 규모나 시·군당 조합수,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이사회 정수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사외이사수에 대해 △7인과 △5인 가운데 설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품목조합 이사수는 조합수를 기준

으로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간에 각각 $\Delta 3:3:1$ 로 배정하는 방안과 $\Delta 3:3:2$ 로 배정하는 방안 가운데 설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조합 이사수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의 역할에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부문 사업계획 심의 등 주요한 몇가지를 명시하는 방안과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에 한정하자는 의견이 맞서 차기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 구성은 Δ 축산부문의 대의원조합장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Δ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장으로 구성하는 방안 가운데 설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속직원 승진·전보는 인사규정에 포괄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요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되, 설립사무국에서 추가 검토·보완하여 설립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회의(2000.1.21)

제8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설립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설립위원회에 2개 안을 상정하되, 설립기획단에서는 제1안으로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였다. 제1안은 지역축협은 2개 시·군당 1인, 인삼협은 도별 1인, 품목조합은 2개 조합당 1인으로 하고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별 조합수가 8개 이상인 시·군에 대의원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이었다. 제2안은 조합수·조합원수·경제사업규모·출자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25%씩 가중치를 두어 대의원을 배정하는 방안이었다.

둘째, 이사회 정수를 30인 내외로 하되, 사외이사는 7인으로 의견을 집약하였다. 품목조합이사는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간에 $\Delta 3:3:1$ 로 배정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삼조합측이 $\Delta 3:3:2$ 로 배정하는 의견을 주장하여 2개 안을,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이사수는 $\Delta 10:2$ 와 $\Delta 10:3$ 으로 배정하는 2개안을 설립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원 수는 100명 이내로 결정하였고, 축산부문 대의원 이외의 조합장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Δ 축산경

제대표이사 추천 외에 축산경제부문 사업계획·자금계획 심의 등 몇 가지 주요기능을 명시하는 방안과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는 방안을 설립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속직원 승진·전보권은 그 구체적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위임하는 단일안을 설립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회의(2000. 3.23)

제9차 회의부터는 조합정관(예)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우선, 출자증대를 위해 출자 1좌의 금액을 1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를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특정조합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둘째, 조합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조합정관(예)에서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인가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셋째,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출자전환 여부에 대해 중앙회와 달리 조합의 현실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넷째, 고정자산처분익이 편입된 임의적립금의 지분계산시 조합 재무구조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품목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은 품목과 그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농·축·인삼협에서 구체적 기준을 설립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0) 제10차 회의(2000. 3.27)

제10차 회의에서도 조합정관(예)의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다. 우선,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조합과 거래할 수 있는 규모는 신용사업은 5천만원으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지역농협의 경우 거래건당 1천만원, 거래총잔액 5천만

원,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경우 거래건당 2천만원, 거래총잔액 1억원으로 하되,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설립사무국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품목조합은 구역제한이 없으므로 전국 또는 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역예시 규정에 전국 또는 구역으로 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셋째, 품목조합의 품목 및 조합원자격기준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되, 조합난립과 품목조합의 전문성 퇴색을 우려하여 현행 품목조합의 자격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품목조합의 대의원은 품목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11) 제11차 회의(2000. 6.27)

제11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출범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안건을 처리하였다. 위원들은 통합중앙회 출범사항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통합중앙회의 출범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주요 운영경과

이상에서 살펴 본 설립기획단의 주요 운영경과를 정리하면 <표 7-6>과 같다.

<표 7-6> 설립기획단 주요 운영경과

구 분	일 시	주요 운영 사항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1999. 10. 8 10. 22	○ 설립기획단 운영방향 보고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향 논의 -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조합상임이사 자격요건, 조합의 신용사업자금차입한도, 조합원대출한도, 조합여유자금예치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구 분	일 시	주요 운영 사항
제3차 회의	1999. 11. 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향 논의 - 조합여유자금처리, 농업관련법인대출,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 자격요건 등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방안 논의
제4차 회의	12.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쟁점사항 토의 -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자격, 조합신용사업의 한도 및 여유자금 운용방안 등
제5차 회의	12. 23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 논의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회의, 경영전략조정회의 및 경영위원회 등 - 삼협 건의사항
제6차 회의	2000. 1. 11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 논의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회의, 경영전략조정회의 및 경영위원회, 인삼사업전담집행간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의 의결권 등
제7차 회의	1. 18	○통합중앙회 정관 제정방향 논의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진전보권 등
제8차 회의	1. 21	○통합중앙회 정관(안) 최종 정리 -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진전보권 등
제9차 회의	3. 23	○조합정관(예) 제정방향 논의 - 출자, 대의원회, 자산재평가적립금, 임의적립금,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기준 등
제10차 회의	3. 27	○조합정관(예) 제정방향 논의 - 조합장 및 이사의 거래한도, 품목조합의 구역 및 조합원자격기준 등
제11차 회의	6. 27	○통합중앙회 출범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3. 설립사무국 및 실무작업단

1) 설립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설립사무국은 설립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기구로서 회의준비와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실무작업단의 작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작업내용을 지도·조정하는 등 통합중앙회 출범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정관)정비작업 총괄 △설립위원회, 설립기획단 및 설립사무국 운영관련 규정 제정 및 변경(안) 마련 △통합관련 대외홍보 및 교육관련 업무추진 △설립세부추진계획 집행상황 조정·점검 및 운영 예산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사무국은 1999년 9월 20일 농림부와 협동조합 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출신별 분포를 보면 농림부 10명, 농협 9명, 축협 5명, 인삼협 1명 등이다. 그러나 축협이 설립사무국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설립사무국은 축협을 제외한 농림부, 농협중앙회, 삼협중앙회 관계자로 운영되었다. 설립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서성배(정학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담당하였고, 사무국장은 설립위원회의 간사와 설립기획단의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또한 설립사무국은 기획총무반, 경제사업반, 법령정비반, 교육홍보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에 반장을 두고 총괄반장으로 하여금 각 반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총괄반장은 박현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이 맡았다.<표 7-7> 참조)

한편 설립사무국의 각 반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총무반은 실무작업단의 총무반, 전산반, 총괄기획팀, 조직팀, 경영팀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중앙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외에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 운영을 지원하고 예산 및 일반서무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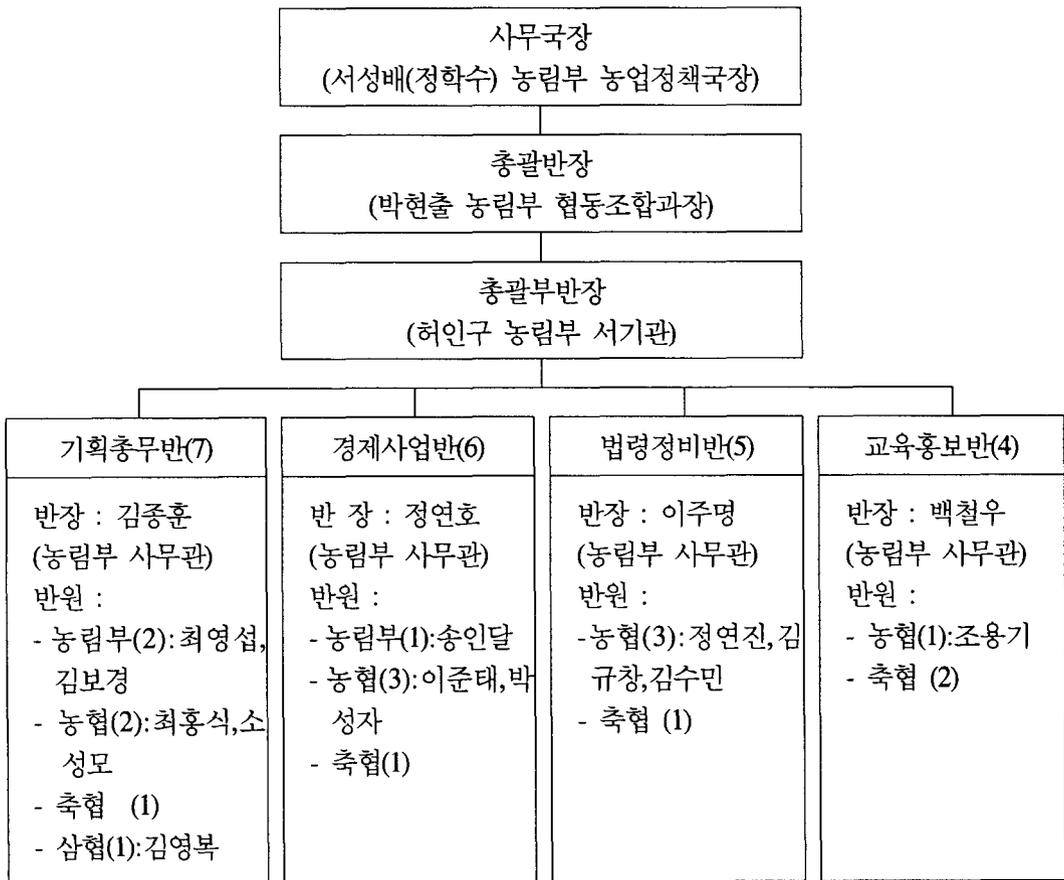
둘째, 법령정비반은 실무작업단의 법규팀, 선거팀, 감사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운영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중앙회 정관 및 조합정관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앙회 및 회원조합 내부규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외에 축협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 등 통합관련 대외적인 법적분쟁 대응업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경제사업반은 실무작업단의 경제반, 신용1.2반, 지도기획팀, 영농지도농정팀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품목조합 육성방안과 중앙회 경제사업장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넷째, 교육홍보반은 통합중앙회 설립상황 홍보와 교육의 업무분장을 맡아 이에 맞는 실무작업단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7-7〉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 조직



※ 설립사무국은 1999년 12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반, 기획홍보반, 경제사업반, 법령정비반으로 개편되었음

2) 실무작업단의 구성 및 운영

실무작업단은 설립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사무국의 지휘를 받아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추진하는 농·축·인삼협중앙회 공동의 실무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작성, 조직체계와 경영관리체계, 사업체계와 전산망을 통합하여 내부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내외홍보와 조합원교육 등 조직, 인사, 사업 등 업무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설립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실무작업단은 설립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통합중앙회의 안정적 출범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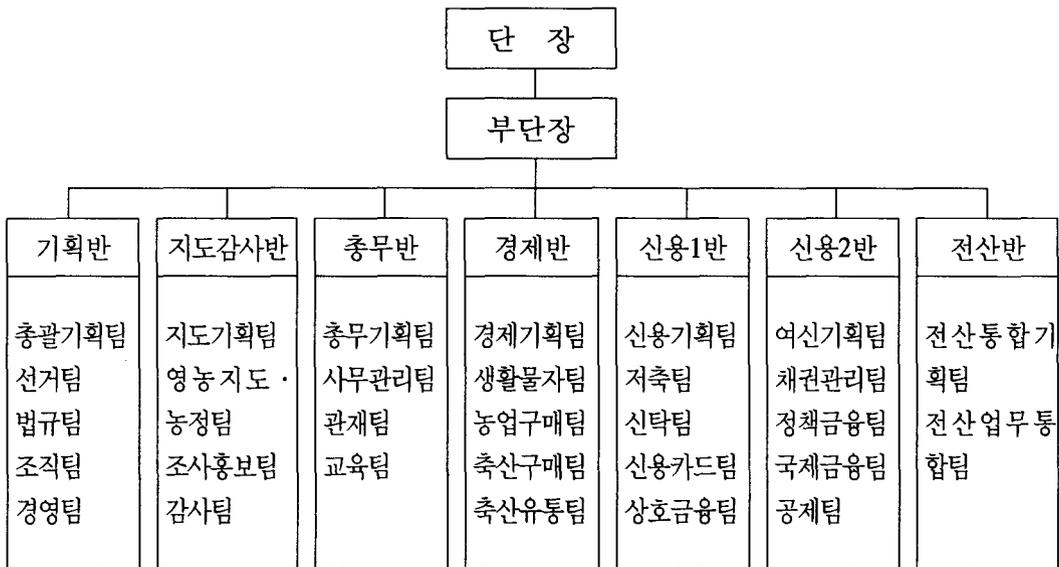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작업단은 1999년 11월 1일 설립위원장으로부터 임명된 최공주(농협중앙회) 작업단장과 양명권(인삼협중앙회) 부단장을 비롯하여 업무분야별 반장 및 작업단원 등 총 18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출신별 분포를 보면 농협중앙회 125명, 축협중앙회 49명, 인삼협중앙회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축협이 실무작업단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실무작업단은 농협중앙회와 삼협중앙회만으로 구성되었다.<표 7-8> 참조)

<표 7-8>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인원 및 협동조합별 배분

구 분	농협(명)	축협(명)	삼협(명)	계(명)
단 장	1			1
부단장		1	1	2
반 장	5	1		6
팀 장	26	2		28
팀 원	61	26	4	91
소 계	93	30	5	128
전산반	38	20	1	59
계	131	50	6	187

한편, 실무작업단은 업무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반, 지도감사반, 총무반, 경제반, 신용 1반, 신용 2반, 전산반 등 7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였는데, 각 반에 반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고 그 산하에 총 30개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였다.(<표 7-9> 참조) 실무작업단장이 설립 실무작업을 총괄하여, 반별·팀별·직원별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직무수행을 통할하였다. 하지만, 전산통합 실무작업에 대하여는 전산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협 전산정보지원본부장이 통할지휘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전산통합 실무작업에 있어서 다른 부문의 설립작업과 관련되거나 설립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단장과 협의하여 운영하였다.

<표 7-9 >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조직



이상과 같이 단장 및 부단장의 통괄하에 7개 분야로 분장되었던 실무작업단의 각 반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반은 전체업무의 기획조정과 업무총괄을 하는 총괄기획팀을 비롯해 선거팀, 법규팀, 조직팀, 경영팀등 5개의 팀으로 나누어 선거관련 규정, 법령제정 추진 및

심사, 통합후의 조직·정원·직제·전결기준에 관한 사항과 통합에 따른 회원조합 지분조정, 과도기 경영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실무작업의 전반적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지도감사반은 통합농협설립에 따른 실무작업에서 필요한 영농지도 및 농정업무와 홍보, 감사업무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도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도기획팀 이외에 영농지도농정팀, 조사홍보팀, 감사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주요업무로서 지도사업과 감사업무통합 업무를 담당하였다.

셋째, 총무반은 통합전의 사전인력 구조조정과 통합후 인력재배치, 노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총무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기획팀을 비롯해 서무, 민원업무 통합을 담당한 사무관리팀, 관제팀, 임직원 및 조합원교육을 담당한 교육팀 등 4개반으로 나뉘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넷째, 경제반은 농·축·삼협의 경제사업 통합과 통합이후 경제사업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기획팀을 비롯하여 생활물자팀, 농업구매팀, 축산구매팀, 축산유통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에 따른 업무로는 생활물자 업무 통합, 농업경제 대표이사 소관업무 중 영농자재등 구매업무, 축산경제 대표이사 소관업무중 구매업무와 유통업무 관련사항을 담당하였다.

다섯째, 신용반은 통합중앙회 설립에 따른 신용사업 통합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신용1반으로 신용기획팀, 저축팀, 신탁팀, 신용카드팀, 상호금융팀 등 5개팀을 구성하여 수신업무와 신탁, 신용,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용2반은 업무를 총괄하는 여신기획팀과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채권관리팀,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기금업무와 국제금융 업무, 공제업무 통합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금융팀, 국제금융팀, 공제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하여 신용사업 통합에 따른 업무를 비교적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였다.

여섯째, 전산반은 전산통합기획팀과 전산업무통합팀으로 나누어 주 컴퓨터 및 서버와 영업점 기기통합, 통신망 통합, 금융상품·서비스·정보 통합 및 전산매체 통합에 있어서 통합이후 전산망체제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3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 추진과정

1.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 주요 경과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1999년 10월 4일 농·축·인삼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을 10월 1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10월 22일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설립기획단이 제3차 회의(11.12)와 제4차 회의(12.1)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고, 설립위원회는 제3차 회의(11.17)와 제4차 회의(12.4)의 심의를 거쳐 제5차 회의(12.15)에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조합설립 인가기준 △조합원 자격기준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농림부는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2000년 1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9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농림부는 확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였다. 2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16일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3월 9일 시행령 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3월 24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한편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3월 24일 완료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도 3월 27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한 주요 경과를 <표 7-10>과 같다.

<표 7-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주요 경과

일 시	주요 경과
1999. 10. 4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반영내용 제출을 요청
10. 22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향 심의
11. 12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3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11. 17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3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12. 1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4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12. 4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4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12. 15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의결
12. 17	○1999.12.17~2000.1.5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희
2000. 1. 6	○1.7~1.27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8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정리
1. 10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실무협의
1. 24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실무협의
2. 9	○시행령·시행규칙(안) 확정 및 법제처에 심사 의뢰
2. 11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규제개혁심의 통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법제처 심사

일 시	주요 경과
2000. 3.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차관회의 심의 및 의결
3. 1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2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필
3.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
3. 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

2) 주요내용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조합과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합원수와 출자금 등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있어서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수는 1,000명이상으로 하되, 농가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지역의 조합과 오지·도서지역 중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조합은 300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조합출자금의 경우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최소 3억원이상을 출자하도록 하였고, 품목조합도 2억원이상 출자하도록 정하였다.

둘째, 통합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농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중에서 선출토록 하였고,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농업 및 축산경제사업부문 종사경력 제외)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중에서 뽑도록 하였다.

셋째, 일선 조합의 책임경영과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선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 등을 포함시켰다.

넷째, 중앙회에 설치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도 감사원법상의 감사위원에 준하여 조합·중앙회·금융기관 등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서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였다.

다섯째,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조합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일반 은행 예금자 보호수준과 동일하게 예금액 2천만원까지는 보호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앙회가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회원조합 외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 납입기일 2주전까지 우선출자 발행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자본잠식 등으로 경영부실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는 조합이 제출하는 경영관련서류를 통한 서면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부실이 심각한 조합에 대해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일선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과 일선 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대출 등 그 운용방법을 정하였다.

2.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등 제정

1) 주요 경과

설립위원회가 1999년 12월 15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의결함에 따라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등 통합중앙회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2월 23일 설립기획단 제5차 회의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설립기획단은 제6차 회의(2000.1.11), 제7차 회의(1.18), 제8차 회의(1.21) 등을 거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정관(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설립기획단에서 마련된 정관(안) 등은 설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을 거쳤다. 설립위원회는 제6차 회의(1.28), 제7차 회의(2.8), 제8차 회의(2.21), 제9차 회의(3.4) 등을 거쳐 2000년 3월 10일 제10차 회의에서 통합중앙회 정관(안),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정관(안)의 내용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위원회 제12차 회의(4.4)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다. 이와 같이 통합중앙회 정관(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대의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 구성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활동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정관(안) 등은 4월 17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는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을 제정하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을 의결하였다. 농림부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에 대해 당일로 인가하였다.

창립총회 이후 통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축협측의 비협조로 축협부문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제13차 회의(5.26)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제14차 회의(6.2)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과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6월 2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추천될 수 있었다.

한편, 설립기획단은 제8차 회의(1.21)에서 통합중앙회 정관(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설립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제9차 회의(3.23)에서는 조합정관(예) 제정방향을 논의하였다. 설립기획단은 제10차 회의(3.27)에서 조합정관(예) 제정안을 마련하여 설립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설립위원회는 제11차 회의(3.29)에서 조합정관(예) 제정방향을 심의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합정관(예)는 6월 12일 정식으로 고시되었다.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 조합정관(예) 등의 제정과 관련한 주요 경과는 <표 7-11>와 같다.

〈표 7-11〉 통합중앙회 정관 등 제정의 주요 경과

일 시	주요 경과
1999. 12. 23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5차 회의(정관(안) 등 논의)
2000. 1. 11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6차 회의(정관(안) 등 논의)
1. 18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7차 회의(정관(안) 등 논의)
1. 21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8차 회의(정관(안) 등 논의)
1. 28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6차 회의(정관(안) 등 심의)
2. 8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7차 회의(정관(안) 등 심의)
2. 21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8차 회의(정관(안) 등 심의)
3. 4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9차 회의(정관(안) 수정·의결)
3. 6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장 기자회견(통합중앙회 정관(안) 설명)
3. 10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0차 회의 -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심의·의결
3. 14	○ 금융감독위원회에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의견조회
3. 23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9차 회의(조합정관(예) 제정방향)
3. 27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10차 회의(조합정관(예) 제정방향)
3. 29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1차 회의(조합정관(예) 제정 방향)
4. 3	○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 완료
4. 4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2차 회의(정관 수정(안) 의결)
4. 17	○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제정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의결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 선거규약에 대해 농림부가 인가
5. 26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3차 회의 -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심의
6. 2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4차 회의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6. 12	○ 통합중앙회 조합정관(예) 고시

2) 주요 내용

이상과 같이 통합중앙회 정관을 제정하면서 △대의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구성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등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각각 4차례에 걸친 설립기획단 회의와 설립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체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설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인 정관 등의 제정(안)이 마련되어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통합중앙회 정관의 내용 가운데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원조합수와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 30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을 선출하도록 하되, 지역농협수가 8개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목조합과 지역축협은 3개 조합당 1인을, 인삼조합은 도별 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다.(<표 7-12> 참조)

<표 7-12> 통합중앙회 조합별 대의원회 구성내역

총 계	지역조합			품목조합				총 계
	지역농협	지역축협	계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계	
조합수	1,132	146	1,278	45	46	14	105	1,382
대의원수	224	48	272	15	15	7	37	309

둘째, 중앙회의 이사회는 총 31인의 이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통합중앙회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회원조합의 권익대변 및 품목조합장이사가 회원조합 전체 이사수의 1/3이상 되도록 규정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금융·경제·지도사업 등의 외부전문가 7인, 지역농협조합장 10인, 지역축협 조합장 3인, 품목조합 조합장 7인으로 하되,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농업계 3인, 축산계 3인, 인삼계 1인으로 하였다.(<표 7-13> 참조)

〈표 7-13〉 통합중앙회 이사회 구성내역

회장	사업전담 대표이사	외부 전문가 이사	회원조합장 이사					계
			지역조합		품목조합			
			지역농협	지역축협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1	3	7	10	3	3	3	1	20

셋째,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에 따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넷째,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는 지역축협 및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20인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다섯째, 인삼조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는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들이 복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제청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등 선거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 임원을 제외한 회원조합장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투·개표사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일선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3개 도 이상에 걸쳐 회원조합장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게 되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게 되었다.

셋째,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농·축·인삼협 조합장별로 구성되는 이사회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3. 창립총회 개최 주요경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의 출범과 통합중앙회 정관(안) 등을 제정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2000년 4월 17일 개최되었다.

설립위원회는 2000년 3월 10일 제10차 회의에서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4월 6일 창립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다. 또한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축협 등의 방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는 4월 7일 전국의 시장·군수에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일선 축협조합장에게 창립총회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농림부도 4월 11일 각 시·도에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4월 12일 축협중앙회 및 각 도지회에도 협조를 요구하였다. 4월 14일에는 축협중앙회의 축협운영협의회 회장에게 창립총회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축협의 방해활동이 진행되었다. 4월 14일 축협중앙회는 이사조합장 및 시·도협의회장 회의를 열어 회원조합장들이 창립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고, 축협중앙회 간부직원을 일선현지에 출장토록 하여 조합장들의 불참을 종용하는가 하면, 창립총회 당일 축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창립총회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에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각종 위법·불법행위의 중단과 위법행위 등이 계속 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을 경고하였으며, 창립총회 당일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병력의 동원을 요청하였다.

농림부와 설립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당일 축협중앙회 노조 및 전국축협노조 소속 직원 등이 창립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

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4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폭력시위 등을 이유로 오상현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과 김의열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을 형사고발조치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중앙회 창립총회가 4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축협 등의 방해활동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는 참석대상 1,383명중 1,142명이 참여하여 82.6%의 참석율을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협조합장은 총 1,177명 중에서 1,130명이 참석하였으나, 축협조합장은 총 192명의 참석대상자 중에서 6명, 삼협조합장은 14명 중에서 6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는 최공주 실무작업단장의 개회선언, 정학수 설립위원회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시의장 선출(김학인 웅진농협 조합장) 및 인사말, 의사록 서명인 선출, 의결사항의 처리,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과 제2호 의안인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이 의결되었다.

4. 조직 · 사업장 · 인사 · 보수 정비방안 마련

1) 주요경과

설립위원회는 협동조합개혁의 취지에 따라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 중앙회 소유 경제사업장의 회원조합으로의 이관, 종전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인사 및 보수체제 정비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수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위원회는 1999년 10월 28일과 11월 2일에 각각 실무적으로 통합중앙회 직급·인력 통합방안을 검토하였고, 11월 9일에는 농·축·삼협중앙회에 경제사업 슬림화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11월 12일 설립기획단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농·축·인삼협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인력 통합, 인사 및 보수 통합, 경제사업 이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2월 6일 삼성경제연구소 및 아더앤더슨코리아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와는 통합중앙회의 비전제시, 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 경제사업 이관 등에 대해, 아더앤더슨코리아와는 인사 및 보수체계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3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19일 삼성경제연구소 및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설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설립위원회는 제13차 회의(5.26)에서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를 통합중앙회의 인수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에 연구용역결과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연구용역결과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의견과, 설립위원회가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기준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인수위원회가 그 범위안에서 조직 및 사업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직제규정은 이사회에 고유권한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설립위원회 제14차 회의(6.2)에서는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복 조직 및 점포를 대폭 정리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설립위원회가 의결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연구보고서는 조직정비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이를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설립위원회 제15차 회의(6.8)에서는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통합중앙회 인사 및 보수 정비방안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등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이같은 의결사항을 6월 9일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권고안으로 통보하였다.

2) 주요내용

설립위원회가 인수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여기서는 설립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인사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원안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결정된 사항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회장직속조직으로 경영관리본부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합감사위원회 조직의 감사기획국과 감사국을 조합감사기획국과 조합감사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조합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도모를 위해 시·도 조합감사국의 인사는 시·도지회장이 아닌 조합감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둘째,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에 '농산사업본부'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삼사업본부는 2개부로 운영하되, '인삼검사소'와 '고려인삼창'은 집행간부 직할 사업소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에서 7개부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지만, '한우낙농부'와 '중소가축부' 안으로 합의하였으며, 분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분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간부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시·도 조직은 16개 시도지회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도지회에는 농업경제사업부외에 축산경제사업부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축산경제부분의 규모가 타분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축산경제부장의 직급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째, 경제사업장 조정방안으로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만 정하기로 하고 사업유형별 적용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축산물 공판장은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사료사업은 중앙회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원조합이 결합되는 사업이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위원장이 중재하였다. 사업장의 회원조합 이양시 인수가격을 장부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세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중복되는 신용점포는 전산시설 교체 필요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농·축협 점포간 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 비교열위 점포를 금년 말까지 정비하

도록 하였다. 일곱째, 통합중앙회 인사와 보수제도의 논의에서는 '98년 이후 신설 또는 폐쇄된 사업장의 인원증감요인을 고려하여 감축인원을 정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직급 및 호봉조정은 종전의 농협중앙회체제를 기준으로 하되, 중앙회 직원간 형평성 도모와 조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아홉째, 인력구조조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설립위원회에서는 원칙적인 기본방향만 결정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자산실사

1) 자산실사의 목적

새로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새로 설립되는 통합중앙회는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칙 제6조에 의하면 통합중앙회의 설립은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중앙회의 설립작업에 있어서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각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자본을 통일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통합중앙회에 정확한 자산·부채·자본을 인계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산실사란 통합하는 기관이 합병비율이나 지분산정, 통합후 기준재무제표 작성 등을 위해 합병대상 기업의 자산·부채 등에 대해 장부상의 수량 및 가격을 확인·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구제금융 이후 일반기업이나 은행 등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합병 및 워크아웃(workout) 등이 진행되면서 주로 합병기업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자산실사가 많이 수행되었다.

통합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합병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협동조합 통합이 일반기업의 합병과는 그 성격이 다른 부분

도 있지만, 종전 농·축·삼협중앙회간에는 각종 이익적립금 등 내부유보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회원조합 지분조정시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지도·신용 등 통합중앙회내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자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실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통합중앙회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지분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실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산·부채·자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아울러 자산실사는 통합중앙회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제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합 이후 각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자본에 대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실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만약, 자산실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작업 과정에서 자산실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했다.

첫째, 자산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회원조합이 지분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뚜렷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경영성과인 내부유보의 차이를 별도의 검증절차(자산실사)없이 지분조정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회원조합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둘째, 자산실사 없이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자산·부채·자본을 그대로 통합중앙회에 인계할 경우 통합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는 부실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부실자산의 규모가 클 경우 통합중앙회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회계제도 통합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자산실사와 병행한 회계구조의 분석 및 재산가치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자산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에 회계제도의 통합이나 통합재무제표 작성이 곤란할 수 있다.

2) 자산실사 추진과정

설립위원회는 통합작업 추진과정에서 자산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 2월 17일 안진회계법인과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자산실사를 위한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설립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자산실사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결정하였다. 우선, 자산실사 기준일은 1999년 12월 31일로 하고 기준일 이후 변동 자산·부채는 2000년 6월 30일자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 6명과 중앙회 직원 6명 등 총 12명으로 실무작업단에 공동실사팀을 구성하여 자산실사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산실사의 작업내용은 먼저 실사대상 자산별 세부실사 기준을 마련한 후에 현지실사, 집계·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자산·부채·자본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자산실사 과정에서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회계기준을 통합하여 회원조합의 지분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재무제표 및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공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실사팀은 실사대상 자산으로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경제사업자산 △업무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건설중인 자산과 동산) △무형자산 △외화자산 △신탁자산 △공제자산 △상호금융 특별회계자산 △가지급금 △미수금 △신용카드계정 등 기타자산으로 확정하였으며, 실사대상 부채로는 △외화부채(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국환 등) △퇴직급여충당금 △부외부채 △우발채무 △기타부채 등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헌법소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통합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축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산실사 세부기준에 대한 농·축·삼협중앙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자산실사를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산실사 결과를 집계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축협중앙회가 협조하지 않아 회계제도 통합과 지분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3개중앙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잠정적인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분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축협중앙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

사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최단기간내에 농·인삼협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농림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축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농협과 인삼협에 대한 자산실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실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0.6.1) 이후 가능해졌지만, 통합중앙회의 출범일인 2000년 7월 1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산실사를 통합중앙회 출범 이전에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제16차 회의(6.28)를 통해 통합중앙회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지분비율을 2000년 6월말일 기준으로 등기신청일 현재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등기부상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에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통합중앙회의 지분배분비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전산통합

1) 전산통합의 목적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통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종전 농·축·삼협중앙회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신용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종전 농·축·삼협중앙회는 별도로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 각기 다른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중앙회의 설립작업 가운데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서로 다른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산통합은 새 중앙회 신용사업 통합의 필수적인 업무로써 설립위원회의 통합작업 가운데 주요한 과제이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중앙회의 출범이 2000년 7월 1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통합중앙회의 출범 일정에 맞추어 전산통합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전산통합에는 적어도 6~7개월의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설립위원회는 전산통합과 관련하여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공동작업을 통해 통합중앙회 출범 이전에 전산통합을 완료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2) 전산통합의 추진과정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은 2000년 1월 전산통합의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수차례의 실무검토를 거쳐 전산통합의 추진일정과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전산통합의 세부추진일정을 살펴 보면, 먼저 축협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차 조사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차조사는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지실사를 통하여 전산요원 현황과 주컴퓨터 운영현황, 주요 전산원장, 파일, 프로그램 등 자료 현황, 통신망, 온라인 중계센터 현황, 온라인 사무소 및 단말기 운영현황 등을 집중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선 축협과 삼협의 의견조사시기는 1차로 2월 7일부터 12일까지, 2차 조사는 2월 21일부터 29일까지로 하였고, 조사내용은 단말기 설치시기, 설치대수, 축산·인삼관련 정책자금 및 통합신상품 현황, 여·수신 업무 등으로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산통합 세부추진일정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축협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축협중앙회 노조의 저항과 반발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2월 11일 전산통합과 관련한 현지 방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축협중앙회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축협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 역시 축협중앙회의 비협조와 축협중앙회 노조의 반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축협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설립위원회의 현지 방문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전산통합 세부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2월 22일과 25일에 각각 전산통합 세부추진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조정

하였으며, 3월 8일에는 축협중앙회에 전산통합 관련 기초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축협 전산정보센터에 현지 방문조사가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이상과 같은 활동 결과를 토대로 설립위원회는 전산통합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제12차 회의(4.4)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축협 전산시스템 규모차이에 따른 통합비용과 통합시스템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합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은 종전 농협중앙회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통합비용 763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농협기종으로 통합함에 따라 축협 전산센터 직원 183명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을 통해 전산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일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2000년 3월에는 온라인 사무소에 대한 통신회선, 단말기기 설치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단말기기는 6월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생산 및 발주관리하고, 한국통신 통신회선 청약을 5월에 하기로 하였으며, 통신장비 및 단말기기 설치는 6월에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월과 7월에는 온라인 조작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5월에 온라인 교육계획수립, 6월에 온라인 조작집 발간과 전산통합 이행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는 농협중앙회 직원을 축협의 각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 지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잠정통합시스템 가동은 중앙회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회원조합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한편, 통합전산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위한 작업은 삼협의 경우 7월 2일, 축협중앙회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회원축협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통합시스템 가동은 삼협은 7월 3일, 축협중앙회는 7월 18일, 회원축협은 9월 14일로 하였다. 그러나 설립위원회가 계획한 이같은 전산통합 추진일정은 축협중앙회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6.1)이 내려질 때까지 전산통합 작업일정에 일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제4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주요경과

1)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과정

설립위원회는 제10차 회의(2000.3.10)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을 심의·의결하고, 창립총회 및 회장·상임감사 선거 계획(안)을 의결했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1차 회의(3.29)에서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실시 계획(안)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통합중앙회 창립총회(4.17)에서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제정되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이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중앙회를 이끌어 갈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출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관리업무를 실무로 담당할 선거관리사무국은 4월 3일 최공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신달천(후포농협 조합장)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공고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였다. 후보자 등록 접수결과 회장후보로는 정대근(농협중앙회장)후보와 김종우(나주 동강농협 조합장)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상임감사 후보로는 윤승혁(농협중앙회 상임감사)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5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정대근 후보가 82.8%의 지지를 획득하여 통합중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윤승혁 후보가 92.8%의 지지를 얻어 상임감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통합중앙회 비상임감사, 이사,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기존의 농·축·삼협별로 통합중앙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개최하였다. 농협과 삼협측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4월 26일까지 농협측 대의원

239명, 삼협측 대의원 7명의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5월 7일까지 농협과 삼협측 이사후보자 추천도 완료되었다. 반면에 축협측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4월 28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5월 3일 지역축협분야의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7명과 5월 4일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6명이 선출되는 등 일부만 선출되었다. 또한 5월 8일 축협측 이사후보자는 추천되었으나, 축산경제 대표이사 추천회의는 정원미달로 무산되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 5월 12일 통합중앙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와 신용대표이사(현의송)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비상임감사(박준식)와 이사 27명(회원조합장 이사 20명, 학경이사 7명)을 선출하였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선임되지 못했다.

그런데 5월 12일 대의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와 신용대표이사(현의송)가 5월 19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식으로 있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의 사업전담 대표이사 전원을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5월 26일 축협측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8명이 추가로 선출되었고, 5월 29일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을 의뢰하였다. 결국 6월 2일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농업경제대표이사(노의현) 및 신용대표이사(현의송)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축산경제대표이사(송석우)가 추천됨으로써 통합중앙회를 이끌어 나갈 초대 임원 선출이 일단락되었다.

2) 임원 및 대의원 선출과정의 갈등

통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축협중앙회는 농림부 및 설립위원회의 거듭된 요청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등 축협과 관련된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축협중앙회는 4월 26일 공문을 통해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삼협과는 달리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등 축협과 관련된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등이 축협측의 비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설립위원회는 5월 10일과 23일에 각각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조합장에게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설립위원회가 직접 일선 축협조합장을 대상으로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고,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축협중앙회는 5월 29일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할 것이며, 통합중앙회 설립과 관련하여 축협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한편, 5월 12일 통합중앙회 대의원회에서 회원조합장 20명과 외부 인사 7명 등 총 27명이 통합중앙회 이사로 선출되었는데, 축협중앙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방법원에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민사소송과 ‘통합중앙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축협중앙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6월 13일 이 두 가지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3)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주요경과

이상과 같이 축협의 비협조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5월 2일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가 선출된 것을 시작으로, 6월 2일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끝으로 통합중앙회를 이끌어 갈 초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이 일단락되었다. 그 주요경과를 살펴 보면 <표 7-14>와 같다.

〈표 7-14〉 통합중앙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주요경과

일 시	주요 경과
2000.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0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 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심의·의결 - 창립총회 및 회장·상임감사 선거 실시계획(안) 의결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실시 계획(안)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국 설치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사무국장 포함 12명) 구성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제정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의결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신달천 울진 후보농협 조합장)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에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제차 촉구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후보등록(4.18~4.24)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삼협에 통합중앙회의 이사후보자 추천 지도 문서 전달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후보등록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후보 : 정대근(농협중앙회장), 김종우(나주동강조합장) - 상임감사후보 : 윤승혁(농협중앙회 상임감사)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이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 ○농협분야 대의원선거 완료(239명의 대의원 선출) ○인삼협분야 대의원 선거 완료(7명의 대의원 선출) ○축협중앙회에 임시총회(5.2) 방해행위 중단 촉구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및 재선거 실시 공문 시행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대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82.8%인 965표 획득)

일 시	주요 경과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승혁 후보가 상임감사로 당선(92.8%인 1,067표 획득) ○지역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7명)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6명)
5. 4	○설립위원회가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를 통보
5. 7	○통합중앙회 이사후보자 추천(농협 20명, 삼협 1명 추천)
5. 8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6명 추천) ○통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는 성원 미달로 무산
5. 10	○설립위원회가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
5. 12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대표이사(현의송),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 임명동의 - 비상임감사(박준식) 선출 - 이사 선출 : 회원조합장 20명, 학경이사 7명
5. 17	○축협중앙회가 통합중앙회 이사선임 무효확인 민사소송 제기
5. 19	○설립위원회가 축협조합장에게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 공문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 사의 표명
5. 22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 소집 통지
5. 23	○축협에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및 대의원 선출 관련 협조 요청
5. 26	○설립위원회 제13차 회의(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추가선출(8명)
5. 29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가 요구사항을 통보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축협측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6. 2	○설립위원회 제1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제(노의현)·신용(현의송) 사업전담대표이사 임명동의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경제대표이사(송석우) 추천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0차 회의(3.10)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 일정을 의결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1차 회의(3.29)에서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실시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국 설치를 의결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임원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 축기간은 2000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까지 2년간이며, 상설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각 중앙회장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였다.

설립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립위원회 1인, 지역농협 조합장 6인, 지역축협 조합장 3인, 품목조합장 5인(농업계 2, 축산계 2, 인삼계 1)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축협중앙회장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표 7-15>와 같이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달천(울진 후포농협조합장)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표 7-15>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성 명	소속 및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책
전 동 명	이천시 장호원농협 조합장	박 문 재	무안군 무안축협 조합장
김 영 준	양구군 대암농협 조합장	김 상 현	광주전남양계축협 조합장
이 희 준	서산시 서산농협 조합장	이 종 천	서울강동농협 조합장
이 성 용	완주군 소양농협 조합장	이 윤 영	부천원예농협 조합장
신 달 천	울진군 후포농협 조합장	김 영 근	금산인삼조합 조합장
김 환	목포원예농협 조합장	조 병 찬	동국대학교 교수
계	위원장 : 신달천(울진군 후포농협 조합장) 위원 : 총 12명		

2) 선거관리사무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립위원회 의결에 따라 통합중앙회의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지도·관리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선거관리사무국은 △통합중앙회의 대의원선거 지도 및 관리 △통합중앙회 임원선거 실시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였다.

선거관리사무국은 4월 3일부터 구성·운영되었는데, 최공주(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장)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11인을 포함하여 총 12인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관리사무국 구성은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 5인, 축협중앙회 2인, 삼협중앙회 1인, 실무작업단 4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축협중앙회가 사무국 직원을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공백을 농협중앙회가 예비추천한 인원으로 충원하였다. 선거관리사무국은 기획·서무팀과 법규·홍보팀등 2개팀으로 운영되었다.

3.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

1) 후보자 등록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하고,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였다.

후보자 등록 결과 회장후보로는 정대근 후보와 김종우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정대근 후보(당시 만 56세)는 경남 밀양 삼량진농협 조합장(8선),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농협중앙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하고 당시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종우 후보(당시 만 43세)는 당시 전남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2선)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편, 상임감사후보로는 윤승혁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윤승혁 후보(당시 만 64세)는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7선)을 역임하고 당시 농협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는 가운데 4월 20일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조합장 1,383명 가운데 84.4%인 1,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선거결과 정대근 후보가 총투표자 1,166명 가운데 965표(82.8%)를 획득하여 183표(15.8%)를 획득한 김종우 후보를 제치고 임기 4년의 통합중앙회 초대 회장에 당선되었다(무효 18, 기권 217). 또한 상임감사후보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윤승혁 후보는 총투표자 1,150명 가운데 1,067표(92.8%)의 지지를 획득하여 임기 3년의 통합중앙회 초대 상임감사에 당선되었다(무효 83, 기권 233)

4. 대의원 및 기타 임원 선출

1)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통합중앙회 출범(2000.7.1)을 앞두고, 통합중앙회를 이끌어 갈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과 아울러 통합중앙회 비상임감사, 이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등 사업전담 대표이사, 대의원,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등의 선출도 진행되었다.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24조(대의원회),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등에 의하면 통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의 선출 및 임명동의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합중앙회의 비상임감사, 이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등 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중앙회의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를 선출해야 했다.

4월 17일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통합중앙회 정관에 의하면 통합중앙회 대의원회는 앞의 <표 7-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협분야 대의원 239명(지역농협 224명, 전문농협 15명), 축협분야 대의원 63명(지역축협 48명, 업종축협 15명), 삼협분야 7명 등 총 30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는 지역축협과 업종축협의 조합장 가운데 '45인 이상 5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선거규약에 의하면 '5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혹은 품목별로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진행되었으며, 농협과 삼협은 대의원 선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농협측 대의원 239명과 삼협측 대의원 7명의 선출이 4월 26일까지 완료되었다. 그러나 설립위원회가 4월 18일과 22일 등 2차례에 걸쳐 축협중앙회 및 각도지회에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의 선출을 촉구하였으나, 축협중앙회 및 각도지회가 일선축협조합장에게 회의소집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선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설립위원회가 직접 주관하여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축협중앙회는 4월 26일 '축협 관련 이사,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에 관한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4월 28일 설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예정이던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4월 28일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재선거 실시 공문을 시행하고, 5월 3일에 지역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5월 4일에는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7인과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6인 등 일부가 선출되었다.

이처럼 5월 3일과 4일에 걸쳐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가 일부만 선출됨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5월 4일 재차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 개최 공문을 시행하고, 5월 8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축협조합장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5월 10일 축협중앙회에 축협분야 대

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촉구하였으며, 5월 19일 일선축협조합장에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5월 26일에 실시한다는 공문을 다시한번 발송하고, 5월 23에는 선출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5월 26일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가 각각 8인이 추가로 선출되었다.

2) 비상임감사, 이사, 사업전담 대표이사 선임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과 통합중앙회 정관에 의하면 통합중앙회 비상임감사, 이사,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통합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임감사 선거와 이사 및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통합중앙회 대의원회가 5월 12일 개최되었다.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설립위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4월 24일 농·축·삼협중앙회에 이사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지도 공문을 시달하면서 선거공고(5.2), 이사후보자 추천회의(5.2~5.7), 이사선거(5.12) 등의 일정을 통보하였다. 통합중앙회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표 7-13>과 같이 총 31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회장 1인, 사업전담 대표이사 3인, 금융·경제·지도사업 등의 외부전문가 7인, 지역농협 조합장 10인, 지역축협 조합장 3인, 품목조합 조합장 7인으로 하되,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전문농협 3인, 업종축협 3인, 인삼조합 1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설립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농협과 삼협은 예정대로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통해 5월 7일 이사후보자 추천을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 농협분야 이사후보자 13인(지역농협 10인, 전문농협 3인), 삼협분야 이사후보자 1인(인삼조합 1인)이 각각 추천되었다. 그러나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6인(지역축협 3인, 업종축협 3인)은 축협측의 비협조로 이사후보자 추천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5월 4일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5월 8일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개최하여 6인의 이사후보를 추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월 12일 개최된 통합중앙회 대의원회는 그때까지 선출이 완료된 농협분야 대의원 239인(지역농협 224인, 전문농협 15인), 축협분야 대의원 13인(지역축협 7인, 업종축협 6인), 삼협분야 대의원 7인 등 총 259인 가운데 253인이 참석하여 당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통합중앙회 비상임 감사 선거와 이사 및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었다.

먼저,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대의원회는 손은남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현의송 신용대표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의원 259인 가운데 찬성 236인, 반대 15인, 기권 7인, 무효 1인 등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회원조합장 이사 및 학경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대의원회는 이사후보추천회의를 거쳐 추천된 농협분야 13인, 축협분야 6인, 삼협분야 1인 등 총 20인의 회원조합장 이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의원 259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5인, 기권 7인, 무효 1인 등으로 의결하였으며, 학경이사 후보 7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의원 259인 가운데 찬성 230인, 반대 22인, 기권 7인 등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중앙회 초대 이사 27인이 <표 7-16>와 같이 선출되었다.

<표 7-16> 통합중앙회 이사 선출 결과(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외)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조응래	경기 남면농협 조합장	안명수	광주광역시축협 조합장
최필강	강원 강릉농협 조합장	이석래	강원 평창축협 조합장
박종완	충북 충주농협 조합장	이기동	전북양계축협 조합장
강정현	충남 금남농협 조합장	임문식	부산경남우유축협 조합장
강석진	전북 진봉농협 조합장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축협 조합장
이덕재	전남 광양농협 조합장	신광철	용인 인삼조합 조합장
정상태	경북 다인농협 조합장	김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조기태	경남 사등농협 조합장	정창영	연세대학교 교수
현경의	제주농협 조합장	김석중	독농가
이용복	북대구농협 조합장	조영기	전 농민신문 부사장
윤의로	예산농금농협 조합장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종표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중재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강춘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박문재	전남 무안축협 조합장		
이사 : 27인 - 농협조합장 13인(지역 10, 품목 3), 축협조합장 6인(지역 3, 업종 3) - 삼협조합장 1인, 학경이사(사외이사) 7인			

한편, 비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박준식 후보(서울 관악농협 조합장), 김학인 후보(용진농협 조합장), 조홍원 후보(서울우유 조합장) 등 총 3명의 후보가 비상임감사후보로 입후보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제1차 투표에서 박준식 후보가 115표(45.6%), 조홍원 후보가 74표(29.4%), 김학인 후보가 63표(25.0%)를 각각 획득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다수 득표자인 박준식 후보와 조홍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2차 투표결과 박준식 후보가 134표(60.1%)를 획득하여 88표(39.5%)를 얻은 조홍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의원회(5.12)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어 선출된 손은남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가 5월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5월 22일 사업전담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를 6월 2일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했다. 이에 따라 6월 2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그때까지 선출된 대의원 267인 가운데 235인이 참석하여 통합중앙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노의현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찬성 175인, 반대 57인, 기권 35인 등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노의현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가 각각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신용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진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통합중앙회 정관에 의하면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는 '45인 이상, 5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선거규약에서는 '50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축협측의 비협조로 인해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에 각각 일부만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5월 4일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의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고, 5월 8일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인해 추천이 무산되었다. 설립위원회는 5월 10일 축협중앙회에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축협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5월 19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

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5월 23일 재차 일선축협조합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5월 26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5월 26일에도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8명을 추가로 선출하는데 그쳤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25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제14차 회의(6.2)에서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여, 종전까지 '45인 이상, 5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낮추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선거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여, 종전까지 '50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을 '20인'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대의원회(6.2)에 상정되어 의결·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6.2)가 20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송석우 당시 축협중앙회 상임감사를 축산경제대표이사로 만장일치로 추천함으로써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임이 마무리되었다.

제5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범

1. 설립위원회의 권고(안) 제시

이상과 같이 설립위원회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정,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선거규약 제정, 조합정관(예) 고시 등과 같은 통합중앙회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통합중앙회를 이끌어 갈 회장 및 상임감사, 비상임감사, 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등 각급 임원선출을 마무리짓고,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인사·보수제도 정비방안, 제규정 정비방향 등에 대한 권고(안)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당초 설립위원회 제13차 회의(2000.5.26)에서는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조정 방안, 인사·보수제도 정비방안, 제규정 정비방향 등과 관련하여 설립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나, 제14차 회의(6.2)에서 설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권고(안)으로 인수위원회에 제시하고, 이 권고(안)을 기본지침으로 하여 인수위원회가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5차 회의(6.8)에서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인사·보수제도 정비방안, 제규정 정비방향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 및 설립사무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의 의견, 축협중앙회의 의견, 삼협중앙회의 의견, 농협중앙회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로 하여 권고(안)을 확정·의결하였고, 6월 9일 인수위원회에 권고(안)을 통보하였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제16차 회의(6.26)에서 통합중앙회 설립등기 추진방안을 의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립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가 출범기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2.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권고(안)

1) 직제 제정방향

우선, 설립위원회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명시된 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직무규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제정 취지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도록 권고했다. 그 내용으로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조정·중재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회장은 지도·홍보·교육·조사·농정·감사 등 농정·지도업무만 전담하고 중앙회의 사업기능(경제·신용 등)은 대표이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설립위원회는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소관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조직·제도(인사 및 회계의 독립)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사업전담

대표이사 소관별로 '기획실'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제를 편성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금융기능이 상호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신용사업부문의 조직을 정비하게 했으며, 관련 사업부문의 자회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유사·중복업무는 업무의 집적도와 효율성에 따라 한 곳으로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생활물자·직거래·농자재 등은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통합하도록 했고, 사료업무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통합하도록 했으며, 군납은 현행대로 대표이사 소관별(품목별)로 업무를 수행하되, 대외(국방부 계약 등)업무는 농업경제대표이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설립위원회는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2) 조직 정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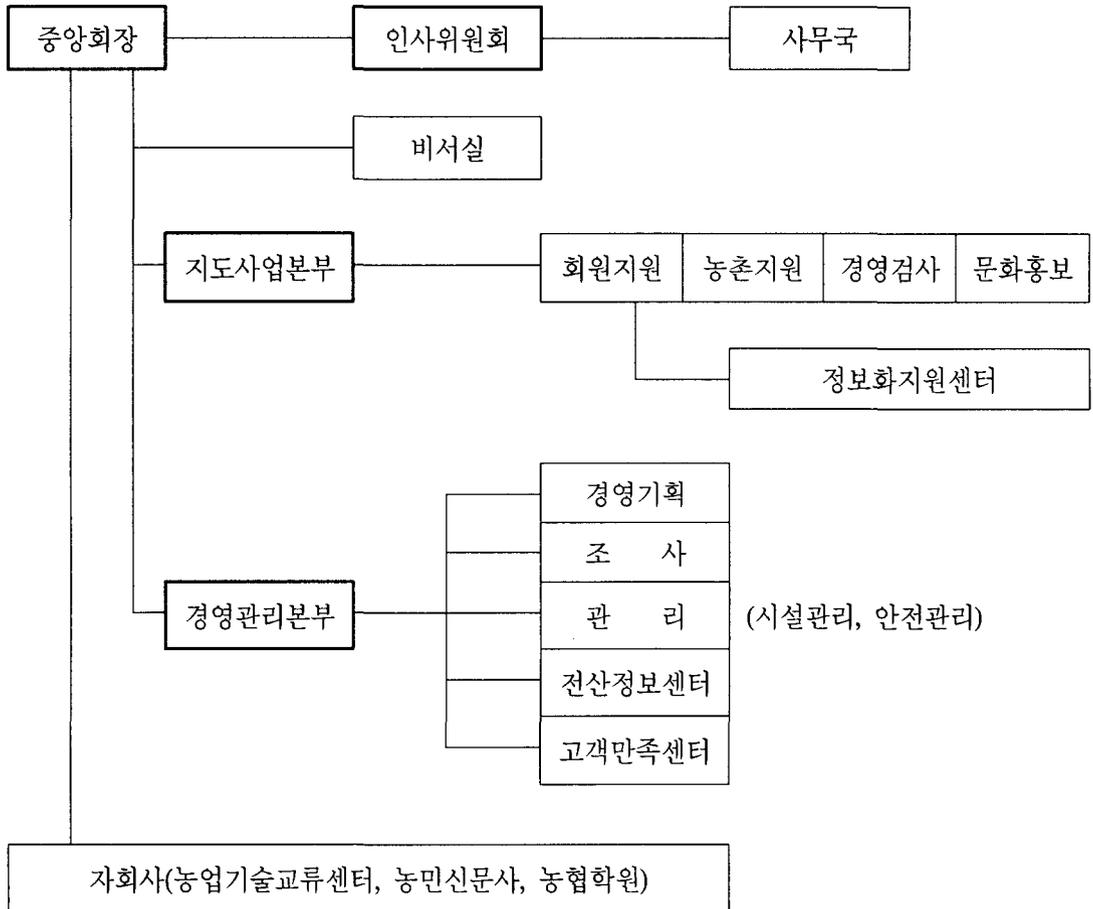
(1) 중앙회장 직속기구

우선, 설립위원회는 중앙회 업무 조정기구와 관련하여, 인사 조정기능만 수행하는 '인사위원회'와 사업·조직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영기획실'체제로 이원화하여 특정부서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중앙회 경영의 원활화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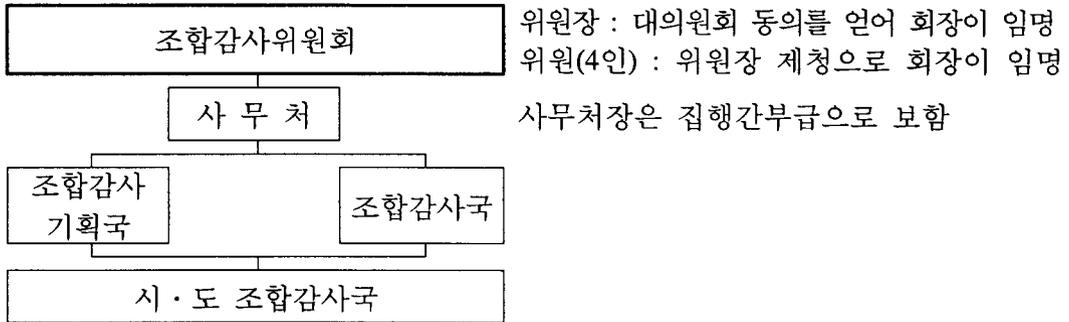
둘째,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장의 직속조직으로 1위원회·2본부·8부실·2센터·1국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표 7-17> 참조). 이에 따르면 인사업무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사위원회는 중앙회장, 사업전담 대표이사, 집행간부(4명) 등으로 구성하여 △자회사임원 및 집행간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업무(채용, 교육, 승진, 이동) 종합계획 수립 조정 △대표이사간 인사(이동, 승진 등) 조정 △시·도지회장 등 종합부서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원조합 지도업무를 총괄하는 '지도사업본부'와 경영기획·조사·관리·전산·고객센터 등을 총괄하는 '경영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경영관리본부 산하의 경영기획실에서 사업·예산·조직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비서실은 의전만 담당하고 조정업무는 경영기획실로 이관토록 했다.

셋째, 설립위원회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사업·인사·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조합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중앙회 부서와 독립된 조직·인사기능 구축 △일반회계로부터 분리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처에 2개 국(조합감사기획국, 조합감사국)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종전 농·축협중앙회 시·도 검사부서를 시·도 조합감사국으로 개편하고, 그 인사는 조합감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표 7-18> 참조).

<표 7-17> 중앙회장 직속조직 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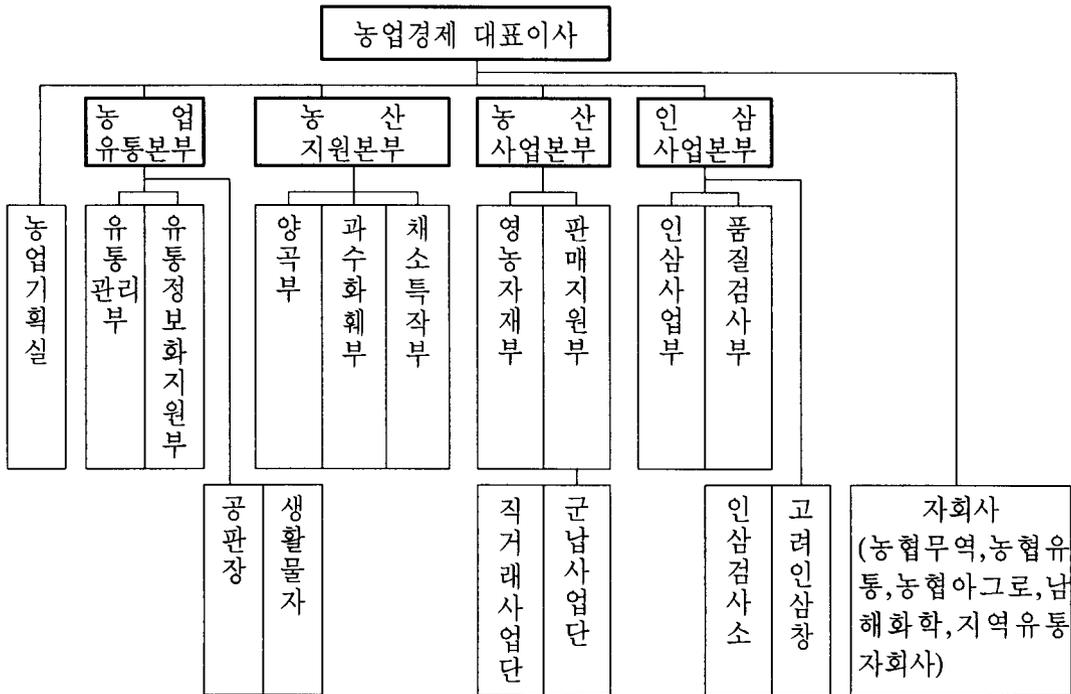
〈표 7-18〉 조합감사위원회 조직 권고(안)



(2)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설립위원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조직을 4본부(농업유통본부, 농산지원본부, 농산사업본부, 인삼사업본부)·1실·9부 체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인삼사업본부는 2개부로 운영하되, 인삼검사소와 고려인삼창은 사내분사체제로서 집행간부(인삼사업본부장) 직할 사업소로 운영하도록 했다(〈표 7-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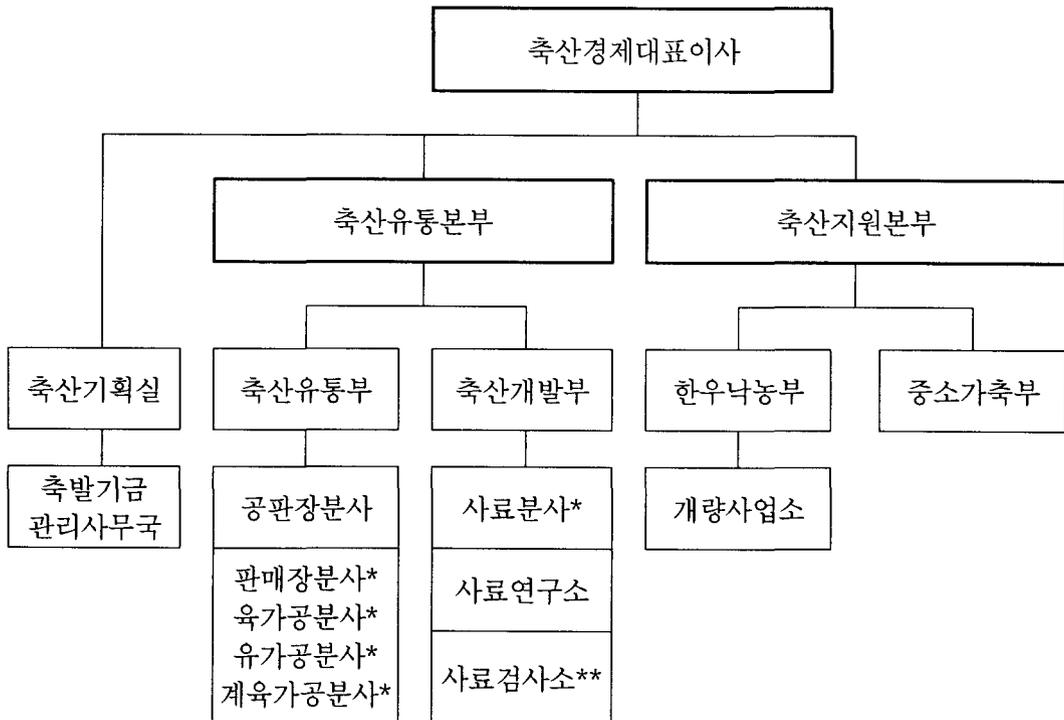
〈표 7-19〉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3)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설립위원회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과 관련하여 2본부·1실·4부체제로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유통본부와 축산지원본부의 2본부 체제로 하여,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보강하되, 축산지원본부 대가축(한우, 낙농), 중소가축 등 품목별 부서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리고 축산경제사업장의 자회사화 및 회원조합 이관은 최단기간내 일시 추진이 어려우므로 우선 분사(사료, 유가공, 육가공 등)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축협유통의 무역부분은 농협무역으로, 소비지유통부분은 농협유통으로 2000년중에 통합토록 했다.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은 축산기획실에 '축산발전기금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했다(<표 7-20> 참조).

<표 7-20>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 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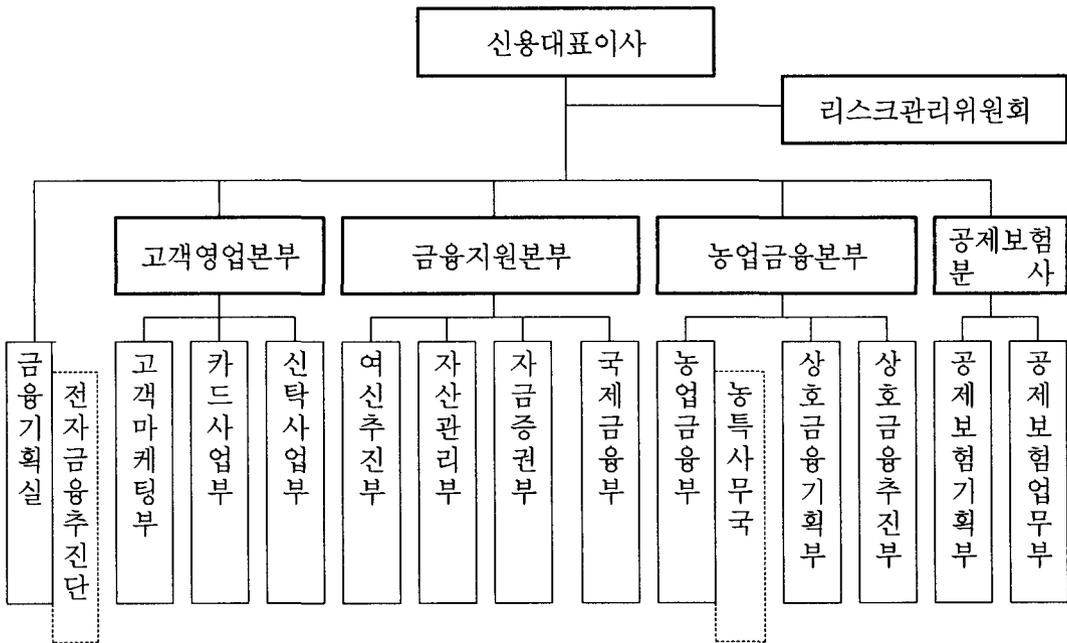
* 자회사화 또는 회원조합 이관시 까지만 존치

** 사료검사소 업무는 연말까지 존치(이후 정부기구로 이관)

(4) 신용대표이사 소관 조직

설립위원회는 신용대표이사 소관 조직과 관련하여 3본부(고객영업본부, 금융지원본부, 농업금융본부)·1실·10부·1분사 체제로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은행부문은 고객영업본부와 금융지원본부의 2본부로 하고, 정책금융과 상호금융부문은 농업금융본부로 특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제사업은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회계처리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사내 분사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분사장은 집행간부급으로 보하여 독립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표 7-21> 참조).

<표 7-21> 신용대표이사 소관 조직 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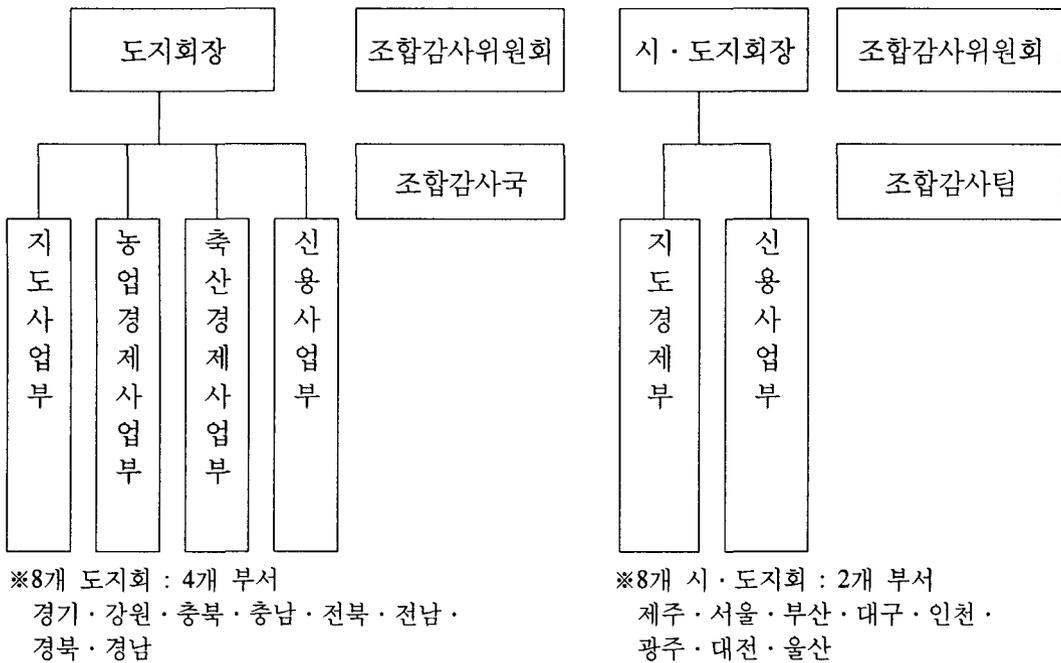


(5) 시·도 조직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시·도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광역행정단위와 같은 16개 시·도지회 체제로 운영토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 조직의 부서는 4부체제로 운영토록 하였다. 지도사업부는 회장직속 관할업무 수행, 농업경제사업부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업무 수행, 축산경제사업부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업무 수

행, 신용사업부는 신용대표이사 소관업무 수행 등의 기능을 맡도록 하였다. 다만, 축산경제사업부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도지회에만 설치토록 하였으며, 축산경제사업부의 사업규모가 타분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축산경제사업부장의 직급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16개 시·도에 조합감사국을 설치하되, 조합감사국은 시·도지회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직속조직으로 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서울 등 8개 시·도지회는 지도사업부, 농업경제사업부, 축산경제사업부를 지도경제부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조합감사국은 조합감사팀으로 운영토록 하였다(<표 7-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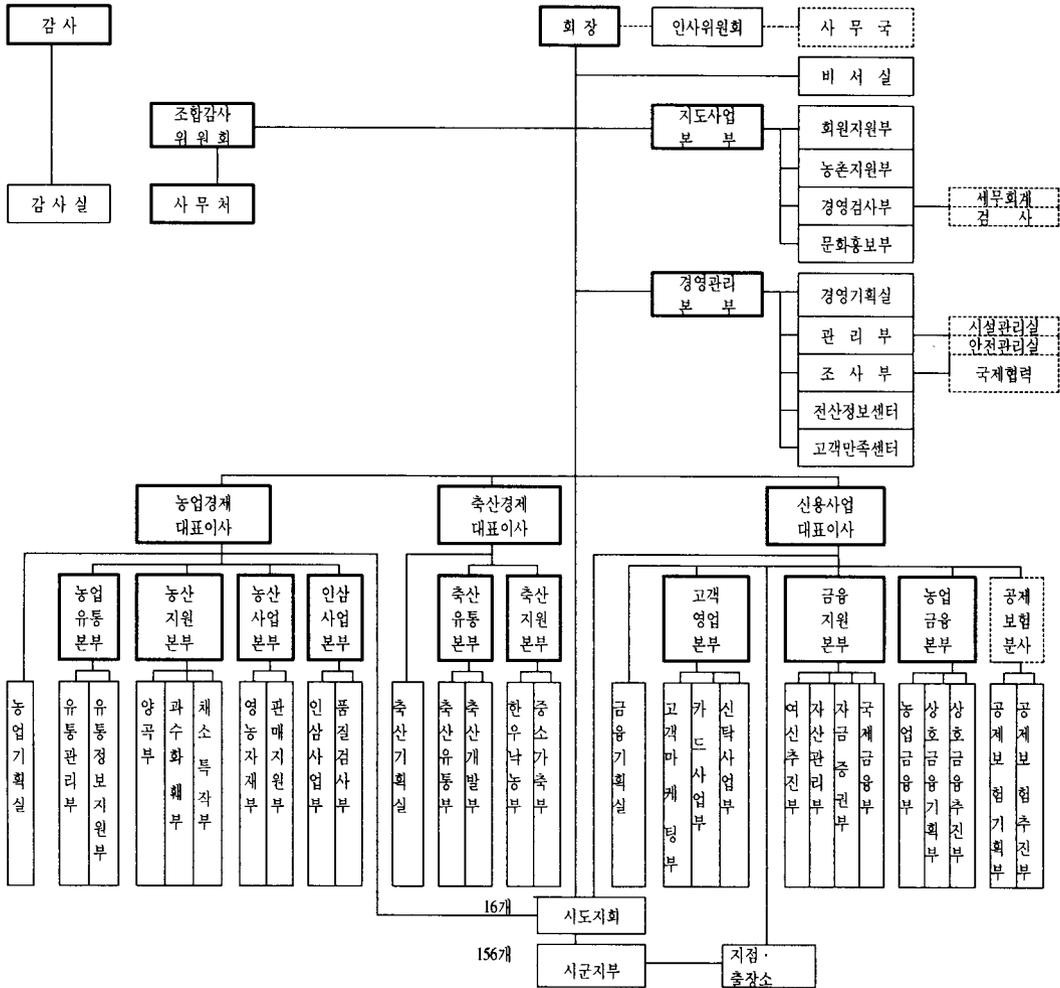
<표 7-22> 통합중앙회 시·도 조직 권고안



(6) 통합중앙회 전체조직

설립위원회가 인수위원회에 권고한 통합중앙회의 전체조직은 <표 7-23>과 같다.

〈표 7-23〉 통합중앙회 조직 권고안



3) 경제사업장 조정방안

(1) 기본원칙과 조정유형별 적용기준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경제사업장 조정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회원조합과 사업권역, 시장 등에서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양한다. 둘째, 사업운영의 수익과 부가가치가 지역 및 조합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사업의 계열화 및 유사기능 통합 등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한다. 넷째,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일선조합 육성 취지에 따라 통합중앙회 출범과 동시에 3년 동안의 자체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사업장 이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경제사업의 조정유형에 따른 적용기준으로 첫째, 소규모 투자, 일정범위의 지역과 조합에 영향을 주는 사업과 산지와 밀접하고 전문경영능력을 크게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은 회원조합에 이관한다. 둘째, 시장과 소비자에게 밀접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업과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 등은 자회사화한다. 셋째,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전체 회원조합에 영향을 주는 사업과 공익성 유지와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내분사체제로 전환한다. 넷째, 동일권역내 중복사업장 가운데 경쟁력이 약한 사업과 사업여건이 열악한 한계사업 및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은 매각정리한다.

(2) 사업장별 조정방안

설립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본원칙과 조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장별 조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인수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첫째, 농·축산물공판장은 전체 공판장을 통합운영하고 단일분사체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판장별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사내분사체를 도입하는 한편,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되는 공판장부터 우선 추진하며, 전 공판장을 통합 운영하되 농산물과 축산물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토록 하였다.

둘째,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는 (주)농협유통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종전 농협중앙회가 단독투자한 종합유통센터는 (주)농협유통으로 통합하며, (주)축협유통은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국내축산물 유통판매사업은 (주)농협유통으로 통합하고, 무역사업은 (주)농협무역에 통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로 건립중인 성남·고양 종합유통센터 등은 단기적으로는 중앙회 사내분사체로 운영하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농협유통에 이양 또는 경영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셋째, 하나로클럽은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사업장으로 전환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회원조합에 이양하거나 또는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점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넷째, 판매장(하나로마트, 축산물판매장, 인삼판매장)은 권역별로 통합·규모화하여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판매장 가운데 회원조합이 인수를 희망하는 판매장은 우선적으로 회원조합에 이양하고,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판매장의 경우에는 입지여건과 경영여건을 비교하여 경쟁열위의 판매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삼판매장 가운데 용두점은 정리하여 종합유통센터 등에 인삼판매부스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구의점은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섯째, 축산물가공공장 가운데 김제종합육가공공장 및 음성계육가공공장은 우선 중앙회 직영의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하되, 경영기반이 구축된 후에 회원조합에 이양하거나 자회사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청양유가공공장은 동종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낙농축협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각시까지의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육가공사업소는 군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회원조합에 이양 또는 매각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추후에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섯째, 인삼가공공장(고려인삼창)은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의 인삼사업부문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토록 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중앙회의 자금과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해 사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했다.

일곱째, 사료사업의 경우 중앙회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원조합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도록 권고했다.

여덟째, 생활물자공급사업은 중앙회 직영의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산재한 회원조합 하나로마트에 대한 경영진단, 시설현대화 등 연합회적 지도·지원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회원조합의 사업계통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홉째, 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양할 경우, 회원조합의 부담경감을 위해 인수가격을 장부가격으로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장부가격에 의한 인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세법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장 이양시에 인수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무이자 또는 3%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5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둔 뒤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에 투자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및 재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채무는 인수하는 회원조합이 승계토록 하였고, 회원조합이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경제사업활성화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4) 금융점포 정비방안

설립위원회는 2000년 4월말 현재 농·축협중앙회의 금융점포 총 918개(농협중앙회 813개, 축협중앙회 105개) 가운데 중복점포 정비방안을 권고했다. 금융점포의 사업규모와 금융점포간 거리를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점포 및 통폐합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향에 따라 통상적 점주권 500m이내를 기준으로 중복되는 점포수 53개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비방안을 권고하였다.

첫째, 축협중앙회 신용점포는 전산시설 교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둘째, 농·축협중앙회 금융점포간 거리가 300m 이내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비교열위 점포를 선정하여 2000년말까지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금융점포의 수신규모가 각각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밀 실사후 2001년 6월까지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셋째, 농·축협중앙회 금융점포간 거리가 300m이상, 500m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열위 점포를 검토하여 2001년 6월까지 정비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점포의 수신규모가 각각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정밀실사를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 통합중앙회 인사·보수제도 정비방안 권고(안)

통합중앙회의 인사·보수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인력구조조정, 직급 및 호봉조정 등의 사항은 통합중앙회 출범 이후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립위원회는 원칙적인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인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설립위원회가 권고한 인사·보수제도 정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구조조정(인력감축)은 '98년 이후 신설 또는 폐쇄된 사업장의 인원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감축인원을 결정한다.

둘째, 직급 및 호봉 조정은 전체인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종전 농협중앙회체제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 농·축·삼협중앙회 직원간 형평성 도모와 조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셋째, 종전 3개 중앙회의 통합효과를 조기에 발휘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한다.

넷째, 종전 농·축·삼협중앙회는 통합중앙회 출범 이전에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4.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권고(안)

1) 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설립위원회는 종전 농·축·삼협중앙회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제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

우선, 통합중앙회의 규정체계를 통일시키도록 권고했다. 종전 농·축·삼협중앙회 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규정체계를 결정권자 및 규정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 등의 4단계로 구분하도록 했다(<표 7-24> 참조)

다음으로, 종전 3개 중앙회 제규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비축농산물수매사업취급준칙, 군납사업취급준칙, 정책작물판매사업준칙, 면세석유류공급준칙 등 중앙회 및 조합의 공통적용 규정은 통합중앙회 사업범위와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개별 규정을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표 7-24〉 통합중앙회 규정체계 일원화 방향

구 분	결정권자	비 고
규 약	대의원회	○대의원회 운영,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규 정	이 사 회	○중앙회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준 칙	회장, 대표이사 (조합은 조합장, 상임이사)	○규정에서 위임되었거나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방법	집행간부 (조합은 조합장, 상임이사)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업무 집행방법

그리고 내용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획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계약규정, 전산업무규정, 신용사업관련규정 등은 통폐합하여 규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신설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조합감사위원회운영규정, 우선출자규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등이 해당되었다. 그외에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유지를 위해 감사규정, 지도감사규정, 신용사업관련규정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장 및 대표이사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편, 각종 경제사업 규정 중 공통사항은 '경제사업규정'으로 통일하고, 사안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별 규정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그밖에 연합회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체 규정에서 '회원조합'이란 명칭을 '회원'으로 수정하도록 했으며, 미제정된 통합중앙회의 조직·복무·인사·급여 규정 등은 조직 및 인사·보수제도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노사간의 합의절차를 거쳐 정비하도록 했다.

이같은 설립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통합중앙회의 제규정을 정비할 경우, 제규정은 종전 농·축·삼협중앙회의 전체 322개 규정(농협 183개, 축협 99개, 삼협 40개)이 126개 규정으로 대폭축소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3개 중앙회의 대의원회규약, 이사회규정, 감사규정 등 경영관련 39개 규정(농협 20개, 축협 12개, 삼협 7개)이 20개 규정으로 통폐합 된다. 이 가운데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과 은행법 개정 등에 따라 신설된 조합감사위원회관련 규정, 우선출자규정, 자산건전성분류준칙 등 4개 규정이 신설된다. 그리고 감사규정, 대의원회규약,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등 기존의 규정은 통합중앙회 체제에 맞게 정비된다.

둘째, 종전 3개 중앙회 직제·급여·인사·복무규정 등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127개 규정(농협 72개, 축협 37개, 삼협 18개)이 41개 규정으로 통폐합된다. 이 가운데 복무·인사·급여 관련 6개 규정은 노사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직제·인사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전체 규정의 직제관련 사항에 보완되도록 했다.

셋째, 종전 3개 중앙회 신용·경제·지도사업 등 사업과 관련된 127개 규정(농협 74개, 축협 41개, 삼협 12개)이 65개로 통폐합 된다. 이 가운데 경제사업관련 규정은 종전 3개 중앙회의 46개 규정(농협 23개, 축협 20개, 삼협 3개)이 34개로 통폐합되며, 군납사업, 정책사업 등 전국 공통사업은 공통규정으로 정비되고, 인삼류검사규정, 가축관리준칙, 농약계정운용준칙 등의 규정은 개별규정으로 정비된다. 그리고 종전 3개 중앙회 신용사업관련 68개 규정(농협 43개, 축협 17개, 삼협 8개)은 24개로 통합정비되고, 지도사업관련 12개 규정(농협 8개, 축협 4개, 삼협 1개)은 7개로 통합정비된다.

넷째, 종전 농협중앙회의 직무관리규정 등 31개, 축협중앙회의 회원가입심사규정 등 22개, 삼협중앙회의 인삼사업진흥기금관리규정 등 9개 등 총 62개의 규정을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경영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된다.

2) 회원조합 제규정 정비방향

설립위원회는 앞의 <표 7-24>와 같이 통합중앙회 규정체계 정비방향과 맞추어 조합의 규정체계도 마찬가지로 규약(대의원회), 규정(이사회), 준칙(조합장 혹은 상임이사), 업무방법(조합장 혹은 상임이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조합의 운영자율성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시달

하는 제규정(예)와 모범안을 최소화하여 가급적 조합운영의 재량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즉, 정책사업·신용사업·군납사업 및 기타 전국의 조합이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회에서 제규정(예)를 제정하도록 하였고, 중앙회가 조합의 운영상 편익 증진을 위해 서비스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범안도 폐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합 제규정(예)와 모범안에서 중앙회의 보고·통제 등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등과 같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이 중앙회가 일선 조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한 규정(예)는 정책사업과 전국 공통사업 그리고 신용사업 등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지하거나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규정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모범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설립위원회가 권고한 회원조합 제규정 정비방향에 의하면 종전 3개 중앙회 회원조합의 전체 158개 규정(농협 83개, 축협 40개, 삼협 35개)이 55개 규정으로 정비된다. 이 가운데 회원조합의 대의원회, 이사회규정(모범안) 등 경영관련 제규정 14개(농협 6개, 축협 5개, 삼협 3개)는 6개로 통폐합된다.

그리고 종전 3개 중앙회 회원조합의 직제·복무·인사·급여 등 조직 및 관리 관련 66개 규정(농협 29개, 축협 23개, 삼협 14개)은 20개로 통폐합되며, 신용·경제·지도 등 사업관련 44개 규정을 29개 규정(농협 26개, 축협 7개, 삼협 3개)으로 통폐합된다. 이 가운데 중앙회와 공통으로 운영되는 정책사업, 군납사업 등의 제규정을 제외한 미곡종합처리장사업규정, 도정공장운영준칙 등 개별사업규정은 폐지하여 조합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5. 통합중앙회 인수작업

1) 인수위원회 설치

2000년 5월 2일 통합중앙회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세부적인 인수작업을 회장당선자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통합중앙회 인수작업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회장당선자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대근 회장당선자는 5월 6일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설립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정대근 회장당선자가 설립위원회에 통보한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에 의하면, 통합중앙회 설립업무의 원활한 인수작업을 통해 통합충격을 최소화하고 통합중앙회 조직의 조기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기로 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설립위원회의 통합중앙회 설립업무 인수 △통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준비업무 수행 △기타 통합중앙회 출범에 필요한 중요사항 결정 등으로 명시하였다. 이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는 5월 17일에 설치되어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표 7-25>과 같이 회장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 등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농·축·삼협조합장 대표 각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는 5월 12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손은남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가 선출되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이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의 비협조로 선임되지 못하여 인수위원 선임이 유보되었다. 그런데 손은남 농업경제대표이사내정자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내정자가 5월 19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노의현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의송 신용대표이사 그리고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되어 선임된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각각 인수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농·축·삼협조합장 대표로는 통합중앙회 이사내정자 가운데 박종완 충주농협조합장, 박문재 무안축협조합장, 신광철 용인삼협조합장이 인수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표 7-25〉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구성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정 대 근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	위원장
노 의 현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내정자	위 원
현 의 송	통합중앙회 신용대표이사내정자	"
송 석 우	통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내정자	"
박 종 완	통합중앙회 이사내정자, 충주농협 조합장	"
박 문 재	통합중앙회 이사내정자, 무안축협 조합장	"
신 광 철	통합중앙회 이사내정자, 용인삼협 조합장	"
계	위원 : 총 7인	

2) 인수단 설치

통합중앙회 정대근 회장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실무적인 인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수단을 설치하였다. 인수단의 구성목적은 통합중앙회 설립에 따른 원활한 세부 인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인수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설립위원회의 통합중앙회 설립업무 세부 인수 업무 △통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준비업무 △기타 인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업무 추진 등이었다.

인수단은 가급적 설립위원회 실무작업단에 파견된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수작업은 종전 농협중앙회 기존부서 직원들이 겸직토록 하되, 축협과 삼협중앙회 직원들은 파견토록 했다. 그러나 회장당선자가 5월 10일 인수단 설치 방침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설립위원회 실무작업단에 파견된 직원의 복귀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설립위원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직원이 작업준비를 하다가 5월 28일에 농협중앙회와 삼협중앙회 직원 261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6월 8일에는 축협중앙회가 인수단에 참여함으로써 농·축·삼협이 공동참여하는 인수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에 추가로 설립위원회 실무작업단에서 업무가 마무리된 직원들이 배치되었다.

인수단은 조우봉(당시 농협중앙회 상무)단장을 중심으로 8개팀, 46개반이 설치·운영되었으며, 농협중앙회 255명, 축협중앙회 57명, 삼협중앙회 17명 등 총 329명의 직원이 인수단에서 활동하였다. 인수단의 조직구성은 <표 7-26>, 인수단 종사직원 현황은 <표 7-27>과 같다.

<표 7-26> 인수단 조직구성

팀 명	팀 장	반수	반 명
인 수 단	조우봉		
기획총괄팀	김용택	3	인수기획반, 업무계획반, 조직·경영전략반
총 무 팀	이건호	7	인사기획반, 서무반, 인사반, 급여후생반, 관재반, 시설반, 안전관리반
교육지원팀	조관일	7	총괄·교육반, 회원지원반, 세무회계반, 농촌지원반, 조사반, 문화홍보반, 하나로봉사반
농업경제팀	이재두	7	농업경제총괄반, 사업장조정반, 직거래군납사업반, 생활물자사업반, 상품권반, 축산사업반, 인삼사업반
축산경제팀	김운철	4	총괄반, 축산사업반, 유통사업반, 분사업무반
신 용 팀	남영우	12	신용총괄반, 금융지원반, 자금반, 농업금융반, 상호금융반, 저축반, 카드사업반, 여신추진반, 채권관리반, 국제금융반, 신탁반, 공제보험반
감 사 팀	김용구	3	감사총괄반, 회원조합반, 중앙회반
전 산 팀	이인모	3	전산기획반, 전산경제·경영반, 전산신용반

〈표 7-27〉 인수단 종사직원 현황

구 분	농 협	축 협	삼 협	계(명)
기획총괄팀	26	5	2	33
총 무 팀	40	1	1	42
교육지원팀	35	6	1	42
농업경제팀	17	2	11	30
축산경제팀		17		17
신 용 팀	40	13	1	54
감 사 팀	18	2		20
전 산 팀	79	11	1	91
계	255	57	17	329

3) 인수위원회 운영경과

인수위원회는 5월 17일 현판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인수작업 추진계획, 제규정 제정(안), 통합중앙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조직편성 등 통합중앙회 설립업무 인수 및 통합중앙회 출범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운영경과는 <표 7-28>과 같다.

〈표 7-28〉 인수위원회 운영경과

일 시	주요 경과
2000. 5. 17	○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 위촉장 수여,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보고

일 시	주요 경과
2000.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작업 추진계획, 인수위원회 운영예산 - 직제규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검토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 통합후 업적평가 실시방안 검토 - 통합중앙회 설립 실행예산 집행방안 - 통합에 따른 중복금융점포 운영방안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출범 홍보계획, 통합중앙회 CI 적용계획 - 통합관련 세무처리 대책, 상호금융 여수신상품 통합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5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조직 및 정원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6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제규정 제정(안)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7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운영지표 및 농협인의 다짐 - 통합중앙회 자기자본 증대방안 - 통합중앙회 운영자문위원회 및 특별자문단 운영 - 범농협인 하나되기 대화합 운동 - 통합중앙회 사무실 배치계획 - 통합중앙회 전산시스템 통합 및 온라인 운영계획 - 통합중앙회 직원의 직급·호봉 조정방향 - 축협중앙회 경영현황 및 대책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8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 경영현황 및 대책(잠정실사기준)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제9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인수작업 추진경과, 통합비용 처리계획 - 축협상호금융특별회계 예상결손금 처리방안 보고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출범

4) 인수위원회 주요 처리사항

(1) 제규정 제정(안) 마련

제규정 제정(안)은 이미 설립위원회 산하의 실무작업단에서 작성하여 시안이 마련되었으며, 설립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인수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6월 14일 제규정 제정(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7월 1일 이사회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제규정은 종전 농·축·삼협중앙회가 322개, 회원조합이 158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각각 127개와 65개로 대폭 통합·축소되었다.(<표 7-29> 참조)

〈표 7-29〉 제규정 통합 현황

구 분	통 합 전				통 합 후
	농 협	축 협	삼 협	계	
중 앙 회	183	99	40	322	127
회원조합	83	40	35	158	65
계	266	139	75	480	192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통합 초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계획으로 통합 이전 농·축·삼협중앙회의 2000년도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의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반영하여 인수위원회가 수립하였다.

먼저, 사업목표를 통합과 상생의 새로운 통합농협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수 농축산물 생산지원 강화로 조합원 소득증대 △회원조합 경영합리화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 제고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 △슈퍼뱅크 내실화로 21세기 선도은행으로 도약 △범농협인 대화합운동 전개 등 조직·경영안정 도모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방향으로 △조합원 직접지원보다는 회원조합 육성

지원에 역점 △유통·금융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강한 중앙회 구축 △자연·사회·소비자와 상생하는 새농협 이미지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방침으로는 △조합원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사업 전개 △환경농업 육성지원과 농업경영 지도 강화 △인터넷뱅킹 등 농협사업의 디지털화 추진 △농산물 차기협상 대비 농정 및 조사연구 활동 강화 △협동조합 통합 효과를 사업으로 구체화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영방침으로는 △강력한 구조조정, 비효율성 제거 등 경영혁신 추진 △유희부동산 강력처분으로 회원조합 지원역량 확충 △재무구조 건전화로 경영의 안정성 추구 △사업전담대표이사 간 협력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농업경제부문은 유통·생활물자·인삼사업의 확대에 당초계획대비 16.1% 성장한 33,147억원으로 하고, 축산경제부문은 구제역 파동 및 쇠고기 수입취급 중단 등으로 당초계획대비 43.6% 줄어든 12,938억원으로 하였으며, 신용부문은 수신평균 58조원, 외환 44억불, 신용카드이용액 5조원, 공제료 2조원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수지예산과 관련하여 종합수지계획은 매출총이익 13,572억원, 지도사업비 1,250억원, 판매관리비 10,569억원, 사업외 특별손익 △1,223억원, 당기순이익 376억원으로 통합전 연간계획의 50~60% 수준에서 정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농업경제 △414억원, 축산경제 △310억원, 신용 1,1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3) 통합중앙회 조직편성 및 정원책정

인수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본으로하여, △협동조합 개혁 정신에 충실한 ZERO-BASE 상태에서 조직 재구축 △대표이사 소관 사업간 효율성 및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 △전체 중앙회의 통일성과 대표이사 소관 사업간 효율적 공조체제유지를 위한 조정 기능 보완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확립 및 회원조합 지원기능 강화 △통합으로 인한 중복기능 감축 및 잉여인력의 전략부문 재배치 등을 기본 편성방향으로 정하고 조직편성 및 정원책정(안)을 마련하였다.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직편성 및 정원책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통합

중앙회에 집행간부 전담의 11개 사업본부와 공제보험분사 설치 △신용보증기금 담당 상무를 포함 총 13명의 상무 운용 △중앙본부에 40부, 5분사 설치(교육지원부문 11부, 농업경제부문 9부 1분사, 축산경제부문 5부 4분사, 신용부문 13부, 기타 2부) △시·도 단위 조직으로 16개의 지역본부 설치 등 지사무소 설치 △총정원 17,806명(통합전 대비 1,248명 감축) 등이다.

(4) 농협운영지표 및 농협인의 다짐 제정

인수위원회는 통합중앙회가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각오를 표현하고, 임직원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협 운영지표' 및 '농협인의 다짐'을 제정하였다.

'농협운영지표'는 조합원의 실익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새농협 역량 결집 △신지식농업 육성 △농축산물유통 혁신 △선진금융체제 확충 △책임경영의 실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농협인의 다짐은 <표 7-30>과 같다.

<표 7-30> 농협인의 다짐

<p><농협인의 다짐></p> <p>나는 새농협의 일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며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협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새농협의 시너지효과가 농업인 실익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 나는 지식과 정보사회에 알맞는 고품질 유통·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 나는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기계발과 인화단결에 앞장선다

(5) 인력 및 사무소 재배치 준비

인수위원회는 통합중앙회 조직편성 및 정원책정(안)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준비하였으며, 정대근 회장당선자는 6월 28일 사업전담 대표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집행간부 및 직원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사항이 직급·호봉조정이었다. 설립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직급 및 호봉은 전체직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체제를 기준으로하여 중앙회 직원간 형평성을 유지하되 조직안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직급별 승진소요년수가 농·축·삼협중앙회간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급 및 호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조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축·삼협중앙회의 이해대립 및 농·축·삼협중앙회 각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중앙회 출범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합중앙회 출범 이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사무실 배치와 관련하여 중앙본부는 종전 농협중앙회의 서대문 사무실로 통합하되, 조속한 융합을 위해 축산부문을 본부사무실에 배치하고 일부 부족한 사무실은 인근 빌딩을 임차하여 농업경제 및 신용부문 일부가 이전토록 결정하였다.

(6) 통합중앙회 CI 적용방안 마련

인수위원회는 통합중앙회의 CI는 협동조합 개혁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 농협의 CI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통합중앙회의 노래도 종전 ‘농협의 노래’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삼협중앙회의 간판은 교체하여나 하나 비용부담문제로 통합중앙회 출범일에 맞추어 점두간판용 임시 플랑카드를 제작·부착하고, 출범 이후에 점포조정이 완료되면 전면 제작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회원 축·삼협은 출범일에 맞추어 심볼마크만 교체하고, 2001년 이후 전면교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유브랜드 가치가 있는 목우촌 등은 계속 사용하고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만 교체토록 하였으며, 통합중앙회의 새로운 캐릭터로서 ‘아리’를 탄생시켰다.

(7) 통합에 따른 금융점포 조정방안 수립

통합 이전에 농·축협중앙회의 금융점포는 모두 918개소로 점주권 중복, 사업실적 저조, 입지여건 불량 등에 따른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축협이 참여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점포조정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통폐합대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쇄토록 하고, 점포망 보완이 필요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가능한 재배치를 추진하며, 운영기간에 따라 조속 폐쇄, 한시운영, 계속운영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존속폐쇄 대상은 근접도 200m이내, 총수신 300억원 미만 점포로 2000년 12월 이내에 폐쇄하기로 하였고, 한시운영 대상은 근접도 500m이내 점포로 2000년 12월 이내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점포는 계속운영 대상으로서 추후의 경영여건 및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8) 전산시스템 통합 및 온라인 운영계획 수립

인수위원회는 업무 및 경영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전산통합이 필수적이지만 전산운영체제가 농협은 UNISYS시스템이고 축협은 IBM시스템으로 서로 달라 전산망을 통합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전산통합하는 날은 통합작업 및 검증을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휴가 있는 날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중앙회의 전산망은 2000년 12월 26일까지 완전통합하고, 회원조합은 2001년 1월 26일까지 완전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통합과 완전통합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7-31〉 통합중앙회 전산통합 추진일정

구 분	잠정통합	완전통합
중 앙 회	2000. 7. 1.	2000. 12. 26.
회원조합	2000. 9. 14.	2001. 1. 26.

한편, 삼협은 업무를 조합별 자체 컴퓨터를 설치하여 PC로 처리하고 있어 온라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신용사업의 업무범위 및 규모가 적고 고정투자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합당 1대씩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9) 범농협인 하나되기 대화합 운동 전개

인수위원회는 통합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또 조직의 조기안정 및 통합시너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합원과 임직원의 대화합을 위해 '범농협인 하나되기 대화합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 ①통합사무소 조직활성화 교육 ②농업인 상생 한마음 팀빌딩 ③사무소장 한마음 워크숍 ④협동과 융화를 위한 OJT강화의 달 운영 ⑤회원 농·축·삼협간 자매결연 ⑥내고향 회원조합 상호방문하기 ⑦농협인 하나로 체육대회 ⑧사내방송망 확대 및 화합프로그램 운영 ⑨임직원 가족교육 실시 ⑩농업인 한마음 열린 음악회 개최 등과 같은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10) 축협중앙회 경영부실에 따른 긴급조치

축협중앙회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6월 8일부터 통합작업에 참여한 관계로 6월 17일 인수단에서 축협의 상호금융 업무현황을 파악하던 중에 축협상호금융특별회계의 경영손실 징후를 발견하였고, 이에 인수위원회는 즉시 축협중앙회 전체의 경영부실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축협중앙회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6명이 포함된 실무작업단의 자산실사팀과 인수단이 합동으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축협중앙회에 대하여 긴급 자산실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사결과 잠정 결손금이 5,88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6월 23일 축협경영부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직원 9명, 축협중앙회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축협경영대책반'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또한 6월 27일에는 축협중앙회에 대한 업무관리 및 채권보전을 위해 농협중앙회 직원 13명이 파견되었다.

한편, 긴급 자산실사 결과 축협 경영부실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협의하였으나, 통합중앙회 출범 이전까지 해결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위원회는 7월 1일 통합중앙회 이사회에 축협의 경영부실현황을 보고하였다.

(11) 통합상황실 운영

인수위원회는 통합에 따른 계통사무소의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토록 결정하였다. 통합상황실은 4개반, 75명으로 편성하여 통합중앙회 경영기획실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지역본부에도 4~5명으로 구성된 통합상황반을 설치토록 하였다.

6. 통합농협중앙회 창립기념식 개최

통합농협중앙회 창립기념식이 김대중 대통령, 함석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7월 1일 10시 30분부터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통합농협중앙회 설립경과 보고에 이어 대통령의 훈·포장 수여,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기념사와 대통령 치사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훈 장관은 경과보고에서 고비용·저효율의 비대한 중앙회 체제를 축소 개편하고, 협동조합을 원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오랜 숙원과제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중앙회의 출범은 개혁의 완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하여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통합농협이 농업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표 7-32〉 창립기념식 치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정대근 회장을 비롯한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이 나라 농업인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종래의 농협과 축협과 인삼협을 합쳐서 새로운 통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출범하게 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농업개혁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결
실을 거두고 새롭게 전진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
하해마지 않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협동조합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농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협동조합의 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협동조합이 농업인
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조직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여동안 농협개혁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뜻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 이렇게 통합 중앙회의 출
범을 보니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조직
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합 농협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진정한 봉사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

21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토지·자본·노동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입니다.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옥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도, 한라산 자락에서 찻소를 기르는 사람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농업인 모두가 신지식이 되어 창의력과 기술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생명공학, 환경산업, 각종 벤처기업 등 세계의 최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영농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통합 중앙회의 출범은 협동조합 개혁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개혁과 발전의 외형적인 큰 틀은 갖추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이 힘을 합해 알맹이를 채워가는 질적인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출발점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냉엄한 경쟁시대에서 협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농업인에 대한 봉사와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 해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비용절감과 선진 경영기법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경영체제로 탈바꿈해야 하겠습니다.

일선의 협동조합들도 더욱 규모화·전문화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이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하는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협동조합이 유통개혁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개혁은 농업발전의 핵심입니다. 유통개혁을 게을리 한다면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과 인삼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생산에서부터 출하·판매까지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과 인삼류의 판매망을 통합정비하고 서비스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일본이라는 세계최대의 농산물수입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농산물 수출국가로의 질적 전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중앙회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회원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도 업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합의 경영이 투명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내 조합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살기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익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동조합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

정부는 통합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중산층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요인을 줄이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도 도입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TO 농산물 협상에 있어서도 농협은 물론 관련단체와 함께 모든 협상력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협상내용과 그 관련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5년동안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접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이 앞장서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의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날의 고통과 어려움을 거울삼아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말끔히 떨쳐버리고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정성과 노력을 다합시다.

세계는 날로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우리 농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통합중앙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협동조합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대통령 김대중

제 8 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의 성과와 전망

- 제1절. 협동조합개혁의 기대효과
- 제2절.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여 백

제8장.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의 성과와 전망

제1절. 협동조합개혁의 기대효과

1. 중앙회의 구조개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협동조합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는 점이다.

종전에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삼협중앙회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3개의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를 새롭게 설립하였다. 또한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 즉, 지역농협·전문농협·지역축협·업종축협·인삼조합 등은 그대로 새로운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간주되었다.

이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기존 3개 중앙회의 중복되는 기능·인력·시설 등의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비대한 중앙회를 슬림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고정자산의 매각을 통해 약 5,000~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일선 회원조합의 육성에 집중지원함으로써 회원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앙회의 통합으로 농·축산물의 통합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농·축협 소매유통시설을 망라한 통합유통망을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마케팅과워(Marketing Power)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시장지배력과 가격주도력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충되었다. 또한 통합유통망의 구축으로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유통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편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통합중앙회장은 지도·감사 및 농정활동 등 농업인의 권익대변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통합중앙회장의 자격조건은 조합원 신분보유기간 5년 이상으로 강화되어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더욱 높였으며, 중앙회장은 사업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및 농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 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회의 농업경제·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가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영권과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는 대표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사업부문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삼사업 집행간부를 반드시 두되, 그 업무는 농업경제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전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였다.

협동조합개혁과정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축산부문의 특례조항까지 만들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으며,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신용사업관련 재산은 제외)과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했다. 또한 통합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할 때에는 종전의 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중앙회는 축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2. 회원조합의 실질적 육성과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개혁은 일선 회원조합의 실질적인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경영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이익을 직접 환원할 수 있는 회원조합 위주의 사업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을 수행하여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책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조합이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통합중앙회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원조합에 대한 저리자금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회원조합의 부실을 조기에 치유하여 조합 경영부실로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영부실이 심각한 일선 축협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축협중앙회에 비해 더욱 풍부해진 통합중앙회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선 회원조합이 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금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지포장센터 운영 등 유통·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IMF관리체제 이후 실질적인 금융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로 소규모 회원조합의 금융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협동조합개혁에서는 회원조합의 경제·유통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중앙회 통합에 따른 절감재원과 정부재정자금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우수조합을 선별하여 조합당 30~50억원내외의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계약재배·출하조절·매취사업·선도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조합이 경제·유통사업 등 본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조합의 경제·유통사업이 활성화되어 흑자를 발생할 경우 농약·비료·사료 등을

산값에 공급할 수 있고, 상호금융 금리도 현재보다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원조합을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조치와 아울러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조합장이 명예직이면서도 실질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한도가 너무 낮아 조합부실화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조합장직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의 경영책임을 차별화하도록 하고, 비상임 조합장제도를 선택한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인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중과실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회원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는 중앙회에 별도로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방향, 징계 및 문책, 변상책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원조합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경영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경영부실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예금지급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품목별 전문조합의 활성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개혁의 또다른 성과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품목조합의 다양한 발전 형태에 따

라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품목조합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출자로 설립되어 공동구매·판매 등의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1/3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였다. 그동안 품목조합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폐지되고 그대신 품목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권역별 업종조합연합회 설립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으로 품목조합연합회가 설립되는 경우는 없었고, 다만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내부에 품목별·업종별 전국협의회 형태로 존재해 왔다. 이렇게 된 이유로서 일선 품목조합 경영여건이나 전문화 정도가 매우 미흡하고, 중앙회가 연합회 설립을 사실상 방해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번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조합이 5개 이상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전국에 있는 동일 품목조합의 2/3이상이 참가할 경우 전국단위의 연합회 결성이 가능토록 했다. 품목조합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격을 부여토록 했으며, 회원조합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홍보, 정보교환 등의 사업 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나 제품의 공동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했으며, 통합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회원조합을 위한 자금알선도 가능하게 되었다.

4. 조합원의 권한과 참여 확대

국민의 정부는 금번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조합원의 권한과 운영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며,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봉사기능과 서비스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완전 복수조합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동일가구당 2인까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제한을 폐지하여 여성농업인, 젊은 후계농업인의 조합활동 참여를 보장하였고,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조합경영과 조합의 사업이용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소속의식을 고취하도록 했으며, 1년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정한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토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금번 협동조합개혁은 조합원의 참여기회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에게 새로 인정했다. 그리고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인정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종전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에서 5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상황 및 경영상태를 더욱 알기 쉽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회의'에서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 및 건의사항을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사무소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 외에 이사회이사록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바꾸어 임원의 경영능력과 조합경영수지 등을 감안, 조합원이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두어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실시하여 조합원에 대한 수준 높은 영농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서비스 제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1.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

국민의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했던 협동조합개혁은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의 출범으로 법·제도 차원의 개혁은 일단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는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측면에서 개혁의 취지와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실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80년대의 개방농정, 90년대의 UR/WTO체제의 출범, 1997년 이후의 IMF관리체제 등으로 한국농업은 유래없는 장기적인 불황의 터널속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히 UR/WTO체제의 출범과 IMF관리체제 이후에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 약 8%수준에 머물고 있다. IMF관리체제로부터 벗어난 이후 2000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6~8%로 예상되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오히려 0.9%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 농업전망)

이렇게 농업부문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전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농가는 영세소농경영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자생적인 시장대응능력은 아직도 취약한 수준에 있다. 분산 고립된 개별 경영체로 존재하는 농가의 특성 때문에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시장경쟁에서 언제나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영농자재의 생산 및 공급,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등과 같은 농업생산의 전·후방은 대자본과 중소자본,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 차원의 시장대응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농업의 구조적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통합 협동조합은 농업부문에서 가장 풍부한 인력·자금·조직·정보·사업 등을 보유한 농민의 인적 결합체이다. 통합 협동조합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하여 약 9만

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약 160조원에 이르며, 연간 사업규모가 약 110조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약 1,400개의 회원조합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규모 사업장과 전국적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약 250만명의 조합원과 약 930만명의 준조합원을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또한 지난 40년간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정보·기술·지식·경험·인지도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매우 방대하다. 우리나라에서 통합 협동조합의 규모는 거대자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합 협동조합은 농업부문에서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지배력은 개별 농가 차원의 시장대응으로는 생길 수 없지만 통합 협동조합의 시장대응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농촌·농민이 당면한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기관차로서 협동조합이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협동조합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통합 협동조합은 현재 농업·농촌·농민의 구조적인 위기국면을 극복해 나가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통합 협동조합의 과제

통합 협동조합이 21세기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관차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통합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에 의존해 협동조합을 운영할 경우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며 또다시 협동조합개혁의 거센 요구가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따라서 통합 협동조합의 종사자들은 금번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

다. 또한 정부와 농민을 비롯하여 농업계 전체가 통합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이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감시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입법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개혁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중복기능·인력·시설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중앙회의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은 일선 회원조합의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회의 경제사업장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공동경영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조합당 30-50억 내외의 유통지원 자금을 조성하여 계약재배·출하조절·매취사업·선도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일선 회원조합이 경제·유통사업과 같은 본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했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협동조합의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졌던 반목과 갈등이 통합 협동조합의 출범을 계기로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호간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강한 축산부문과 인삼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합 협동조합이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며 개혁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통합 협동조합 스스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UR/WTO체제의 출범과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시장과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 통합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의 대외적 환경도 급속히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혁신(Innovation)노력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농가 차원의 시장대응능력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 협동조합 차원에서 개별 농가의 경제적 실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통합유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일선 회원조합과 품목별 전문조합의 경제·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통합 협동조합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통합 협동조합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협동조합 그리고 생산농가가 협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내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역농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통합 협동조합의 역할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통합 협동조합 스스로 지역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실천가능한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산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통합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농가에 대한 생산·유통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유통지도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합 협동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농가와 멀어진다면 통합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결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매사업 등 통합 협동조합의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품목별 전문상담원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켜 품목별 전문지도사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일관된 지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개혁입법과 통합 협동조합의 출범은 정부의 몫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실

천하여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통합 협동조합의 몫으로 남았다. 통합 협동조합은 개혁의 성과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실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구조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 통일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여 백

부록

- ● ● 1.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주요일지
- ● ● 2.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
- ● ● 3.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57호)
- ● ● 4.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60호)
- ● ●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 ● ●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 ● ● 7. 대의원회및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 ● ● 8.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48호)
- ● ● 9.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 ● ● 10.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49호)
- ● ● 11.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 고시 제2000-50호)

여 백

<부록 1>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주요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1998년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국회 본관 145호실) - 'IMF하에서의 농정개혁 방향'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포함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협동조합 개혁방안 포함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공청회(한농연회관) - '21C 농업개혁 과제에 대한 공청회'중 협동조합 개혁방안 포함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정부 출범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협동조합개혁 방향 토의)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과제 보고 및 과제 선정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 협동조합 구조조정방안 논의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 협동조합 경영관리 및 지도·감독체제

일 시	주 요 내 용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안 전체 과제 논의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7.2~7.3) - 협동조합 개혁방안 전체 과제 논의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안 마무리를 위한 회의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 및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 간담회 - 농림부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가칭)'를 구성하여 9월말까지 공동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만약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전달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농림부장관에 건의 - 농정·유통·협동조합 등 3개 개혁위원회 합동회의 ○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기로 합의 ○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기획단 설치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 위원회 운영방안 협의·확정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 일부 협의·확정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 일부 협의·확정

일 시	주 요 내 용
9. 10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17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24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체제 협의
9. 28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 그동안의 논의 정리 및 중간보고 내용 협의
9. 30	○ 4개 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 회의 -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방안 협의결과 중간보고
10. 15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위원회의 지속적 운영 협의
11. 19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12. 17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1999년 2. 23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 중앙회 조직체제 및 공동개혁방안 협의 -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공동개혁안 마련 결렬을 공식 선언
3. 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강화, 계통조직의 연합회체제로 전환 등

일 시	주 요 내 용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재경부장관 주재 농·축협 관련부처 장관협의회 개최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 발표(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추진음모 철회) ○축협중앙회 노조가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결성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민주노총 성명 발표(노사합의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한다)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설치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개혁안 철회 및 농림부장관 사과 요구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소·정 원로회의 개최(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임협중앙회 및 전국임협 임직원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21세기 농정자문위원회 개최(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농림부차관과 일선 농·축협 조합장의 간담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의문(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입장)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업·농촌재도약 추진협의회 개최(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농협중앙회 노조 일간지 광고(농협 정치독립 선언)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발전대책위원회 개최(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일 시	주 요 내 용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동조합개혁 코너 신설 ○ 축협중앙회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 및 협동조합 강제통합음모 규탄대회 개최, 상급단체 변경(한국노총 → 민주노총)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은 농민조합원 주도로 이루어져야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4개 개혁위원회 초청간담회(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 농림부 차관보와 축협조합장의 간담회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 ○ 농림부장관과 낙농진흥회 임원의 간담회 ○ 농림부 전직 명예장관 초청 간담회(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 인삼협중앙회 및 전국 인삼협 임직원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에 동참, 인삼대표이사제 보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의견수렴하여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발표(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 요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특별결의문 발표(정부의 일방적 개악안 저지 투쟁)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협동조합개혁 신문고 개설 ○ 농림부차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축임인삼협의 일방적 통합 재고되어야) ○ 한국가톨릭농민회 성명 발표(농협개혁과 전농사태에 대한 가농의 입장)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이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임원에 대한 특별강연 및 간담회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원회 주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반대 규탄대회'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과 농·축·임·인삼협중앙회장의 간담회 ○ 경제차관 조찬간담회 개최, 농림부차관이 협동조합 개혁 추진상황 설명 ○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지방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지역 설명회 : 500명 참석, 경남지역 설명회 : 420명 참석 ○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방안 2차 홍보자료 배포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 농림부차관이 협동조합개혁 관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 한국유기농업협회 성명 발표(통합반대세력의 반국가적 준동을 우려) ○ 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 간담회 개최(협동조합개혁 의견수렴) ○ 농림부차관과 경북지역 축협조합장의 간담회 ○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호소문(그동안의 잘못 반성, 새롭게 태어날 것)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검토 및 협의 ○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축협조합장이 전국조합장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 방안을 축협의 입장으로 채택·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 위원회 결성(조합장대표로 구성) ○ 화훼협회·화훼종자협회 공동성명(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속통합선언 중단, 농정실패 책임을 농협에 돌린데 대해 정부 사과 ○ 축협중앙회 노조가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신문광고(협동조합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설치 ○ 축산신문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 워크숍'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가 축협회장실 점거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연합회 및 신경분리 방안의 농림부 제출 저지, 강력투쟁 촉구 ○ 과수협회·과수묘목협회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협중앙회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혁동참하라 ○ 종자협회 성명 발표(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 온실협회 성명 발표(조직이기주의나 이해관계는 배제되어야)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분리, 경제사업연합회, 비사업기능 중앙회 등 입장 발표 ○ 생약협회 성명 발표(농축협중앙회는 진정한 생산자단체로 거듭나야)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축협 통합저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간담회 ○ 농림부 차관보가 경남지역 축산인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명회 개최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정부의 개혁에 동참, 농업인의 농협으로) ○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개혁안 검허히 수용, 개혁방안 위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노력 ○ 축협중앙회가 별도 연합회체제 및 신경분리방안을 농림부에 제출 ○ 정농회 성명 발표(일부 협동조합 임직원의 반개혁행태 즉각 중단) ○ 농수축산신문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검토 및 협의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민생존권 사수 및 농정공약 이행 촉구 농민대회' 개최(4.1부터 4.3까지 3일 연속으로 집회 개최 및 협동조합 개혁 촉구 및 반개혁세력 규탄내용을 포함) ○ 낙농진흥회·대한수의사회·낙농육우협회등 축산관련 26개 단체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생활개선회 공동성명(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입장) ○ 경북대 최고경영자과정 성명(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성명(집단지기주의와 조직적 방해에 개탄) ○ 흥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성명(중앙회 통합, 신경분리 반대, 조합장 직선제)

일 시	주 요 내 용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대·녹색연합·전국귀농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신용사업은 독립법인체로 완전 분리 ○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홍보자료 '다시 태어나는 협동조합' 제작배부 ○ 축협 통합저지투쟁위원회 주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범축산인 쉼기대회' 개최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개혁방안은 적절시점에 나와 환영, 집단적 이해 의사표명에 우려 ○ 농산물냉장협회 성명 발표(농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농업협회 성명 발표(농축협은 개혁에 동참하라)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성명(김대중대통령의 협동조합 개혁의지 환영)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공식품협회 성명 발표(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순천대 최고경영자과정 성명(농축협의 조속한 통합, 조합장 직선제 등) ○ 대한곡물협회 성명 발표(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농기계협동조합 성명 발표(비대한 중앙회 조직을 통폐합)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차관보와 축협중앙회장의 조찬간담회 ○ 농림부가 협동조합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기관 의견 조회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축산분야 지방공직자(경기, 강원) 교육 ○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협동조합문제를 걱정하는 경북농민 일동 명의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차관보와 축협조합장의 간담회 ○ TBC(대구방송)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안) 검토 및 의견수렴

일 시	주 요 내 용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과 축산관련단체장(24명)의 간담회 ○ 농림부차관과 농·축협중앙회장 간담회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전남지역 축산인과의 간담회 ○ 농림부 축산정책국장과 양계농가와의 간담회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5대분회 집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축협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간담회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지역축협조합장의 간담회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농업인 설명회·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2~4.17(6일) 동안 전국 9개도 54개 시·군지역에서 개최 - 지역농민대표 등 총 2,517명 참석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농협중앙회 임원의 간담회 ○ 농림부가 협동조합 대의원 초청 토론회 개최 ○ 경제차관 조찬간담회시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협조 요청 ○ 협개연 결성식(전국농업기술자회관) 및 결성선언문 발표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상임대표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 경제사업의 일선조합 이관, 품목별·업별 전문화 육성, 무자격 조합원 퇴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발표(협개연은 즉각 해체해야)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전주 지방공무원교육원. 약 400명 참석) ○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창원 경남도청 회의실. 약 450명 참석) ○ 축협중앙회 노조 비상투쟁위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조된 협개연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 장관 및 기획관리실장 퇴진 요구 ○ 협개연 농업전문지 광고(협개연 발족 및 개혁 요구사항) ○ 협개연 성명 발표(억지주장, 안하무인 전농의 반성과 사과 요구)

일 시	주 요 내 용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개혁방안 공청회 개최(수원 농업인회관. 약 500명 참석) ○농림부가 역대 농림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협개연 성명 발표(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 규탄 및 사과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국민연대(준)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농민·농민단체 분열행위 중단 촉구 ○전국 농과계대학 최고경영자과정협의회 학생회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 실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차관과 축산관련 교수의 오찬 간담회 ○농림부 농정평가 자문위원 간담회(협동조합 개혁방안 의견수렴) ○축협중앙회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축협의 입장 농림부에 제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축협노조의 반개혁행위 규탄과 사과 요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성명(축협노조의 모략행위 중단 및 사과 요구)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축협노조의 명예훼손 표현에 대해 사과 요구)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차관과 축산관련 교수의 간담회 ○전국축협노조가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축협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갤럽이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농업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만 20세 이상의 농업인 1,602명 가운데 78.7%가 개혁에 찬성 ○협개연 성명 발표(축협노조의 총과업 협박 규탄, 축산조합원을 불모로 한 반개혁행위 중단 요구) ○이길재의원 주제 협동조합개혁 관계자(정부, 협동조합 등) 간담회 개최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총과업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개연이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방문 및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입장 전달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장관이 기독교 언론인 대상 특강 ○축협중앙회 노조가 농림부 방문 및 기획관리실장과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대한 반대입장 전달

일 시	주 요 내 용
4. 22	○농협중앙회 노조의 농림부 방문 및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간담회 - 통합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4. 23	○축협중앙회 노조가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협개연 성명발표(이상론에 치우친 학계일부의 이론을 경계) ○협개연 성명발표(반개혁세력은 중상모략과 개혁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4. 24	○농림부장관과 농정평가자문위원의 간담회 ○농협중앙회 노조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진대회' 개최
4. 26	○농림부차관과 농·축·인삼협중앙회장의 간담회 ○협개연이 시민단체에 협조요청(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올바른 판단 요청) ○협개연 농업전문지 광고(협동조합 입법예고안 협개연의 입장) ○부산 YMCA주최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개최
4. 27	○농림부와 부산지역 기독교실업인과의 간담회 ○농협 협동조합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축협중앙회 노조가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4. 28	○농협 협동조합통합비상대책위가 농림부차관과 간담회 및 건의문 전달 ○협개연 성명(협동조합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4. 29	○농림부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법령정비협의회 축조심의
4. 30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개최, 비상대책위 결성을 결의하고 별도 연합회 및 신경분리를 축협의 공식입장으로 결의 ○국민연대 결성식 및 결성선언문 발표 ○국민연대 주최 '한국협동조합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쟁점사항 협의 ○농협중앙회 임시 대의원회 개최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 발표(정부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축협중앙회장 기자회견(별도 연합회 및 신경분리를 축협의 공식입장으로)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통합저지투쟁위원회 확대개편) ○협개연 성명(기득권을 위한 축협조합장 총회의 반개혁적 결의 비판)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와 경북지역 농업인의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5.8까지 경북지역 18개 시군에서 개최 - 경북지역 농업인과 농축협조합장 등 600명 참석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획 취소 촉구)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공공기관 불법과업에 대한 사법처리 등 기본방침을 통보 ○협개연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시민단체의 협개연 가입 및 협개연 조직 확대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지도층 인사 1,258명에게 협동조합개혁 관련자료 발송 ○농협 협동조합통합대책위원회가 농림부차관과 간담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인삼협 임원의 간담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주최 '협동조합 개혁 토론회' 개최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농림부장관과 국민연대의 조찬간담회 ○협개연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 노조가 파업찬반투표 실시(5.10~5.14)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검토 ○농림부가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 보좌진에 협동조합개혁 설명 ○농림부가 5월 반상회보에 협동조합개혁 관련 홍보자료 게재 의뢰

일 시	주 요 내 용
5. 11	○농협이 기존의 '협동조합통합대책위원회'를 '통합협동조합 입법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5. 12	○농림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 회의 개최 ○농림부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의뢰 ○농림부차관과 축협부회장 간담회 및 통합법안 협의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강원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3	○농림부가 법제처에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 요청 ○농림부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법안에 대한 협의 시작(법안 일부 수정)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서신을 시장·군수 등에 발송 ○농협중앙회 노조가 농림부차관 방문 및 노조입장 전달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경기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국민연대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
5. 14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대학생 대상의 통합반대 서명운동 중단 촉구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충남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전북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5	○농림부장관과 축협중앙회 노조의 간담회 ○농림부차관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협동조합개혁 관련 내용 설명
5. 17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법률안 실무당정협의회 개최(자민련) ○농림부장관 담화문 발표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전남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경북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협개연이 협동조합 개혁관련 긴급의견서를 농림부에 전달
5. 18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법률안 실무당정협의회 개최(국민회의)

일 시	주 요 내 용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관련 실무협의 개최 ○축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연합회 체제 및 신경분리안을 철회하고,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확정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경남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국회 여당의원 보좌관 초청 설명회 ○농협 통합협동조합대책위원회 일간지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개혁 본질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충북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축협노조의 대규모 집회 자제를 촉구 ○축협중앙회가 중앙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을 농림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의 수정의견을 고려하여 법안의 일부를 수정함 ○협개연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의 대규모 집회 및 강제적인 투쟁기금 모금 중단 촉구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부터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규제영향 심사 결과 접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과)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정법률안 설명 ○전남지역 농민단체 공동으로 '전남 협개연' 결성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국회 야당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개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금융감독위원회) ○협개연이 '개혁입법에 대한 임시국회 의정감시단' 결성 ○경기지역 농민단체 공동으로 '경기 협개연' 결성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농·축협 부회장 및 기초실장의 협의회 ○국민연대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계획 발표 및 협동조합 개혁입법 법안 기초위원회 구성

일 시	주 요 내 용
5. 26	○농림부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게 제정법률안 설명
5. 27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축협중앙회 노조 등과의 협의회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축협과 농협은 분야가 다릅니다) ○협개연 성명발표(초등학교 동심을 이용한 개혁반대활동 중단 촉구)
5. 28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축산정책국장과 축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간담회 ○농협중앙회 노조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과 명예회복을 위한 2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축협중앙회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개최(중앙노동위원회)
5. 31	○농림부가 법제처에 법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 강제통합반대와 연합회안 국회청원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종료(273,540명중 152,115명(56%) 서명참가)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제주도 범농업인대회' 개최 ○제주지역 농민단체 공동으로 '제주 협개연' 결성
6. 1	○축협중앙회 노조 주최 '축협노동자 총궐기 대회' 개최
6. 2	○협동조합개혁 관련 협의회 개최(농림부, 농협, 축협)
6. 3	○차관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의결(법안 일부 수정) ○농림부가 축산발전대책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6. 4	○농림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회장 유인명) 결성대회
6. 5	○농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올바른 협동조합개혁 위한 서명운동 전개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발표(농민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라)
6. 7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농림부 방문 및 입장 전달

일 시	주 요 내 용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신문광고(강제통합 반대)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이중적 행위에 대한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의 즉각 해체 요구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의결(정부 법안 확정)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협개연 대표단의 간담회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와 협개연 상임대표단의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협개연의 입장 전달 ○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 관련 고위당정회의 개최 ○ 국민연대 성명발표(국무회의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의결을 비판)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정부의 통합법률안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 축협중앙회 노조 주최 '축협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국민회의,한나라당)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중앙회가 '농협 새출발 다짐 가두캠페인' 실시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유사한 사건이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도 지행되고 있다)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입장변경·번복 비판)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최 '제1회 협동조합 포럼' 개최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가 전국 8개 지역별 집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국회 제출(정부입법)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및 정책사업 추진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 ○ 농협중앙회가 통합협동조합법 조기 입법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 ○ 농협중앙회가 협개연에 가입 ○ 협개연 상임대표단이 여야 각 정당 방문 및 개혁입법 초기처리 촉구

일 시	주 요 내 용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6.15~7.22까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및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부법안의 내용 설명 및 개혁입법 처리의 협조 요청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개인인신공격성 광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통보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대국회 활동 개시 ○축협중앙회 노조·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일간지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의 조폐창음모가 농축협 강제통합에도 자행되고 있다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와 조합원대표자협의회 반개혁적 광고 규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폐창 음모 운운한 축협의 반개혁적 광고 규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개혁에 앞장서는 축협노조와 조합원대표자협의회회의의 즉각 사과 ○농어촌복지연구회 성명발표(축협노조는 개혁에 동참하라)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농협의 대국회 농정활동 시작(상임위 소속 의원 대상 입법활동) ○대한양계협회 등 7개 축산관련단체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은 개혁을 허위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홍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회의의 부도덕한 광고를 개탄한다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축산정책사업 등 업무정상화를 촉구 ○농림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홍보자료 배포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기자 설명회 개최 ○농협중앙회가 한나라당 총재와 간담회 및 입장 전달 ○농협중앙회 노조가 축협중앙회 노조 광고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행정실에 대한 법안 설명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6.16~6.18까지 제2차 입법관련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지역별로 개최 ○축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축협중앙회장 해임요구서를 전달 ○협개연 상임대표단이 한나라당 총재와 간담회 및 입장 전달

일 시	주 요 내 용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박순용 회장 해임 의결(직무대행체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175명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52명, 기권 3명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총회의 회장 해임의결을 환영한다)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6.19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서신을 시장·군수에 송부 ○ 전농 충남도연맹 주최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개최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농림부 항의방문 ○ 축협중앙회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협개연이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활자료집을 각 대학 총학생회에 배포 ○ 경기 협개연 주최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개최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6.23~7.12까지 개혁법안에 대한 지역설명회·간담회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의 시군단위별로 100회 이상 개최 - 농·축협조합장, 농·축협 임직원, 조합원(축산농가 포함 농업인) 등 약 10,000명 이상과 대화의 시간 마련 ○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법안 설명 ○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및 농정관련 결의대회 개최,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대국회 건의문 채택 ○ 농협조합장 대표단이 국회방문 및 개혁입법에 대한 입장 전달 ○ 축협중앙회 노조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국토 도보 순례' 개시 ○ 국민연대 주최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청원운동 선언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이 '통합협동조합법 조기 입법추진을 위한 지역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6.24~6.30까지 전국 각 지역별로 간담회 혹은 결의대회 개최)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협개연 참여단체 방문 및 협박에 대한 항의 및 사과요구)

일 시	주 요 내 용
6. 24	○축협중앙회 노조가 강제통합 항의 삭발운동 전개
6. 25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협동조합 대토론회 개최 제의(시간 및 장소 위임) ○축협중앙회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결
6. 26	○농림부가 축협조합장 및 축산농민과 간담회 개최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와 비대위는 7.1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6. 28	○정부와 여당은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한 당정회의 개최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 - 회장은 경제통합저지의 신념과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어야 한다 ○축협조합장 일동 성명서 및 호소문 발표(단순통합에 반대한다)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농정공약 촉구 일주차량 행진대회' 개최
6. 30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도록 촉구 ○협개연 성명발표(정부는 축협의 반개혁행위에 강력히 대처하라)
7. 1	○농림부장관과 한농연 중앙임원 및 도연합회장의 간담회 ○축협중앙회 노조 주최 '협동조합 강제통합저지 축산농민 총궐기대회' 개최 ○협개연 신문광고(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 요구)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7.1집회는 기득권을 고수의 반개혁적 행동)
7. 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개혁법안 통과 반대의원에 대한 규탄)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각 지역별 농민대회 개최(7.2~7.3)
7. 5	○농협중앙회가 대국회 농정활동 추진반 구성 및 운영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림부와 협개연의 비이성적 행위 규탄)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발표(협개연은 농심분열행위 중단하라) ○국민연대 주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축협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농협중앙회가 국회의원에게 농업인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 한농연 출신 축협조합장들이 축산경영인연합회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한농연 박복태 부회장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앞 단식농성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농협중앙회장 및 협개연 상임대표단의 간담회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의 당사 점거농성 등 극한행동 자제 촉구, 불법파업 계획 철회 강력히 촉구 ○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 축협중앙회 노조·축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나라당에서 단식농성 돌입 ○ 축협중앙회 광고(어용 관제 집회를 철회하라) ○ 협개연 기자회견(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의 단식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조합장·조합원에게 개혁협조 당부 서신 송부 ○ 축협중앙회 노조가 자민련 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 ○ 협개연 성명발표(농림위의 의사일정지연은 5백만 농민을 기만하는 것)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앞 시위 및 성명발표(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상정 및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및 조합장에게 노조의 불법파업계획 취소토록 촉구 ○ 협개연 주최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및 통합비용 정부 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저수부지, 약 10명 참가(전국 농민, 농협 관계자) ○ 축협중앙회 노조가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파업계획 발표 ○ 축협중앙회 회장 선거 신임 친구범 회장 선출(190명 투표에 121표 획득)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과 신임 축협중앙회장의 간담회 ○ 농림부가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설명

일 시	주 요 내 용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차관과 경북지역 농협조합장의 간담회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재차 촉구 ○축협중앙회가 이범섭 부회장을 제외한 상무 이상 간부 전원을 해임 조치 ○축협중앙회 노조가 각 정당 시·도지부 및 농림해양수산위원 지역구 농성 ○협개연 기자회견(개혁입법의 조기처리 촉구) ○경실련 성명발표(국회에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요구) ○한농연 시·군회장단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 촉구 ○경남지역 농민단체 기자회견(한나라당에 개혁입법 참여 촉구)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 및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청회 개최 ○농림부가 고문 변호사에게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위헌여부 검토를 의뢰 ○축협중앙회 노조가 부분파업 돌입(7.13~7.14) ○협개연 성명발표(공청회에서 폭언·협박을 자행한 축협지도부는 사죄) ○협개연 장원석 상임집행위원장 개혁입법 촉구 단식농성(7.13-7.21)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발표 - 축협의 비상식적 언어폭력, 인격모독 등 폭력행사 규탄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협개연 대표단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방문 및 입장 전달 ○축협중앙회가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청원을 제출(김중위 의원 소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국민회의 방문 및 입장 전달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 노조의 파업 규탄)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에 협동조합 개혁 관련 2000년 예산 요구 내용 설명 ○농협중앙회장과 축협중앙회장의 간담회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장관과 전직 일일 명예장관 초청 간담회 ○축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청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농협중앙회가 지역단위 개혁입법 촉구활동 전개(7.16~7.19) ○전국 축협노조 지부장들이 명동성당 천막농성 철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협동조합개혁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협개연의 조찬간담회 ○협개연 상임대표단이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방문 및 입장 전달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장이 자민련 총재 방문 및 입장 전달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농협중앙회 방문 및 입장 전달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차관보와 정농회 회원 250명의 간담회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축협조합장의 간담회 ○협개연 상임대표단이 한나라당 총재 방문 및 입장전달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가 국회의원에게 진정서 송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임시국회 소집하여 개혁입법 처리하라)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농협 전·상무 등 250명 초청 간담회 개최 ○농림부가 축협조합장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협조 당부 서신 발송 ○협개연 성명발표(전농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라)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장관과 농민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농림부가 축협직원 및 조합원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협조당부 서신 발송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축협조합장의 간담회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자료 배포(국회, 농민단체, 정부기관 등) ○농협중앙회가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가 농축산 관련 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가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장에게 허위사실 유포행위 금지 촉구 ○농협중앙회가 기자 설명회 개최(통합의 당위성 및 조기입법 필요성) ○축협중앙회 노조가 거주지 및 출신지 지역구 의원에 편지보내기운동 추진

일 시	주 요 내 용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상임대표단이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간담회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노조와 전농의 8.3 연대집회 취소요구)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사실확인·불법선동행위 중단 촉구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축협의 입장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 축협중앙회가 기자간담회 개최 ○ 협개연 농업전문지 광고(축협의 전문화를 저지해온 장본인이 축협중앙회)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장의 비이성적 반개혁책동을 규탄,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 처벌 요구)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주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난상토론' 개최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축협중앙회 노조가 8월 3일 예정이던 집회계획 잠정유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발표(축협중앙회의 한농연 분열 음모 규탄)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의 거짓선전과 농민단체 분열행위 공개질의)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파업대책 강구 및 업무정상화 촉구 ○ 농협중앙회가 제206회 임시국회 통합협동조합법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 및 운영(대국회 활동 집중(8.3~8.12)) ○ 농협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시국회 입법활동 총력대응 결의 ○ 한농연 출신 축협조합장 주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및 축산경영인연합회 발기인 선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자회견 - 축협의 축산경영인조직화에 대한 입장 및 한농연 분열 음모 규탄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개사과 촉구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축산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 3당 간사, 의원중 2인 등 대표단 6명이 농축협중앙회장과 간담회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조합원에 무한봉사하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 협개연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긴급건의문 전달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발표(국회는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 민교협·민변·참여연대·학단협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악 우려가 있는 정부법안 철회 및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 요구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농업인협동조합 법안 대체토론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은 억지주장과 농민단체 분열행위 중단하라) ○ 협개연 성명발표(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의원 낙선운동 선언)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실련 성명(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의 무소신과 직무유기 우려) ○ 농업변호사 모임 성명발표(개혁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 ○ 협개연 성명발표(국회의 합리적 절충안 마저 거부한 축협은 더 이상 개혁의사가 없으므로 여야는 개혁법안에 대한 보완하여 즉각 처리하라) ○ 국민연대 성명발표(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개최(중앙회 탈퇴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통합법안 강행통과시 총파업대응 선언)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수정·의결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 축협중앙회장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의결 도중에 할복 기도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제20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농업인협동조합 법안 상정 및 표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의원 272명중 찬성 147표, 반대 10표, 기권 115표로 통과

일 시	주 요 내 용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주최 국회앞 시위 및 조건부 총파업 선언 ○ 전국축협조합장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권력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 축협조합장 전체회의 개최(법을 지키면서 강력한 투쟁 전개) ○ 축협중앙회 기자회견(외압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요구, 헌법 소원 제기 천명,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 발표)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장이 담화문 발표(파업자제 및 지속적 투쟁 전개)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신문광고(농정사 50년만에 협동조합개혁의 큰 틀을 마련)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업협동조합법을 폐기하라) ○ 국민연대 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법의 국회 변칙·강행처리 규탄, 대통령의 거부권 촉구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집회(국회, 세종로, 명동성당) ○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주최 '협동조합 개혁 토론회' 개최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신문광고(농업인을 주인으로 협동조합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축협중앙회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집회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개연 성명발표(개혁입법을 계기로 농업계가 하나되어 한다)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정부는 축협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일부 간부직원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한다)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축협중앙회 부회장의 간담회(설립위원회 참가문제 등)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및 하부기구 위원 후보자 추천 공문 시달

일 시	주 요 내 용
9. 6	○축협중앙회 신규범 회장 병상에서 25일만에 첫출근 기자회견 및 직원조회
9. 7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을 공포(2000.7.1 시행)
9. 9	○농림부장관이 축협중앙회장과 면담 및 설립위원회 참여 촉구
9. 10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15명) 및 제1차 회의 - 위원회 운영방향 및 설립위원회 규정 의결
9. 16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참여를 촉구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호 발행 -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결과시까지 설립위원회 참여 유보 결정
9. 20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 - 설립사무국·설립기획단 운영 및 설립작업 세부추진계획 의결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 구성(25명) ○신경분리추진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연구용역 선정기관 및 방법 논의)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2호 발행 - 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신경분리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축협이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참여 보류 입장을 통보
9. 21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위원회 및 실무작업단 협조 요청
9. 22	○축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99헌마553)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임시총회(9.21) 결의사항에 대해 취소 명령 시달
10. 1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축·삼협중앙회에 위원회 규정 및 세부추진일정, 설립관련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

일 시	주 요 내 용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3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에 위원회 참여 촉구 및 설립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구 ○축협중앙회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중순경 ICA 답변서 회신(축협의 지지요구 거절)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축·삼협중앙회에 업무협조 요청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조합정관(예) 반영내용 제출을 요청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농·축협 인사, 재산처분 등 금지조치에 대한 입장)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4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설치 및 운영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구성(17명) 및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기획단 운영방향 논의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5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기획단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축협중앙회 이사회 개최, 농림부의 취소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의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조치 및 계획서 제출 요청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임시총회 결의 취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농가용 홍보만화 제작·배부 ○전농 충북도연맹 성명발표(농협은 조합장 임금인상조치를 철회하라)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 참여를 재차 촉구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6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이 농림부의 취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총회의결 취소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림부는 축협분열 획책하지 말라)

일 시	주 요 내 용
10. 13	○헌법재판소가 축협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결정, 전원재판부 회부
10. 15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업무현황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
10. 20	○축협중앙회 신문광고(농림부는 축협에 간섭말고 농정현안에 충실하라)
10. 22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 ○축협조합장 1인이 설립기획단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7호 발행 -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 결과, 통합작업 본격화
10. 23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왜곡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촉구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심사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8호 발행 - 축협조합장,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에 참여
10. 25	○농림부가 농정평가자문회의에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을 보고
10. 28	○통합중앙회 직급·인력 통합방안(안) 검토회의(10.28~10.29) ○축협중앙회가 '축협현황자료'를 제출
11. 1	○통합중앙회 실무작업단 구성 및 단원 교육 실시 ○축협중앙회가 통합관련 현지실태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계획 연기를 건의
11. 2	○통합중앙회 직급·인력 통합방안 재검토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성명발표(축협중앙회는 통합작업에 동참하라)
11. 5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9호, 제10호 발행 - 농·축·삼협 경제사업 및 전산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 축협의 '원칙없는 개혁, 잘못된 개혁론'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 지적

일 시	주 요 내 용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 세부추진계획 마련 ○ 축협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농림부가 법제처에 제출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농민단체장의 간담회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축협중앙회에 통합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1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라도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0~11.27까지 농·축·삼협의 경제사업 및 전산시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통합중앙회 설립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농협중앙회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설립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2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경제사업 100개중 70개 회원조합에 이관 추진 등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발표(축협중앙회 노조는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촉구)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3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기획단 제3차 회의 결과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의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마련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발표(농림부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일 시	주 요 내 용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4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성명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축협생매장 행위 고발, 농림부장관의 즉각사퇴와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기자회견(농림부장관의 사퇴 촉구) ○사무금융노련 성명발표(축협죽이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농림부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저질러)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에서 통합중앙회 설립 기본구상(안)에 대한 충북 지역 여론수렴 및 현지 시찰 ○농업인의 날 기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은 정부의 실험대상도 방패막이도 아니다 -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작업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농·축·삼협에 요청 ○한농연 경기도연합회가 '협동조합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명의도용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자 누구인가?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전문지 광고(협동조합개혁 여론수렴)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을 철회하라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일 시	주 요 내 용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조합장 일동이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문 전달 - 기본구상(안)은 농림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힐 것 등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에게 개혁 협조 서신 송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5호 발행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의견을 듣습니다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4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검토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6호 발행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성명 발표 - 농림부의 비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축협중앙회 신문광고(이 할머니의 눈물, 그 의미를 아십니까?)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신문광고 -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인가?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4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심의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삼성경제연구소, 아더앤더슨코리아) - 비전제시, 조직·인력통합방안, 경제사업 이관, 인사·보수통합체계 등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 신문광고(중앙회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결성(공동대표 14인)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협동조합개혁, 소모적 논쟁은 끝났다) ○협개연 성명발표(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하고 서명운동을 중단하라)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대국민 호소문)

일 시	주 요 내 용
12. 13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하고 서명운동을 중단하라)
12. 15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의결
12. 20	○농림부가 통합협동조합법 헌법소원 관련 변호사 초청 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축협중앙회에 송부 ○협동조합개혁 백서 발간 용역 계약(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협동조합개혁 홍보용 멀티슬라이더 제작 계약(코리아비전)
12. 23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5차 회의 - 통합중앙회 정관(안)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12. 24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광고(부끄러운 거짓말, 국민의 정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12. 27	○행정심판위원회가 축협이 제기한 '축협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농림부의 취소명령 인정)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7호 발행 - 축협의 통합기구 불참은 위법·부당으로 행정심판위 의결 ○1999.12.17~2000.1.5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12. 29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홍보물 배포(협동조합개혁, 이것이 진실입니다)
12. 30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은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설립작업에 동참해야)
12. 31	○협개연 신문광고(축협은 국론분열행위를 중단하고 축산농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일 시	주 요 내 용
2000년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7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협동조합개혁 홍보물 배포(협동조합개혁, 이것이 진실입니다) ○ 축협중앙회가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사건번호 99구37708호)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정리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법제처 실무협의 ○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간담회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6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안) ○ 축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농림부장관을 교체하고 농협법 철폐하라)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법대로 7월 1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언급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8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협중앙회 통합 예정대로 7월 1일까지 끝내겠다 ○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축협 정치세력화' 발언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보도자료·호소문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쇠고기 판촉 관련 축협의 왜곡과장 광고에 대한 해명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홍보용 멀티슬라이더 제작·배포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노조 분회장회의(4.13총선 관련 여당 지구당사 항의집회 결의)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7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안)

일 시	주 요 내 용
1. 19	○농림부가 제주지역 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 개최
1. 21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8차 회의 - 통합중앙회 정관(안)
1.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실무협의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성명(농림부장관 자진사퇴 등)
1. 25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 홍보자료 제작·배포(축협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축협중앙회에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차 촉구 ○농협중앙회 노조, 금융노련, 한국노총이 농림부장관과 간담회 ○축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농림부장관 교체, 농협법 철폐)
1. 27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및 변경 - 한두봉 위원을 조병찬 위원으로 교체, 안명수 위원 추가
1. 28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6차 회의 - 통합중앙회 정관(안) 심의,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일정 확정 ○한국협동조합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협동조합의 새 패러다임) 개최
1. 29	○축협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 정종섭, 장종익·우영균 등 2건의 연구보고서 동시 제출
2. 1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일정 시달을 위한 협동조합관계자 회의 개최 ○농림부차관과 협개연 상임대표단의 간담회 ○농림부가 각도 축산과장을 대상으로 '축산현안 설명회' 개최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의 4.13선거개입 사전방지를 선관위에 협조요청
2. 2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일정에 관한 기자설명회 개최 ○농·축·삼협에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 통보 및 협조 촉구 ○축협조합장에게 서신으로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일정 통보 및 협조 촉구

일 시	주 요 내 용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통합관련 자산실사 외부용역 설명회 개최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의 이사해임 추진관련 위법·부당행위 중단 촉구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추진일정 신문광고(7월 1일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출범합니다)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7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안) 심의 ○ 농림부장관과 농협중앙회 회장단의 조찬간담회 개최 ○ 중앙회 통합 관련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2.8~3.4) ○ 전산통합을 위한 축협전산센터 제1차 현지방문조사(2.8~2.10) ○ 농·축·삼협중앙회 및 192개 축협에 통합중앙회 설립관련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산장비 교체중단, 장표·서식 조제는 사무소간 전수배 등 ○ 통합추진일정 신문광고(7월 1일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출범합니다)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확정 및 법제처에 심사 의뢰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이사해임 중단을 재차 촉구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정치세력화 움직임 중단을 재차 촉구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규제개혁심의 통과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법제처 심사 ○ 농림부가 전북·경북·경남지역 축협조합장과 간담회 개최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에 전산통합을 위한 현장방문조사 방해 중단 촉구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통합을 위한 축협전산센터 제2차 현지방문조사(2.14~2.15) ○ 농림부가 중앙선관위에 축협중앙회의 4.13총선 관련 사전방지 협조 요청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과 민주노총의 간담회

일 시	주 요 내 용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총회 개최, 설립위원회 및 기획단 참여 조합장 이사(2명) 해임 의결,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불참 결의 ○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총회의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 ○ 해임된 축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2명의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농협중앙회 노조,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우리농업·환경살리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 ○ 농·축·삼협중앙회 자산실사를 위한 외부용역업체 선정(안진회계법인)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총회 의결사항(217)에 대한 일선 축협의 의견 확인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를 배제한 일체의 정책사업이나 정책자금 취급하지 않겠다는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일선 조합의 입장 확인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8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안) 및 통합중앙회 규정 정비 계획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 경제사업 자문(4개월간)을 위한 전문가 용역계약 체결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가 이사해임 결의 취소명령에 대해 처분취소소송 제기 ○ 농·축·삼협중앙회 통합 관련 현지실대조사 중간 보고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시·도에 일선축협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 강화 요청 ○ 민주노총 신문광고(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하라)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장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 결정시까지 설립위원회 참여 유보 입장 확인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일선축협에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 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 ○ 농림부가 정책자금 관련 농업인 홍보자료 발간·배포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9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안) 심의 및 일부 수정하여 의결

일 시	주 요 내 용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장 기자회견(통합중앙회 정관(안) 설명) ○농림부가 일선축협 임원에게 정책사업 및 정책자금 취급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알리는 서신 발송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회 통합 관련 농·축·삼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3.8~3.3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차관회의 상정·심의 및 원안대로 의결 ○축협의 행정소송(이사회 및 총회의결 취소명령)에 대한 제1차 변론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기초자료 제출 재차 촉구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0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안),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 심의·수정·의결 - 창립총회 및 회장·상임감사 선거 실시계획(안) 의결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전국축협조합이 '전국축산인대회' 개최(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통합 반대 및 통합법안 철폐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감독위원회에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의견조회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회 통합 관련 축협 전산정보센터 방문조사(3.16~3.22)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축·삼협중앙회에 국내외 대규모 신규투자 자제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설립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공문 시행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필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9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조합 정관(예) 제정방향 ○축협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접수(2000헌사116)

일 시	주 요 내 용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 ○헌법재판소가 담당 재판부에 축협의 가처분신청 사건 배당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권, 김학성 등 2건의 연구보고서 동시 제출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10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조합 정관(예) ○농림부장관과 협개연 대표단의 간담회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농협조합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관련 탄원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 중앙회 통합의 당위성 등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실시 계획(안) - 통합중앙회 조합 정관(예) 제정 방향 ○통합중앙회 대의원 및 임원선거 일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국 설치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추가선임 대리인의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농협중앙회 노조,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우리농업·환경살리기 위한 500만명 서명부'를 정부·헌법재판소 등에 전달 ○축협중앙회 노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개 단체가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 개최 ○농·축·삼협중앙회에 선거관리위원 및 사무국 직원 추천 의뢰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구성 ○통합중앙회 정관(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 완료 ○타은행 전문가와 전산통합 관련 자문회의 개최

일 시	주 요 내 용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수정(안) 심의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공고(농업전문지) ○ 축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사회·총회 의결사항 취소명령)에 대한 변론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전국의 시장·군수에게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일선 축협조합장에게 창립총회 참여 요청 ○ 범국민대책위원회 신문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과동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통합일정 즉각 중단 요구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강제통합 반대 및 통합농협법 철폐 국민대회' 개최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축협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 농림부가 각 시·도에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제2차 공개변론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변론 종결 및 심의에 착수 ○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에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협조 요청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와 축협운영협의회 의장에게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방해활동 중단 촉구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과 협개연 대표단의 간담회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1,383명중 1,142명 참석(참석률 82.6%)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제정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의결

일 시	주 요 내 용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축협측이 창립총회 회의장 진입시도 및 경찰과 충돌 ○농림부가 농·축·삼협중앙회에 통합중앙회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인가를 통보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에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후보등록(4.18~4.24) ○축협중앙회 노조 위원장 및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폭력불법집회개최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경제연구소 및 아더앤더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농·축·삼협중앙회에 통합중앙회의 이사후보자 추천 지도 문서 시달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후보등록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후보 : 정대근(현 농협중앙회장), 김종우(현 나주동강조합장) - 상임감사후보 : 윤승혁(현 농협중앙회 상임감사)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이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 ○통합중앙회 농협분야 대의원선거 완료(239명의 대의원 선출) ○통합중앙회 인삼협분야 대의원 선거 완료(7명의 대의원 선출)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에 임시총회(5.2) 방해행위 중단 촉구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및 재선거 실시 공문 시행

일 시	주 요 내 용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대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82.8%인 965표 획득) - 윤승혁 후보가 상임감사로 당선(92.8%인 1,067표 획득) ○농협중앙회 및 삼협중앙회는 통합중앙회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시 ○축협축이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 저지를 위해 임시총회 회의장 진입시도 및 경찰과 충돌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지역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7명)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보충의견서 제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를 통보 ○통합중앙회 업종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일부선출(6명)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설립위원회에 통보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 및 삼협중앙회는 통합중앙회 이사후보자 추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분야 이사후보자 13인, 인삼협분야 이사후보자 1인 등 추천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이사후보자 6인 추천 ○통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는 성원 미달로 무산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에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을 재차 촉구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대표이사(현의송), 농업경제대표이사(손은남) 임명동의안 의결 - 비상임감사(박준식) 선출 - 이사 선출(27명) : 이상 회원조합장 이사 20명, 학경이사 7명

일 시	주 요 내 용
5. 15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5. 17	○축협중앙회가 서울지방법원에 통합중앙회 이사선임 무효확인소송 제기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5. 18	○축협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5. 19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축협조합장에게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 공문 송부 ○통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가 사의 표명
5. 22	○통합중앙회 임시대의원회 소집 통지 ○축협중앙회 노조, 파업찬반투표 및 총파업결의(5.31~6.3)
5. 23	○축협조합장에게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및 대의원 선출 관련 협조 요청
5. 24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2차 회의 - 인수작업 추진계획, 직제규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검토
5. 25	○농림부가 축협중앙회 및 전국 축협에 5.31총파업 자제 촉구 공문 시달
5. 26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3차 회의 -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안,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통합중앙회 축협분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추가선출(8명)
5. 29	○통합중앙회 회장당선자에게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 의뢰 ○축협중앙회가 통합중앙회 설립추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축협측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5. 31	○축협중앙회 노조 및 전국축협노조의 부분파업 진행

일 시	주 요 내 용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통합후 업적평가 실시방안 등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부 전원 일치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99헌마553)에 대해 합헌 판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2000헌사116)에 대해 기각판정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도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개혁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 ○축협중앙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전국축협노조는 통합반대를 위한 파업 등의 입장 표명 ○협개연 성명(축협의 합헌판결 수용 및 통합반대 총파업 중단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축협의 개혁동참 촉구, 노조의 파업중단 촉구, 협동조합간 화합을 위한 정부의 배려 촉구)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제(노의현)·신용(현의승) 등 사업전담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경제대표이사(송석우) 추천 ○축협중앙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형사고발 ○축협조합장에게 통합농협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 시달 ○농협중앙회 신문광고(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지지, 축협의 합헌판결 수용 및 개혁동참 촉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신문광고(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환영, 축협내부에서 협동조합 통합에 극렬반대한 세력의 즉각 사퇴 요구)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6.10 의견진술기일)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퇴임

일 시	주 요 내 용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출범 홍보계획, 상호금융 여수신상품 통합 등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5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조직 및 사업장 조정방안 - 통합중앙회 인사·보수 정비방안 - 통합중앙회 제규정 정비방향 ○축협측이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에 참여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에 설립위원회의 권고안(제15차 회의결과) 통보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조합정관(예) 고시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5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조직 및 정원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협중앙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 취소명령 처분취소 청구(행정소송) 취하 - 축협중앙회 정기총회 결의 취소명령 처분취소 청구(행정소공) 취하 - 통합중앙회 대의원회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민사소송) 취하 - 통합중앙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민사소송) 취하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6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규정 제정(안)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7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운영지표 및 농협인의 다짐, 자기자본 증대방안, 사무실 배치계획, 전산시스템 통합 및 온라인 운영계획, 직급·호봉 조정방안, 축협중앙회 경영현황 및 대책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8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경영현황 및 대책

일 시	주 요 내 용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제1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창립기념식 개최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제16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설립등기 추진방안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앙회 인수위원회 제9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작업 추진경과, 축협상호금융특별회계 예상결손금 처리방안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폐지 ○ 통합중앙회 창립기념식 개최(농협중앙회 근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참석 및 축사 ○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통합중앙회)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해산

農業協同組合法

제정 1999. 9. 7 法律 第6018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農業人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바탕으로 農業人의 經濟적·社會적·文化적 地位의 향상과 農業의 競爭力強化를 통하여 農業人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組合"이라 함은 地域組合과 品目組合을 말한다.
2. "地域組合"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3. "品目組合"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을 말한다.
4. "中央會"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第3條(명칭) ① 地域組合은 地域名을 붙이거나 地域의 特性을 나타내는 農業協同組合 또는 畜産業協同組合의 명칭을, 品目組合은 地域名과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協同組合의 명칭을,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가 아니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條(法人格 등)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과 中央會는 각각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과 中央會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5條(最大奉仕의 원칙) ① 組合과 中央會는 그 業務에 있어서 組合員 또는 會員을 위하여 最大로 奉仕하여야 한다.

② 組合과 中央會는 일부 組合員 또는 일부 會員의 이익에 偏重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組合과 中央會는 營利 또는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中央會의 責務) ① 中央會는 會員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會員의 事業과 직접 競爭되는 事業을 行함으로써 會員의 事業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第7條(公職選舉에의 干渉금지) ① 組合과 中央會는 公職選舉에 있어서 特定政黨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當選되게 또는 當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組合과 中央會를 利用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賦課金の 免除) 組合과 中央會의 業務 및 財産에 대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外의 賦課金を 免除한다.

第9條(國家 및 公共團體의 協力 등) ①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自律性を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事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필요한 經費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③ 中央會의 會長은 組合과 中央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國家와 公共團體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最大한 노력하여야 한다.

第10條(다른 協同組合 등과의 協力) 組合과 中央會는 다른 組合,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 및 外國의 協同組合과의 相互協力·理解增進 및 共同事業開發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11條(다른 法律의 적용 등)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銀行法 및 韓國 銀行法을 적용한다. 다만, 銀行法 第2條第1項第4號, 第8條 내지 第12條, 第15條 내지 第18條, 第22條 내지 第26條, 第28條第1項, 第30條第2項第3號, 第31條第2項, 第33條, 第37條第1項·第2項, 第40條, 第45條第3項·第4項, 第53條第1項第3號, 第55條 내지 第64條, 第67條, 第68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第9號·第11號·第14號 내지 第16號 및 이와 관련되는 韓國銀行法의 각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基本資本은 出資金(回轉出資金을 포함한다), 優先出資金(非累積的인 것에 한한다), 資本準備金 및 利益剩餘金의 合計에서 自己資本 調整項目中 投資有價證券評價損失을 差減한 金額으로 한다.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5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銀行計定 및 信託計定에 의한 信用供與에 한한다.

④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信用事業會計에 속하는 業務用不動産에 한한다.

⑤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銀行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 健全性監督에 관한 원칙과 中央會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農林部長官과 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⑥ 組合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商法 第155條 내지 第1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保險業法, 糧穀管理法 第19條,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9條 및 第7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 對外貿易法 第10條 및 不動産仲介業法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章 地域農業協同組合

第1節 目的과 區域

第13條(目的) 地域農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農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農業生産性を 제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화를 도모하며,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 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4條(區域과 支事務所) ① 地域農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 등을 고려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 이상의 地域農協을 設立할 수 없다.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2節 設 立

第15條(設立認可 등) ① 地域農協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안의 20人이상의 組合員資格을 가진 者가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은 후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組合員數·出資金 등 認可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創立總會의 議事は 開議전까지 發起人에게 設立同意書를 제출한 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發起人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申請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發起人이 申請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④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農協의 設立認可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請日부터 60日이내에 이를 認可하여야 한다.

1. 設立認可 具備書類가 未備된 때
2. 設立의 節次, 定款 및 事業計劃書의 내용이 法令에 위반된 때
3. 기타 設立認可 기준에 미달된 때

第16條(定款記載事項) 地域農協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區域
4.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脫退 및 除名에 관한 사항
6. 出資 1座의 금액과 組合員의 出資座數限度 및 納入方法과 持分計算에 관한 사항
7. 經費賦課와 過怠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
8. 積立金의 종류와 積立方法에 관한 사항
9. 剩餘金의 처분과 損失金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會計年度와 會計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2. 總會 기타 議決機關과 任員의 定數, 選出 및 解任에 관한 사항
13. 幹部職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14.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16. 設立후 現物出資를 약정한 때에는 그 出資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 出資者의 姓名·住所와 現金出資로의 轉換 및 還買特約條件
17. 設立후 讓受를 약정한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과 讓渡人의 姓名·住所

第17條(設立事務의 引繼와 出資納入) ① 發起人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長이 그 事務를 引受한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出資金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③ 現物出資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入期日內에 出資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 登記·登録 기타 權利의 移轉에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8條(地域農協의 成立) ① 地域農協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地域農協의 設立無效에 관하여는 商法 第328條를 準用한다.

第3節 組合員

第19條(組合員의 資格)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이어야 하며, 2이상의 地域農協에 加入할 수 없다.

②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으로서 그 主된 事務所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두고 農業을 經營하는 法人은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の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準組合員)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로서 그 地域農協의 事業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를 準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② 地域農協은 準組合員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加入金 및 經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準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事業을 이용할 權利를 가진다.

第21條(出資) ① 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

② 出資 1座의 금액은 均一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④ 組合員의 出資額은 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⑤ 組合員은 出資의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 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다.

第22條(回轉出資) 地域農協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外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利用實績에 의하여 組合員에게 配當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組合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1條第5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23條(持分の 讓渡·讓受와 共有禁止)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승인없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고자 하는 때에는 加入申請, 資格審査 등 加入의 예에 의한다.

③ 持分讓受人은 그 持분에 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④ 組合員의 持分은 共有할 수 없다.

第24條(組合員의 責任) ①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한도로 한다.

②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生産한 農産物을 地域農協을 통하여 出荷하는 등 그 事業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第25條(經費와 過怠金の 賦課)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經費와 過怠金を 賦課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와 過怠金の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 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다.

第26條(議決權 및 選舉權) 組合員은 出資額의 多少에 관계없이 平等한 議決權 및 選舉權을 가진다.

第27條(議決權의 代理) ① 組合員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組合員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代理人은 組合員 또는 本人과 同居하는 家族(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경우에는 組合員·社員 등 그 構成員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1인에 한한다.

③ 代理人은 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을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8條(加入) ① 地域農協은 正當한 사유없이 組合員의 加入을 거절하거나 加入에 관하여 다른 組合員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새로이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하여야 한다.

③ 地域農協은 組合員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④ 死亡으로 인하여 脫退된 組合員의 相續人(共同相續인 경우에는 共同相續인이 선정한 1人의 相續人을 말한다)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出資를 承繼하여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承繼한 相續人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9條(脫退)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에 脫退의 의사를 통지하고 脫退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1. 組合員의 資格이 없는 때

2. 死亡한 때

3. 破産한 때

4.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5. 組合員인 法人이 解散한 때

③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는 組合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第2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第30條(除名) ①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組合員에 대하여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

1. 1年 이상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組合員

2. 出資 및 經費의 納入 기타 地域農協에 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組合員

3. 기타 定款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組合員

② 第1項의 경우에 地域農協은 總會開會 10日전에 그 組合員에 대하여 除名의 사유를 통지하고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31條(持分還給請求權과 還給停止) ① 脫退組合員은 脫退당시 會計年度의 다음 會計年度부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の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③ 地域農協은 脫退組合員이 地域農協에 대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을 停止할 수 있다.

第32條(脫退組合員의 損失額負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分을 계산함에 있어서 地域農協이 그 財産으로 地域農協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脫退組合員이 부담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3條(議決取消의 請求 등) ① 組合員은 總會(創立總會를 포함한다)의 召集節次, 議決方法, 議決內容 또는 任員選舉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議決이나 選舉에 따른 當選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하는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하는 때에는 議決日 또는 選舉日부터 1月 이내에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그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이에 대한 措置結果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 관하여는 商法 第376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節 機 關

第34條(總會) ① 地域農協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組合員으로 구성한다.

③ 定期總會는 매년 1회 定款이 정하는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召集한다.

第35條(總會議決事項 등) ① 다음 각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변경
2. 解散·合併·分割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3. 組合員의 除名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5. 規約의 制定 및 改廢
6. 事業計劃의 수립, 收支豫算의 編成과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定款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
8. 中央會의 設立發起人이 되거나 이에 加入 또는 脫退하는 것
9. 任員의 報酬 및 實費辨償
10.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경우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總會의 召集請求) ① 組合員은 組合員 500人 또는 100分의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召集의 目的과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 總會의 召集을 組合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組合長은 2週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總會를 召集할 者가 없거나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2週日 이내에 正當한 사유없이 組合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가 5日 이내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監事가 第3項의 기간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을 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이를 召集한다. 이 경우 組合員이 議長의 職務를 수행한다.

第37條(組合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 ① 地域農協이 組合員에게 통지 또는 催告를 하는 때에는 組合員名簿에 기재된 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로 하여야 한다.

② 總會召集의 통지는 總會開會 7日전까지 會議目的 등을 기재한 總會召集通知書의 發送에 의한다. 다만, 같은 目的으로 總會를 다시 召集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會 전일까지 통지한다.

第38條(總會의 開議와 議決)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3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9條(議決權의 제한 등) ① 總會에서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地域農協과 組合員과의 利害가 相反되는 議事에 관하여 해당 組合員은 그 議決에 참여할 수 없다.

③ 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組合長에 대하여 書面으로 일정한 사항을 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0條(總會의 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の 進行狀況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選出한 5人이상의 組合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1條(總會議決의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組合員 投票로써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議決에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員投票의 通지·방법 기타 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1. 解散·合併·分割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2. 第45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의 選出
3.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解任

② 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한 議決 또는 選出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한다.

1. 第1項第1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

2. 第1項第2號의 사항은 有效投票의 最多得票者를 選出. 다만, 最多得票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결정한다.
3. 第1項第3號의 사항은 組會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會員 3分の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

第42條(代議員會)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1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總會의 議決에 관하여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 代議員은 組會員이어야 한다.

③ 代議員의 定數, 任期 및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任期滿了年度 決算期의 最終月 이후 그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전에 任기가 만료된 때에는 定期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그 任기가 연장된다.

④ 組會長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이나 職員은 代議員을 兼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代議員會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의 議決權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第43條(理事會) ① 地域農協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組會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組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組會員의 資格審査 및 加入承諾
2. 法定積立金の 사용
3. 借入金의 最高限度
4. 經費의 賦課와 徵收方法
5.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第35條第1項第6號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幹部職員의 任免
7. 業務用 不動産의 취득과 처분

8. 業務規程의 制定 및 改廢와 事業執行方針의 決定

9.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法令 또는 定款에 規定된 사항

11.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 3分の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理事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組合長 또는 常任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幹部職員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44條(運營評價諮問會議의 구성·운영) ① 地域農協은 地域農協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組會員 및 外部專門家 15人 이내로 運營評價諮問會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運營評價諮問會議는 地域農協의 運營狀況을 評價하고 그 개선사항을 組合長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③ 組合長은 運營評價諮問會議의 建議事項을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고, 地域農協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第45條(任員의 定數 및 選出) ① 地域農協에 任員으로서 組合長 1人을 포함한 7人 이상 25人 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그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이 경우 理事중 3分の 2 이상은 組會員이어야 한다.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중 2人 이내, 監事중 1人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組合長을 非常任으로 운영하는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를 두어야 한다.

③ 組合長은 組會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의 방법으로 選出한다.

1. 組會員이 總會 또는 總會외에서 投票로 直接選出

2. 代議員會가 選出

3. 理事會가 理事중에서 選出

④ 組合長외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常任理事는 組合業務에 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⑤ 常任인 任員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⑥ 任員의 選出 및 추천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46條(任員의 職務) ① 組合長은 地域農協을 代表하며 業務를 執行한다. 다만, 組合長이 非常任인 경우에는 常任理事가 業務를 執行한다.

② 組合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 理事(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組合長이 闕位·拘禁되거나 60日 이상의 長期入院 등의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며, 專門的인 會計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에 會計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⑤ 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總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總會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요구하거나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⑥ 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監事의 職務에 관하여는 商法 第412條의4·第413條·第41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監事의 代表權) ① 地域農協이 組合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하는 때에는 監事が 地域農協을 代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地域農協과 組合長 또는 理事間의 訴訟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8條(任員의 任期) ① 組合長과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設立 당시의 組合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任期滿了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9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域農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의 規定은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2. 未成年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法令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처분을 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만료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9. 第172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罰金 100萬圓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0. 이 法에 의한 任員選舉에서 당선되었으나 歸責事由로 인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取消된 者로서 그 無效 또는 取消가 확정된 날부터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1. 選舉日公告日 현재 당해 地域農協의 定款이 정하는 出資座數 이상의 納入出資를 2年 이상(常任인 組合長의 경우에는 5年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者. 다만, 設立 또는 合併後 2年(常任인 組合長을 두는 組合의 경우에는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選舉日公告日 현재 당해 地域農協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金額과 기간을 초과하여 債務償還을 延滯하고 있는 者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號의 사유외의 任員의 缺格 事由를 정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任員은 당연히 退職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전에 關여한 行위는 그 效力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第50條(選舉運動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特定人을 地域農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으로 當選되거나 當選되도록 또는 當選되지 아니하도록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할 수 없다.

1. 選舉人에게 金錢·物品·響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約束하는 行위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1號에 規定된 行위를 하는 行위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行위

② 任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期間중에는 選舉運動을 위하여 組合員을 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地域農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選舉와 關連하여 演說·壁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任員選舉와 關連하여 定款이 정하는 宣傳壁報의 附着, 選舉公報·小型印刷物의 配付 및 合同演說會 또는 公開討論會의 開催외의 行위를 할 수 없다.

第51條(選舉管理委員會의 구성·운영 등) ① 地域農協은 任員選舉를 公正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구성·운영한다.

② 選舉管理委員會는 理事會가 組合員(任員을 제외한다)과 選舉에 關한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위촉하는 7人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選舉管理委員會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52條(任職員의 兼職禁止 등) ① 組合長과 理事는 그 地域農協의 監事를 兼職할 수 없다.

② 地域農協의 任員은 그 地域農協의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③ 地域農協의 任員은 다른 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④ 地域農協의 任職員의 競業禁止에 관하여는 商法 第39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組合長 및 理事는 理事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당해 地域農協과 定款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第53條(任員의 義務와 責任) ① 地域農協의 任員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및 定款의 規定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인 任員의 경우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地域農協에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③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者에게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행위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議決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이 경우 議決에 참가한 理事중 異議를 제기한 사실이 議事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者는 그 議決에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⑤ 任員이 허위의 決算報告·登記 또는 公告를 하여 地域農協 또는 第3者에게 끼친 損害에 대하여도 第2項 및 第3項과 같다.

第54條(任員의 解任) ① 組合員은 組合員 5分の 1 이상의 同意로 總會에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總會는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組合員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選出方法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의 방법으로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代議員 3分の 1 이상의 요구로 代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代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解任議決
 2. 事會에서 選出된 組合長은 理事會의 解任要求에 의하여 總會에서 解任議決. 이 경우 理事會의 解任要求와 總會의 解任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한다.
 3. 組合員이 直接選出한 組合長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組合員投票로 解任決定. 이 경우 代議員會의 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하며, 組合員投票에 의한 解任決定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 ③ 解任의 議決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任員에게 解任의 이유를 통지하여 總會 또는 代議員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55條(民法·商法の 準用) 地域農協의 任員에 관하여는 民法 第35條, 第63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 第385條第2項·第3項, 第386條第1項, 第402條 내지 第4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3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1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각각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본다.

第56條(職員의 任免) ① 地域農協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이 任免한다. 다만, 常任理事를 두는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組合長이 任免한다.

② 地域農協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은 中央會의 會長이 실시하는 銓衡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組合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任免한다.

③ 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節 사 업

第57條(사업) ① 地域農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教育·支援事業

- 가. 農業生産의 增進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 나. 農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다. 住居 및 生活環境 개선과 文化向上을 위한 教育·지원
-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 마.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農業技術의 擴散을 위한 示範圃, 育苗場, 研究所의 운영
- 바. 기타 사업수행과 有關한 教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의 사업
-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工事業·觀光事業 등 農外所得增大事業
- 바.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의 仲介
- 사. 委託營農事業
- 아. 農業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 자. 農村型 住宅普及 등 農村住宅事業
- 차. 보관사업

3. 信用事業

-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の 受入
 -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 다. 內國換
 - 라. 어음割引
 -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保管 등 保護預受業務
4. 共濟事業
 5. 福祉厚生事業
 - 가. 福祉施設의 設置 및 관리
 - 나. 葬祭事業
 - 다. 醫療支援事業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8. 다른 法令이 地域農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地域農協은 第1項의 事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中央會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農協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地域農協에 第1項第7號의 사업을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과 委託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自己資本의 범 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를 제외한 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の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填資金 및 貸損補填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第58條(非組合員의 사업이용)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57條第1項第2號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마目, 第5號가目·나目, 第7號 및 第10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組合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組合員과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 다른 組合 또는 다른 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地域農協은 品目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信用事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59條(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및 그 加工品 등의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出荷調節事業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4. 買取事業
5. 기타 地域農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關聯 사업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第60條(組合員에 대한 敎育)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에게 協同組合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權益이 增進될 수 있도록 組合員에 대하여 品目別 專門技術敎育과 經營相談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 地域農協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 및 相談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品目別로 專門相談員을 둘 수 있다.

第61條(共濟規程) 地域農協이 第57條第1項第4號의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을 共濟規程으로 定하여야 한다.

第6節 會 計

第62條(會計年度) 地域農協의 會計年度는 定款으로 定한다.

第63條(會計의 구분 등) ① 地域農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 一般會計는 綜合會計로 하되, 信用事業會計와 信用事業외의 會計로 구분하여 한다.

③ 特別會計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特定資金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一般會計와 구분할 必要가 있는 때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置한다.

④ 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 및 組合과 組合員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은 農林部長官이 定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組合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中央會의 會長이 定한다. 다만, 信用事業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定할 수 있다.

第64條(事業計劃과 收支豫算)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1月전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3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65條(운영의 公開) ① 組合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작성 하여 그 運營狀況을 公開하여야 한다.

② 組合長은 定款, 總會와 理事會의 議事錄 및 組合員名簿를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 組合員과 地域農協의 債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書類의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④ 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會計帳簿 및 書類 등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地域農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4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6條(餘裕資金의 運用) ① 地域農協의 業務상의 餘裕資金은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中央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公債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預置를 함에 있어서 그 下限比率 또는 금액은 餘裕資金의 건전한 運用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中央會의 理事會가 정한다.

第67條(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 의 損失補填과 財産에 대한 減價償却에 應당하고 剩餘가 있는 때에는 自己資本의 3배에 달할 때까지 剩餘金의 100分の 10 이상을 積立(이하 "法定積立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은 納入出資金, 回轉出資金, 加入金, 諸積立金 및 未處分利益剩餘金の 合計額(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地域農協은 第57條第1項第1號의 사업비용에 充당하기 위하여 剩餘金の 100分の 20 이상을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야 한다.

④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準備金 등을 積立(이하 "任意積立金"이라 한다)할 수 있다.

第68條(損失의 補塡과 剩餘金の 配當)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金(當期損失金を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未處分移越金·任意積立金·法定積立金·資本積立金·回轉出資金의 順으로 이를 補塡하며, 補塡후에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한다.

② 地域農協은 損失을 補塡하고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を 공제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の 配當을 하지 못한다.

③ 剩餘金은 定款이 정하는 率에 의하여 納入出資額에 따라 配當하고 또 剩餘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의 事業利用實績에 따라 配當한다.

第69條(利益金の 積立)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資本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1. 減資에 의한 差益
2. 資産再評價差益
3. 合併差益

第70條(法定積立金の 사용금지) 法定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地域農協의 損失金を 補塡하는 때
2. 地域農協의 區域이 다른 組合의 區域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財産의 일부를 다른 組合에 讓與할 때

第71條(決算報告書の 제출, 비치와 總會承認) ① 組合長은 定期總會日 1週전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

理案 등을 말한다)를 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主된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組合員과 債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組合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와 監事의 의견서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任員의 責任解除에 관하여는 商法 第45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2條(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 ① 地域農協은 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를 議決한 때에는 그 議決이 있는 날부터 2週 이내에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異議가 있는 債權者는 일정한 期日내에 이를 陳述하라는 취지를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1月 이상 公告하고,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催告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이 있는 날부터 2週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73條(減資에 대한 債權者의 異議) ① 債權者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日내에 出資 1座의 금액의 減少議決에 대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債權者가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地域農協이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74條(組合의 持分取得 등의 금지)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持分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第7節 合併·分割·組織變更·解散 및 清算

第75條(合併) ① 地域農協이 다른 組合과 合併하는 때에는 合併契約書를 작성하고 各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② 合併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③ 合併으로 인하여 地域農協을 設立하는 때에는 각 總會에서 設立委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 ④ 設立委員의 定數는 20人 이상으로 하고 合併하고자 하는 각 組合의 組合員 중에서 同數를 選任한다.
- ⑤ 設立委員은 設立委員會를 開催하여 定款을 작성하고 任員을 選任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⑥ 設立委員會에서 任員을 選出하는 때에는 設立委員이 추천한 者중에서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⑦ 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設立에 관하여는 合併設立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⑧ 組合의 合併無效에 관하여는 商法 第5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6條(合併支援) 國家와 中央會는 地域農協의 合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豫算의 범위안에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77條(分割) ① 地域農協이 分割하는 때에는 分割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하여야 하는 權利義務의 범위를 總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設立에 관하여는 分割設立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8條(組織變更) ①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組織變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 組織變更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에 관하여는 合併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 信用事業을 행하고 있는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한 경우에는 組織變更 당시 행하고 있는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第79條(合併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 ① 合併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消滅되는 地域農協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地域農協의 合併후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消滅된 地域農協의 名義는 存續되거나 設立된 合併地域農協의 名義로 본다.

第80條(合併·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公告, 催告 등)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은 地域農協의 合併·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81條(合併登記의 효력) 地域農協의 合併은 合併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이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第82條(解散事由)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解散한다.

1. 定款에서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2. 總會의 議決
3. 合併, 分割
4. 設立認可의 取消

第83條(破産宣告) 地域農協이 그 債務를 完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이나 債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破産을 宣告할 수 있다.

第84條(清算人) ① 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長이 清算人이 된다. 다만, 總會에서 다른 사람을 清算人으로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清算人은 職務의 범위안에서 組合長과 동일한 權利義務를 가진다.

③ 農林部長官은 地域農協의 清算事務를 監督한다.

第85條(清算人の 職務) ① 清算人은 就任후 지체없이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 財産處分の 방법을 정한 후 이를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總會를 召集하여도 總會가 開議되지 아니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第86條(清算殘餘財産) 解散한 地域農協의 清算殘餘財産은 따로 法律로 정하는 것 외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第87條(清算人の 財産分配制限) 清算人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필요한 금액을 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財産을 分配할 수 없다.

第88條(決算報告書) 清算事務가 終結된 때에는 清算人은 지체없이 決算報告書를 작성하고 이를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9條(民法 등의 準用) 地域農協의 解散과 清算에 관하여는 民法 第79條, 第81條, 第87條, 第88條第1項·第2項, 第89條 내지 第93條第1項·第2項과 非訟事件 節次法 第12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節 登記

第90條(設立登記) ① 地域農協은 出資金의 納入이 완료된 날부터 2週 이내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設立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에 規定한 사항
2. 出資總座數와 納入한 出資金의 總額
3. 設立認可年月日
4. 任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③ 設立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④ 第2項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設立認可書·創立總會議事錄 및 定款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合併 또는 分割로 인한 地域農協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외에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1條(支事務所의 設置登記) 地域農協의 支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4週이내에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92條(事務所의 移轉登記) ① 地域農協이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前所在地와 現所在地에서 각각 3週이내에 移轉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第93條(變更登記) ① 第90條第2項 各號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主된 事務所 및 당해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각각 3週이내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90條第2項第2號의 사항에 관한 變更登記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末을 기준으로 그 會計年度 종료후 1月 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登記事項의 변경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出資減少, 合併 또는 分割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외에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4條(行政區域의 地名變更과 登記) ① 行政區域의 地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기재된 당해 地域農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區域에 관한 地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지체없이 이를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登記所는 登記簿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第95條(合併登記 등) ① 地域農協이 合併한 때에는 合併한 날부터 2週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후 存續하는 地域農協은 變更登記를, 合併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은 解散登記를, 合併으로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各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合併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의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③ 第2項의 경우에는 解散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6條(組織變更登記)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변경된 때에는 2週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地域農協에 관하여는 解散登記를, 品目組合에 관하여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解散登記에 관하여는 第97條第3項의 規定을, 設立登記에 관하여는 第90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97條(解散登記) ① 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合併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清算人이 申請人이 된다.

③ 解散登記申請書에는 解散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農林部長官은 設立認可의 取消로 인한 解散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第98條(清算人登記) ① 清算人은 그 就任日부터 2週이내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그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組合長이 清算人이 아닌 경우에는 申請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9條(清算終結登記) ① 清算이 終結된 때에는 清算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 清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00條(登記日の 起算日) 登記事項으로서 行政官廳의 認可·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認可 등의 文書가 到達한 날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101條(登記簿) 登記所는 地域農協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102條(非訟事件節次法の 準用) 地域農協의 登記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중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地域畜産業協同組合

第103條(目的) 地域畜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畜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畜産業生産性を 제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하며,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 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04條(區域) 地域畜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 등을 중심으로 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 이상의 地域畜協을 設立할 수 없다.

第105條(組合員의 資格) ① 組合員은 地域畜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者로서 畜産業을 經營하는 農業人이어야 하며, 組合員은 2 이상의 地域畜協에 加入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을 經營하는 農業人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6條(사업) 地域畜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教育·支援事業

가. 畜産業生産 및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나. 畜産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다. 農村生活 개선 및 文化向上을 위한 教育·지원

-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 마. 畜産關聯 自助組織의 육성 및 지원
 - 바.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畜産技術의 擴散을 위한 飼育場, 研究所의 운영
 - 사. 家畜의 改良·增殖·防疫 및 診療事業
 - 아.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敎育 및 弘報
 - 자. 기타 사업수행과 相關한 敎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 나.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의 사업
 - 다.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工事業·觀光事業 등 農外所得增大事業
 - 바. 委託養畜事業
 - 사. 畜産業勞動力의 斡選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3. 信用事業
-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의 受入
 -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 다. 內國換
 - 라. 어음割引
 -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 등 保護預受業務
4. 共濟事業
5.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8. 다른 法令이 地域畜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第107條(準用規定) 第14條第2項, 第15條 내지 第18條, 第19條第2項, 第20條 내지 第56條, 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8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地域畜協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8條第4項중 "第19條第1項"은 "第105條第1項"으로, 第57條第3項중 "第1項第3號"는 "第106條第3號"로, 第58條第1項 但書중 "第57條第1項第2號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마目, 第5號(다目を 제외한다), 第7號 및 第10號"는 "第106條第2號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아目, 第5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 第7號 및 第10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06條第4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06條第1號"로 본다.

第4章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第108條(目的) 品目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品目이나 業種의 農業 또는 定款이 정하는 韓牛飼育業, 酪農業, 養豚業, 養鷄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飼育業의 畜産業을 經營하는 組合員에게 필요한 技術·資金 및 情報 등을 提供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畜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적·社會적·文化적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09條(區域) 品目組合의 區域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10條(組合員의 資格등) ① 品目組合의 組合員은 그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로 한다.

② 組合員은 동일 品目 또는 業種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品目組合에 加入할 수 없다. 다만, 連作에 따른 被害로 인하여 事業場을 品目組合의 區域外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1條(사업) 品目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教育·支援事業

가. 生産力の 增進과 經營能力的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나.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情報의 蒐集 및 제공

다.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技術擴散 등을 위한 示範圃, 育苗場, 飼育場 및 研究所의 운영

라. 家畜의 增殖, 防疫 및 診療와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教育 및 弘報(畜産業의 品目組合에 한한다)

마.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教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의 사업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마. 委託營農 또는 委託養畜事業

바. 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3. 共濟事業

4.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5.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6.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7. 다른 法令이 品目組合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第1號 내지 第7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9.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第112條(準用規定) 第14條第2項, 第15條 내지 第18條, 第19條第2項, 第20條 내지 第56條, 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第58條 내지 第77條, 第79條 내지 第95條, 第97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品目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5條第1項 後段중 "組合員數"를 "組合員數를 200人 이상으로 하고"로, 第28條第4項중 "第19條第1項"은 "第110條第1項"으로, 第57條第3項중 "第1項第3號의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을 "第78條第4項(第10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으로, 第58條第1項 但書중 "第57條第1項 第2號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第5號(다目を 제외한다), 第7號 및 第10號"는 "第111條第2號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마目·사目, 第4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 第6號 및 第9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11條第3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11條第1號"로 본다.

第5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第1節 通則

第113條(目的) 中央會는 會員의 공동이익의 增進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14條(事務所와 區域) ①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 中央會는 全國을 區域으로 한다.

第115條(會員) ① 中央會는 地域組合, 品目組合 및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品目組合聯合會를 會員으로 한다.

② 中央會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組合이 會員加入申請을 하였을 때에는 그 申請日부터 60日 이내에 加入을 승낙하여야 한다.

第116條(準會員)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 또는 農村關聯 團體와 法人을 準會員으로 할 수 있다.

第117條(出資)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 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18條(當然脫退) 會員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第119條(會員의 責任) 中央會의 會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第120條(定款記載事項) ① 中央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명칭과 區域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出資에 관한 사항
4. 優先出資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加入과 脫退에 관한 사항
6.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7. 總會와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任員, 執行幹部 및 執行幹部의의 幹部職員(이하 "一般幹部職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10. 經費賦課와 過怠金 徵收에 관한 사항
11.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會計에 관한 사항

13.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中央會의 定款變更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은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21條(設立·解散)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 이상의 組合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7條의 規定에 준하여 組合으로 하여금 出資金을 納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의 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機 關

第122條(總會) ① 中央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會長과 會員으로 구성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 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④ 定期總會는 매년 1회 定款에서 정한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召集한다.

第123條(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변경

2. 會員의 除名

3. 任員의 選出과 解任 및 任命同意

4. 事業計劃·收支豫算 및 決算의 승인

5. 기타 理事會 또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124條(代議員會) ① 中央會에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둔다. 다만, 第130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會長 및 常任監事의 選出을 위한 總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代議員의 數는 會員의 3分の 1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하되, 會員인 地域 組合 및 品目組合의 代表性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代議員의 任期와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25條(理事會) ① 中央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會長과 事業專擔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會長과 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의 3分の 2 이상은 會員인 組合의 組合長(이하 "會員組合長"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第2項 後段의 會員組合長인 理事의 3分の 1이상은 品目組合의 組合長으로 한다.

④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中央會의 經營目標의 設定

2. 中央會의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綜合調整

3. 組織·경영 및 任員에 관한 規程의 制定 및 改廢

4. 組合에서 中央會에 預置하는 餘裕資金의 下限比率 또는 金額

5.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會長 또는 理事 3分の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理事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⑥ 監事와 執行幹部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3節 任員과 職員

第126條(任員) ① 中央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을 포함한 理事 21人 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둔다.

② 第1項의 任員중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 및 監事 1人은 常任으로 한다.

第127條(會長の 職務) ① 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한다. 다만, 第12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專擔代表理事가 代表하는 業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會長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한다.

1. 第134條第1項第1號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4.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業務와 관련한 事業專擔代表理事間의 異見調整
5. 기타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業務의 처리

③ 會長이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事業專擔代表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28條(事業專擔代表理事의 職務) ① 第1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는 農業經濟代表理事, 畜産經濟代表理事 및 信用代表理事로 한다.

② 農業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2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農業經濟와 관련된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③ 畜産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3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畜産經濟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④ 信用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信用事業과 관련된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 ⑤ 事業專擔代表理事가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會長이 지명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⑥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의 원활한 執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組合長代表로 구성되는 組合長代表者會議를 둘 수 있다.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29條(監事の 職務) 監事は 中央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第130條(任員의 選出과 任期) ①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②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擔事業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推薦節次에 따라 추천된 者를 總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③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非常任監査는 會員組合長이어야 한다.

⑤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 및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の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⑥ 會員組合長이 第1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인 任員으로 選出된 경우에는 就任전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⑦ 會長이 事業專擔代表理事를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131條(執行幹部 및 職員의 任免 등) ① 中央會에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를 보좌하기 위하여 執行幹부를 두되, 그 명칭·職務 등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幹部중에는 人蔘關聯事業을 專擔하는 執行幹부를 두되, 農業經濟代表理事는 人蔘關聯 業務를 그 執行幹部에게 위임·專決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執行幹부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 執行幹部는 會長이 任免한다. 다만, 事業專擔代表理事 소속의 執行幹部는 소관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會長이 任免한다.

⑤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屬職員의 昇進 및 轉補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專擔代表理事가 이를 행한다.

⑥ 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理事, 執行幹部 또는 職員중에서 中央會의 業務에 관한 一切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할 權限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32條(畜産經濟事業의 特例) ① 第13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畜産經濟代表理事는 第12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에서 추천된 者를 會長이 任命한다.

② 이 法 施行전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中央會가 승계한 財産은 畜産經濟代表理事가 관리하며, 당해 財産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代金の 관리 또한 같다. 다만, 信用事業관련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中央會의 剩餘人力을 調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각각 承繼한 職員간에 같은 比率를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中央會는 畜産經濟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事業計劃의 수립 등 畜産經濟事業의 自律性和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133條(다른 職業從事의 제한) 常任인 任員과 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은 職務와 관련되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理事會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職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4節 사 업

第134條(사업) ① 中央會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教育·支援事業

가. 會員의 組織 및 經營의 指導

나. 會員의 組合員과 職員에 관한 教育·訓練 및 情報의 제공

다.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調查·研究 및 弘報

라.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改善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 情報化의 教育 및 普及 등을 위한 사업

마. 會員과 그 組合員 및 職員에 대한 補助金의 교부

바. 農業·畜産業關聯 新技術 및 新品種의 研究·開發 등을 위한 研究所와 示範農場의 운영

사. 會員에 대한 監査

아. 會員과 그 組合員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

2. 農業經濟事業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 등의 사업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다. 人蔘의 耕作指導·人蔘類 製造事業 및 檢査

3. 畜産經濟事業

-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 등의 사업
-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 다. 家畜의 改良·增殖·防疫 및 診療에 관한 사업

4. 信用事業

- 가. 會員의 與信資金과 事業資金의 貸出
- 나. 中央會의 事業部門에 대한 資金의 供給
- 다. 農漁村資金의 貸出
- 라. 銀行法에 의한 銀行業務
-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業務의 代理
- 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務
- 사. 與信專門金融業法에서 정하는 信用卡드 業務
- 아. 기타 銀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可를 받은 業務

5. 會員의 償還準備金과 餘裕資金의 運用·관리

6. 共濟事業

7.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의 運用·관리

8. 醫療支援事業

9.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去來

10.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法令에서 中央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와 관련되는 對外貿易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4.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公共團體·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에의 預置 등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할 수 있다.

③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 및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

④ 中央會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管 業務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會計를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信用事業중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사업에 대하여는 信用代表理事 소관 獨立會計내에서 會計와 損益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은 中央會와 별도의 獨立된 基金으로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⑤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填資金, 貸損補填資金, 組合相互支援資金 및 組合合併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第135條(非會員의 사업이용) ① 中央會는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會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중 販賣事業(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 第4號라目 내지 아目, 第6號, 第8號, 第10號, 第11號 및 第14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會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會員의 組合員의 사업이용은 이를 會員의 이용으로 본다.

第136條(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① 中央會는 會員의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畜産物 및 加工品 등의 원활한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の 出荷調節事業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4. 買取事業
5. 기타 中央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관련 사업

③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第137條(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中央會는 第13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會員과 공동으로 出資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利益金중 일부를 共同出資를 한 會員에게 우선적으로 配當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는 第134條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自己資本(第1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自己資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다만, 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の 20 이내에서 定款으로 정하며, 金融業種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은 自己資本의 100分の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할 수 없다.

第138條(品目組合聯合會) ① 品目組合은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고 共同事業의 開發을 위하여 5이상의 品目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品目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全國을 區域으로 하는 경우에는 全國의 品目組合의 3分の 2 이상을 그 會員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1. 會員을 위한 生産·流通調節 및 市場開拓
2. 會員을 위한 物資의 共同購買 및 製品의 共同販賣와 이에 수반되는 運搬, 보관 및 加工事業
3. 製品弘報, 技術普及 및 會員間의 情報交換
4. 會員을 위한 資金의 貸付와 聯合會의 事業을 위한 中央會로부터의 資金借入
5. 기타 會員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目的, 명칭, 區域 및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2. 會員의 資格·加入 및 脫退

3. 出資 및 經費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定數와 選任

5.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6. 事業의 種類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④ 聯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 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 聯合會는 그 명칭중에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者가 아니면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39條(長期貸出) 中央會는 自己資本, 國家로부터의 借入金,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公共團體·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1年 이상의 借入金, 1年 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 農業金融債券 發行에 의하여 造成한 資金에 한하여 1年을 초과하는 長期貸出을 할 수 있다.

第140條(與信資金의 관리) ① 中央會는 供給하는 資金이 特定된 目的과 計劃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資金利用者 등에 대하여 필요한 監査 또는 기타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中央會가 國家로부터 借入한 資金중 信用事業資金(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포함한다)은 押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第141條(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의 設置·운영) 中央會는 會員(信用事業을 실시하는 會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組合員(第58條, 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非組合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組合에 納入한 預金 및 積金에 대한 還給을 보장하고 組合의 健全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中央會에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이하 이 條에서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한다.

② 會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에 出捐하여야 한다.

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會員이 納入한 出捐金
2.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借入金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發生하는 收益金
4. 기타 收入金

④ 第3項 各號의 基金造成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中央會는 基金의 運用에 關한 중요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기 爲하여 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⑥ 會員이 預金 또는 積金을 支給할 수 없는 경우에는 基金管理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員에 對하여 그 債務를 辨濟할 수 있다.

⑦ 會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納入한 出捐金의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

⑧ 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운영과 基金의 運用 등에 關하여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節 中央會의 指導·監査

第142條(中央會의 指導) ① 會長은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指導하며 이에 필요한 規程 또는 指針 등을 定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會員의 經營상태를 評價하고 그 結果에 따라 當해 會員에게 經營개선, 合併勸告 등의 필요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長은 그 結果를 組合의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會長은 會員에 對하여 그 業務의 健全한 운영과 組合員 또는 第3者의 보호를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해 業務에 關하여 定款 또는 共濟規程의 변경,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 財産의 供託·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143條(組合監査委員會) ①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會長 소속 하에 會員의 業務를 指導·監査할 수 있는 組合監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の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③ 委員會의 監査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필요한 機構를 둔다.

第144條(委員의 選任 등) ① 委員長은 會長이 總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 委員은 委員長이 提請한 者중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과 委員은 監査, 會計 또는 農政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選任한다.

④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145條(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會員에 대한 監査方向 및 그 計劃에 관한 사항
2. 監査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대한 懲戒 및 問責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監査結果에 따른 辨償責任의 判定에 관한 사항
4. 會員에 대한 是正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監査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6. 會長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146條(會員에 대한 監査 등) ① 委員會는 會員의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에 대하여 2年마다 1回 이상 會員을 監査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會員의 부담으로 會計法人에 會計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 會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를 당해 會員의 組合長과

監事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監査結果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是正 또는 業務의 정지, 관련 任·職員에 대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職務의 정지, 譴責 또는 辨償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譴責 또는 辨償

④ 會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를 받은 때에는 2月 이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會長은 會員이 第4項의 기간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 이내에 第3項의 措置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同期間內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6節 優先出資

第147條(優先出資) ① 中央會는 自己資本의 확충을 통한 經營의 健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외의 者를 대상으로 剩餘金配當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優先出資를 발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 1座의 금액은 第117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 1座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優先出資의 總額은 自己資本의 2分の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優先出資者는 議決權 및 選舉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優先出資에 대한 配當은 會員에 대한 配當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配當率은 定款이 정하는 最低配當率과 最高配當率 사이에서 定期總會에서 정한다.

第148條(優先出資證券의 발행) 中央會는 優先出資의 納入期日후 지체없이 優先出資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第149條(優先出資者의 責任) 優先出資者의 責任은 그가 가진 優先出資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第150條(優先出資의 讓渡) ① 優先出資는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優先出資證券 發行전의 讓渡는 中央會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優先出資를 讓渡하는 때에는 優先出資證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優先出資證券의 占有者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 ④ 優先出資證券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⑤ 優先出資證券을 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51條(優先出資者總會) ① 中央會는 定款의 변경에 의하여 優先出資者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은 발행한 優先出資 總座數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한 出資座數의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52條(優先出資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優先出資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 農業金融債券

第153條(農業金融債券의 발행) ① 中央會는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은 中央會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法律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農業金融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農業金融債券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발행한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農業金融債券을 그 借換을 위하여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月 이내에 償還時期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農業金融債券에 대하여 그 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農業金融債券을 償還하여야 한다.

⑤ 農業金融債券은 割引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中央會가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때에는 每回 그 금액·조건·발행 및 償還의 방법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54條(債券의 명의변경요건) 記名式 債券의 명의변경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債券原簿에 기재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55條(債券의 質權設定) 記名式 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債券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56條(償還에 대한 國家保證) 農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國家가 全額 보증할 수 있다.

第157條(消滅時效) 農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第158條(農業金融債券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農業金融債券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節 會 計

第159條(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中央會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開始 1月전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60條(決算) ① 中央會는 每會計年度 經과후 2月 이내에 당해 事業年度의 決算을 완료하고 그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에 관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의 決算報告書에는 會計法人의 會計監査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中央會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3月 이내에 그 決算報告書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9節 準用規定

第161條(準用規定) 第14條第1項 但書, 第15條第2項·第3項, 第17條, 第18條, 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第4項·第5項, 第22條, 第23條, 第24條第2項, 第25條, 第26條,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6條 내지 第40條, 第42條第3項 但書·第4項·第5項, 第43條第5項, 第45條第6項, 第46條第5項 내지 第7項, 第47條, 第49條 내지 第53條, 第54條第1項·第2項第1號·第3項, 第55條, 第57條第4項, 第61條 내지 第63條(第2項 및 第5項을 제외한다), 第65條, 第67條(第2項을 제외한다), 第68條 내지 第74條, 第90條 내지 第94條, 第100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中央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長"은 "會長"으로, 第37條第2項중 "7日前"은 "10日전"으로, 第38條 但書중 "第3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는 "第123條第1號 및 第2號"로, 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 "組合長"은 각각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로, 第54條第1項·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任員"은 "任員(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다)"으로, 第57條第4項중 "第1項第7號"는 "第1項第10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34條第1項第6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34條第1項第1號"로, 第90條第2項第1號중 "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는 "第12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로 하고, 第49條第1項第11號 및 第12號의 規定은 會員의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章 監 督

第162條(監督)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中央會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上 필요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監督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 農林部長官은 이 法の 規定에 의한 組合에 관한 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業務에 대한 監督權의 일부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과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⑤ 金融監督院長은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관한 檢査權의 일부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63條(違法 또는 不當議決事項의 取消 또는 執行停止) 農林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의 總會 또는 理事會가 議決한 사항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執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第164條(違法行爲에 대한 行政處分)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와 會計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고 관련任·職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또는 職務의 정지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또는 減俸

② 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任·職員에 대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第165條(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한 是正措置)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의 財務狀態가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이하 이 條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健健全基準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履行計劃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人力 및 組織運用의 변경 등 中央會의 設立目的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農林部長官과 미리 合議하여야 한다.

1. 中央會 및 任·職員에 대한 주의, 警告, 譴責 또는 減俸
2. 資本의 增加 또는 감소, 保有資産의 처분 또는 店鋪·組織의 縮小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變動 등의 위험이 높은 資産의 취득금지 또는 非正常의으로 높은 金利에 의한 受信의 제한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관리인의 選任
5.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措置로서 中央會의 財務健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健健全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信用事業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命令 및 이에 준하는 措置는 中央會의 財務狀態가 健健全基準에 크게 미달하고 健健全 信用秩

序나 預金者의 權益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短期間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第166條(經營指導)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어 組合員保護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행한다.

1. 組合에 대한 監査結果 組合의 不實貸出의 合計額이 自己資本의 2倍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短期間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回收하기가 곤란하여 自己資本의 전부가 蠶食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組合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財産上의 損失이 발생하여 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組合의 破産危險이 현저하거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의 預金 및 積金의 引出이 쇄도하거나 組合이 預金 및 積金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第142條第2項 및 第146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評價 또는 監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中央會의 會長이 建議하는 경우
5.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院長이 建議하는 경우

② 第1項에서 "經營指導"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1. 不法·不實貸出의 回收 및 債權의 확보
2. 資金의 需給 및 與·受信에 관한 업무
3. 기타 組合의 經營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가 開始된 때에는 6月의 범위 안에서 債務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長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 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④ 中央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財産實査의 결과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대하여 財産照會 및 假押留申請 등 損失金補填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農林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필요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農林部長官은 財産實査의 결과 당해 組合의 經營正常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撤回하여야 한다.

⑦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에 관한 業務를 中央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⑧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 債務의 지급정지 또는 任員의 職務停止의 방법, 기간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167條(設立認可의 取消 등)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의 의견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併을 명할 수 있다.

1. 設立認可日부터 90日을 경과하여도 設立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回 이상 第164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是正하지 아니한 때
4. 組合의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한 때
5. 組合에 대한 監査 또는 經營評價의 결과 經營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 組合으로서 第142條第2項, 第146條 또는 第166條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여 組合員 및 第三者에게 중대한 損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168條(組合員 또는 會員의 檢査請求)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員이 組合員 300人以上이나 組合員 또는 代議員 100分の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所屬組合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으로 하여금 당해 組合의 業務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中央會의 會員이 會員 100分の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中央會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에게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169條(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6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章 罰則 등

第170條(罰則) ① 組合의 任員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나 執行幹部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目的외에 資金을 사용 또는 貸出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 또는 中央會의 財産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法과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組合 또는 中央會에 損失을 끼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171條(罰則) 組合 또는 中央會의 組合長(聯合會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會長, 幹部職員, 事業專擔代表理事, 理事, 監事, 執行幹部, 一般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清算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監督機關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登記를 한 때
3. 監督機關·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隱蔽한 때
4.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執行한 때
5. 第66條(第107條 또는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67條第1項·第3項, 第68條 내지 第70條 또는 第71條第1項·第3項(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第72條第1項(第80條, 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85條, 第87條 또는 第8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監督機關 또는 中央會의 監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172條(罰則) ① 第7條第2項 또는 第50條第1項 各號의 1(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50條第2項 내지 第4項(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舉日후 6月을 경과로 완성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기간을 3年으로 한다.

第173條(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選舉의 當選人이 당해 選舉에 있어서 第172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懲役刑 또는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第174條(過怠料) ① 第3條第2項 또는 第13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組合 또는 中央會의 組合長, 會長, 幹部職員, 事業專擔代表理事, 理事, 監事, 執行幹部, 一般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清算人이 公告 또는 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公告 또는 催告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公告 또는 催告를 한 때에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2002年 7月 1日부터, 第11條(同條第1項에서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제외한다), 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第68條, 第137條第3項, 第162條第4項·第5項, 第165條(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는 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를 포함한다) 및 附則 第3條,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경우 2000年 6月 30日까지는 "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組合"을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및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으로 각각 본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
2. 畜産業協同組合法
3. 人蔘協同組合法

第3條(設立委員會의 設置) ①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종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이하 "人蔘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의 解散과 中央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 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職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중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④ 設立委員會는 第1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 60日전까지 中央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으로 구성된 創立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 農林部長官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의 定款을 認可함에 있어서 定款事項중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 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節次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條(業務引繼) ① 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會長에게 그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 設立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設立費用的 부담 등) 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解散費用 및 中央會의 設立費用은 中央會가 이를 부담한다.

② 國家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不實債權 정리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6條(解散의 特例)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각각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中央會의 設立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合併으로 본다.

第7條(權利·義務의 承繼) ①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財産과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法律 第670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0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財産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②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名義는 中央會의 名義로 본다.

③ 中央會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8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의 任員 등의 任期)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員·執行幹部 및 代議員은 그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第9條(中央會 任員 등의 選出·選任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日 전이라도 이 法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委員會가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定款에 의하여 中央會의 최초의 任員 및 代議員을 選出 또는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選出 또는 選任된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이 法 施行日부터 起算한다.

第10條(中央會의 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職員은 각각 中央會의 職員으로 본다.

② 中央會 合併에 따라 剩餘人力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8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

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가 각각 施行한 自體人力減縮 實積과 承繼한 職員의 人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11條(組合 및 中央會의 會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은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당시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은 中央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12條(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로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年の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第1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組合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③ 이 法 施行당시 第15條(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組合은 中央會에 加入할 수 없다.

第13條(組合 任員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의 組合長은 第49條第1項第11號(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11條第1項의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은 각각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으로 보되, 그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14條(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 第4819號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 종전의 法律 第4821號 畜産業協

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組合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第1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 分離 추진) ① 農林部長官은 協同組合에 관하여 國際的으로 權威있는 研究機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離의 타당성 등을 檢討하기 위한 研究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機關의 研究報告書를 이 法 施行 후 2年 이내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報告書를 國會에 제출한 날부터 2年 이내에 研究結果에 따른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

④ 農林部長官은 이 法 公布와 동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政府, 協同組合關係者, 農業人代表 및 學界專門家 등으로 協議機構를 設置·운영한다.

第17條(會員의 사업참여 등) 中央會는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年 6月 30日까지 中央會 持分の 100分の 50 이상을 會員이 出資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6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 第27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 第29條第1項·第2項·第4項第1號·第5項,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 및 第3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 法律 第5720號 畜産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別·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 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 第5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 第18條第2項중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③ 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그 會員인 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 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그 會員인 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⑤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38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3號를 削除한다.

1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⑥ 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第1號마目を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號사目を 削除한다.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⑦ 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95條第1項 本文중 "第39條第1項"을 "第39條第1項第1號 및 第6號"로 하고,

同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 第4項중 "第39條, 第42條, 第43條, 第78條 및 第83條"를 "第39條第1項第1號· 第6號,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78條第1項第5號, 第83條 및 第84條"로 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 (信用事業을 실시하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法律 第5506號 信用協同組合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9條(預金保險의 保險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預金者保護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預金保險 公社에 납부한 預金保險의 保險料는 中央會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第20條(預金者安全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律 第5506號 信用協同組合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設置·운영하고 있는 預金者安全基金은 第141條의 規定에 의한 相互金融預金者保護基金으로 본다.

第21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の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과 그 中央會를 인용한 경우 이 法에 의한 組合과 中央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정 2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이거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품목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 [2만립(粒) 기준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4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6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조합은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7.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0.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조합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중앙회,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제10조(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2마리(착유우의 경우에는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2.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3. 양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사슴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멍크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6.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7. 육계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8. 산란계 5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9. 오리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0.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1.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2. 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에 한한다)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3. 여우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4. 메추리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5. 말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사육업에 한한다)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제12조(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연합회 또는 조합이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농업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한 대출
6.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7.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제16조(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7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①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분기별 출연금 = 매분기말 현재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만분의 15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율 × 1/4

②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하여금 추가로 출연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4인
3.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중앙회의 일반간부직원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

제19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대위변제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전입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예산 및 결산
7.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예금 또는 적금채무의 대위변제
2. 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15조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신용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고 신용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

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연월일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채권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자
3. 제33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 채권에 한한다)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45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중앙회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농림부장관의 감독)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연합회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종사한 경력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1. 조합
2.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2. 중앙회

②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표의 왼쪽란 제1호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제4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이 영 시행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용자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③ 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 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⑧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⑨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염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⑩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한다.

⑪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⑫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⑮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6)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17)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8)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에 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2의3.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가축의 사육기준(제4조제4호관련)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젓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산양, 면양, 사슴, 개, 여우	3마리 이상
소가축	밍크, 토끼	20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5군 이상

비고 : 축산법에 의한 가축으로서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축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축중 가장 유사한 가축의 사육기준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정 2000.3.27, 농림부령 제13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21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설립비용)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그 설립되는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신청) 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 조합장·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5. 농업종사일수
6.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실이용 준수서약

③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연합회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대차대조표

제6조(의결의 취소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

나 선거에 따른 당선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신청) 조합이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농업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제9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영 제17조제1항 산식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만분의 5를 말한다.

제10조(조합원의 검사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검사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정 2000. 4. 17 농림부장관 인가

개정 2000. 6. 2 농림부장관 인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본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축산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 사. 회원에 대한 감사
-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2. 농업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 다. 인삼의 경작지도·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 4. 신용사업
 -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 6. 공제사업
- 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 8. 의료지원사업
-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무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본회가 소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4.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본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이익금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 ③ 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며,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손실보전자금등의 조성·운용) ① 본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방법) 본회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광고는 지사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본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 본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10조(가입)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제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2. 정 관
3.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등본 또는 초본
4. 대차대조표

② 본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법 제1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제1회의 출자납입을 하게 한 후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11조(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동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해산
2. 파산

제13조(제명) 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본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3. 법령,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한 회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본회의 신용을 잃게 한 회원

제14조(지분환급) ① 본회는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회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본회는 탈퇴회원이 본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회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준회원) 본회는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준회원의 가입·탈퇴) ① 제10조의 규정은 준회원의 가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준회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본회는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준회원의 권리·의무)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 ② 준회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회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9조(출자) ①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③ 회원은 회원간의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본회에 특별출자를 할 수 있다.
- ④ 본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재평가전입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월이내로 한다.
- ③ 본회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1조(회전출자) ① 회원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회전출자금으로서 10회에 한하여 본회에 출자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우선출자) ① 본회는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회원보다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 ⑥ 본회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신용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⑨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부담) ① 본회는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과태금) ①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만분의 4의 율으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5조(법정적립금) 본회는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이월금) 본회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원지원적립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본회는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준비금으로 추가적립한다.

제28조(자본적립금) 본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29조(지분계산) 본회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5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5.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된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전입의결을 한 총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각 회원의 납입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6.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본회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7.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30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본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월 이내에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 한다.

제31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본회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2조(총회)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2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3. 제34조제1항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감사가 제35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회원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총회개최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8조(총회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40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회와 회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회원은 회장에 대하여 총회개회 6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7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회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나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회장은 농림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 본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은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장이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본회의 대의원은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제7항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농협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선출하되, 관내 조합수가 8개이상인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가. 서울특별시, 광역시(광역시관내의 군을 제외한다) 및 군별로 각 1인을 호선한다. 다만, 관내의 조합수가 1인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한다.

나. 시별로 각 1인을 호선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시관내의 조합수가 1인 경우 그 시는 인접한 시 또는 군에 포함하여 호선하고, 시·군단위 지사무소가 시와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 그 시는 군에 포함하여 호선한다.

2. 지역축협은 3개 조합을 기준으로 1인을 배정하되, 도별 조합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농업계 품목조합은 과수계, 채소계, 화훼 등 작물계별로 조합수를 참작하여 3개 조합을 기준으로 1인을 배정하되, 작물계별 조합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축산계 품목조합은 낙농, 양돈, 양계, 양봉 등 업종별로 조합수를 참작하여 3개 조합을 기준으로 1인을 배정하되, 업종별 조합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삼계 품목조합은 도별로 1인을 배정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⑤ 회장을 제외한 본회의 임·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7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감사와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회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이사회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⑪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5.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의결사항중 일부를 회장 또는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9조(임원의 정수) ① 본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을 포함한 이사 3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중 20인은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되, 10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3인은 지역축협의 조합장으로, 7인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원인 농업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3인
2. 회원인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3인
3.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1인

⑤ 이사중 7인은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충원한다.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전담대표이사간의 이견조정
5. 기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처리

③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로 하며, 각각 다음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 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나.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 다.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2. 축산경제대표이사

- 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나.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 다.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신용대표이사

- 가.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나.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 다.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 사업전담대표이사는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자회사(상법 제 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의원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⑨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⑩ 회장은 감사의 직무수행상 감사를 보좌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⑪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① 본회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본회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이 추

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부문을 제외한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업 또는 금융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비상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 ⑤ 회원조합장이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선출·추천 및 임명동의, 선거운동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① 본회는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추천을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에 지역축협 및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15인이상 30인이하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이하 "조합장대표자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한다.(개정 2000.6.2)

② 조합장대표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제46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와 비상임감사가 조합장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14호 내지 제16호는 신용대표이사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합에서 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출자

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회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회장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1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4. 재직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해임권고 : 해임권고일부터 7년

나. 업무집행정지 :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5년

15. 재직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제14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제14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6.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 또는 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이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다)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본회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본회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회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본회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제58조(집행간부) ① 본회에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며 그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명칭은 상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집행간부는 소속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는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들이 복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제청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집행간부는 본회의 직원중에서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1.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52조제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는 인삼관련 분야에 한한다)

⑤ 집행간부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⑥ 집행간부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한다. 다만, 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는 인삼관련업무를 농업경제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전결처리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②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있어서 사업전담대표이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중 "소속직원"이라 함은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업무를 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소속직원의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본회의 일반간부직원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0조(독립회계의 설치·운영) 본회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며, 신용사업중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신용대표이사 소관 독립회계내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중앙회에 별도의 독립된 기금으로 설치·운영한다.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3월말, 6월말, 9월말에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 대의원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과 본회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회원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비회원의 사업이용) ① 본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회원에게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회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제1호, 제2호·제3호중 판매사업(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호라목 내지 아목,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64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5조(지도) ① 회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당해 회원의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조합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정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하되, 같은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회장은 위원장과 위원이 궐원된 경우에 이를 보충하여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회원을 감사하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회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⑩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본회에 조합·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관련직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주된 사무소와 도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 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시·군 단위에 회원이 1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본회는 법 제153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 계

제7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1조(회계의 구분 등)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2조(일반회계의 설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독립회계단위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에 공통되는 부문과 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외의 부문을 관리회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75조(잉여금배당) ①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 제29조제7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결손보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부 칙(2000. 4. 17)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선거와 관련되는 규정은 농림부장관의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

이 정관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정 2000. 4. 17, 농림부장관 인가

개정 2000. 6. 2, 농림부장관 인가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 또는 임명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선거”라 함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임명을 동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선거인) ① 회원인 지역농협·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장(품목조합연합회장을 포함하며, 대의원회에서 선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거인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② 회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 행사)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거일) ①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거하는 임원이 정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관 제4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대의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궐원이사의 수가 3인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대의원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6조(총회의 소집 및 진행) ① 회장은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후보자인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공고방법) 임원선거에 따른 공고는 본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조합장(본회 임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회원조합장인 위원이 위촉기간중 조합장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처리한다.

⑧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궐원위원의 수가 3인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조정
5.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위반여부의 심사
6.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하고 선거인에게 통지
8. 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 의장이 위임하는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③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① 본회는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회장선거

제11조(피선거권) ① 본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은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상임감사·직원·본회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본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권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이사·비상임감사·조합감사위원 및 본회의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선거공고) 본회는 선거일전 14일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공고일부터 7일간(공고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신청)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소정의 추천서에 선거인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자필 기명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의 추천은 3개 도(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쳐 받아야 한다.

④ 선거인은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⑤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접수후에 자격없음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구비되었으나 등록신청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④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6조(등록취소) ①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 ① 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③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일전 4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그 비용은 본회의 부담으로 한다.

- ⑥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1이상의 선거운동방법과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⑦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간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추천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제19조(선거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20조(총회의 진행)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② 의장은 후보자로 하여금 농협운영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④ 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⑤ 개표는 투표종료후 즉시 실시한다.

제22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6.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난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붙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23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인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발표한다.

제2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
 3.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새로 기산한다.

제25조(당선의 통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공고한다.

제26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그 임기가 개시된다.

제27조(선거기록) ① 의장은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록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회장의 재임기간동안 본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회장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본회에서 보관한다.

제3절 상임감사선거

제2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및 이 규약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상임감사임기만료일 현재 본회의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직원·본회의 자회사 및 본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상임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준용규정) 제1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이사선거

제1관 회원조합장인 이사

제30조(선거공고) 회장은 회원조합장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이사”라 한다)의 선거일전 10일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선거방법) ① 이사는 추천단위별 전체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자추천회의(이하 “추천회의”라 한다)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가 임기중 조합장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제32조(추천단위 및 인원) 이사후보자(이하 이 관에서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단위 및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농협

가. 각 도별로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중에서 각 1인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중에서 1인

2. 지역축협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회원인 지역축협의 조합장중에서 3인

3. 품목조합

가. 회원인 농업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3인

나. 회원인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3인

다.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중에서 1인

제33조(추천회의의 구성) 추천회의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위별 전체 회원조합장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34조(추천회의의 진행) ① 각 도단위 지사무소장은 이사선거 공고일부터 선거 일전 5일까지 추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추천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다음 대의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천회의 임시의장은 추천회의에 참석한 조합장중에서 호선한다.

④ 임시의장은 추천회의 당일 추천회의에 출석한 조합장중에서 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투표 및 개표관리자를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⑤ 임시의장은 출석자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추천후보자를 선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이사후보자를 결정한다.

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이사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추천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 구성원의 다수득표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

⑧ 추천후보자가 추천단위별로 추천하여야 할 인원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이사후보자로 한다.

제35조(추천서제출) 추천회의 임시의장은 이사후보자가 결정되면 즉시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사후보자추천서를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절차) ①의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이사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3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이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결원된 이사의 추천단위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제2관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제39조(피선거권)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이하 이 관에서 "이사" 라 한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정관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 추천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제40조(선거방법)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1조(선거절차) ① 회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42조(준용규정)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7조제3항은 이사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비상임감사선거

제43조(선거공고) 회장은 비상임감사선거일전 10일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등록접수 장소
6. 후보등록 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후보자등록) 비상임감사 후보자(이하 이 절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되려는 회원조합장은 선거일전 5일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비상임감사의 선출) 비상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6조(보궐선거) 비상임감사가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이내인 때에는 다음 대의원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7조(준용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명

제48조(자격제한)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정관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신용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제14호 내지 제16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임명동의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명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제49조(임명방법) 사업전담대표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정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이하 "추천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50조(동의안 부의) ① 회장은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동의안을 대의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임명동의대상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다.

③ 제2항의 동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1조(축산경제대표이사의 추천방법) ① 회장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추천회의의 의장은 추천회의 당일 구성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추천회의 구성원 3인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추천을 받은 후보자중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표결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⑤ 의장은 임명대상자가 결정되면 즉시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0.6.2)

제52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임명의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②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임명의 경우는 임명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제53조(궐원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명) 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원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보충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추천회의의 추천을 얻어 이를 보충한다.

제54조(준용규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3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임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보 칙

제55조(준칙의 제정)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최초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최초의 회장·상임감사 선거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회장선거를 제외한다), 상임감사(상임감사선거를 제외한다), 부회장, 직원, 자회사 및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임·직원,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③ 최초의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소집, 총회의장·선거일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중 납입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가입하고 있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에 미달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미달하는 납입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정관 제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6. 2)

이 규약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구비서류 일람표

구 분	발 급 자	선 거 종 별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소정양식)	본 인	회장 · 상임감사 · 비상임감사	
2. 퇴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장	회장 · 사업전담대표 이사 · 상임감사	
3. 추천서 (소정의 용지)	회원조합장 추천회의 임시의장 조합장대표자회의임 시의장 추천회의 구성원	회장 · 상임감사 회원조합장인 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후보자 본인의 승낙서 첨부 임명대상자 본인의 승낙 서 첨부 본인승낙서 · 이력서 · 주 요경력증명서 첨부
4. 선거공보 원고 (소정양식)	본 인	회장 · 상임감사	

대의원회및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

제정 2000. 4. 17

개정 2000. 6.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과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대의원선거

제3조(선거인)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피선거권) ① 대의원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형사사건에 계속 중인 자
2. 선거일 현재 조합장직 직무정지 중인 자

제5조(선출기준) ①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지역농협은 별표 1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2. 지역축협은 별표 2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3.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 가. 농업계 품목조합과 축산계 품목조합은 별표 3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 나. 인삼계 품목조합은 도별로 1인을 호선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단위별 회원의 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46조제3항에서 정한 선출기준에 따라 대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거관리자) ① 도단위 사무소장, 시·군단위 사무소장, 중앙본부 대의원선거업무담당 부서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대의원 선출에 따른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선거에 따른 사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다만, 개표시에는 조합장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한다.

제7조(선거일) ①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이를 행하여야 할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일은 관리자가 선거구안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조합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거일의 통지) ① 관리자는 선거일전 7일까지 선거구안의 선거인에게 선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투표개시의 시각·투표소·개표소·선거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방법) ①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호천하고,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 투표는 선거인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0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의 성명외의 사항 또는 표지가 있는 것
3. 누구의 성명을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4.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5.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를 초과하여 성명을 기재한 것

제11조(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은 투표결과 선거인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3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선거인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표결과 다수득표자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이하일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제12조(당선인통지 등) ① 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선거구안의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때에 대의원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일인 때에는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취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당선인의 보고) 시·군단위 사무소장은 당선인의 확정 즉시 선거결과 및 당선인의 인적사항을 도단위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도단위 사무소장은 이를 취합하여 중앙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4조(대의원 명부) 회장은 대의원의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5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대의원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대의원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상실한 때
2. 당선인이 취임승낙을 하지 아니한 때
3.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② 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0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록보존) 관리자는 선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 임기만료시까지 선거관리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회 운영

제18조(구성)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 대의원이 대의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한 때
4.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한 때
5.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요구한 때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상임감사의 감사결과
2.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임사항) 대의원회는 그 의결사항중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석) 대의원회의 의석은 회장이 정한다.

제23조(회기) 대의원회의 회기는 회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③ 회장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대의원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대의원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1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3. 제19조제3항제5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회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대의원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대의원대표등의 대의원회소집) 감사가 제25조제2항의 기간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대표 또는 제1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회원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대의원대표 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대의원회의 소집통지) 대의원회의 소집통지는 그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대의원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8조(목적사항의 제안) ① 회원 또는 대의원은 회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회원 또는 대의원은 회장에 대하여 대의원회 개최 6주전에 서면으로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27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안을 한 회원 또는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등) ① 대의원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해임(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한함)

제31조(의결권의 제한)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대의원의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나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전문분과위원회) 대의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초청) ① 사업전담대표이사·이사·감사·집행간부 및 관계부서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사록)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간사) ① 대의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본부 대의원회운영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준비
2. 의안작성

3. 의사록 작성 및 보관

4. 기타 대의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의원의 실비변상) ① 대의원이 대의원회의 출석을 위한 출장과 대의원 자격으로서 본회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할 때의 여비는 본회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본회 여비규정에 의한 일반간부직원의 여비 해당액으로 한다.

제4장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출

제38조(선거인) ① 조합장대표자의 수는 20인으로 하되, 조합장대표자의 3분의 1 이상은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는 지역축협의 조합장은 도별로 5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축산계품목조합의 조합장은 3개축종이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0.6.2)

제39조(선출방법) ① 회장은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지역축협 및 축산계품목조합의 조합장(이하 “선거인”이라 한다)을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선거당일 선거인중에서 호선한다.

③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의 선출방법은 선거인의 구두호선에 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0.6.2)

제40조(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조합장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개정 2000.6.2)

부 칙(200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의원 및 임원선거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최초 대의원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의 대의원선거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를 위한 선거일의 지정, 회원의 소집, 선거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약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0.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장대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개정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대표자는 개정된 정관 및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대표자로 본다.

<별표 1> 지역농협 대의원 선출단위 및 정수(제5조제1호관련)

경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가 평	1	1	고 양	6	1	과 천	2	1
광 명	1		광 주	7	1	군 포	1		
구 리	1		김 포	3	1	남양주	7	1	
동두천	1		부 천	2	1	성 남	2	1	
시 흥	1		수 원	1		안 산	3	1	
안 성	13	2	안 양			양 평	7	1	
여 주	8	2	연 천	3	1	오산화성	13	2	
용 인	10	2	의 왕	1		의정부,양주	8	2	
이 천	10	2	파 주	9	2	평 택	4	1	
포 천	7	1	하 남	2	1	소 계	152	28	

강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강 릉	6	1	고 성	3	1	동 해	2	1
속 초	1		삼 척	4	1	양 구	2	1	
양 양	4	1	영 월	5	1	원 주	6	1	
인 제	2	1	정 선	4	1	철 원	4	1	
춘 천	6	1	태 백	1		평 창	5	1	
화 천	2	1	홍 천	8	2	횡 성	8	2	
소 계	73	18							

충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괴 산	5	1	단 양	5	1	보 은	6	1
영 동	6	1	옥 천	6	1	음 성	8	2	
제 천	6	1	진 천	6	1	청주청원	12	2	
충 주	14	2	소 계	74	13				

충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공 주	12	2	금 산	7	1	논 산	10	2
당 진	12	2	대 전	12	2	보 령	10	2	
부 여	12	2	서 산	11	2	서 천	8	2	
아 산	11	2	예 산	9	2	연 기	6	1	
천 안	8	2	청 양	6	1	태 안	7	1	
홍 성	11	2	소 계	134	28				

전 북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고 창	14	2	군 산	8	2	김 제	13	2
남 원	5	1	무 주	4	1	부 안	8	2	
순 창	5	1	익 산	14	2	임 실	3	1	
장 수	2	1	전주완주	12	2	정 읍	10	2	
진 안	5	1	소 계	103	20				

광 주 · 전 남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강 진	8	2	고 흥	8	2	곡 성	5	1
광 양	7	1	광주직할	14	2	구 례	2	1	
나 주	15	2	담 양	12	2	목포신안	11	2	
무 안	7	1	보 성	6	1	순 천	2	1	
여 수	6	1	영 광	6	1	영 암	11	2	
완 도	9	2	장 성	8	2	장 흥	9	2	
진 도	7	1	함 평	8	2	해 남	12	2	
화 순	10	2	소 계	183	25				

대 구 · 경 북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경 산	8	2	경 주	13	2	고 령	4	1
구 미	10	2	군 위	4	1	김 천	12	2	
달 성	9	2	대구직할	10	2	문 경	7	1	
봉 화	6	1	상 주	12	2	성 주	9	2	
안 동	13	2	영 덕	7	1	영 양	2	1	
영 주	6	1	영 천	10	2	예 천	6	1	
울 릉	1	1	울 진	8	2	의 성	13	2	
청 도	7	1	청 송	4	1	칠 곡	7	1	
포 향	9	2	소 계	197	38				

경 남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거 제	11	2	거 창	6	1	고 성	5	1
	김 해	9	2	남 해	6	1	마 산	6	1
	밀 양	9	2	사 천	8	2	산 청	1	1
	양 산	7	1	의 령	2	1	진 주	12	2
	진 해	3	1	창 념	12	2	창 원	5	1
	통 영	6	1	하 동	10	2	함 안	6	2
	합 양	5	1	합 천	11	2	소 계	148	28

제 주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제주,북제주	10	2	남제주	6	1	서귀포	3	1
	소 계	19	4						

서 울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서 울	12	2	소 계	12	2			

부 산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부 산	12	2	기장군	1	1	소 계	13	3

인 천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인 천	7	1	강 화	8	2	용 진	2	1
	소 계	17	4						

울 산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울 산	5	1	울주군	10	2	소 계	15	3

총계	선출단위	조합수	대의원수						
		1,132	224						

<별표 2> 지역축협 대의원 선출단위 및 정수(제5조제2호관련)

구 분	조합수	대의원수	구 분	조합수	대의원수
서울·인천·경기	22	7	강원	18	6
충북	10	3	대전·충남	15	5
전북	13	4	광주·전남	22	7
대구·경북	24	8	부산·울산·경남	20	7
제주	2	1	계	146	48

<별표 3> 품목조합 대의원 선출단위 및 정수(제5조제3호가목관련)

1. 농업계 품목조합

구 분	선출단위(조합명)	대의원수
과수계(26)	경기동부과수, 부천원예, 수원원예, 안성과수, 평택과수,강릉원예, 원주원예, 춘천원예, 충북사과, 대전원예, 공주과수,서산원예, 아산원예, 예산능금, 천안배, 홍성능금, 나주배,목포원예, 경북능금, 상주원예, 거창사과, 진주원예, 경남단감,제주감귤, 서울원예, 울산원예	9
채소계(16)	안양원예, 대관령원예, 군산원예, 김제원예, 남원원예,익산원예, 전주원예, 정읍원예, 광주원예, 광양원예, 순천원예,여수원예, 대구경북원예, 성주참외, 마산원예, 인천원예	5
화훼계 (3)	경기화훼, 부산경남화훼, 경남중부원예	1
계	45	15

2. 축산계 품목조합

구 분	선출단위(조합명)	대의원수
낙농(22)	서울우유, 청주우유, 대전충남우유, 광주전남우유, 대구경북우유, 부산경남우유, 강원낙농, 천안낙농, 공주낙농, 홍성낙농, 백제낙농, 서해낙농, 당진낙농, 지리산낙농, 동진강낙농, 완산낙농, 임실낙농, 전남동부낙농, 경북낙농, 경북중앙낙농, 경남낙농, 제주낙농	7
양돈 (9)	서울경기양돈, 강원양돈, 영동양돈, 대전충남양돈, 전북양돈, 광주전남양돈, 대구경북양돈, 부산경남양돈, 제주양돈	5
양계 (6)	서울경기양계, 대전충남양계, 전북양계, 광주전남양계, 대구경북양계, 충북양계	1
양봉 (4)	한국양봉, 강원양봉, 전북양봉, 제주양봉	1
기타 (5)	한국양토, 대구경북염소, 대전충남염소, 한국진도견, 한국양록	1
계	46	15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정 2000.6.10, 농림부고시 제2000-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군 구·읍·면·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마. 신제품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 바.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4. 공제사업
- 5. 복지후생사업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장제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7조(광고방법)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

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법인인 조합원이 해산한 때

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조

합 재산에 대하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20좌이상을 출자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

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회전출자) ① 조합원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안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1조(경비부담)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24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3.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다.

제26조(자본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27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5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9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8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한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8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0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제3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대표는 감사가 제33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총회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6조(총회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총액 1억원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8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제39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투표로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 대하여 총회개회 6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5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43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5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구역안의 조합원이 호선하는 대의원 ○○인으로 구성한다.

(비고) 대의원수는 50인 이상 200인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1. ○○ 마을, 이동 ○○인

2. ○○ 마을, 이동 ○○인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선출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 ③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⑤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이사회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⑨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 ⑩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 2. 법정적립금의 사용
- 3. 차입금의 최고한도
-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6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 간부직원의 임면
-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인과 외부전문가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이내로 정한다.

2.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9조(임원의 정수)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인,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

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례〉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4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 및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2인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은 상임으로 하며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제51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

한다.

제52조(임원의 선출)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제4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

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
1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①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인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9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1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④ 조합장은 3월말·6월말·9월말에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

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4조(경영상태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

료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①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 제27조제5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71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 ①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현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1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고)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본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우리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를 추가할 것

제4조(상임이사 및 간부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상임이사의 임기만료후에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상임이사 소관 직원 및 간부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제정 2000.6.10, 농림부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장·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①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2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선거의 경우는 투표구별로 작성한다.

④ 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선거권)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일) ①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경우 합병의결이 있거나 조합합병추진협의회 합의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경우 2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1투표구를 초과하는 투표구마다 3인의 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조합장선거기간에 한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처리한다.

⑧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결원위원의 수가 2인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조정
5.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위반여부의 심사
6.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 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기간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①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1절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8조(피선거권) ① 조합장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거나 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의 조합장·연합회장·중앙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및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선거공고) 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간(공고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3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을 조회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접수후에 자격없음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구비되었으나 등록신청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13조(등록취소) ①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합의 게시판 및 투표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운동) ① 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③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일전 4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그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⑥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1이상의 선거운동방법과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제16조(투표구) ① 투표구수는 조합구역, 선거인수,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여건, 조합의 선거관리능력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② 1투표구에 1투표소를 둔다.

제17조(투표통지표의 교부) 위원회는 투표일전일까지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는다. 다만, 선거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각 2인을 조합원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할 때에는 1투표구를 초과하는 투표구마다 후보자 1인당 투표참관인 2인을 추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투표절차)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 자격을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천에 의하여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20조(투표시간) 투표는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 실시한다. 다만, 하오 6시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제2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6.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붙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22조(개표시기 및 장소) ①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전부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② 2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한 경우 투표구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 법 제33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
3.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조합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새로 기산한다.

제25조(당선의 통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공고한다.

제26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제27조(선거기록) ① 위원회는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록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조합장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28조(선거공고) 조합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선거방법)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0조(대의원회 진행)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 ②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31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②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를 한다.
- ③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 ④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32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

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3절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34조(선거공고) 조합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제35조(선거방법) ①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6조(준용규정) 제8조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제37조(피선거권) ①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직원이나 상임이사, 상임감사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선거방법) ①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공고) 조합장은 선거일전 1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후보자 등록) 이사 후보자(이하 이절에서는 "후보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전 5일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 제41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②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 ③ 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 ④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42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다만,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제43조(당선인의 결정) ①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그 지역에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4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중인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궐원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궐원된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조합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로서 궐원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이내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5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외의 이사

제46조(자격제한)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외의 이사(이하 이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정관 제54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2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중 "후보자등록일전일"은 "추천일전일"로 한다.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직원·상임이

사·상임감사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선거방법) 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의원회에
서 선출한다.

제48조(선거절차) ① 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
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
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
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49조(준용규정)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
조, 제31조, 제32조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44조제3항중 "이
사정수(조합장을 포함한다)"는 "이사정수"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

제50조(자격제한) ① 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
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축산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
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54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2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중 "후보자등록일전일"은 "추천일전일"로 한다.

제51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2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하여 1개의 의안으로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준용규정)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54조(피선거권) ① 비상임감사는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및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사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중인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궐원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로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1년이내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5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2절 상임감사

제57조(자격제한) ① 상임감사는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54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연합회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상임이사 및 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및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중 "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59조(준칙의 제정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선거공보·선전벽보의 작성·배포,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1호)·전문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2호)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6호)는 이를 폐지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정 2000.6.10 농림부고시 제2000-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축산업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군 구·읍·면·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마.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 사.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 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위탁양축사업
- 사. 축산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동)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동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동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동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협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사육하는 축종 및 가축수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

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법인인 조합원이 해산한 때

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 ② 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20좌이상을 출자한다.
-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월이내로 한다.
- ③ 조합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0조(회전출자)** ① 조합원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안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부담)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24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3.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

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다.

제26조(자본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27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5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9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8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

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한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8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0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제3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대표는 감사가 제33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총회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6조(총회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총액 1억원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신규 취득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8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제39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투표로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 대하여 총회개회 6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5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43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5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구역안의 조합원이 호선하는 대의원 ○○인으로 구성한다.

(비고) 대의원수는 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1. ○○ 면·동 ○○인

2. ○○ 면·동 ○○인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선출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⑤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이사회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⑨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 ⑩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6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조합원 ()인과 외부전문가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이내로 정한다.

2.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9조(임원의 정수)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인,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례〉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4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 및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2인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은 상임으로 하며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할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제51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임원의 선출) ①

〈제1레〉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권위된 경우로서 그 권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권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제4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
1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에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에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회

이익을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2천만원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에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인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9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1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④ 조합장은 3월말·6월말·9월말에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

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아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4조(경영상태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①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 제27조제5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71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 ①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현재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고)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본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우리조합

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를 추가할 것

제4조(상임이사 및 간부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상임이사의 임기만료후에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상임이사 소관 직원 및 간부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정 2000.6.10, 농림부고시 제2000-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농업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예)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품목 또는 업종)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제9조에서 정한 품목 또는 업종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군 구·읍·면·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 4)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 5)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축산업의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밀줄부분을 "사육장 및 연구소"로 규정)
 -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마.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비고) 축산업의 품목조합을 제외한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라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규정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의 품목조합은 "농산물"을 "축산물"로 규정)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위탁영농사업(축산업의 품목조합은 "위탁양축사업"으로 규정)
- 사.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비고 1) 제3호는 1995년 6월 23일전에 설립된 품목조합으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호를 삭제하여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9호로 규정

(비고 2) 이 정관례 시행일 현재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인삼조합의 경우에는 본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4. 공제사업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 품목조합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품목 또는 업종명)을 ○○이상 경영(사육)하는 농업인

(비고) 다음의 품목(업종)과 경영기준중에서 조합자율로 선택하여 규정할 것

가. 해당 품목(업종)의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 이상

(예) 고추 5천제곱미터이상, 양파 5천제곱미터이상 등

나. 해당 품목(업종)의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예) 배 5천제곱미터이상, 과수 5천제곱미터이상 등

다.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

라. 완초·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약용작물과 밀·콩·감자 또는 양잠 ()이상

※ 완초·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약용작물과 밀·콩·감자 또는 양잠은 해당 조합에서 각 해당 품목의 특성과 "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

마.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바. 한육우 10마리 이상

사. 착유우 5마리 이상

아. 돼지 200마리 이상

자. 염소 50마리 이상

차. 여우 100마리 이상 또는 밍크 300마리 이상

카. 토끼 200마리 이상

타. 말 2마리 이상

파. 사슴 10마리 이상

하. 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개에 한함) 2마리 이상

거. 육계 1만마리 이상 또는 산란계 5천마리 이상

너. 오리 1천마리 이상

더. 꿀벌 20군 이상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을 "축산업"으로 규정)을 경영하는 법인

②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과 동일한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비고) 인삼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규정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사육하는 축종 및 가축수"로 규정)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지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20좌이상을 출자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회전출자) ① 조합원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안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1조(경비부담)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24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3.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다.

제26조(자본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27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5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9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8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한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8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0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제3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

원대표는 감사가 제33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총회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6조(총회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 가.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총액 1억원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8.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8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3. 조합원의 제명

제39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투표로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합병·분할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 대하여 총회개회 6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5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43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5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구역안(품목)의 조합원이 호선하는 대의원 ○○인으로 구성한다.

1. ○○ 면·동 ○○인

2. ○○ 면·동 ○○인

※ 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군, ○○인으로, 시·군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면·동 ○○인으로 규정

(비고) 대의원수는 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며, 대의원을 품목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목 ○○인

2. ○○품목 ○○인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선출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이사회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⑨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 ⑩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6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인과 외부전문가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이내로 정한다.

2.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9조(임원의 정수)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인,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례〉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4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중 1인 및 감사중 1인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2인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인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은 상임으로 하며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중 ○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중 ○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②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⑦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제7항을 규정함

제51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임원의 선출)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제4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
1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 결. 이 경우 이사회 해임요구와 총회 해임결정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결정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2천만원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①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인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9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본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④ 조합장은 3월말·6월말·9월말에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

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마목 내지 아목, 제3호다목·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 인삼계 품목조합은 "제3호다목·라목"을 "제3호다목"으로 하고, 신용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마목 내지 아목,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4조(경영상태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①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 제27조제5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청산

제71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청산) ① 본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현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문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고)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본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우리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를 추가할 것

제4조(상임이사 및 간부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상임이사의 임기만료후에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상임이사 소관 직원 및 간부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백서

찍은날 : 2001. 1.26

펴낸날 : 2001. 1.30

발행인 : 한 갑 수

펴낸곳 : 농 립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인쇄처 : 대양출판사 <(02)503-6063>
